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54호
2021년 12월 30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규 칙				
○ 규 칙	제1080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기획예산과	3
○ 규 칙	제1081호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기획예산과	11
○ 규 칙	제1082호	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기획예산과	41
○ 규 칙	제1083호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문화관광과	229
훈 령				
○ 훈 령	제389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훈령	기획예산과	239
○ 훈 령	제390호	남동구 공무원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	총 무 과	257
공 고				
○ 공 고	제2461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토지정보과	262
○ 공 고	제2463호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체육진흥과	269
○ 공 고	제2464호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체육진흥과	276
○ 공 고	제248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362호선, 소로2-2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열람	도시재생과	282
○ 공 고	제248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68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열람	도시재생과	287
○ 공 고	제2487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과	290
○ 공 고	제2498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자동차관리과	292
○ 공 고	제2501호	「남동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미디어정보과	315
○ 보건소공고	제123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식품위생과	329
○ 보건소공고	제125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식품위생과	330

고 시				
○ 고 시	제209호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 고시	토지정보과	331
○ 고 시	제21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새말소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시재생과	332
○ 고 시	제21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재생과	335
○ 고 시	제212호	도시관리계획(만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재생과	337
○ 고 시	제213호	도시관리계획(소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재생과	350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대변인실

규 칙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12월 30일

남동구 규칙 제1080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계	1,310	777	28	138	14	353(10)
정무직 계	1	1	0	0	0	0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305	772	28	138	14	353
2급 소계	1	1				
지방이사관	1	1				
4급 소계	8	6	1	1		
지방서기관	6	5	1			
지방기술서기관	2	1		1		
5급 소계	69	37	2	9	1	20
행정	29	16	2			11
의무	4			4		
시설	4	4				
행정·사회복지	9	6				3
행정·공업	1	1				
행정·녹지	2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10	6			1	3
보건·간호	1			1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보건·간호	2			2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의무·보건·의료기술·간호	1			1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6급 소계	325	201	8	25	3	88
행정	117	61	5	1		50(10)
세무	14	14				
사회복지	16	6				10
속 기	1		1			
공업	2	2				
녹지	3	3				
보건	2			2		
환경	5	5				
시설	22	22				
전산	1	1				
방송통신	1	1				
운전	4	3		1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3	3				
행정·세무	14	11			1	2
행정·사회복지	43	18	1			24
행정·사서	2	2				
행정·농업	1	1				
행정·공업	6	5			1	
행정·녹지	3	3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보건	3			3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19	19				
행정·전산	2	2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운전	1	1				

사회복지·시설	1	1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공업·환경	3	3				
공업·시설	3	3				
보건·의료기술	2			2		
보건·간호	5			5		
의료기술·간호	3			3		
시설·해양수산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속기·사무운영	1		1			
행정·농업·수의	2	2				
행정·녹지·환경	1				1	
행정·보건·간호	5			3		2
보건·의료기술·간호	4			4		
보건·간호·간호조무	1			1		
7급 소계	469	285	15	49	5	115
행 정	159	87	10		1	61
세 무	27	27				
사회복지	70	24				46
속 기	2		2			
공 업	6	6				
농 업	4	4				
녹 지	8	8				
수 의	2	2				
해양수산	2	2				
보 건	7			7		
의료기술	1			1		
간 호	14			14		
환 경	12	12				
시 설	39	39				
전산	8	8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방송통신	4	4				
운 전	10	4	1		1	4
전화상담운영	1					1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2		1			1
행정·세무	14	13			1	
행정·사회복지	5	3				2
행정·사서	8	8				
행정·공업	3	3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1			1		
행정·간호	1	1				
행정·시설	18	18				
행정·전산	2	2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5	3			2	
공업·방송통신	1		1			
녹지·시설	2	2				
보건·의료기술	4			4		
보건·간호	16			16		
의료기술·간호	5			5		
간호·간호조무	1			1		
시설·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8급 소계	352	195	2	49	5	101
행 정	120	74	2			44
세 무	7	6			1	
사회복지	80	30				50
사 서	3	3				
공 업	8	8				
농 업	3	3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녹 지	6	4			2	
보 건	14	1		13		

의료기술	4			4		
간 호	25			25		
환 경	4	3			1	
해양수산	1	1				
시 설	23	23				
전 산	3	3				
방송통신	3	3				
운 전	3			1		2
사무운영	3	1				2
행정·세무	2	2				
행정·사회복지	5	2				3
행정·사서	4	4				
행정·공업	2	2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시설	15	15				
행정·전산	1	1				
행정·방재안전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2	1			1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간호	2			2		
행정·보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9급 소계	80	46		5		29
행 정	29	14				15
세 무	4	4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사회복지	13	2		1		10
사 서	5	5				
공 업	2	2				
녹 지	1	1				

보 건	3			3		
의료기술	1			1		
시 설	10	10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5	1				4
행정·사서	2	2				
행정·녹지	1	1				
행정·방재안전	2	2				
연구직 계	1	1				
기록연구사	1	1				
별정직 계	4	4				
5급(상당) 소계	1	1				
비서실장	1	1				
6급(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7급(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8급(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 복지담당 행정직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임.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에 대한 정원 반영 등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용을 위하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별표 1]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일부개정
 - 정원관리 기관별 조정현황

구분	계	구분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현 행	1,292	770	23	133	13	353
개 정	1,310	777	28	138	14	353
증 감	+18	+7	+5	+5	+1	-

- 직급별 조정현황

구 분	총계	정무직	일 반 직								별정직
			소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연직	
현 행	1,292	1	1,287	9	69	320	463	347	78	1	4
개 정	1,310	1	1,305	9	69	325	469	352	80	1	4
증감	+18	-	+18	-	-	+5	+6	+5	+2	-	-

규 칙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12월 30일

남동구 규칙 제1081호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본 청 사 무 분 장 표 (제13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대 변 인	1. 구정 홍보 종합계획 수립
	2. 지면매체[신문, 잡지 등]를 활용한 구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3. 구정관련 연중 기획보도 발굴
	4. 기획보도 및 기고문 등 구정홍보 보도자료 작성
	5. 주요구정사업 브리핑 및 기자 설명회 실시
	6. 일일 보도자료 제공 및 보도자료 분석
	7. 언론사 간행물 및 신문구독 관리
	8. 방송매체[TV, 라디오]를 활용한 구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9. 구정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지원
	10. 구정현안에 대한 방송 대담 및 인터뷰 진행
	11. TV, 라디오 활용 남동 홍보공익 캠페인 진행
	12. 주민 다중이용시설[버스, 지하철 등]을 활용한 구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13. 주민 다중이용시설 홍보 계획 수립 및 운영
	14. 구정홍보디자인 총괄(각종 홍보물)
	15. 홍보매체 기관(언론사 등)과의 협조사무 총괄
	16. 언론보도 및 분석을 통한 언론대응
	17. 언론대응정책수립 및 언론동향 파악
	18. 언론사 행정광고(예고)
	19. 타 부서 홍보 및 광고 관리
	20. 홍보 관련 법제도 및 언론중재 관련 사무 총괄
	21. 언론중재위원회 관련업무 수행
	22. 정부광고법 등 홍보관련 법제도 관련 사무
	23. 언론진흥재단 연계 업무 수행
	24. 남동사람들 제작 및 발간
	25. 사진촬영 및 사진 기록 보존
	26. 구정홍보영상 기획 및 제작 활용
	27. 구정화보 제작관리 및 동영상 기록 보존
	28. 브리핑룸 운영관리
	29. 청내 공고게시판 관리
	30. 공고, 고시, 전자구보 발간 및 홈페이지 게재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소통협력 담당관	1. 구민소통계획 수립·총괄 조정
	2. 구민소통 과제 발굴 및 추진 총괄
	3. 사회단체 등과의 소통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상시소통을 위한 각종 단체 및 구민과의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5. 구청장과의 만남의 날 운영
	6. 구청장 동방문 및 건의사항 관리
	7.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시 운영
	8. 생활공감정책 지원 및 관리
	9. 집단·갈등민원 및 주민불편사항 등 각종 고충민원 상담·조정·처리에 관한 사항

	(공무원비리와신분상조치를요구하는감사사항은제외)
10	갈등민원 분석 및 갈등의 다각적 해결조정 및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11	납세자보호관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감사실	1. 감사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2. 자체종합감사에 관한 사무
	3. 비위공무원 징계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4. 사법기관 통보 및 공무원 범죄처리에 관한 사무
	5. 공직기강 및 사정에 관한 업무
	6. 사무인계·인수사항 확인 관리
	7. 감사사항에 대한 기록관리 및 통계분석
	8. 청렴도에 관한 사무
	9.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10. 중요정보 및 민원사항 조사 처리
	11. 첩보·진정·투서에 관한 사항
	12. 상급기관 이첩민원처리에 관한 사무
	13. 특정(기획)감사에 관한 사무
	14. 보조금 등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
	15.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에 관한 사무
	16. 민원사무 처리 실태 조사
	17. 신문 및 방송 보도사항 등 동향조사 처리
	18. 현장 및 안전관리 점검에 관한 사항
	19. 인권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기 획 예산과	1.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기구 직제 및 정원 관리
	4. 조직 및 인력 진단
	5.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6.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총괄
	7. 지시사항 처리총괄(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 구청장 등)
	8.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9. 정책조정위원회 운영
	10. 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
	11. 사무의 위임·위탁 및 사무전결에 관한 사항
	12. 군수·구청장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
	13.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무
	14.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무(자매결연 사업 포함)
	15. 공무 국외여행 추진
	16. 구정 백서 발간
	17.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18.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19.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에 관한 사무
	20. 국·시비 보조금 운영
	21. 예산의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에 관한 사항
	22. 투자 심사에 관한 업무
	23. 지방공공기관에 관한 사무
	24.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무

	25. 예비비 및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26.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27.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28. 예산 배정에 관한 사무
	29. 예산의 전용, 이체, 이용, 변경사용
	30. 기금운영 총괄조정
	31. 지방채무 관리에 관한 사무
	32. 지방재정 공시에 관한 사무
	33. 민자 유치사업 지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34.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무 총괄 조정
	35. 법률 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
	36. 성과관리제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무
	37. 국정평가 등 외부평가 관리에 관한 사무
	38.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39.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40.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의 법제심사
	41.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 공포
	42. 고시, 공고, 훈령, 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43. 구정발전시책 및 제안(창안)제도 운영
	44. 행정규제 개혁에 관한 업무
	45. 지방행정 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46.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무
	47. 지방분권업무의 총괄·기획·조정 및 지원
	48. 지방이양사무에 관한 사항
	49. 적극행정추진에 관한 사항
	50. 민관협치업무에 관한 사항
	51. 의회 운영 지원
	52. 의회와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관한 업무
	53.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재의요구
	54. 통계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55. 통계의 심사, 통제, 조사, 분석, 공표
	56. 통계 자료의 수집 및 간행물 발간
	57. 산업, 광공업, 농·어업, 사업체, 인구주택 총조사 등에 관한 업무
	58. 균형발전에 관한 사무
	59. 용역의 심사 및 관리
	60. 외부재원 확보에 관한 사무
	61. 외부재원 재투자에 관한 사무
	62. 당면 현안사항 및 사업부서 추진사업 총괄 관리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일자리 정책과	1.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2.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운영에 관한 사무
	3.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4. 구인·구직 알선 등에 관한 사무
	5. 취업정보 전산망 운영관리
	6.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7.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무
	8.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9. 청년미디언타워 운영에 관한 사무
	10.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11. 청년정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소래하부공간 활용 및 조성에 관한 사무

13.	신중년일자리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14.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종합계획 수립
15.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무
16.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7.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18.	공유경제 관련 업무
19.	공정무역 육성 지원
20.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무
21.	협동조합 일반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
22.	공공근로 사업 추진 및 관리
23.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및 관리
24.	유·무료 직업소개 사업등록, 신고에 관한 사무
25.	유·무료직업소개사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26.	생활임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
27.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에 관한 사무
28.	지역고용거버너스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안 전 총괄과	1.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
	2. 안전문화·의식 진흥 정책에 관한 사무(주민 안전 교육 및 홍보)
	3.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4. 지역축제 및 행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5.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6. 주민안전정책 총괄
	7. 재난관리 기금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
	8. 전시 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9. 재난안전관리업무 실태평가 업무 총괄
	10. 재난 공시에 관한 사무
	11. 기타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 운영
	12. 특사경 지원 및 업무 총괄
	13.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 운영
	14.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상황판단회의
	15. 재난관리 13개 협업기능 총괄
	16. 재난관리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17. 자연재난 총괄복구계획 추진
	18. 재해구호 총괄계획 수립
	19.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풍수해, 지진, 폭염, 가뭄, 폭설, 한파, 풍랑)
	20. 재해예방 경감사업 추진
	21.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추진
	22. 지진피해저감사업(지진가속도계측기, 위험도평가단) 추진
	2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
	2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관리 및 해소방안 수립에 관한 사무
	25. 재해지도(재해정보지도) 작성
	26.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제공
	27. 풍수해보험 운영에 관한 사무
	28. 자연재해예방 표어 포스터 공모 전시
	29.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30. 방재교육 및 훈련실시
	31. 자율방재단 운영 관리
	32. 방재물자 관리
	33. 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34.	4대악 범죄 예방사업 총괄
35.	재난 및 국가기반분야 매뉴얼 통합관리
36.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총괄관리
3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 사무
38.	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지원 총괄
39.	재난대비 종합훈련 총괄
40.	국민안전교육 총괄
41.	지역안전도 평가에 관한 사무
42.	제3종시설물 총괄계획 수립
43.	초고층 및 지하연계건축물 안전관리
44.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유지관리 총괄
45.	안전점검모니터 운영 및 관리
46.	안전점검의 날 운영
47.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48.	방법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49.	각종 민원(방법, 어린이범죄예방 등)처리 및 CCTV 설치장소 선정
50.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51.	차량방법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52.	저기능 CCTV 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53.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및 운영
54.	어린이범죄예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55.	통합관제센터 및 CCTV 구축·운영 종합 계획 수립
56.	재난안전 통합관제 운영체계 도입 및 시행
57.	확장서비스(u-Service) 및 기능형서비스 개발·도입
58.	CCTV 통합관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59.	CCTV 관련 부서·유관기관(학교, 경찰) 업무협의 및 협약 추진
60.	관제인력 채용 및 관리
61.	통합관제센터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62.	개인영상정보보호에 관한 사무
63.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64.	사회복무요원 관리
65.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무
66.	총무계획의 총괄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67.	인력동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68.	민방위훈련, 교육의 계획수립 및 시행
69.	민방위대 조직 편성 및 자원관리
70.	직장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관리
71.	주민신고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무
72.	민방위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무
73.	민방위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74.	민방위장비 및 화생방 장비에 관한 사무
75.	기타 민방위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76.	전시 병무에 관한 사무
77.	사회안전 예방활동 지원
78.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7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미디어 정보과	1. 남동구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
	2. 블로그 기자단(소셜멤버) 운영 및 활성화
	3. 소셜미디어 이벤트 및 프로모션 홍보 기획 및 진행
	4. 남동구 소셜민원 창구 운영·관리 및 소셜미디어 교육 진행

5.	남동구 카카오펀리스 친구 운영 및 관리
6.	남동구 감성 웹진 제작
7.	‘남동TV’ 인터넷방송국 기획 및 운영
8.	남동구‘주민 리포터’운영
9.	남동 핫플레이스 기획 및 제작
10.	구청 영상 콘텐츠 촬영 및 제작 관리(동영상 기록 보존 등)
11.	홈페이지 운영 및 개편 관리
12.	대량매일발송시스템(EMS) 운영·관리
13.	디지털 홍보 시스템 운영 및 관리
14.	정보화관련업무 종합 기획·조정 및 총괄
15.	정보화 사업 법제도에 관한 사무
16.	지역정보화 및 정보격차해소 추진에 관한 사무
17.	정보화사업 타당성 및 예산심의에 관한 사무
18.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중복개발) 조정
19.	정보기술아키텍처(EA)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무
20.	전자정부 성과 관리에 관한 사무
21.	소프트웨어 관리 및 제도준수에 관한 사무
22.	우수정보시스템 도입 및 보급에 관한 사무
23.	스마트도시관련 정보화 업무 추진
24.	데이터기반행정 추진(데이터수집·관리, 분석, 활용 및 활성화, 연계·구축)
25.	공공데이터개방 추진(확대개방, 품질관리 및 표준화, 이용활성화)
26.	정보보안에 관한 사무
2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
28.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무
29.	행정정보와 공간정보간 연계활용
30.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및 관리
31.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관리
32.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및 문서유통에 관한 사무
33.	행정포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
34.	웹서비스(웹사이트, 웹솔루션 등) 운영 관리
35.	행정정보(지킴이시스템, 통합백업시스템 등) 운영 관리
36.	행정정보망(내부, 외부망) 운영 관리
37.	정부원격근무지원에 관한 사무
38.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39.	공무원 정보화역량 강화에 관한 사무
40.	전산기계실 및 전산교육장 운영 관리
41.	행정정보화 전산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42.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무
43.	클라우드시스템 도입 계획 수립 및 추진
44.	공공아이핀 및 행정전자서명에 관한 사무
45.	행정 정보통신 체계 구축 및 운영 계획 수립
46.	정보통신 법제도에 관한 사무
47.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 업무
48.	건축물 실무종합심의 및 주택건설 승인 협의
49.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인·허가에 관한 사무
50.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확인 민원 처리
51.	초고속 자가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
52.	무선 인터넷 및 무선국 운영 관리
53.	행정전화 서비스에 관한 사무
54.	행정팩스 민원 서비스에 관한 사무
55.	청사 CCTV 및 영상정보 관련 민원 처리에 관한 사무
56.	구청 생중계 방송서비스에 관한 사무
57.	국가정보통신망, 전용회선, 인터넷회선, 음성회선 등의 통합 관리
58.	통합메시징 서비스 운영 관리

59.	영상회의실 및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관리
60.	정보통신기계실 및 암호장비실 운영 관리
61.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무
62.	교환실 운영 관리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총 무 과	1.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2. 보안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보수 및 연금에 관한 사항
	4. 시·구민의 날 행사 종합계획 수립 업무
	5.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회에 관한 사무
	6. 공무원의 관외출장 통제
	7.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운영관리
	8. 직장동호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직장보육시설 관리 운영
	10. 자체 직장 민방위 및 예비군 운영관리
	11. 구청사 방호 및 시설의 이용·배치에 관한 사항
	12. 의식 행사 의전 접대에 관한 사항
	13. 민간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표창
	14. 공무원 건강진단 및 복리후생
	15. 공무원 건강보험 등 4대보험에 관한 사항
	16. 인사제도의 기획 및 운영
	17. 공무원의 인사관리
	18.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
	19. 인사기록 관리 및 인사통계
	20. 공무원 교육 및 피교육자 차출
	21.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22. 공무원증 발급 및 신원조사 의뢰
	23. 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
	24. 공무원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25.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무
	26. 공무원 고충심사 처리 및 상담해결
	27.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28. 분청 및 소속·하부행정기관 회의의 조정·통제
	29. 직원복지회 운영 관리
	30. 직장협의회 운영 및 공무원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1.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업무 총괄 관리
	32. 공무원 및 공무원(환경미화원 제외) 노조관리
	33. 공무원(환경미화원 제외) 단체(임금)교섭
	34. 공무원 및 기간제 산업안전·보건관리
	35. 공무원근로자 정수관리
	36.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정규직 전환 업무
	37.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징계위원회, 채용절차법 운영
	38.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 운영
	39.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전반
	40. 동 기능 전환 관련업무 총괄
	41. 동의 명칭 및 위치·구역의 변경
	42. 지방행정동향 및 각종 여론관리
	43. 확대간부회의 운영관리
	44.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45.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관리
46.	행정사 등록에 관한 사무
47.	시정업무 추진에 관한 사무
48.	일제강점하강제동원및과거사정리,6·25전쟁남북피해자 진상규명 등에 관한 사무
49.	북한이탈주민센터 시설관리운영
50.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1.	동 행정의 종합관리 및 실적평가
52.	통·반조직의 승인조정 및 관리
53.	주민등록 관리 및 주민전산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
54.	주민등록 및 외국인 인구 통계에 관한 사무
55.	주민등록증 관리 및 주민등록번호부여에 관한 사무
56.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 관한 사무
57.	지역공동체 사무
58.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총괄
59.	동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60.	주민자치센터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무
61.	주민자치협의회 운영 지원
62.	적십자회비 모금운동 및 회비 수납지원
63.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
64.	국민운동단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무
65.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평 생 교육과	1. 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2.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3. 지역교육사업을 위한 학교 및 교육청 업무 지원
	4. 지역우수자 대학 전형 지원에 관한 사항
	5. 취학사무에 관한 사항
	6. 각급 학교 표창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경비보조금(초·중·고등학교)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8. 교육경비보조금(사립유치원)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9. 교육혁신지구 사업에 관한 사무
	10.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무
	11. 무상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1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13. 무상교복 지원에 관한 사무
	14.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15.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관련 사무
	16.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17. 평생교육 지원 및 연계에 관한 사무
	18.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19.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1. 평생학습 시설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2. 기타 평생학습도시 발전과 관련된 사항
	23. 남동구평생학습관 관리에 관한 사무
	24. 도서관 발전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5. 공공도서관 확충(건립 및 리모델링)
	26. 구립도서관 운영관리(예산,대관,물품관리,통계,위원회 운영 등)
	27. 구립도서관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28. 구립도서관 자료 확충 및 관리(자료선정,수집, 폐기,이관,매가,점검,대출,반납등)

29.	구립도서관 전산관리 및 홈페이지 관리
30.	도서관 간 교류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31.	통합도서 및 상호대차서비스운영
32.	독서문화진흥홍사일에 관한 사항
33.	작은도서관 등록 및 운영 지원
34.	지역서점활성화지원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문 화 관광과	1. 지방 문화 예술단체의 설치운영
	2. 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사무
	3. 문화예술 시책사업 추진
	4. 지방문화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
	5.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에 관한 사무
	6. 향토 문화재의 발굴 육성 등에 관한 사무
	7.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문화예술 사업 추진
	8. 테마기획공연 등 문화예술사업 추진
	9. 남동소래아트홀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10. 소래역사관 위탁관리
	11. 청사 예술품 관리에 관한 사무
	12. 문화재 보존 및 관리
	13. 문화재매매업관리
	14. 매장문화재 관리
	15.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16.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17. 남동구 여성합창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
	18. 구사 편찬 자료수집 및 발간에 관한 사무
	19. 남동구 풍물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0. 출판사, 인쇄사 신고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관한 사무
	21. 영화 및 영화상영관 등록에 관한 사무
	22. 공연장 등록과 공연에 관한 사무
	23. 잡지간행물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4.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5. 건축물 미술작품에 관한 사무
	26. 잡지 등록 및 간행물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7. 여행업에 관한 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8. 관광편의시설업에 관한 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9. 관광숙박업에 관한 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0.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등 유통관련업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1.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등 유통관련업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32. 관광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33. 관광 시책사업 추진
	34. 지역자원연계 관광상품 연구·개발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체 육 진흥과	1. 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체육회 운영관리
	3. 남동구민체육단 운영 지원
	4. 남동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5. 남동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6. 회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7. 생활체육 동호회 육성 지원

8.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지원
9.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 지원
10.	국제경기대회 지원
11.	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
12.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3.	생활체육 전국대회 참가 지원
14.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15.	꿈나무스포츠단 운영 및 지원
16.	우수체육인 지원 및 지시사항 처리
17.	생활체육무료교실 운영
18.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9.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운영
20.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운영
21.	공공체육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22.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
23.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 유지 및 수시정비
24.	공공체육시설 유지 및 수시정비
25.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 추진
26.	공공체육시설 위탁 관리
27.	공공체육시설 조정관리
28.	공공체육시설 청결유지관리
29.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변경 신고 처리
30.	수상레저기구 행정처분
31.	체육시설업 신고 처리
32.	신고체육시설 안전점검 추진
33.	체육시설업 행정처분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민 원 봉사과	1. 관인보관에 관한 사무
	2. 공인등록, 재등록, 폐기 및 인영 등록, 공고
	3. 민원(방문, 전화, 인터넷) 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무
	4.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5. 민원1회 방문처리 운영에 관한 사항
	6. 종합민원신고센터운영
	7. 민원24 관리 운영
	8. 민원사무 제도 개선·시책 발굴
	9. 행정서비스현장 운영관리
	10. 친절 행정 추진
	1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
	12. 여권발급에 관한 사무
	13.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4. 통합민원발급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주민등록·인감증명·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증명 발급
	나. 건축·지적민원 발급
	다. 출입국 사실 증명 발급
	라. 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자에 관한 사무(체류지 변경, 제증명)
	15. 미추홀콜센터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16.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사무
	17. 수형인 명부관리 및 신원조회에 관한 사무
	18. 가족관계등록 전산 운영에 관한 사무
	19. 채무불이행자 명부관리
	20. 문서수발 및 우편물 관리

21.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22.	기록물 정리·이관·폐기
23.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24.	행정정보공개운영에 관한 사무
25.	기록관 관리
26.	시청각기록물 관리
27.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28.	간행물 및 행정자료실 운영관리

부 서 명	분 장 사 무
토 지 정보과	1. 지적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지적 측량 성과검사 등에 관한 사무
	3.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관한 사무
	4. 측량결과도 및 결의서 보존관리
	5. 지적측량 수행자 지도감독
	6. 그 밖에 지적 및 측량표지에 관한 사무
	7. 토지 이동지 일제 조사
	8. 지적 공부 관리에 관한 사무
	9. 디지털 지적 구축 사업에 관한 사무
	10. 지적재조사 사업
	가.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한 업무
	나. 경계결정 및 조정금 의결 등에 관한 업무
	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라.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마.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에 관한 사무
	11. 토지(임야) 신규 및 분할 등에 관한 사무
	12. 토지분할허가(개발제한구역 제외)에 관한 사무
	13.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별법」 운영에 관한 사무
	14.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 관리
	15.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
	16.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
	17.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에 관한 사무
	18. 지적전산 및 전산자료제공에 관한 사무
	19. 조상당 찾기에 관한 사무
	20. 사단·재단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관리(법인 제외)
	21.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22. 토지이용계획도 보존관리 사무
	23. 지적 행정 일반에 관한 사무
	24.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입안·고시 사항 정리
	25. 도시계획, 연속지적도 오류정비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무
	26.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에 관한 사무
	27.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관한 사무
	28.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등에 관한 사무
	29.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30. 남동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사무
	31. 토지거래계약허가 등에 관한 사무
	32.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조사 등에 관한 업무
	33. 외국인 부동산관리 취득 업무
	34. 부동산중개업소 개설 및 이전 등 공인중개사법에 관한 사무
	35.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

	36.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37.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사무
	38.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관리에 관한 사무
	39. 개발부담금 대상 관리 및 부담금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40. 부동산실명법 운영에 관한 사무
	41. 도로명 부여 및 변경 사무
	42. 건물번호 부여 및 변경 사무
	43.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사무
	44. 주소 일괄변경 사무
	45.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관리업무
	46. 도로명주소 위원회 운영
	47. 국가기초구역에 관한 사무
	48. 국가지점번호제도 추진에 관한 사무
	49. 도로명주소 홍보 및 교육
	50.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사업
	51. 도로명주소 대장 발급 및 열람
	52.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재 무 과	1. 공사계약(하자보수관리, 주민참여감독)
	2. 용역계약(일반, 폐기물, 설계용역)
	3. 물품계약(관급자재, 수리·수선, 제조)
	4. 예산회계결산 및 재무결산
	5. 통합자금운용관리
	6.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부가세 신고, 연말정산
	7. 세출예산지출(일반, 국비, 시제배정)
	8. 공유재산관리(취득·처분·유지관리)
	9.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
	10. 시 및 구 공유일반재산의 대부, 매각 및 유지관리
	11. 구청사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12. 물품관리(정수관리,재물조사) 및 불용결정·처분
	13. 공용차량관리
	14. 구청사 관리
	15. 공공시설의 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공사의 설계 및 시공감독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세 무 과	1. 금고계약 및 수납기관 지도
	2.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규칙 등 제·개정 및 폐지
	3. 지방세징 운영 평가 및 표창
	4. 지방세 전산화 추진 및 관리
	5. 지방세 수입 및 결산
	6. 영수증 원본 수불 및 관리
	7. 지방세, 농특세 등 집계 및 수납관리
	8. 세정자료의 조사와 통계연감 작성
	9.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업무
	10. 지방세 파오납금 환불
	11. 지방세에 관한 제증명 발급
	12.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에 관한 업무
	13. 기부금품 모집 심사에 관한 사항

	14. 수입금 출납사무
	15.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제
	16.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의 계획수립 및 전망분석
	17. 지방세 가산금 조정
	18. 지방세 구제업무(소송수행 등)에 관한 사항
	19. 지방세 과세대장 정리 및 관리
	20. 지방세 납세홍보 및 교육
	21.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진달
	22. 지방세 독촉고지 및 체납액 징수
	23.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4.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세자료 조사
	25.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26. 재산조회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업무
	27.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8.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9. 지방세 세무조사
	30. 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 수립 및 총괄 추진
	31.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32.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33. 기타 개별주택과 관련한 업무
	34. 주민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35. 기타 지방세와 관련된 유사한 업무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세 입 징 수 과	1.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한 지도감독
	2. 세외수입 목표액 책정 및 징수 실적·전망분석
	3. 세외수입의 수납관리 및 전산화 추진
	4. 세외수입 집계 및 영수필통지서 관리
	5. 세외수입 체납정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총괄
	6. 세외수입 체납·결손처분 등 징수에 관한 사항 (일반회계과년도분-자동차관리과관리분제외)
	7. 세외수입 체납자 행정규제 관한 사항 (일반회계과년도분-자동차관리과관리분제외)
	8.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제·개정 및 폐지
	9.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요율 조정
	10. 총괄 채권관리 및 보고업무
	11.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업무
	12.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제
	13.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의 계획수립 및 전망분석
	14. 지방세 가산금 조정
	15. 지방세 구제업무(소송수행 등)에 관한 사항
	16. 지방세 과세대장 정리 및 관리
	17. 지방세 납세홍보 및 교육
	18.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진달
	19. 수입금 출납사무
	20. 지방세 체납관리·독촉고지 및 체납액 징수
	21. 기타 지방세와 관련된 유사한 업무에 관한 사항
	22.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3.	지방소득세 독자신고에 관한 사무
24.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5.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6.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7.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8.	리스 및 렌트 차량 유치·관리에 관한 사무
29.	지방세 체납정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총괄 추진
30.	지방세 징수포상금 업무
31.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체납 처분
32.	관허사업 제한 및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행정규제
33.	지방세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34.	교부청구 업무
35.	지방세 카드납부 관리
36.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
37.	징수촉탁서 처리업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기 업 지원과	1.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2. 해외 단체(개별) 참가 지원 사업
	3. 해외지사화 사업
	4. 해외마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5.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
	6. 수출지원 사업
	7. 구청장 기업탐방
	8. 기업 홈페이지 운영
	9. 남동구 공동브랜드 개발 및 지원사업
	10. 경제 동향 분석
	11. 국내외 우수인증획득 지원 사업
	12.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사업
	13. 국제지식재산권분쟁예방 지원사업
	14. 기술지원단 운영지원 사업
	15. 중소기업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
	16. 기술개발 장비 사용료 지원 사업
	17.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18. 기타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지원
	19. 미니클러스터 구성 및 운영
	20.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 사업
	21.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22. 우수기업인 및 모범근로자 표창
	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업무
	24. 노사민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무
	25.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및 용자지원 업무
	26.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보증 업무
	27. 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등록 업무
	28.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29. 산업단지 관리 업무

30.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관련 업무
3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업무
32.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관련 업무
33.	계량기(증명, 수리, 제작업) 등록
34.	계량기 정기(수시) 검사
35.	전기사업법 관련 업무
36.	승강기 안전관리법 관련 안전관리 및 행정처분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생 활 경제과	1. 전통시장활성화 종합추진계획 수립
	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3. 시장정비사업 인가에 관한 사무
	4.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무
	5.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무
	6. 시장등록 및 상인회 등록관련 업무
	7. 시장 상권활성화, 경영현대화에 관한 업무
	8. 미소금융관련 업무(전통시장 소액대출 관련)
	9.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무
	10. 지역물가안정 종합대책 수립
	11.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12.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13.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사무
	14. 대규모·준대규모점포 영업규제관련 업무
	15. 담배도·소매업에 관한 사무
	16. 통신, 방문, 전화권유 판매에 관한 사무
	17.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8. 대부업에 관한 사무
	19. 소비자보호 및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사무
	20. 새마을금고인가 및 지도관리
	21. 가스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2.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 허가(신고) 및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 등록에 관한 사무
	23.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에 관한 사무
	24.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저장·가스용품 제조 허가(신고) 및 특정사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
	25. 도시가스 충전 허가, 공사계획 승인(신고)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
	26.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무
	27. 주유소, 일반판매소, 용제판매소 등록(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8. LED조명기기 관련 사무
	2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관한 사무
	30.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관련 사무
	31.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무
	3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33. 석유류 품질검사에 관한 사무
	34.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사무
	35.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복지사업 관련 사무
	36. 전통시장 내 적치물경계선(고객선) 위반 불법 노점 및 적치물 단속·제거에 관한 사무

37.	전통시장 내 적치물경계선(고객선) 위반 불법 노점 및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38.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시설물 유지 및 관리
39.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사용수익허가 및 세입 징수 관리
40.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재산사용 관리 및 감독
41.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사용수익 허가조건 및 관리·운영협약 위반사항 지도·감독·행정처분에관한사무
42.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편의시설 활성화 관련 사무
43.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44.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농 축 수산과	1. 농정, 양정,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농지관리에 관한 업무
	3. 농지전용 및 이용 등에 관한 사무
	4. 수리시설의 유지 및 관리업무
	5. 농기계, 비료, 농약 등 농업자재의 공급관리 등에 관한 사무
	6. 농산물생산기반 조성사업 등에 관한 사무
	7. 농작물병충해 방제 등에 관한 사무
	8.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사업
	9.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
	10. 전작, 원예, 특용작물 생산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1. 도시농업에 관한 업무
	12.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13. 농·축산물 유통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4. 농업, 축산 통합 실시사업 추진
	15. 양정관련 업무
	16. 농·어업 경제체 지원업무
	17. 곤충산업 지원 업무
	18.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업무
	19. 말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무
	20. 축산진흥에 관한 업무
	21. 축산물 인·허가 업무
	22. 가축 방역 및 통제 등에 관한 업무
	23. 농·축산업 재해대책 추진 업무
	24.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
	25. 동물판매업 등록 및 동물등록에 관한 사무
	26. 동물병원, 동물약국 인·허가
	27. 가축사육업 허가 및 축산차량등록제 업무
	28. 어장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9. 어선등록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30. 소형선박 저당 및 압류에 관한 사무
	31. 어획물 운반업 등록에 관한 사무
	32. 낚시터업 허가·등록 및 낚시어선 신고에 관한 사무
	33. 자율관리어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34.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35. 수산물 가공업에 관한 사항

36.	연안(구획)어업에 관한 사무
37.	소래 국가어항 개발완료 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8.	어업인 육성 및 수산진흥에 관한 사항
39.	국민연금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산업기능요원에 관한 사무
40.	남시통제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41.	해양수산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
42.	해양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무
43.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44.	어업인 안전조업 지도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복 지 정책과	1. 남동구 사회복지사무 조정·통계 등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2. 호국보훈 및 의사상자에 관한 사무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4. 사회복지법인 관리에 관한 사무
	5.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6.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조정·시행·평가에 관한 사무
	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관한사무
	8. 사회복지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9.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망 관리에 관한 사무
	10. 읍면동 인적안전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11. 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에 관한 사무
	12.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무
	13. 이웃돕기에 관한 사무
	14.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복지 총괄
	15. 복지사각지대 관리에 관한 사무
	16.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17.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무
	18. 방문형서비스 협력체계 운영에 관한 사무
	19.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사무
	20.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관한 사무
	21. 자활기금 운용·관리
	22. 그 밖에 주민생활국 사무의 총괄 및 지원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사 회 보장과	1.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2.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관한 사무
	4. 의료급여 지원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사무
	5.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무
	6. 노숙인 등이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노 인 장애인과	1. 노인복지 증진 및 효 실천에 관한 사무
	2.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무(업무관련)
	3. 기초연금에 관한 사무
	4.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무
	5. 장난감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6. 무료급식소 및 식사배달사업에 관한 사무
	7. 장사 등에 관한 사무
	8.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9. 노인단체에 관한 사무
	10. 남동사할린센터 시설관리운영
	11.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에 관한 사항
	12. 노인복지기금 및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무
	1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무
	14.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5.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사무
	16.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에 관한 사무
	17.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무
	18.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사무
	1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0.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추진에 관한 사무
	21.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무
	22.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무
	2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여 성 가족과	1. 여성정책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
	2. 여성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무
	3.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가족친화 인증에 관한 사무
	4. 양성평등에 관한 사무
	5. 디지털폭력예방에 관한 사무
	6.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7.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무
	8.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 방지에 관한 사무
	9.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무
	10.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사무
	11. 성폭력·가정폭력 및 여성상담에 관한 사무
	12. 남동다문화건강가족지원센터 시설관리운영
	13. 남동하모니센터 시설관리운영
	14. 다문화가족관리 및 지도·지원에 관한 사항
	15. 다문화가정의날, 세계인의날행사운영(각종다문화·외국인관련행사)
	16. 결혼중개업관리 및 운영지도(인·허가, 지도감독)
	17. 거주외국인지원 및 민원사무
	18. 청소년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9. 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20. 청소년자치권 확대에 관한 사무
	21. 청소년 건강지원에 관한 사무
	22. 청소년 복지시설 신고

	23.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사무
	24. 청소년증 발급에 관한 사무
	25.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
	26.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2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28. 청소년보호 및 청소년보호법 관련 사무
	2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무
	30.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31. 숙박형등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 운영
	32. 청소년 수련시설 허가, 등록
	33.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무
	34.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35.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에 관한 사무
	36. 청소년 안전망 운영 지원 사무
	37. 청소년 축제 발굴·지원·운영에 관한 사무
	3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39. 청소년 동반자 운영·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아 동 복지과	1.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2. 아동보호구역 지정 운영
	3. 아동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4.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에 관한 사무
	5. 국내입양아동 지원에 관한 사무
	6. 결식우려아동 급식에 관한 사무
	7.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관한 사무
	8. 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사무
	9. 아동복지시설 설치·변경 신고 수리
	10. 아동복지종합센터 지도·점검 및 보조금 지원
	11. 피해아동보호 종합계획 수립
	12. 아동학대 실종 관련 사무
	13.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 전담
	14. 관계기관 협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인식개선 업무
	15. 요보호아동 시설입소에 관한 사무
	16. 그룹홈 지도·점검 및 보조금 지원
	17. 온종일지역돌봄협의체 운영
	18. 다함께돌봄사업 설치 및 운영관리
	19.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및 보조금 지원
	20.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및 정원·정산서 관리
	21.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22. 드림스타트 종합계획
	23.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슈퍼비전 설치·운영
	24. 드림스타트 조직화 및 협력·후원기관 발굴 및 관리
	25. 분야별 서비스 연계프로그램 운영
	26. 대상아동 인테이크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무
	27. 아동통합사례관리사·아동복지교사 채용 및 운영·관리
	28. 실무워킹그룹 운영 관리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보 육 정 책 과	1. 보육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2. 어린이집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무
	3. 무상보육 지원에 관한 사무
	4. 영유아무상보육 자격책정에 관한 사무
	5.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무
	6. 어린이집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7. 보육교직원 관리에 관한 사무
	8.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9. 저출산 대책에 관한 사무
	10. 어린이집 인가, 휴·폐업
	11. 특수어린이집 지정 및 관리
	1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위탁
	13.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4.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5. 공동육아나눔터업무
	16. 정부지원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개보수
	17.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8. 어린이집 지도점검
	19. 어린이집 행정처분
	20. 보육멘토 업무
	21.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청 소 행 정 과	1. 폐기물 처리 기본 계획 수립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무
	3. 가정사업계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무
	4. 수도권 매립지 반입 관련 사무
	5. 친환경 자원환경시설에 관한 업무
	6. 환경미화원 관리 및 단체(임금)교섭
	7. 국토 대청결운동 업무 추진
	8. 도심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무(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보관대 등)
	9.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관한 사무
	10. 해안쓰레기 정비에 관한 사무
	11. 적환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
	12. 각종 청소장비 관리 운영
	13.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관한 사무
	14.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 수급 관리
	15.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16. 자원순환업무(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등)에 관한 사항
	17. 재활용 활성화 추진 사업에 관한 업무
	18. 재활용 수집·운반 및 선별처리에 관한 사무
	19. 1회용품 사용 억제에 관한 사무
	20. 대형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무
	21. 그 밖에 폐기물 및 재활용등에 관한 사무
	22.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 관련 업무
	2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 등의 업무
	24.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사업 추진
	25.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업무
	26.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27.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설치부담금에 관한 업무

	28. 사업장폐기물 관리계획 수립
	29.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점검에 관한 업무
	30. 폐기물처리신고 및 지도점검
	3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점검
	3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업무
	33. 폐기물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에 관한 업무
	34. 사업장 방치폐기물 이행보중에 관한 업무
	35. 사업장폐기물(사업장일반, 건설, 지정, 의료) 신고 및 지도점검
	36. 건설폐기물 순환골재 의무사용에 관한 업무
	37. 폐기물 인계인수 및 처리에 관한 올바로시스템 지원 업무
	38. 사업장폐기물 법정교육 및 통계에 관한 업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환 경 보 전 과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
	3.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관련 업무
	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5. 물의 재이용 관리에 관한 사무
	6. 자연보호 관련 업무
	7. 수렵면허 관리 등에 관한 사무
	8. 환경측정망 관련 업무
	9. EM사업과 관련한 사무
	10. 환경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업무
	11. 녹색제품 구매 관련 업무
	12. 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신고 등에 관한 사무
	13.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4. 절수설비 의무화 제도에 관한 사무
	15. 무허가 배출업소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6.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계획수립 및 시행
	17.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8.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시설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9. 특정토양오염대상시설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0.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리에 관한 사무
	21.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관리
	22. 환경기술인 교육관리 등에 관한 사무
	23. 자동차 매연 및 배출가스에 관한 업무
	24.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관한 업무
	25.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6. 먹는 물 관리에 따른 수질검사 및 관리
	27. 석면 안전관리 및 피해 구제 관련 사무
	28. 빗공해 방지 등에 관한 사무
	29.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관한 사무
	30.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무
	3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일반 사무
	3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및 검사

33.	하수·분뇨관련영업자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34.	가축분뇨관련영업자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35.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및 대행계약등에 관한사무
36.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변경) 허가(신고) 및 검사
37.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및 관리
38.	저탄소 생활실천운동에 관한 사무
39.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관한 사무
4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사무
4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등에 관한 사무
42.	의제21 추진지원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도 시 경관과	1. 가로정비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 2. 도로상 불법 노점 및 적치물 단속·제거에 관한 사무 (전통시장내적치물경계선(고객선)과분리된불법노점및적치물의경우포함) 3. 노점상 설명제 실시지역 설명제노점상 선정 및 점용허가 4. 불법 노점 및 적치물(시설, 설치물 제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전통시장내적치물경계선(고객선)과분리된불법노점및적치물의경우포함) 5. 옥외광고물 종합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6. 옥외광고물 및 옥외광고업 인허가사무 7.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8. 불법옥외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무 9.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10.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11. 간판개선에 관한 사업 12. 시민게시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애 관한 사무 13. 도시경관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 14.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15. 경관사업 추진 및 협의에 관한 사무 16. 경관 협정 및 운영회에 관한 사무 17. 경관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18. 공공디자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공 원 녹지과	1. 공원행정의 종합계획 조정 2.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무(체육시설 제외) 3. 공원·녹지 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무 4.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5. 법령 등의 위반자 처분 6. 과태료 부과 징수 7. 기타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사무 8. 도시공원대장·도시자연공원구역 대장 작성 9. 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10. 공원·녹지 조경관리 등 유지관리 사무

11.	육교형 생태통로 유지관리(수목,난간,데크 등 조정분야)
12.	공공공지 관련 업무(조성 및 관리)
13.	공원·녹지조성 종합계획 수립
14.	공원조성계획 입안 및 설치
15.	공원·녹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무
16.	도시공원 시범사업
17.	사업 관련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무
18.	시설녹지의 설치
19.	공원녹지 리모델링에 관한 사무
20.	장기미집행시설(공원·녹지) 집행계획 수립 추진
21.	산림 기본 계획 수립
22.	산림 문화·휴양 기본계획 수립
23.	산림보호, 조림, 숲 가꾸기 사업 등에 관한 사무
24.	임목 벌채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5.	임산물 굴취, 채취 허가
26.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에 관한 사무
27.	공·사유림 내 채석 허가 등에 관한 사무
28.	국토 공원과 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29.	도시녹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30.	녹지대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31.	도심 속 텃터 조성 및 관리
32.	둘레길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33.	숲 치유사업에 관한 사무
34.	광장(일반,경관)의 설치 및 관리
35.	꽃양묘장 운영 및 관리
36.	세외수입(수목피해 보상금)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교 통 행정과	1. 교통 기획의 종합조정 2.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운영 3. 지역 교통안전계획에 관한 사무 4. 교통유발 부담금 과징 대상물 전수조사 및 부과 징수 5. 지하철 및 철도 관련 업무 행정지원 6. 교통 분야 공익요원 지도 관리 7. 교통안전관련 시설사업 추진 8.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관리 9.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역전광장) 관한 시설물 유지관리 10.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 11. 공영주차장 확충에 관한 사무 가.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나.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업무 다. 장·단기 주차시설 확충계획 투자재원 확보 12. 공영·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무 가.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기계식 포함) 관리에 관한 사무 나. 그린파킹(담장허물어 내집안 주차장 만들기) 사업 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라.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정 운영에 관한 사무
13.	마. 민영주차장 설치 등 통보처리에 관한 사무
14.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등에 관한 사무
15.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업무 등에 관한 사무
16.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등
17.	주·정차금지구역 관리에 관한 사무
18.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공무원 임면권
19.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 및 단속장비 관리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자동차 관리과	1.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관한 업무
	2. 자동차 운송 사업에 관한 사무
	3. 시내버스(지선버스) 및 택시 운송에 관한 업무
	4. 자동차 운송 주선업에 관한 사무
	5. 자동차 창고업에 관한 사무
	6. 자가용 자동차 사용에 관한 사무
	7.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및 행정처분
	8. 화물자동차(용달, 개별화물) 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9.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사무
	10. 자동차에 대한 개선 명령 등에 관한 사무
	11. 이륜자동차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2. 자동차의 사용정지 명령(자동차검사 관련업무 제외) 등에 관한사무
	13.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징수
	14. 자동차관리과 과태료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
	15.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수사 및 통고처분
	16.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무
	17.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행위 단속 등에 관한 사무
	18.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자동차단속에 관한 사무
	19. 무단방치자동차 단속에 관한 사무
	20. 자동차 무단방치사건 수사 및 통고처분
	2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열람신청의 처리
	22.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23. 자동차 압류등록의 처리
	24.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에 관한 사무
	25.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멸실의 경우의 조치
	26. 자동차의 신규등록·등록증의 교부
	27. 자동차 신규등록의 거부
	28. 자동차등록번호판 탈·부착 및 봉인
	29. 자동차 변경·이전·말소등록
	30.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31.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32. 자동차등록에 관한 이의신청 처리
	33. 건설기계등록에 관한 사무
	가. 건설기계등록 및 변경등록
	나. 건설기계등록의 말소
	다.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라. 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마.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
	바. 건설기계지당권 설정등록

	사. 과태료 처분
--	-----------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도시 재생과	1. 사업 관련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무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
	3.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4.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
	5.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6. 기타 도시계획 관련 업무
	7.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8. 일반지역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9.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사무
	10. 주택재개발에 관한 사무
	11.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12.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 관련 잔여사무(체비지 관리, 청산금 징수 및 교부, 제증명 발급, 각종 공사시행 등)
	13.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4.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5.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16. 도시재생사업 추진
	17.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18.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사항
	19.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보전에 관한 사무
	20.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21.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등에 관한 업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공영개발과	1. 소래 국가어항 개발
	2. 연안정비기본계획수립 등에 관한 업무
	3. 연안정비사업 시행
	4. 연안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설계,시공 및 감독
	5. 소래구역(특별계획구역) 개발 및 정비 사업
	6. 소래구역(특별계획구역) 건축행위(허가,신고 등) 가.부 결정 및 불법 건축행위 단속
	7. 소래 국가어항구역 건축행정 업무
	가. 건축 행정 건실화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가설 건축물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다. 신발생 위법건축물(무허가) 단속·정비 등에 관한 사무
	라. 세외 수입(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에 관한 사무
	마.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바. 건축허가·신고관련업무에관한사항
	사.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아. 공작물 축조 신고 등에 관한 사무
	자. 건축물 용도 변경 등에 관한 업무
	차. 건축물의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무

8.	소래갯길 일원 체육시설 조성
9.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
10.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1.	해수공급시설 운영·관리 등에 관한 업무
12.	소래지역 중장기 발전 업무
	가. 관광지역간 연계수단 도입
	나. 유희토지 개발방안 수립
	다. 집객시설 배치 및 사업시행
1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남동구 전략 사업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건 설 과	1. 건설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 공사용 자재 및 기구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 3. 도로 안내표시판 설치 및 수리에 관한 사무 4. 국공유재산(도로, 하천, 구거) 관리에 관한 사무 5. 시설동원(일반토지, 건설업체, 건설기계)에 관한 사무 6. 도로굴착 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7. 전문 건설업 등록 및 면허관리에 관한 사무 8. 건설기계 관련 업무 총괄 및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무이외의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무 9. 도로건설·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10. 토목, 건설 공사의 조사, 측량, 시행에 관한 사무 11.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12. 보도,육교,승강기(E/L)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13. 교량,육교,지하차도 등 구조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14. 육교형 생태통로 유지관리(콘크리트 구조물) 15. 구월공공주택지구 방음벽 유지관리 16. 수로원 배치관리 및 도로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 17. 사도 개설 허가에 관한 사무 18. 기타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사무(기존건축물증축부분이도로를침범한경우제외) 19. 도로사업 관련 보상에 관한 사무 20. 골재채취 허가·등록에 관한 사무 21. 도로 점용허가에 관한 사무(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에 한함. 단, 노점상·노점판매대는 제외) 22. 자전거이용시설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23.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24.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25.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26. 무단 방치자전거의 처분에 관한 사무 27. 자전거 보관대, 대여소 신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28.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9. 공동구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방재하수과	1. 방재시설(저류시설) 설치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2. 배수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3. 재해지도(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작성에 관한 사무 4.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역류방지밸브,차수관 등)설치에 관한 사무

5.	소래포구 일원 대조기 등 침수대책 수립에 관한 사무
6.	방재시설 및 물자(수방자재)관리에 관한 사무
7.	방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8.	해수침투방지용 수문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9.	방재시설 교육 및 훈련 실시에 관한 사무
10.	공공하수도 설치·인가·고시 등에 관한 사무
11.	준설원 배치관리 및 하수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
12.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13.	하수도 특별회계(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무
14.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단속·홍보에 관한 사무
15.	소하천 지정 및 정비 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16.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신고에 관한 사무
17.	지방 하천 유지 관리에 관한 사무
18.	국공유재산(하천,구거)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19.	지하수특별회계에 관한 사무
20.	개인 배수설비 설치 신고에 관한 사무
21.	공간정보시스템(GIS) DB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22.	오수중계펌프장(차집관리 외 지역)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건축과	1. 건축 행정의 종합 조정 2. 건축 행정 건설화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 가설 건축물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신발생 위법건축물(무허가) 정비 등에 관한 사무(GB, 도로 및 인도 제외) 5. 항측 적출 위법건축물 조사 및 정비 등에 관한 사무(GB, 도로 및 인도 제외) 6. 세외 수입(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에 관한 사무 7. 건축위원회설치및운영 8. 건축선의 지정 및 건축 제한에 관한 사무 9.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10. 건축허가·신고관련업무에관한사항 11. 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12. 공사감리업무 적합성 확인에 관한 사무 13.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14. 공작물 축조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5. 건축 시공의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무 16. 건축물대장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7. 건축물대장 표시 등에 관한 사무 18. 건축물대장 전산화 업무에 관한 사항 19. 건축물 해체 및 멸실 신고 업무에 관한 사무 가. 해체 및 멸실 신고 처리 나. 해체 공사 허가 다.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20. 건축물 용도 변경 등에 관한 업무 21. 건축물대장 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 22. 건축물의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사무

24. 건축물 분양 승인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5. 빈집정비 등에 관한 업무
26. 소규모주택정비(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업무
27. 제3종 시설물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29.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에 관한 사무
30.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31. 기계설비법 관련 업무
3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공 동 주택과	1.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관리감사에 관한 업무
	3.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현장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무
	5.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6.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7.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8.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9. 공동주택 재건축에 관한 사항
	10. 공동주택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
	11. 세외 수입(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에 관한 사무
	12. 임대 사업자 등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3.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 운영
	14. 미분양주택 관리 사무
	15. 신혼부부 전세임대 모집에 관한 사무
	16. 주택관리업 관리에 관한 사무
	17. 임대주택 관리업 관리에 관한 사무
	18. 학교용지 부담금에 관한 사무
	19. 주거급여사업에관한사무
	20. 주택바우처에 관한 사무
	21. 주택 개량 지원 사업
	22. 취약계층 임대주택 지원 사업
	23.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사업
	24.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25. 공동주택 관리주체 외부 회계 감사
	26. 공동주택 감리자 모집 및 승인 업무
	27. 공동주택 입주자모집 승인 업무
	28. 소규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에 관한 업무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부서 이관사무의 정비를 통해 부서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안정된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별표 1] 구 본청의 사무분장표 일부개정
 - 사무 이관에 따른 사무분장 정비
 - 장난감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 일자리정책과 → 노인장애인과

규 칙

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12월 30일

남동구 규칙 제1082호

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 통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대변인, 실,담당 관,과장	국 장	부 구 청 장	
1.	복무						
	가. 출장명령 및 복명처리						
	(1) 부구청장						○
	(2) 실·국장급 및 4급 이상 산하기관장					○	
	(3) 과장급 및 5급 이하 산하기관장				○		
	(4) 6급 이하			○			
	(5) 1일 이내로써 동일 부서의 3인 이하 관 외 출장			○			
	나. 휴가, 지참, 조퇴, 외출 및 초과근무						
	(1) 휴가, 지참, 조퇴 및 외출						
	(가) 부구청장						○
	(나) 실·국장급 및 4급 이상 산하기관장					○	
	(다) 과장급 및 5급 이하 산하기관장				○		
	(라) 6급 이하			○			
	(2) 초과 근무에 대한 사무						
	(가) 초과 근무 명령	기안			○		
	(나) 초과 근무 확인	기안		○			
2.	회의에 관한 사항						
	가. 유관, 산하기관장 및 이에 준한 중요한 회의		기안				○
	나. 과장, 주무담당 회의	기안			○		
	다. 기타 직원회의	기안		○			

3.	기획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기안				○
	나. 중요업무 및 중요시책에 따른 자료 제출	기안			○		
	다. 기타 경미한 자료처리 및 보고	기안		○			
	라. 소관업무의 통계처리						
	(1) 중요한 통계	기안				○	
	(2) 경미한 통계	기안		○			
	마. 행정규정의 신설, 폐지, 변경에 관한 사항		기안				○
4.	소관부서별 예산						
	가. 예산편성 요구서 제출	기안			○		
	나. 예산배정 요구 및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기안		○			
	다. 성립전 경비사용 승인 요청	기안			○		
	라. 예산의 변경(이용, 전용, 변경사용, 이체)	기안			○		
	마. 예비비 사용 대상사업 계획		기안			○	
	바. 국고보조금 및 교부금 신청	기안			○		
	사. 예산결산 자료 제출	기안			○		
5.	부서별 소송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응소, 제소 및 상소(포기)						
	(1) 중요소송		기안				○
	(2) 일반소송	기안			○		
	나. 소송대리인, 소송수행자(소송담당자) 지정·변경 요청	기안		○			
	다.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등 소송수행	기안		○			
	라. 소송 진행상황 보고	기안		○			
	마. 소송종결 처리(패소원인, 대책포함) 보고						
	(1) 중요소송	기안			○		
	(2) 일반소송	기안		○			
	바. 구상권 행사	기안			○		
	사.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 및 그 비용의 회수	기안			○		
	아. 강제집행 절차의 이행	기안			○		
	자. 공탁금 회수	기안			○		
6.	행정심판 수행	기안		○			

7.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						
	가. 자치법규 제정, 개정 및 폐지	기안					○
	나. 자치법규의 법제심사 의뢰	기안		○			
	다.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기안		○			
	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요구	기안		○			
8.	행정예고에 관한 사항						
	가. 고시, 공고 및 공고문 결정	기안		○			
	나. 기타 행정예고에 관한 사항	기안		○			
9.	부서별 의회에 관한 사항						
	가. 의안 제출	기안					○
	나.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 및 제소		기안				○
	다. 선결 처분 결정		기안			○	
	라. 선결 처분 의회 보고	기안		○			
	마. 의회에서 이송된 청원 처리 보고	기안				○	
	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기안			○		
	사. 시 및 구정정책 사항의 서면질의 답변		기안		○		
	아. 의회 출석요구에 대한 관계 공무원 출석 답변						
	(1) 구청장, 부구청장		기안				○
	(2) 기타	기안			○		
10.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가. 50인 이상이 제기한 다수인 관련 민원		기안				○
	나. 20인 이상 50인 미만이 제기한 다수인 관련 민원	기안				○	
	다. 20인 미만이 제기한 다수인 관련민원	기안			○		
	라. 다수인관련 민원취하, 타기관 이송	기안		○			
11.	대통령실 이첩 민원						
	가. 처리결과에 대한보고의 기한을 정한 지정 민원	기안				○	
	나.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의 기한을 미지정한 일반민원	기안			○		
12.	공사 및 용역 집행에 관한 사항						
	가. 중요공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고시		기안				○

	나. 중요공사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기안			○		
	다. 공사 착공 명령과 감독	기안		○			
	라. 공사 감독원의 지정	기안		○			
	마. 공사 감독일지 및 인부 점검	기안		○			
	바. 계약 심사 의뢰	기안		○			
	사. 설계 범위 내 인부 고용	기안		○			
	아. 준공 및 기성부문 검사원의 지정 및 교체	기안		○			
	자. 공사 하자 보수 명령	기안		○			
	차. 공사기간 연기 명령	기안		○			
	카. 도급공사의 중지 및 해지 명령	기안		○			
	타. 공사용 자재의 공차 사용	기안		○			
	파. 검사 및 검수입회 명령	기안		○			
	하. 착공 및 준공처리 통보	기안	○				
	거. 공사기간 변경(공사, 용역)						
	(1) 1억원 이상의 일반공사	기안			○		
	(2) 1억원 미만의 일반공사	기안		○			
	(3) 5천만원 이상의 용역	기안			○		
	(4) 5천만원 미만의 용역	기안		○			
	너. 공사, 용역, 물품(관급) 계약의 설계변경 (중감액 기준)						
	(1) 1억원 초과설계변경	기안					○
	(2) 1억원 이하설계변경	기안				○	
	(3) 5천만원 이하설계변경	기안			○		
	(4) 2천만원 이하설계변경	기안		○			
13.	상훈에 관한 사항						
	가. 기본 방침에 의한 표창 내신	기안		○			
	나. 특별 방침에 의한 표창 상신	기안			○		
	다. 정부 포상 및 표창 추천	기안			○		
14.	위원회 운영 관리 및 위원 위·해촉						
	가. 위원장이						
	(1) 구청장 또는 외부 인사		기안				○

	(2) 부구청장		기안			○	
	(3) 국장	기안			○		
15.	행정 자료 발간						
	가. 자료 발간 계획 수립		기안			○	
	나. 자료 수집 및 조정	기안		○			
	다. 최종안 확정	기안				○	
	라. 발간 및 배부	기안		○			
16.	충무 계획 운영 관리						
	가. 충무 계획 수립	기안					○
	나. 충무 계획 시행 및 관리	기안		○			
17.	공시 송달						
	가. 소재 불명 확인서 및 공고, 공탁	기안		○			
	나. 공시 시달 승인 신청	기안				○	
18.	공무원 해외연구 및 해외견학에 관한 사항 (시책관련)						
	가. 해외연수계획 수립		기안			○	
	나. 해외여행 변경	기안		○			
	다. 해외여행 귀국 보고	기안		○			
19.	기타 일반 서무						
	가. 사무 처리 조정						
	(1) 실·국 간의 경우	기안				○	
	(2) 과 내·외간의 경우	기안			○		
	나. 각종 행사 관련 사항						
	(1) 구청장 참석		기안				○
	(2) 부구청장 참석		기안			○	
	(3) 국장 참석	기안			○		
	다. 소속 직원의 사무분장		기안	○			
	라. 사무 인수인계						
	(1) 부구청장	기안					○
	(2) 국장	기안				○	

	(3) 실·담당관·과장	기안			○		
	마. 기간제근로자 관리						
	(1) 기간제근로자 고용 결정	기안		○			
	(2) 4대보험 취득, 상실	○					
	바. 소관 업무 중 사업소, 동 위임사무 지도 점검	기안			○		
	사. 물품 청구, 수령, 반납	기안		○			
	아. 소속부서 금품 출납 명령	기안		○			
	자. 차량 배차 신청	기안		○			
	차. 소속 공익 근무 요원 관리	기안		○			
	카. 물품 관리 및 보관	기안		○			
	타. 각종 간행물의 배부	기안	○				
	파. 차량 운행 및 관리	기안	○				
	하. 각종 일지 및 일보 처리	기안	○				
	거. 민간인 포상	기안			○		
	너. 공공 시설물의 설계 및 공사 감독 지정 의뢰	기안		○			
20.	공사,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계약(특별회계 포함)						
	가. 계약체결 상황보고	기안		○			
	나. 실적증명	기안	○				
	다. 입찰공고						
	(1) 1억원 이상의 일반 공사	기안			○		
	(2) 1억원 미만의 일반 공사	기안		○			
	(3) 5천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	기안			○		
	(4) 5천만원 미만의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	기안		○			
	라. 지명경쟁 입찰통지	기안			○		
	마. 견적서 제출요구	기안		○			
21.	세출예산 집행품의						
	가. 공사 또는 토지매입						
	(1) 5억원 초과와 일반공사	기안					○
	(2) 5억원 이하의 일반공사	기안				○	
	(3) 3억원 이하의 일반공사	기안			○		
	(4) 5천만원 이하의 일반공사	기안		○			

	나. 제조·구매 및 용역						
	(1) 3억원 초과와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	기안					○
	(2) 3억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	기안				○	
	(3) 1억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	기안			○		
	(4) 5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	기안		○			
	다. 그 밖의 사항						
	(1) 1건당 2억원 초과						○
	(2) 1건당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기안				○	
	(3) 1건당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임시 일상경비	기안			○		
	(4) 1건당 5천만원이하, 법정경비	기안		○			
22.	부정당업자의 제재(특별회계 포함)	기안			○		
23.	자금송부 및 교부(특별회계 포함)	기안		○			
24.	관급자재 구매(특별회계포함)						
	(1) 5천만원 이상	기안			○		
	(2) 5천만원 미만	기안		○			
25.	회계직 공무원 변경	기안		○			
26.	지방행정정보은행 시스템 자료 입력 및 관리	○					
27.	홈페이지 관련 자료 관리	○					
28.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료 제공	기안		○			
29.	행정대집행 단속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나. 경미한 사항	기안			○		
	다. 사전 계고 및 통지	기안		○			
30.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권한 신청	기안		○			
31.	징수관의 직무위임						
	가.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한 세입의 징수결정	기안		○			
	나.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기안		○			
	다. 1천만원 초과 과오납금 반환	기안			○		
	라. 1천만원 이하 과오납금 반환	기안		○			

	마. 그 밖의 건당 400만원 초과 징수결정	기안			○		
	바. 그 밖의 건당 400만원 이하 징수결정	기안			○		
32	재무관의 직무위임						
	가. 추정금액 1억원 초과 공사 또는 부동산 매입	기안			○		
	나. 추정금액 1억원 이하 공사 또는 부동산 매입	기안			○		
	다. 5천만원 초과 제조, 용역, 물품의 구입[조달구매 포함]	기안			○		
	라. 5천만원 이하 제조, 용역, 물품의 구입[조달구매 포함]	기안			○		
	마.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비, 업무추진비	기안			○		
	바.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안			○		
	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및 일상경비 지출	기안			○		
	아. 위 이외의 것으로서 500만원 초과	기안			○		
	자. 위 이외의 것으로서 500만원 이하	기안			○		

대변인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대 변 인	부 구 청 장	
1. 구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시행		기안			○
2. 구정홍보물 제작·관리					
가. 홍보영상 제작 기획	기안				○
나. 홍보사진 및 동영상 촬영·제작 활용	기안		○		
다. 홍보사진 및 동영상 기록 보존(슬라이드 포함)	기안		○		
3. 지면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사무					
가. 지면매체[신문, 잡지 등] 활용 구정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구정관련 연중 기획보도 발굴	기안		○		
다. 기고문 및 기획보도 등 보도자료 작성	기안		○		
라. 주요구정사업 브리핑 및 기자설명회, 인터뷰 관리	기안		○		
마. 일일보도자료 제공 및 보도자료 분석	기안		○		

라. 언론사 간행물 및 신문구독 관리	기안		○		
4. 방송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사무					
가. 방송매체[TV, 라디오]활용 구정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구정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지원	기안		○		
다. 구정현안에 대한 방송대담 및 인터뷰 준비 및 진행	기안		○		
라. TV, 라디오 활용 홍보 캠페인 제작 및 진행	기안		○		
5. 주민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구정홍보 사무					
가. 주민다중이용시설[지하철, 버스 등]활용 구정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주민다중이용시설 홍보 진행 및 운영	기안		○		
6. 구정홍보 디자인 총괄	기안		○		
7. 홍보매체기관(언론사, 방송사 등)과의 협조사무					
가. 언론대응정책 수립		기안			○
나. 언론보도 및 분석을 통한 언론대응	기안		○		
다. 언론사 행정광고(예고)	기안		○		
라. 타 부서 광고 관리	기안		○		
8. 홍보관련 법제도 및 언론중재 사무					
가. 언론중재위원회 관련업무 수행	기안				○
나. 언론진흥재단 관련 사무	기안		○		
다. 정부광고법 등 홍보관련 법제도 사무	기안		○		
9. 남동사람들 제작 및 발간					
가. 남동사람들 제작 계획 수립	기안			○	
나. 남동사람들 제작 및 발간	기안		○		
10. 공고, 고시, 전자구보 관련사무					
가. 구보발간	기안		○		
나. 구정홍보게시판 운영	기안		○		
11. 브리핑룸 운영 및 관리	기안		○		

소통협력담당관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담	담	부	
	당	당	당	구	
	자	당	관	청	장
1. 구민소통계획 수립·총괄 조정		기안			○
2. 구민소통 과제 발굴 및 추진 총괄					
가.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자료수집 및 조사	기안		○		
다. 세부 과제 계획 수립 실시	기안		○		
3. 사회단체 등과의 소통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가.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자료수집 및 조사	기안		○		
다. 세부 계획 수립 실시	기안		○		
4. 상시 소통을 위한 각종 단체 및 구민과의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가.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자료수집 및 조사	기안		○		
다. 세부 계획 수립 실시	기안		○		
라. 결과보고	기안				○
마. 구민 의견사항 관련부서 협의	기안		○		
바. 구민 의견사항 회신 (부서 소관사항 제외)	기안		○		
5. 구청장과의 만남의 날 운영					
가.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자료수집 및 조사	기안		○		
다. 세부 계획 수립 실시	기안		○		
라. 운영결과 보고	기안				○
마. 만남의 날 건의사항 관련부서 협의	기안		○		
바. 만남의 날 후속 조치 (부서 소관사항 제외)	기안		○		
6. 구청장 동방문 및 건의사항 관리					
가.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세부 계획 수립 실시	기안		○		

	다. 운영결과 보고	기안				○
	라. 구민 건의사항 관련부서 협의	기안		○		
	마. 구민 건의사항 회신 (부서 소관사항 제외)	기안		○		
7.	온라인(모바일) 소통창구 운영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가.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세부 계획 수립 실시	기안		○		
	다. 구민 민원사항 접수 및 분류	기안		○		
	라. 민원사항 담당부서 지정	기안		○		
	마. 부서 답변처리 확인 및 통계관리	기안		○		
8.	생활공감 정책 지원 관리					
	가.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링원 관리	기안		○		
	나. 모니터링원 활동 지원	기안		○		
9.	직소 민원					
	가. 직소민원 신청서 접수	기안		○		
	나. 직소민원 사전 상담	기안	○			
	다. 직소민원 내용 검토·분석	기안	○			
	라. 직소민원 상담자료 수집	기안	○			
	마. 민원내용 관련부서 협의	기안		○		
	바. 민원상담 처리(서면) 회신 (부서 소관사항 제외)	기안		○		
10.	고충민원(집단·갈등민원 포함) 상담 및 조사					
	가. 고충민원 조사	기안	○			
	나. 민원관련 자료 수집	기안	○			
	다. 고충민원 회신 (부서 소관사항 제외)	기안		○		
	라. 관련부서 협의	기안		○		
	마. 관련부서 답변사항 관리	기안		○		
11.	공공갈등관리					
	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갈등민원 조사 및 자료 수집	기안	○			
	다. 갈등관리 역량강화(교육 및 매뉴얼보급)	기안		○		
	라. 공공갈등관리 결과보고	기안		○		
12.	납세자보호관 업무					
	가. 납세자보호 관련 추진(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납세자보호 관련 업무 신청서 등 접수	기안		○		

	다. 납세자보호관 세무상담, 자료수집	기안	○			
	라. 납세자보호관 업무관련 부서 요구권	기안		○		
	마. 납세자보호관 판권 결과 통지	기안		○		

감 사 실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실 장	부 구 청 장	
1.	감사 기본(종합) 계획 수립					
	가.연간 자체감사 및 감찰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감사계획의 조정 및 변경	기안		○		
2.	구 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및 결과 조치					
	가. 자체감사 결과보고	기안		○		
	나. 감사 결과 처분 지시	기안		○		
	다. 감사실시 통보 및 일정 변경	기안		○		
	라. 감사자료 제출 요구	기안		○		
3.	상급기관 감사준비 및 감사결과 처리					
	가. 수감준비 계획	기안		○		
	나.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기안		○		
	다. 감사결과 처리 및 보고					
	(1) 중요 사항		기안		○	
	(2) 일반 사항	기안		○		
4.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가. 신분상의 조치					
	(1) 징계		기안			○
	(2) 경고(훈계)	기안		○		
	나. 제정상의 조치		기안		○	
5.	물품 망실, 훼손사고 조사 및 처리	기안		○		

6.	하명, 첩보, 진정, 투서에 관한 사항					
	가. 중요 사항	기안				○
	나. 일반 사항	기안		○		
7.	사법기관 통보 범죄 공무원 처리					
	가. 중요한 범죄 사실(징계이상 해당)		기안			○
	나. 경미한 범죄 사실(경고, 훈계 해당)	기안		○		
	다. 자체 종결 처리(주의 촉구 등)	기안		○		
8.	감사 동향 보고	기안		○		
9.	비위공무원 통계 관리	기안	○			
10.	비위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가. 특별감찰활동		기안			○
	나. 복무기강감사	기안				○
11.	신문 및 방송보도 조사 처리					
	가.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12.	민원사무 처리 실태 점검					
	가. 민원사무 처리 실태 점검 계획	기안		○		
	나. 민원사무 처리 점검 결과 보고	기안		○		
13.	사무인계인수사항 확인 결과 시정 조치	기안		○		
14.	공직자 윤리 위원회 운영					
	가. 위원 위·해촉		기안			○
	나. 재산등록 심사(비공개)	기안				○
	다. 재산등록 신고서 접수	기안	○			
15.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가. 면책심사 신청	기안		○		
	나. 면책심사 처리	기안		○		
16.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가. 감사자료 입력관리	○				
	나. 감사정보 공유	기안		○		
17.	상시모니터링 감사					
	가. 감사자료 상시모니터링 실시	○				
	나. 모니터링 결과 처분지시	기안		○		
18.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수행					

	가.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1) 중요 사항	기안		○	
	(2) 일반 사항	기안	○		
	나. 처분지시	기안	○		
19.	상급기관 이첩 민원 처리	기안	○		
20.	일상감사 및 기술.취약분야 감사				
	가.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나. 처분지시	기안	○		
21.	계약심사				
	가. 계획수립 및 결과 통보	기안	○		
22.	청렴 및 부패방지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가. 반부패(청렴) 종합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청렴교육에 관한 사항	기안		○	
	다.청렴시책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기안	○		
	라.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기안	○		
	마. 부패방지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바.청렴도 측정 일반사항	기안	○		
	사. 청렴도 측정결과 보고	기안		○	
23.	인권에 관한 사무				
	가. 인권증진 기본(종합)계획 및 인권실태조사	기안			○
	나. 인권위원회 운영지원 및 일반업무	기안	○		
	다.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기안	○		
24.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사항				
	가. 주민감사청구 사항 보고 및 처리	기안	○		
	나. 주민감사청구 사항 처리결과 통보	기안	○		

기획예산과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담	과	국	부	
		당 자	당 장	장	장	구 청 장	
1.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						
	가. 종합 계획 수립		기안				○
	나. 계획서 발간 및 배부	기안		○			
2.	주요업무 시행계획						
	가. 계획수립 및 보고	기안					○
	나. 수정운영계획 및 보고	기안		○			
	다. 계획서 발간 및 배부	기안		○			
3.	기구 및 사무분장						
	가. 직제(기구) 조정	기안					○
	나. 행정기구 및 사무분장 조정자료 조사	기안		○			
	다. 국 단위 사무분장 조정	기안			○		
	라. 과 단위 사무분장 조정	기안		○			
	마. 정책조정위원회 운영	기안				○	
4.	정원 관리						
	가. 정원 규칙 제정 및 개폐	기안					○
	나. 정원 증원 및 조정	기안				○	
	다. 정원 실태 조사	기안		○			
5.	조직 및 인력 진단						
	가. 종합 계획 수립 시행		기안				○
	나. 세부 실천 계획 수립 실시	기안		○			
	다. 자료 조사	기안		○			
6.	구정시책 연구 및 개발						
	가.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자료수집 및 조사	기안		○			
	다. 연구·용역 시행 및 실행계획 수립	기안			○		

	라. 자문단 검토 및 평가	기안		○			
	마. 자료발간 및 배부	기안		○			
7.	행정사무 위임 및 민간위탁						
	가. 위임 및 위탁 관련 자료 조사	기안		○			
	나. 대상 사무 확정 보고	기안					○
8.	사무전결 처리 규칙						
	가. 단위사무 및 전결권 조정	기안				○	
	나. 자료 조사	기안		○			
9.	지시 사항						
	가. 추진 계획 수립 및 시달	기안		○			
	나. 추진 사항 보고	기안		○			
	다. 최종 결과 보고	기안					○
10.	공약사항						
	가. 추진 계획 수립 및 시달	기안					○
	나. 추진사항 점검	기안		○			
	다. 추진실적(반기) 보고	기안					○
11.	구정(현황) 백서 발간						
	가. 계획수립 및 발간	기안			○		
	나. 지침시달 및 배부	기안		○			
12.	구민 제안(창안)제도 운영						
	가. 구민제안 실시 계획 수립	기안				○	
	나. 구민 제안 접수 및 검토	○					
	다. 제안 심사 결과보고	기안		○			
13.	국내·외 교류업무						
	가. 국내·외 교류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자매결연		기안				○
	나.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에 관한 일반 사항	기안		○			
14.	공무원 국외 여행						
	가. 해외여행 허가	기안				○	
	나. 해외여행 허가 통보	기안		○			
15.	외국어 문서 작성 번역, 통역 지원	기안		○			
16.	해외정보 수집, 발간 및 구정 홍보	기안		○			

17.	지역 균형발전						
	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기안		○			
	나. 지역갈등 해소 사업	기안		○			
18.	지방재정 관리						
	가.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기안				○
	나. 투자 심사	기안				○	
	다. 주요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		기안				○
	라. 지방채발행 및 채무부담행위		기안				○
	마. 채무상환 및 관리	기안		○			
	바. 지방재정 분석, 진단	기안		○			
	사. 용역업무 심사	기안				○	
19.	지방재정 조정						
	가. 특별교부세 신청	기안				○	
	나. 교부세 산정자료 작성	기안		○			
	다. 국·시비 보조금 신청	기안				○	
	라. 국·시비 보조금 운영 관리	기안		○			
	마.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기안				○	
	바.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	기안		○			
20.	예산 편성						
	가. 예산편성 계획 수립		기안				○
	나. 예산편성 지침 시달	기안		○			
	다. 예산(안) 편성 및 의회 제출		기안				○
	라. 예산 확정 고시	기안		○			
	마. 성인지 예산관리	기안		○			
	바. 예산의 성과계획관리	기안				○	
	사. 지방보조금 관리	기안					○
21.	예산 집행						
	가. 세출예산배정 계획수립 및 배정(재배정)	기안		○			
	나. 예산의 변경(이용, 전용, 변경사용, 이체)	기안		○			
	다. 예산의 이월	기안					○
	라. 성립전 경비 사용	기안				○	

	마. 예비비 사용 승인		기안				○
	바. 예산의 절감 운용	기안		○			
22.	주민참여예산운영						
	가. 주민참여예산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나. 주민참여예산운영 결과 보고		기안				○
	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	기안		○			
23.	기금 관리 운영						
	가.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안				○
	나. 기금운용 및 총괄 관리	기안		○			
24.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가. 예산성과금심사계획 수립		기안			○	
	나. 예산성과금 신청, 관리	기안		○			
25.	공기업의 운영						
	가. 정관 개정 및 중요 규정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이사장 및 임원 임면사항		기안				○
	다. 대행사업 및 예산승인	기안					○
	라. 이사장 경영성과 평가		기안				○
	마. 기구, 정원, 보수, 인사규정, 결산 등의 승인	기안					○
	바. 회계 및 재산에 관한 검사	기안			○		
	사. 공단예산 시정명령	기안		○			
	아. 자금배정	기안		○			
	자. 공인회계사 지정	기안		○			
	차. 기타 자료제출 요구 및 통보	기안		○			
	카. 민관 공동출자 사업계획 수립		기안				○
26.	정부혁신						
	가. 혁신주진 계획 수립	기안				○	
	나.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	기안			○		
	다. 혁신 및 혁신평가관련 자료 요청	기안		○			
	라. 혁신평가관련 자료 제출	기안				○	
	마. 혁신관련 교육 등 역량강화	기안			○		
	바. 정부혁신관련 일반사항	기안		○			

27.	업무등의 평가						
	가. 평가대상의 지정 및 평가지침 시 달	기안				○	
	나. 평가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다. 평가자료요청	기안		○			
	라. 평가 세부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	
	라. 평가종합결과 보고	기안					○
	마.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 상황의 점검	기안		○			
	바.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기안					○
	사. 자체평가위원회 심의 및 운영	기안				○	
28.	지방이양 사무 발굴 및 조사						
	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자료 발굴 조사 및 제출	기안		○			
	다. 지방분권관련 일반사항	기안		○			
29.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가. 공무원 제안 실시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나. 제안 접수 및 사전검토	기안	○				
	다. 제안 심사 결과보고	기안		○			
30.	행정제도 개선						
	가.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나. 행정제도 개선 과제 발굴·취합	기안		○			
	다. 행정규제 재선 과제 제출·등록관리	기안		○			
	라. 제도개선 공유방 관리	○					
31.	국민신문고 운영 관리						
	가. 국민행복제안·공무원제안 접수·부서지정	기안		○			
	나. 국민행복제안·공무원제안 홈페이지 관리	○					
	다. 채택제안 등록 관리 및 제심사	기안		○			
	라. 우수제안 평가관리	기안		○			
	마. 제도개선 운영 관리	기안		○			
	바. 정책토론 운영 관리	기안		○			
32.	법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기안				○

33.	법제 자료의 조사 및 수립 연구	기안	○				
34.	자치법규의 심사 및 공포						
	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기안			○		
	나. 조례·규칙의 사전보고	기안		○			
	다.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제·개정 및 폐지 공포 및 발령		기안				○
35.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문서 편찬 간행	기안		○			
36.	법령 및 자치법규 질의 해석	기안		○			
37.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	기안		○			
38.	소송사무						
	가. 소송 상황보고	기안		○			
	나. 소송수행자 지정·변경	기안	○				
	다. 소송사건 위임	기안		○			
	라. 패소 확정판결에 대한 조치요구	기안		○			
39.	고문변호사 및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가. 위·해촉	기안					○
	나. 자문료 지급	기안		○			
40.	행정심판						
	가. 행정심판 청구 접수 및 전달	기안		○			
	나. 행정심판 재결결과 통보	기안		○			
41.	행정규제 운영 관리						
	가. 행정규제 정비 계획 수립		기안			○	
	나. 행정규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다. 행정규제 위원회 위원 위·해촉	기안				○	
	라. 행정규제 위원회 회의 소집 통보	기안		○			
	마. 위원회 개회 및 결과 보고	기안		○			
	바. 행정규제의 등록 공포	기안		○			
	사. 행정규제 신고센터 설치 운영	기안	○				
42.	의회에 관한 사항						
	가. 의회와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의회의결 사항에 대한 재의 요구		기안				○
	다. 회의록 검토 결과 보고	기안		○			

	라.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괄 보고	기안				○	
	마. 임시회 소집 요구		기안				○
	바. 의안의 처리 결과 통보	기안		○			
	사. 의회이송 청원 중 다수인 관련 사항 통보	기안		○			
	아. 구정 주요정책 사항의 질의 답변		기안				○
	자. 의회 부의안건 공고	기안		○			
	차. 청원처리 상황 보고	기안		○			
	카. 의회 요구자료 제출	기안		○			
	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기안	○			
43.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수립 및 분석						
	가. 통계조사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자료 수립 검토	기안		○			
	다. 자료 분석 결과 보고	기안		○			
44.	사업제 통계조사 보고서						
	가. 기본 계획서 작성	기안		○			
	나. 자료수지 및 심의	기안		○			
	다. 연보 발간	기안		○			
45.	통계 연보 발간						
	가. 발간 계획 수립시행	기안				○	
	나. 자료수집 및 심의	기안		○			
	다. 연보 발간	기안		○			
46.	경제총조사						
	가. 조사계획 수립 시행	기안				○	
	나. 자료집계 및 내검	기안	○				
	다. 조사결과 보고	기안		○			
47.	인구 주택 총조사 및 시민생활 의식조사						
	가. 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나. 자료지계 및 내검	기안		○			
	다. 자료결과 보고	기안		○			
48.	공업 총조사						
	가. 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49.	나. 자료집계 및 내검	기안	○				
	다. 자료결과 보고	기안		○			
	사회(지표)조사						
	가. 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나. 자료집계 및 내검	기안	○				
50.	다. 자료결과 보고	기안		○			
	농·어업 총조사						
	가. 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나. 자료집계 및 내검	기안	○				
	다. 자료결과 보고	기안		○			
51.	지역내 총생산(GRDP) 조사						
	가. 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나. 자료집계 및 내검	기안	○				
	다. 자료결과 보고	기안		○			
	경제통합 조사						
52.	가. 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나. 자료집계 및 내검	기안	○				
	다. 자료결과 보고	기안		○			

일자리정책과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담	과	국	부	
	당	당	장	장	구 청 장	
1.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	일자리센터 운영 사업					
	가. 일자리센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일자리지원사업 통계관리	기안		○		
	다. 구직자 사후관리 결과 보고	기안			○	
	라.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운	기안		○		

3.	영						
	일자리상담사 인력운영						
	가. 직업상담사 운용계획 수립	기안					○
	나. 직업상담사 채용 및 계약	기안					○
	다. 직업상담사 급여관리	기안		○			
4.	라. 직업상담사 4대 보험 관리	기안		○			
	마. 직업상담사 인력매치 및 복무관리	기안		○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일자리위원회 운영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일자리위원회 위·해촉	기안			○		
5.	다. 일자리위원회 운영	기안			○		
	채용 행사 개최						
	가. 채용박람회 개최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
	나.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		
	지역일자리 공시제 운영						
6.	가.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	기안					○
	다. 추진결과 및 평가자료 제출	기안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가. 운영계획 수립	기안					○
7.	나. 추진결과 및 평가자료 제출	기안			○		
	다. 사업참여자 교육 및 컨설팅 운영	기안		○			
	라. 사업참여자 활동지원	기안		○			
	마. 사업참여자 급여관리	기안		○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사업						
8.	가.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모집	기안			○		
	다. 청년창업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안		○			
	라. 청년 네트워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기안		○			
	마. 청년창업위수탁업체 평가	기안					○

	및 운영 결과 보고						
9.	청년미디어타워운영						
	가. 청년미디어 타워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시설관리 및 공간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참여자 모집 및 기타 운영관련 사항	기안		○			
10.	청년정책추진						
	가. 청년정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기안					○
	나.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기안					
	(1) 위원 위·해촉 및 위원회 구성	기안				○	
	(2)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기안				○	
	다. 청년시설(단체)운영 지원	기안			○		
	라. 청년참여단 모집 및 운영	기안			○		
	마. 기타 청년정책 세부추진 사항	기안		○			
11.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						
	가. 신중년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참여자모집 및 선발	기안			○		
	다. 참여자 임금지급 관리	기안		○			
	라. 사업예산 집행 및 회계관리	기안		○			
12.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						
	가. 사회공헌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참여자모집 및 선발	기안		○			
	다. 참여자 임금지급 관리	기안		○			
	라. 사업예산 집행 및 회계관리	기안		○			
	마. 추진결과 및 평가자료 제출	기안					○
13.	소래 하부공간 활용 조성사업						
	가. 소래하부공간 조성 관련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시설관리 및 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참여자 모집 및 기타 운영관련 사항	기안		○			
14.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가. 사업계획 수립	기안					○
	나. 예산 집행 및 회계 관리	기안		○			
	다. 사업 지도점검	기안		○			
15.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가.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다. 사업 발굴 및 선정	기안			○		
	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근로자 모집 및 선발	기안		○			
	마. 사업장 지도점검	기안		○			
	바. 사업장 인력배치	기안		○			
	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근로자 임금지급 관리	기안		○			
	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근로자 4대 보험 관리	기안		○			
	자. 사업예산 집행 및 회계관리	기안		○			
16.	일모아시스템 운영 및 관리	기안	○				
17.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및 관리	기안		○			
	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기안		○			
	라.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운영	기안					○
	마. (예비)사회적기업 지도·점검	기안		○			
	바. (예비)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기안		○			
	사.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안					○
18.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						
	가.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나. 마을기업 심사위원회 운영	기안			○		

	다. 마을기업 공모사업 신청·접수	기안		○			
	라.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기안		○			
	마. 마을기업 지도·점검	기안		○			
19.	공공근로사업						
	가.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수립	기안			○		
	나. 공공근로자 모집 및 선발	기안		○			
	다. 사업 발굴 및 수요조사	기안		○			
	라. 사업선정 및 인력배치	기안		○			
	마. 공공근로자 임금지급 관리	기안		○			
	바. 공공근로자 4대 보험가입 등 인력관리	기안		○			
	사. 사업예산 집행 및 회계관리	기안		○			
	아. 공공근로사업 지도·점검	기안		○			
20.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운영						
	가.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 운영 종합계획수립		기안		○		
	나. 지역고용거버넌스 협력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운영	기안		○			
21.	고용우수기업지원 사업						
	가. 구민채용기업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구민채용기업 지원 적격업체 선정 및 보조금 지원	기안		○			
22.	생활임금제도 운영						
	가. 생활임금 실태조사	기안		○			
	나. 생활임금 결정		기안				○
23.	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신고						
	가. 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규·변경)	기안		○			
	나. 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폐지신고	○					
	다. 직업소개사업 지도감독	기안			○		
	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기안		○			
24.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보고와 검사	기안		○			
25.	무허가 직업소개소 행위 단속	기안		○			
26.	공정무역 지원 사업						

	가. 공정무역 육성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나. 공정무역 육성 지원 사업 추진	기안		○			
27.	공유경제 사업						
	가.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나.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기안		○			
	다. 공유누리 시스템 운영	기안		○			
28.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가. 사회적협동조합 교육계획 수립	기안		○			
	나. 사회적협동조합 홍보 추진	기안		○			

안전총괄과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안				○
2.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3.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4.	주민안전정책 추진					
	가. 안전문화운동 추진 남동구 협의회 구성		기안			○
	나. 안전문화운동 추진 남동구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기안			○	
	다. 주민안전정책 추진을 위한 주민 안전교육	기안		○		
	라. 주민안전정책 종합계획		기안			○
	마. 어린이 재난안전교육	기안		○		
	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안전복지서비스)	기안				○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가. 기본 계획 수립	기안				○
	나. 안전관리 일반 및 관리부서 지	기안		○		

	도, 감독						
6.	재난관리실태 공시	기안				○	
7.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지휘소 구성·운영	기안				○	
8.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보고 체계 구축						
	가. 재난상황 종합관리	기안		○			
	나. 평시보고체계 구축	기안		○			
9.	재난관련 자치단체간 협력에 관한 사항	기안		○			
10.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 구난기관 협조, 지원체계 구축	기안			○		
11.	재난관련 여론동향 및 정보수집 분석, 전파 및 자료통계 관리의 전산화	기안		○			
12.	국가기반체계보호계획 수립 및 시행						
	가. 국가기반 체계보호 계획수립	기안				○	
	나. 국가기반 체계보호 계획시행	기안		○			
13.	특별사법경찰 총괄						
	가. 특별사법경찰 총괄 관리	기안		○			
	나. 특별사법경찰 지명 제청 및 철회	기안		○			
	다. 특별사법경찰 및 사법보좌관 지원	기안		○			
14.	각종 재난대비 훈련 실시						
	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훈련 실시	기안				○	
	나. 재난대비 상시훈련 실시	기안		○			
15.	재난관리법규 및 제도의 운영과 연구개선	기안		○			
16.	재난예방에 대한 홍보	기안	○				
17.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운영	기안			○		
18.	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지원 총괄	기안				○	
19.	예비군 육성 지원	기안				○	
20.	안전모니터요원 운영 및 관리	기안		○			
21.	우리마을 안전지킴이 관리	기안		○			
22.	안전점검의 날 운영	기안		○			
23.	자율방범대 운영	기안		○			
24.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 운영	기안			○		

25.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나.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개최	기안		○			
	다. 방위지원본부 운영 관리	기안				○	
26.	재난대비물자, 자원, 장비파악 및 재난단계 규모 유형별 동원계획 수립운영						
	가. 재난대비 물자, 자원, 장비 파악	기안		○			
	나. 재난단계, 규모, 유형별, 동원계획 수립운영	기안				○	
27.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						
	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기안			○		
	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기안		○			
28.	이제민 구호 및 복구지원	기안			○		
29.	재해복구계획의 수립 시행	기안			○		
30.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기안			○		
31.	재난원인 조사, 분석 및 대책수립	기안			○		
32.	도로 및 하천의 재해진단에 관한 사항	기안			○		
33.	지진방재에 관한 사항						
	가. 지진방재 대책의 수립 및 시행	기안			○		
	나.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기안			○		
34.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가. 기본 계획 수립	기안			○		
	나. 시설물 점검 및 관리부서 지도	기안			○		
35.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기안			○		
36.	건축물(공동주택포함) 및 노후 불량주택의 안전관리 지도	기안			○		
37.	풍수해보험	기안			○		
38.	초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 재난관리						
	가.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기안			○		
	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협의	기안			○		
	다. 총괄재난관리자 등록	기안			○		
	라. 교육·훈련 계획 및 지도·감독	기안			○		

	마. 통합안전점검 시행	기안		○			
39.	급경사지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급경사지 관리 계획수립	기안			○		
	나. 재해위험도 평가	기안			○		
	다.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기안			○		
40.	자연재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						
	가. 자연재난 사전대비 계획 수립	기안			○		
	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기안		○			
	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라.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 수립	기안			○		
	마.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해제	기안		○			
	바.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	기안			○		
41.	국가안전대전단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42.	시기별 계절별 재난취약요소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기안			○		
43.	재난 예·경보 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기안			○		
	나. 지진가속도, 강우량 계측시스템 등 운영	기안		○			
	다. 재해문자전광판 등 경보시스템 운영	기안		○			
4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기안				○	
	나. 지하안전계획의 수립	기안				○	
	다. 지하시설물의 지하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및 승인	기안		○			
	라. 10m 이상 굴착이 수반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심사	기안		○			
	마.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실태점검	기안			○		
	바. 지반침하 사고예방 및 안전조치 등	기안		○			
45.	민방위 업무의 운영						
	가. 민방위 계획수립	기안			○		
	나. 민방위 업무의 지도감독	기안		○			
	다. 동 및 직장 민방위 계획의 작성	기안		○			

	지도						
	라. 민방위 업무에 관한 관계기관의 연락, 협조 요청	기안		○			
	마. 민방위대 검열	기안			○		
46.	민방위 준비명령						
	가. 민방위 준비명령의 집행		기안			○	
	나. 민방위 준비명령의 확인지도, 감독	기안		○			
	다. 민방위 준비명령 이행기간 연장 신청	기안		○			
47.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가.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확인지도, 감독	기안		○			
	나. 민방위 시설 설치·폐지	기안			○		
	다. 민방위 시설 유지관리	기안			○		
	라. 민방위 장비 보급 및 관리	기안			○		
48.	인력동원						
	가. 인력동원 실제훈련 계획수립	기안				○	
	나. 실제훈련 사후보고	기안				○	
	다. 인력동원 자원조사 계획수립 시행	기안			○		
	라. 중점관리대상업체 자원조사	기안			○		
49.	핵 및 화생방 방어에 관한 사항	기안				○	
50.	민방위 홍보계획 수립	기안			○		
51.	충무계획						
	가. 충무계획 수립		기안				○
	나. 충무계획 조정 및 통제	기안				○	
52.	을지연습						
	가. 을지연습 계획수립		기안				○
	나. 을지연습 사후보고	기안				○	
	다. 을지연습 문제점 및 진도보고		기안			○	
53.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가. 민방위대 교육훈련 계획수립	기안				○	
	나. 민방위대 교육훈련 결과보고	기안			○		
	다. 민방위 강사 위·해촉	기안				○	
	라. 민방위교육 보조재료 발전연구	기안			○		

54.	민방위의 날 훈련						
	가.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	기안			○		
	나. 민방위의 날 훈련 지도감독	기안		○			
	다. 민방위의 날 훈련 사후보고	기안		○			
55.	민방위 재난 통제						
	가. 민방위대 동원 및 해제		기안				○
	나. 민방위상황실 운영		기안			○	
	다. 민방위 사태하의 주민 및 수송 통제	기안				○	
	라. 민방위대 동원 유예처리	기안		○			
	마. 민방위대 동원 결과보고	기안			○		
	바. 민방위 응급조치 및 사후관리	기안			○		
56.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						
	가. 직장민방위대 편성	기안		○			
	나. 직장민방위대 개편 및 해체명령	기안		○			
	다. 직장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기안		○			
	라. 민방위대 자원관리	기안		○			
	마. 민방위대 현황보고	기안		○			
	바. 민방위대 지휘감독		기안		○		
	사. 기술지원대 편성, 운영	기안			○		
	아. 연합 민방위대 편성	기안			○		
57.	주민신고 조직운영						
	가. 자체계획 수립	기안		○			
	나. 주민신고망 조직개선	기안		○			
	다. 주민신고 요원교육	기안		○			
	라. 주민신고 체계 점검지도	기안		○			
58.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사항	기안		○			
59.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	기안		○			
60.	방범용CCTV 및 관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가. 방범용CCTV 및 서비스용 자가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기안		○			
	나. 방범용CCTV 관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기안		○			
	다. 방범용CCTV 구축 계획 수립	기안			○		

	및 설치공사						
	라. 관제센터 운영 지원	기안		○			
	마. 방범용CCTV 민원 처리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기안		○			
61.	어린이범죄예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가. 어린이범죄예방CCTV 및 서비스용 자가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기안		○			
	나. 어린이범죄예방CCTV 구축 계획 수립 및 설치공사	기안			○		
	다. 어린이범죄예방CCTV 민원 처리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기안		○			
62.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가. 어린이보호구역CCTV 및 서비스용 자가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기안		○			
	나. 어린이보호구역CCTV 구축 계획 수립 및 설치공사	기안			○		
	다. 어린이보호구역CCTV 민원 처리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기안		○			
63.	차량방범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가. 차량방범 CCTV 및 서비스용 자가통신시설 유지관리	기안		○			
	나. 차량방범 CCTV 구축 계획 수립 및 설치공사	기안			○		
	다. 차량방범 CCTV 민원 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	기안		○			
64.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및 운영						
	가.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계획 수립	기안			○		
	나. 범죄예방 시설물 유지관리	기안		○			
65.	개인영상정보 보호 총괄						
	가.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 수립	기안				○	
	나.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3자 제공 등	기안	○				
	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자체 점검결과 보고	기안		○			
66.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추진						
	가.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체계 도입	기안			○		
	나. 유관기관(부서)별 업무협의 및 조정·협약 추진	기안		○			
	다. 대민 안전서비스 및 확장서비스(u-Service) 발간	기안		○			
67.	저기능 CCTV 구축 및 유지보수						

	가. 저기능 CCTV 및 서비스용 자가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기안		○			
	나. 저기능 CCTV 구축 계획수립 및 설치공사	기안		○			
	다. 저기능 CCTV 민원처리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기안		○			
68.	CCTV 비상벨 시스템 고도화						
	가. CCTV 비상벨 시스템 고도화 계획수립 및 설치공사	기안		○			
	나. CCTV 비상벨 시스템 유지보수	기안		○			
69.	관제센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가. 관제센터 사회복무요원 근무조 편성	기안		○			
	나. 관제센터 사회복무요원 출퇴근 및 연병장 관리	기안		○			
70.	임대회선 관리 및 공공요금 납부						
	가. CCTV 전기사용료 납부	기안	○				
	나. CCTV 통신회선료 납부	기안	○				
71.	초등학교 연계 CCTV 관리						
	가. 초등학교 연계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계획 수립	기안		○			
	나. 초등학교 연계 CCTV 설비 관리 및 유지보수	기안		○			

미디어정보과

단 위 사 무 명	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자	실 · 담당관 · 과장	국 장	부 구 청 장	
1.	미디어 행정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	미디어 서비스 구축 · 운영					
	가. 미디어 서비스 구축 및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나. 미디어 운영 관리	기안	○			
3.	소셜미디어 서비스 구축 및 운영					
	가. 소셜미디어 구축 계획 수립	기안				○

	라.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활성화 계획 수립	기안		○		
	다. 소셜미디어 활성화 업무 추진 (이벤트, 프로모션 광고 등)	기안		○		
	라. 소셜미디어 유지 관리	기안		○		
	마. 소셜민원창구 운영 및 관리	기안		○		
	바. 대내외 교육실시 및 결과 보고	기안		○		
	사. 대외 협력 업무	기안		○		
4.	미디어 기자단 운영					
	가. 미디어 기자단(블로그 기자단 및 주민리포터)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나. 미디어 기자단 유지 관리	기안		○		
5.	인터넷 방송국 구축 및 운영					
	가. 인터넷 방송국 구축 계획 수립	기안				○
	나. 인터넷 방송국 운영 및 활성화 계획 수립	기안		○		
	다. 인터넷 방송국 유지 관리	기안		○		
6.	구청 영상 콘텐츠 제작 · 관리					
	가. 구청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계획 수립	기안			○	
	나. 영상 촬영 및 제작 활용	기안		○		
	다. 영상 콘텐츠 유지 관리	기안		○		
7.	인터넷 운영 관리					
	가. 홈페이지 개편계획 수립 및 운영	기안				○
	나. 홈페이지 서버 운영 및 유지 관리	기안		○		
	다. 자료정비실태 분석 및 관리지침 보급	기안		○		
	라. 홈페이지 DB관리 및 멀티미디어 자료관리	기안		○		
	마. 홈페이지 화면설계 및 그래픽 디자인	기안		○		
	바. 웹관련 S/W 관리 운영	기안		○		
	사. 온라인 설문조사 솔루션 운영관리	기안		○		
	아.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관리	기안		○		

	자. 대량메일 솔루션 및 통합 메일 관리	기안		○			
8.	디지털홍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가. 디지털홍보시스템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나. 디지털홍보시스템 유지 관리	기안		○			
9.	정보화 추진 계획 수립 및 조정						
	가. 지역정보화 사업 계획 수립		기안			○	
	나.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 및 실적 보고	기안		○			
	다. 정보격차해소 사업 추진	기안		○			
	라. 우수정보시스템 도입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기안		○			
	마. S/W 개발 사업 관리 및 협의 조정	기안		○			
10.	정보화사업 타당성 및 예산심의에 관한 사항						
	가. 대상업무 타당성 검토	기안			○		
	나. 정보화 관련 예산 심의	기안		○			
11.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가.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계획 수립	기안		○			
	나.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중복 개발 방지) 추진	기안		○			
	다. 정보화사업 운영성과관리 추진	기안		○			
	라. 정보기술아키텍처(EA) 추진	기안		○			
	마. 전자정부 수준측정	기안		○			
12.	스마트도시 정보화사업 추진						
	가. 스마트도시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기안				○	
	나. 스마트도시 정보화 사업 추진	기안		○			
	다. 스마트도시 정보화관련 정보 수집 및 업무 교류	기안		○			
1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						
	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기안				○	
	나. 데이터 등록·연계·제공 및 공동활용	기안		○			
	다. 데이터 역량진단	기안		○			

	라. 데이터시스템 구축 운영	기안		○			
14.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가. 빅데이터 분석계획 수립	기안				○	
	나.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기안		○			
	다.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안			○		
15.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기안				○	
	나. 공공데이터 개방기반 확충	기안		○			
	다. 공공데이터 확대개방 일제 정비	기안		○			
	라.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및 품질관리	기안		○			
16.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가. 정보보안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정보보안 활동 및 심사분석	기안		○			
	다. 정보보안 교육	기안		○			
	라. 정보보안 지도점검	기안		○			
	마. 개인정보보호제도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바. 개인정보보호제도 교육	기안		○			
	사. 개인정보보호제도 운영 지도점검	기안		○			
	아.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7.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가. 시군구행정정보 고도화사업 추진	기안				○	
	나. 새울행정시스템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다. 새울행정시스템 이용활성화 추진	기안			○		
	라. 행정정보와 공간정보 연계 활용	기안		○			
	마. 시군구 행정정보화 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기안		○			
18.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관리						
	가. 시스템 도입 및 운영 계획		기안			○	

	나. 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기안		○			
	다. 시스템 운영현황 점검 및 결과보고	기안		○			
19.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관리						
	가. 재해복구시스템 점검 및 유지관리	기안		○			
20.	업무관리(온나라)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						
	가. 업무관리(온나라)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기안				○	
	나. 업무관리(온나라)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기안		○			
	다.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기안		○			
21.	행정포털시스템 운영						
	가. 행정포털시스템 활성화 계획	기안		○			
	나. 행정포털시스템 DB 및 게시판 관리	기안		○			
	다. 행정지원프로그램 개선 및 연계추진	기안		○			
22.	전산자료관리 및 통합백업시스템 운영						
	가. 전산자료 백업 및 소산계획 수립	기안		○			
	나. 통합백업시스템 관리 운영	기안		○			
	다. 통합백업 운영 결과보고	기안		○			
23.	행정정보망(내부, 외부망) 운영						
	가. 행정정보망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청내 LAN 증설 및 변경 업무	기안		○			
	다. 네트워크 및 암호화 장비 운영관리	기안		○			
	라. IP통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	기안		○			
	마. 외부망 및 홈페이지망 전용회선 관리	기안		○			
	바. 원격근무정보망(GVPN) 운영 및 관리	기안		○			
24.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가.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계획	기안			○		
	나. 사이버테러 탐지 활동 및 대응조치	기안		○			
	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기안		○			

	결과 보고						
25.	정보화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가. 정보화교육 계획 수립	기안			○		
	나. 정보화교육 추진	기안		○			
	다. 전산교육장 운영	기안		○			
26.	전산기계실 운영						
	가. 주전산기 및 기타장비 운영관리	기안		○			
	나. 정보시스템 운영일지 작성	기안		○			
	다.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기안		○			
27.	전산장비 확충 및 보급						
	가. 전산장비(PC 등) 현황 파악 및 수요조사	기안		○			
	나. 전산장비(PC 등) 도입 계획 수립	기안			○		
	다. 전산장비(PC 등) 보급 및 유지관리	기안		○			
28.	컴퓨터 정품 소프트웨어 관리						
	가. 소프트웨어(S/W) 현황 및 수요조사	기안		○			
	나. 소프트웨어(S/W) 도입 계획 수립 및 추진	기안		○			
	다. 소프트웨어(S/W) 사용실태 자체점검 추진	기안		○			
29.	기타 정보화업무 추진						
	가. 모바일 콘텐츠 개발 및 운영	기안		○			
	나. 클라우드시스템 도입 및 운영	기안		○			
	다. 행정전자서명 발급 운영	기안		○			
	라. 아이핀 및 마이핀 발급 운영	기안		○			
30.	행정 정보통신 체계 구축 및 운영 계획 수립						
	가. 정보통신 사업 계획 수립		기안			○	
	나. 정보통신 사업 추진 및 실적 보고	기안		○			
	다. 우수 정보통신시스템 도입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기안		○			
31.	정보통신 법제도에 관한 사무						
	가. 정보통신 사업 및 인·허가	기안				○	

	운영 계획 수립						
	나. 정보통신 관련규정 검토 및 상급기관 협의	기안			○		
	다. 법률 제·개정 사항 전파	기안		○			
32.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서 검토 업무						
	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기안		○			
	나. 건축물 실무종합심의	기안		○			
	다. 건축물 정보통신분야 설계도서 검토	기안		○			
	라. 재협의 및 보완 통보	기안		○			
33.	건축물 실무종합심의 및 주택건설 승인 협의						
	가. 건축물 정보통신분야 승인도서 검토	기안		○			
	나. 재협의 및 보완 통보	기안		○			
34.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가. 현장방문 검사 실시	기안		○			
	나. 검사필증 교부 결정	기안		○			
	다. 재검사 및 보완 통보	기안		○			
	라.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기안		○			
	마. 검사기록 대장관리	기안	○				
	바. 사용전검사 현황보고	기안		○			
	사. 교육 및 업무계획 수립	기안		○			
35.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확인 민원 처리						
	가. 감리대상 확인 실시	기안		○			
	나. 감리결과 확인 처리	기안		○			
	다. 재검사 및 보완 통보	기안		○			
	라.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기안		○			
36.	초고속 자가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						
	가. 초고속 자가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나. 시설물 구축 및 운영 관리	기안		○			
	다. 공개설비 관리 및 유관기관 협의	기안		○			
	라. 시설물 통계 및 현황 관리	기안		○			
37.	무선 인터넷 및 무선국 운영						

	관리						
	가. 무선 인터넷 확산 계획 수립	기안				○	
	나. 무선 인터넷 운영 관리	기안		○			
	다. 무선국 신설	기안			○		
	라. 무선국 검사 및 해지	기안		○			
	마. 무선 시설 실태 조사 및 관리	기안		○			
38.	행정전화 서비스에 관한 사무						
	가. 행정전화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기안			○		
	나. 교환시스템 및 행정전화기 운영 관리	기안		○			
	다. 통화 및 녹취시스템 시스템 운영 관리	기안		○			
	라. 과금시스템 운영 관리	기안		○			
	마. 녹취파일, 통화기록 관리 제공	기안		○			
	바. 통화연결음 관리 송출	기안		○			
39.	행정팩스 민원 서비스에 관한 사무						
	가. 행정팩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획	기안			○		
	나. 팩스 보급 및 시스템 관리	기안		○			
	다. 팩스 회선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안		○			
40.	청사 CCTV 및 영상정보 관련 민원 처리에 관한 사무						
	가. 청사 CCTV 구축 및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나. 청사 CCTV 및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기안		○			
	다. CCTV 영상정보 운영 관리	기안		○			
	라. CCTV 영상정보 열람	○					
41.	구청 생중계 방송서비스에 관한 사무						
	가. 구청 생중계 방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나. 구청·의회 생중계 방송 송출	○					
	다. PC 행정망 방송시설 운영 관리	기안		○			
	라. 청사 TV공청시설 운영 관리	기안		○			

42.	국가정보통신망, 전용회선, 인터넷회선, 음성회선 등의 통합 관리						
	가. 행정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나. 각종 통신회선(행정통신, 데이터회선 등) 통합 운영관리	기안		○			
	다. 각종 통신회선의 청약 및 이전, 해지	기안		○			
	라. 정보통신 공공요금 통합관리 납부	기안		○			
43.	통합메시징 서비스 운영 관리						
	가. 통합메시징 서비스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나. 시스템 운영 관리 및 협의	기안		○			
	다. 사용량 조정 및 권한 부여	○					
44.	영상회의실 및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관리						
	가.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나.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관리 및 협의	기안		○			
	다. 영상회의 서비스(접속, 테스트) 제공	○					
	라. 영상회의실 관리	○					
45.	정보통신기계실 및 암호장비실 운영 관리						
	가. 정보통신기계실 등 운영 및 환경 개선 계획	기안			○		
	나. 정보통신기계실 관리	기안		○			
	다. 암호장비실 관리	기안		○			
46.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무						
	가. 정보통신 보안관리계획 수립	기안				○	
	나. 정보통신 보안관리 및 교육	기안		○			
	다. 정보통신 보안 지도점검	기안		○			
	라. 보호구역 관리 및 통제	기안		○			
	마. 보안장비 운영 및 관리	기안		○			
47.	교환실 운영 관리						
	가. 전화상담원 인력 채용 계획 수립		기안			○	

나. 전화상담원 인력 관리	기안		○			
다. 교환실 및 교환시스템 운영 관리	기안		○			

총 무 과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자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	복 무						
	가. 복무에 관한 계획 및 실시		기안		○		
	나. 복무에 관한 각종 대장 확인	기안		○			
	다. 근무시간 변경		기안				○
	라.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	기안		○			
2.	당직 및 비상근무						
	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기안		○			
	나. 당직(변경) 명령	기안		○			
	다. 당직변경신청 승인	기안	○				
	라. 비상연락체계 유지						
	(1) 비상연락망 정비	○					
	(2) 비상소집 훈련 실시		기안		○		
	(3) 비상소집 필수요원 지정	기안			○		
	마. 기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에 관한 사항(무인경비 시스템 운영 등)	기안		○			
3.	의 례						
	가. 주요 의전·의식행사						
	(1) 주요 의전 행사 시행 계획		기안				○
	(2) 주요 의전 행사 세부 시행 계획 및 추진	기안			○		
	나. 시·구민의 날 행사						
	(1) 시·구민의 날 행사		기안				○

	종합 계획						
	(2) 구민상 시상 계획		기안			○	
	(3) 구민상 시상 계획 시 달	기안		○			
	(4) 구민상 수상자 결정 통보	기안		○			
	다. 국경일, 기념행사 계획 및 시행	기안		○			
	라. 시무식 및 종무식 행사						
	(1) 식행사 계획 수립		기안			○	
	(2) 행사 계획 시달	기안		○			
	마. 월례 조회 행사 계획 및 시행	기안		○			
4.	보안 업무						
	가. 보안업무계획 수립 및 보안담당관 임명		기안		○		
	나. 보안교육	기안		○			
	다. 보안점검	기안			○		
	라. 보안업무 수감(상급기관)		기안		○		
	마.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 가자 현황 보고(반기)	기안		○			
	바. 음여자재 관리(수령, 반납, 점검 등)	기안		○			
	사. 보안사고 발생보고		기안		○		
	아. 보안업무 심사분석		기안		○		
	자. 보안진단의 날 운영	기안		○			
	차.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기안				○	
	카. 비밀문서 외주발간 승인	기안				○	
5.	직장민방위대 운영						
	가. 민방위대원의 전입, 진출		○				
	나. 민방위대 편성	기안		○			
	다. 민방위 교육	기안		○			
6.	직장 예비군 운영						
	가. 예비군 교육훈련	기안		○			
	나. 자체 방어 계획 및 시행		기안		○		
	다. 예비군 전·출입	○					
7.	구청사 방호 및 시설의 이						

	용·배치에 관한 사항						
	가. 청사 방호 계획 수립		기안			○	
	나. 회의실 사용허가 및 운영 관리(방송시설)	기안		○			
	다. 사무실 조정 배치		기안		○		
	라. 사무실 환경 개선	기안		○			
	마. 청사 부설 주차장 안내	기안		○			
	바. 청사 부작물 관리 운영	기안		○			
8.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회에 관한 사무						
	가. 보조금 교부 및 정산 검사	기안		○			
	나. 공익사업 활동 지원	기안		○			
9.	출장통제						
	가. 추진계획수립	기안		○			
	나. 출장통제	기안	○				
10.	인사제도의 기획 및 운영		기안				○
11.	공무원 임용						
	가. 5급 이상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임용		기안				○
	나. 6급 공무원의 임용(신규 채용, 면직, 해임, 파면에 한함)		기안				○
	다. 기타 6급 공무원의 임용 사항		기안			○	
	라. 7급 이하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임용	기안				○	
	마. 시보 공무원 해제	기안		○			
	바. 기능직 임용						
	사.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기안				○
	아. 7급 이하 공무원 진출입 동의	기안				○	
	자. 대우 공무원 임용	기안			○		
	차. 6급 이하 공무원의 정제 처리		기안			○	
12.	청원 경찰 임용	기안			○		
13.	정기 승급, 호봉 승급	기안		○			
14.	호봉 재획정	기안		○			
15.	5급 이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기안			○	

16.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동간 전보 및 조정						
	가. 5급 이상의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기안				○
	나. 6급 이하의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기안			○	
	다. 기능직 공무원						
17.	공무원 전보 사전의결 요구 및 승인	기안				○	
18.	공무원 임용시험 요구	기안				○	
19.	공무원 특별임용 및 전직 시험						
	가. 계획수립		기안				○
	나. 시험실시	기안			○		
	다. 합격자 결정		기안			○	
	라. 시험위원 위·해촉		기안			○	
	마.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20.	기타 인사 사무						
	가. 각종 인사 통계	기안			○		
	나. 전력조회 및 회보	기안			○		
	다. 인사기록 관리	기안			○		
	라. 발령원본 확인	○					
	마. 제증명 및 확인서 발급	○					
	바. 공무원증 발급	기안			○		
	사. 신원조사 조회 의뢰	기안			○		
	아. 임용후보자 충원 요청	기안			○		
21.	근무성적 평정						
	가.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기안			○	
	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기안			○	
22.	5급 이하 공무원 경력, 가점 평정	기안				○	
23.	직원 인사 고충 처리						
	가. 인사 고충 상담	기안	○				
	나. 인사 고충 반영	기안				○	
24.	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기안			○		
25.	성과상여금 지급						

	가. 계획 수립		기안			○	
	나. 지급 시행	기안				○	
26.	표창						
	가. 표창계획 수립		기안				○
	나. 우수공무원 공적 심사		기안			○	
	다. 정부포상 및 장관 이상 의 표창 추천	기안			○		
	라. 공무원시장 표창 추천	기안			○		
	마. 공무원 표창시행	기안			○		
	바. 민간인 표창시행	기안			○		
27.	공무원 교육						
	가. 교육계획 수립		기안				○
	나. 교육대상자 선정 및 파견						
	(1) 6급 이상 공무원		기안			○	
	(2) 7급 이하 공무원	기안			○		
	다. 직장 교육	기안			○		
	라. 외래강사 초빙	기안			○		
	마. 소양고사 실시	기안			○		
28.	공무원 국내·외 연수 및 견학에 관한 사항						
	가. 연수계획 수립		기안				○
	나. 연수 실시 및 변경	기안				○	
	다. 연수 결과(귀국) 보고	기안			○		
29.	공무원 외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 외국어 교육계획 수립	기안				○	
	나. 국외교육대상자 선발 및 일반 업무	기안			○		
30.	인사위원회 관리 운영						
	가. 인사위원회 위·해촉(임면)		기안				○
	나. 인사위원회 운영	기안				○	
31.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에 관한 사무						
	가.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기안				○	
	나.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기안	○				

	회수						
32.	공무원노조 지원 및 동향에 관한 업무						
	가. 공무원노조 지원 시행 계획 및 동향파악 보고	기안				○	
	나. 공무원노조 지원 관련 일반 업무	기안		○			
	다.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동향 파악보고	기안			○		
33.	노무협력 및 단체협약에 관한 업무(공무원 및 일반공무직 노조)						
	가. 단체협약에 관한 계획 수립		기안				○
	나. 단체협약 해석 관련 일반 업무	기안		○			
	다. 노무협력 관련 계획 수립	기안		○			
	라. 단체협약 체결	기안					○
34.	공무원노조 법적분쟁 조정 에 관한 업무						
	가. 공무원노조 법적분쟁 해석 및 분석	기안		○			
	나. 공무원노조 법적분쟁 조정 및 해결	기안				○	
35.	공무직노조 지원에 관한 업무(환경미화원 제외)						
	가. 공무직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협약 계획 수립		기안				○
	나. 공무직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기안					○
	다. 공무직노조 관련 일반 업무	기안		○			
36.	공무원 연금에 관한 업무						
	가. 공무원 연금대부 및 대여장학금 관련 업무	기안	○				
	나. 공무원연금 각종 급여 업무	기안		○			
	다. 기여금 및 부담금 관련 업무	기안		○			
	라. 공무원 재직기간 관리 업무	기안		○			
	마. 임대주택 관련 업무	기안		○			
37.	건강보험 및 건강검진에 관한 업무						
	가. 직장가입 및 퇴사 관리 업무	○					
	나. 건강보험료 징수 및 납	기안		○			

	부 관련 업무						
	다. 건강검진 관련 업무	기안		○			
	라. 피부양자신고 등 제 신고에 관한 업무	○					
38.	지방행정 공제회 관련 업무						
	가. 공제회비 징수 및 납부 관련 업무	기안		○			
	나. 공제회 각종 급여에 관한 업무	기안		○			
	다. 공제회 각종 대여 및 예금에 관한 업무	기안		○			
39.	직장보육시설 관련 업무						
	가. 직장보육시설 지원 및 검사 계획 수립	기안			○		
	나. 보육시설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기안		○			
40.	직원식당운영 관련 업무						
	가. 직원식당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나. 직원식당운영 결산보고	기안			○		
	다. 식단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업무	기안		○			
41.	직원복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42.	직원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관련 업무						
	가. 직장체육 및 동호회 관련 업무	기안		○			
	나. 흡연실 및 여성휴게실 관련 업무	기안		○			
	다. 보장정보보험 등 선택적 복지에 관한 업무	기안			○		
43.	국기선양에 관한 업무	기안		○			
44.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관리						
	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지원 계획 및 동향파악		기안	○			
	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련 일반 업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전반)	기안		○			
	다. 공무직근로자 정수관리	기안					○
	라.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수립	기안					○
45.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						
	가. 주민등록·인감(본인서명		기안			○	

	사실확인제)업무 지침 및 계획 수립						
	나. 주민등록 발급 상황보고	기안		○			
	다. 주민등록 인구동태 조사	기안	○				
	라. 주민등록증 회수 및 훼손 증 파기	기안		○			
	마. 주민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	기안		○			
	바. 보안장비 프로그램 보급	기안		○			
	사. 주민전산 업무 지도점검	기안		○			
	아. 주민등록 및 인감(본인 서명사실확인제)사무 지도 점검	기안		○			
	자. 내국인 인감대장 이송	○					
	차. 인감통계 보고	기안		○			
46.	선거 및 국민투표						
	가. 투표구 조정		기안		○		
	나. 선거인명부 작성	기안			○		
	다. 국민투표 및 선거에 관한 각종 보고		기안		○		
	라. 예산 책정	기안		○			
	마. 투표구 확정		기안		○		
	바. 구청장, 시·구의원 보궐선거 공포		기안				○
	사. 선거사무 기본계획		기안				○
	아. 선거관련 업무 지도 및 지원		기안		○		
	자. 선거사무세부시행계획 및 추진		기안		○		
	차. 선거사무 지도	기안		○			
	카. 선거관련 홍보 및 주민 계도	기안		○			
	타. 인구수 등의 통보	기안		○			
	파. 선거인명부 이의 신청 심사, 결정 및 통보	기안		○			
	하. 부재자신고 접수						
	(1)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및 신고서 송부	기안		○			
	(2) 부재자신고 오기 등 발견사실 통보	기안		○			
	(3) 기타 선거관련 업무	기안		○			

	지도 및 협조지원						
	(4) 후보자 연설회 개최 지원	기안		○			
	거. 부재자 신고인명부 확정 상황 보고	기안		○			
	너. 거소투표신고 접수						
	(1) 거소투표대상자 안내 문 및 신고서 발송	기안		○			
	(2)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작성 및 확정	기안		○			
	(3) 거소투표용지 발송	기안		○			
	(4) 기타 거소투표관련 업무 지원	기안		○			
	더. 사전투표 업무지도 및 지원	기안		○			
	러. 선거인명부 확정 상황 보고		기안		○		
	머. 선거인명부 작성 공무원의 임면 및 통보		기안		○		
	버. 선거인명부 등본 송부	기안		○			
	서. 선거인명부 열람, 공람	기안		○			
	어. 선거인명부 작성 입회인 신고접수	기안		○			
	저. 선거인명부 작성 입회인 교체접수	기안		○			
	쳐. 선거인명부날인 인장의 인영신고		기안		○		
	커. 선거인명부 열람(공람) 장소, 기간공고	기안			○		
	터. 선거인명부 작성비용 공시	기안			○		
	퍼. 선거인명부 사본 신청 접수 교부	기안		○			
	허. 선거인명부 송부	기안	○				
	고. 선거인명부 수정 상황 통보	기안	○				
	노. 선거인명부 오기 등 발견사실 통보	기안	○				
47.	외국인 인구통계에 관한 사무						
	가. 외국인 인구통계	기안		○			
48.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가. 북한이탈주민 지원계획 수립	기안			○		
	나.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기안		○			

	일반						
	다. 북한이탈주민센터 운영 및 관리	기안		○			
49.	행정사에 관한 사항						
	가. 행정사업 변경 및 폐업 신고	기안		○			
	나. 행정사 관리에 따른 일반 사항	기안		○			
50.	국민운동단체 지원						
	가. 보조금 지원 계획	기안				○	
	나. 지원금액 조정 및 심의	기안			○		
	다. 보조금 정산 검사	기안			○		
	라. 공익사업 활동 지원	기안		○			
51.	행정구역 관리에 관한 업무						
	가. 분동 등 행정구역 개편		기안			○	
	나. 행정구역에 관한 자료조사	기안		○			
52.	통·반의 설치 및 조정						
	가. 통·반의 분합 및 폐지		기안			○	
	나. 통·반장 정수 조정		기안			○	
53.	통·반장 운영 관리						
	가. 통·반장 주요시책 추진	기안		○			
	나.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계획	기안			○		
	다.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자 선정	기안			○		
54.	지방 행정 동향관리에 관한 업무						
	가. 일일 동향보고	기안		○			
	나. 지휘보고	기안			○		
55.	구 확대간부회의 운영						
	가. 확대간부회의 운영	기안		○			
	나. 확대간부회의 자료수집 및 확정	기안			○		
56.	동 행정 지도 감독 및 운영	기안			○		
57.	동 행정 실적 심사 계획 수립 및 운영	기안			○		
58.	연휴 종합대책 수립 및 운영						
	가. 연휴 종합대책 계획 수립		기안				○

	립						
	나.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	기안		○			
59.	적십자회비 모금						
	가. 적십자회비 모금 계획	기안			○		
	나. 모금 결과 보고	기안		○			
60.	부업대학생 관리						
	가. 부업대학생 모집 계획 수립	기안				○	
	나. 부업대학생 추천 및 배치	기안		○			
61.	주민자치센터 운영						
	가. 주민자치센터 관리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나.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기안		○			
	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기안			○		
	라.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보급	기안		○			
62.	주민자치협의회 운영 관리	기안		○			
63.	주민자치회 운영						
	가. 주민자치회 위원 위·해촉	기안					○
	나. 주민자치회 활성화 계획 수립	기안			○		
	다.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기안		○			
64.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사업						
	가.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65.	우리동네가꾸기사업 운영지원	기안		○			
66.	동 업무 증가 방지 문서통제	기안	○				
67.	마을만들기 사업						
	가. 마을만들기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기안					○
	다.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기안			○		
	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기안					○
	마. 기타 마을만들기 사업에	기안		○			

68.	관한 사무 마을만들기 위원회 관리 운영						
	가. 마을만들기 위원회 위·해촉(임면)	기안					○
	나. 마을만들기 위원회 운영	기안			○		
69.	가로기 제양 관리에 관한 사무						
	가. 가로기 구입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기안		○			
70.	자원봉사활성화 운영						
	가. 자원봉사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사항						
	(1) 운영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2)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평생교육과

단 위 사 무 명		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담	과	국	부	
		당	당	장	장	구 청 장	
1.	평생학습 추진체계 관련업무						
	가.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안					○
	나. 평생학습도시 관련 자치법규 정비	기안					○
	다. 평생학습도시 인정 추진에 관한 사무	기안		○			
	라.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기안		○			
	마. 평생학습 거점센터 운영 사업	기안			○		
	바. 평생학습도시 우수프로그램 공모	기안			○		
	사.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기안			○		

	아. 평생학습 문화조정 및 홍보	기안		○			
	자.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제공 및 진흥	기안			○		
	차. 기타 주요 평생교육사업 계획 수립	기안		○			
	카. 기초자치단체내 평생학습 현황 조사, 수요조사 및 통계	기안		○			
2.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가. 평생교육협의회 개최		기안				○
	나.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위·해촉		기안				○
	다. 평생교육협의회 회의추진 사항		기안		○		
3.	평생교육실무위원회 운영						
	가. 평생교육실무위원회 운영 및 추진사항 관리	기안			○		
4.	평생학습 프로그램 추진업무						
	가.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사업 종합계획 수립·시행	기안			○		
	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사업 세부 운영계획 수립·시행	기안		○			
	다. 평생학습관 운영 및 관리	기안		○			
	라.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 위·해촉	기안		○			
	마.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			○			
	바. 평생학습축제 개최	기안					○
5.	평생교육네트워크 구축·관리						
	가. 평생교육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기안		○			
	나.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기안		○			
	다. 강사은행 및 평생학습동아리 등록	기안		○			
	라. 평생학습 포럼 및 워크숍	기안		○			
6.	남동구평생학습관 시설 유지 관리						
	가. 남동구평생학습관(시설, 경비) 운영 관리 계획 수립	기안			○		
	나. 공공시설물(건축, 전기, 기계설비 등) 유지 관리	기안		○			
	다. 승강기 유지관리	기안		○			
	라. 시설물 안전 점검	기안		○			
	마. 교육실(강당) 운영 및 관	기안	○				

7.	리 교육기관 지원 및 보조사무						
	가. 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계획	기안				○	
	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라. 교육경비보조금 점검 및 정산	기안			○		
	마. 지역인재 추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바.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기안				○	
	사. 지역교육사업을 위한 학교 및 교육청 업무 지원	기안				○	
	아. 졸업생 표창계획 수립 및 선정	기안					○
8.	교육혁신지구 업무 추진						
	가. 기본계획수립		기안				○
	나. 세부추진계획 및 지원사항	기안			○		
	다. 기타 일반사항	기안		○			
9.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지원사업						
	가. 무상급식 지원사업 및 무상교복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무상급식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관련 사무		기안		○		
	다. 무상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무		기안		○		
	라. 무상급식 점검 및 정산	기안			○		
10.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사업						
	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사업 정산	기안			○		
1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점검 및 정산	기안			○		
12.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업무						
	가.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나.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사	기안			○		

	업 결과보고						
13.	아동 취학						
	가. 취학사무 집행요령 시달	기안		○			
	나. 취학아동명부·학교목록 수령 협조	기안		○			
14.	도서관 정책 사업						
	가.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나. 도서관 신축 건립 및 리모델링 계획 수립	기안					○
	다. 도서관 교류 협력 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라.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개최	기안				○	
	마. 구립도서관 인력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바. 구립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기안			○		
	사. 구립도서관 기간제근로자 관리	기안		○			
	아. 도서관 조례·규칙 개정 및 제정		기안				○
	자. 공공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기안		○			
	차. 스마트도서관 구축 계획 수립	기안					○
15.	독서문화진흥사업						
	가.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나. 독서문화진흥 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다. 남동구독서문화상 시상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16.	작은도서관 등록 관리						
	가. 작은도서관 등록(변경) 및 관리						
	(1) 작은도서관 등록(변경) 접수	기안		○			
	(2) 작은도서관 등록증 교부	기안		○			
	(3) 작은도서관 지도 관리	기안		○			
	나.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설치 건축심의협의	기안		○			
	다.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1)작은도서관 활성화 보조금 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기안					○

17.	시행						
	(2) 보조금집행 및 정산보고	기안		○			
	(3) 보조사업결과 정산검사 및 처리	기안		○			
	라. 작은도서관 협의회 협력관리	기안		○			
	마.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	기안		○			
	구립도서관 운영 일반						
	가. 도서관 운영 및 관리	기안		○			
	나. 시설 임대 운영 및 관리	기안		○			
	다. 시설 대관운영	기안		○			
	라. 자료복사 등 수수료 징수	기안		○			
	마. 도서관 세입수입 처리	기안		○			
	바. 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관리						
	(1) 홈페이지 구축 계획 및 변경	기안			○		
	(2) 장비 운영 및 유지 관리	기안		○			
	18. 구립도서관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가. 기획공연, 전시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18.	(1) 기획공연, 전시, 프로그램 종합 운영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기안			○		
	(2) 기획공연, 전시, 프로그램 세부 시행계획 수립	기안		○			
	(3) 강사 선정 및 계약	기안		○			
	(4) 강사수당 지급	기안		○			
	(5) 프로그램 개발 및 교양강좌 선정	기안		○			
	나. 홍보						
	(1) 홍보유인물 제작	기안		○			
	(2) 홍보 유인물 배포 및 관리	기안		○			
	다. 자원봉사자 운영 및 관리						
	(1) 자원봉사신청접수 및 실적 부여	○					
	(2) 자원봉사실비수당 지급	기안		○			
	19. 구립도서관 자료 관리						
	가. 도서관 자료확충						

20.	(1) 도서관 자료 구입 중 합계회 수립 및 시행	기안					○
	(2) 자료의 수서, 정리, 보존에 관한 사항	기안		○			
	(3) 정기간행물 구독, 정리, 보존에 관한 사항	기안		○			
	(4) 기증자료 수증 및 처분	기안		○			
	(5) 자료통계 작성 및 관리	기안		○			
	나. 자료 열람업무						
	(1) 각종 자료열람실 운영 관리	기안		○			
	(2) 관외대출회원 등록 및 관리	기안		○			
	(3) 자료열람실 장서관리	기안		○			
	(4) 반납 연체도서 관리	기안		○			
	(5) 학구적 조사연구 협조	기안		○			
	(6) 개관시간 연장사업 운영	기안		○			
	다. 통합도서 및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1) 통합 및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기안		○			
	(2) 통합 및 상호대차서비스 협의 및 시행	기안		○			
	20. 도서관 전산관리						

21.	가. 도서관 정보화 구축 계획 수립	기안					○
	나. 전산실 운영 및 관리	기안		○			
	다. 도서관 통신 및 네트워크 관리	기안		○			
	도서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가. 전산보안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전산보안 활동 및 심사분석	기안			○		
	다. 전산보안 교육	기안		○			
	라. 전산보안 지도점검	기안		○			
	마. 개인정보보호제도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바. 개인정보보호제도 교육	기안		○			
	사. 개인정보보호제도 운영 지도점검	기안		○			
	아. 정보보안시스템 운영관리	기안		○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						
	22.						

한 사항						
가.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나.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추진 및 지원	기안		○			
다. 그 밖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사항	기안		○			

문화관광과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 문화예술 진흥						
가. 예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
나. 예술진흥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다. 예술진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예술진흥지도	기안	○				
2. 문화예술 행사						
가. 행사개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행사개최 세부실행계획 수립	기안			○		
다. 행사개최 준비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축제관련 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마. 행사관련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기안		○			
3. 기타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기안		○			
4.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가.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 수립	기안				○	
나. 지원대상사업 접수 및 지원	기안		○			
다. 심의위원회 개최 및 위원 위. 해촉	기안				○	
라. 기금운용 및 총괄관리	기안			○		
마. 기타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5. 남동문화원 운영 지원						
가. 남동문화원 사업계획 승인	기안					○

나. 남동문화원 운영지원	기안		○			
6. 문화재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관리	기안				○	
7. 문화재 보수 관리						
가. 사업계획 수립	기안			○		
나. 설계지침 작성	기안			○		
다. 설계승인	기안			○		
라. 공사감독관 임명	기안	○				
마. 공사착공 및 준공보고	기안	○				
8. 관할구역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 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보존 관리	기안		○			
9. 지방민속자료 발굴 조사	기안	○				
10. 향토문화의 발굴 육성	기안		○			
11. 문화예술기반시설 건립 및 운영						
가. 기본(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자문(심의)위원 위·해촉 및 운영		기안			○	
다. 기타 문화예술기반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12. 문화재단 설립 추진						
가. 문화재단 설립 추진방침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기안					○
나. 문화재단 설립 외부기관 협의 및 심의(의뢰)	기안			○		
다. 문화재단 설립 관련 자료수집(분석) 및 제출	기안		○			
13. 영화 및 영화상영관 관리						
가.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기안		○			
나.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기안	○				
다. 영화상영관등록증 재교부 신청	기안	○				
라. 영화상영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마.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기안		○			
14. 공연 및 공연장 관리						
가. 공연장 등록 신청	기안		○			
나.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기안		○			
다. 공연장등록증 재교부 신청	기안	○				
라.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기안		○			
15. 출판사 및 인쇄사 관리						
가. 출판사 및 인쇄사(신규·변경)	기안	○				

	신고 나. 잡지의 간행물(신규·변경·폐업) 신고	기안	○				
	다. 간행물 제출	기안	○				
	라. 지도감독 및 단속	기안		○			
	마. 과태료 처분	기안		○			
16.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기안			○		
17.	남동구사 편찬계획 수립	기안					○
18.	관광사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관련 사무						
	가. 관광숙박업 등록신청 및 사업계획 승인	기안			○		
	나. 관광사업 등록(허가 및 신고,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관광사업 변경등록(변경허가 및 신고, 지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관광사업등록증 등 재교부 신청	○					
	마.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 신고	○					
	바. 관광사업휴업(폐업) 통보(신고)	○					
	사. 관광사업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기안		○			
	아. 관광사업자 결격사유 조회	○					
19.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사항						
	가. 유통관련업자 등록 신청	기안		○			
	나. 유통관련업자 변경 등록 신청	기안		○			
	다. 영업정지	기안		○			
	라. 청문 및 등록 취소	기안		○			
	마. 행정처분	기안		○			
	바. 지도단속 및 감독	기안		○			
	사. 유통관련업자 폐업 및 등록증 재발급, 영업자 지위승계	○					
	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	기안		○			
	자. 유통관련업자 교육	기안		○			
	차. 유통관련업자 결격사유(성범죄경력) 조회	○					

체육진흥과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장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	체육 및 건전생활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시행		기안				○
2.	체육관 및 건전생활 활성시책 수립 추진	기안		○			
3.	기타 체육 및 건전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기안		○			
4.	체육 및 건전생활 관련단체 육성						
	가. 체육회 운영 및 지원사업	기안		○			
	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기안		○			
5.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가. 구민체육진흥을 위한 계획수립	기안				○	
	나. 체육진흥협의회 개최 등	기안		○			
6.	구민 체육대회						
	가. 체육대회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추진	기안		○			
7.	구청장기 및 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						
	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종목별 개최 보조금 지급	기안		○			
8.	전국대회 참가 지원						
	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대회참가 지원금 교부	기안		○			
9.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						
	가. 우수선수 지원	기안		○			
	나.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기안		○			
10.	남동구민축구단 운영 지원						
	가. 축구단 지원 계획 수립	기안				○	
	나. 운영 지원	기안		○			
11.	직장경기부 운영						

	가. 직장경기부 설치, 변경, 폐지	기안		○	
	나. 직장경기부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다. 국제 및 전국규모대회 출전계획 수립	기안	○		
	라. 전지훈련계획 수립	기안	○		
	마. 육상선수의 보상금 지급	기안	○		
	바. 운동선수 감독 임명	기안		○	
	사. 훈련지도 감독	기안	○		
12.	꿈나무 스포츠단 운영				
	가. 지도자 임명	기안		○	
	나. 선수 모집 선발	기안	○		
	다. 대회참가 계획 수립	기안	○		
	라. 지도자 수당 등 운영 지원	기안	○		
13.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운영				
	가.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지원대상자 선정	기안	○		
14.	생활체육교실 운영				
	가.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 선정	기안	○		
	나. 운영비 및 강사 수당 지급	기안	○		
15.	공공체육시설의 조성				
	가. 공공체육시설의 증장기 조성 계획 수립	기안		○	
	나. 공공체육시설 조성 추진	기안		○	
	다. 공공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보상	기안	○		
16.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관리				
	가.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행	기안	○		
	나. 공공체육시설 유지, 보수 및 관리	기안	○		
	다. 공공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추진	기안	○		
	라. 체육시설에 대한 조경 관리	기안	○		
	마. 공공체육시설 청결 유지	기안	○		
17.	공공체육시설 위탁에 관한 사무				
	가. 위탁계약에 관한 사무	기안		○	
	나. 대행사업 자금배정 및 예산검토	기안		○	
	다. 대행사업 운영 지도감독	기안	○		
	라. 기타 자료제출 요구 및 통보	기안	○		

18.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가. 체육시설업 신고	기안	○		
	나.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	기안	○		
	다. 체육시설업 신고필증 재교부	○			
	라. 체육시설업 행정처분	기안	○		
	마. 체육시설업 안전 점검 추진	기안	○		
19.	수상레저기구 관한 사항				
	가. 수상레저기구 신고	기안	○		
	나. 수상레저기구 변경 신고	기안	○		
	다.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재교부	○			
	라. 수상레저기구 관련 행정처분	기안	○		

민원봉사과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담	과	국	부	
		당	당	장	장	구	
		자	장	장	장	청	장
1.	민원접수 및 관리						
	가.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관리	○					
	나. 민원 심사	기안	○				
	다. 민원 처리사항 확인·점검	기안		○			
	라. 정부민원 콜센터 운영	기안		○			
	마. 통합민원 서류 발급	○					
	바. 민원24 운영	기안		○			
	사. 어디서나민원처리제 운영	○					
	아. 민원처리 수수료 일일결산	○					
	자.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및 관리	○					
2.	종합민원실 운영						
	가. 민원실 운영 및 환경 개선	기안		○			
3.	민원 편람 정비	기안		○			

4.	공인관리						
	가. 공인관수	기안	○				
	나. 공인신조	기안		○			
	다. 공인개각, 폐기	기안		○			
	라. 공인대장, 인영 등록 및 인영부 관리	기안		○			
	마. 공인사전날인 및 인영인쇄	기안		○			
	바. 공인공고	기안		○			
5.	민원제도 및 시책 추진						
	가. 민원제도 및 시책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민원제도 및 시책 운영 관리		기안			○	
	다. 민원1회방문상담창구 운영	○					
	라. 민원후견인제도 운영	기안		○			
	마.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기안		○			
	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	기안		○			
	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기안			○	
	아. 민원실무심의회 운영지원	기안		○			
6.	행정서비스 현장						
	가. 행정서비스현장 운영 관리 계획 수립		기안			○	
	나. 행정서비스현장 변경 및 수정	기안				○	
	다. 행정서비스현장 일반	기안		○			
7.	친절 행정 추진						
	가. 친절행정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친절행정 시책 발굴	기안				○	
	다. 친절행정 일반	기안		○			
8.	기록물 관리						
	가. 기록물관리 계획 수립 및 교육	기안				○	
	나.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다. 기록관리기준표(단위과제) 관리	기안		○			
	라. 기록관 관리	기안		○			
	마. 기록물 폐기	기안				○	
	바.기록물 열람 및 대출관리	기안		○			
	사. 기록물 이관	기안		○			
	아. 상근인력 관리	○					
9.	기록관(표준기록관리시스템)시스템 관리						

	가. 기록관(표준기록관리시스템)시스템 구축		기안				○
	나. 기록관(표준기록관리시스템)시스템 운영	기안		○			
	다. 중요기록물 이중보존(스캐닝)	기안				○	
	라. 보존기록물 마이크로필름 촬영	기안				○	
10.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가. 정보공개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나.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열린정부 공무원창구) 운영 및 관리	○					
	다. 사전공표 정보목록 및 비공개대상정보 세 부기준 관리	기안		○			
	라. 정보공개편람 작성	기안		○			
	마.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바. 정보공개결정통보	기안		○			
11.	문서 수발						
	가. 전자문서 접수 및 배부	○					
	나. 문서(종이문서) 접수 및 배부	○					
	다. 비밀 기록물 접수 및 배부	○					
12.	우편물 관리						
	가. 우편물통합관리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기안		○			
	나. 등기우편 환부거부제 운영	기안		○			
	다. 등기, 일반 우편물 수령 및 배부	○					
13.	행정자료실 운영						
	가. 행정자료실 운영관리계획 수립	기안				○	
	나. 도서구입 및 폐기 처분	기안		○			
	다. 도서 및 행정자료 관리	○					
14.	가족관계등록 사무 등에 관한 사항						
	가. 관장자 취임 보고	기안		○			
	나. 가족관계등록 담당자 임면 보고		기안	○			
	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대리 보고		기안	○			
	라.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지침 및 계획		기안	○			
	마.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지침 및 계획 시달	기안		○			
	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인구동태 보고	○					
	사. 가족관계등록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아. 가족관계등록신고 해태자에 대한 최고	기안		○			
	자.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제출 및 처리사항 보	기안		○			

고						
자. 보존기간 경과 서류 폐기 인가 신청	기안	○				
카. 국제결혼 증명서 발급	○					
다. 가족관계등록신고(출생신고 외 60종)	기안	○				
파. 가족관계등록 정정신청	기안	○				
하. 직권정정. 기록허가 신청	기안	○				
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건 신고	기안	○				
15. 수형인 명부 및 신원조회에 관한 사무						
가. 범죄자·파산자 대장 기록 관리	기안	○				
나. 선거권 없는 자 관리	기안	○				
다. 수형인 명표 폐기 및 관리	○					
라. 신원기록 조회 및 회보	○					
16. 가족관계등록 전산 운영에 관한 사무						
가. 식별부호 사용(해지) 신청	기안	○				
나. 가족관계등록 신고 사항 주민등록지 통보	○					
17. 채무불이행자 명부 관리						
가. 채무불이행자 열람	○					
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조회	○					
다. 채무불이행자 전·출입 처리	기안	○				
18. 여권행정						
가. 수입대체경비 출납(영수필증 관리)	기안	○				
나. 전산망 유지관리	○					
19. 일반여권 (재)발급						
가. 여권(재)발급 신청 접수	○					
나. 여권(재)발급 심사	기안	○				
다. 여권 기재사항 변경	기안	○				
라. 여권의 분실 및 습득신고	○					
마. 여권의 반납·보관	○					
바. 여권발급 전산기록, 동명이인 전산조회	○					
사. 영문성명 변경 신청	○					
아. 신원조회 미회보 및 검사	기안	○				
자. 발급여권의 교부	○					
차. 미수령 여권 무효조치	기안	○				
20.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일반	기안		○				
	나. (분임)공동이용관리자 지정·운영	기안		○				
21.	외국인 민원 사무							
	가. 외국인 체류지 변경	○						
	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발급	○						
	다.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운영 관리	○						

토지정보과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	지적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가. 지적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지적업무의 총괄 조정 및 집행		기안			○	
2.	지적측량 성과검사 등에 관한 사무						
	가. 지적측량 성과검사	기안		○			
	나. 지적측량 관련 업무협의	기안		○			
3.	지적공부 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적공부 보존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지적공부 작성 및 제작성	기안			○		
	다. 지적공부 반출 승인	기안			○		
	라. 지적공부 등록현황 집계 표 정리	기안		○			
	마. 지적통계 및 지적공부 목록 보고	기안		○			
	바. 지적측량결과도 및 결의서 보존 관리	기안		○			
	사. 지적서고 관리	기안		○			
	아. 지적측량장비 운영 및 관리	기안		○			
	자. 지적행정 일반에 관한 사무	기안		○			
4.	토지이동 정리에 관한 사무						

	가. 토지이동 일제조사 계획 수립		기안		○			
	나. 토지이동 조사 및 정리	기안		○				
	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기안		○				
	라. 토지분할허가(개발제한구역 제외) 신청처리	기안		○				
	마. 등목사항정정대상 토지 관리 및 정리	기안		○				
	바. 토지이동 관련 업무협의	기안		○				
	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및 완료 통지	기안	○					
	아. 축척변경 관련사무	기안		○				
	자. 토지이동해태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차. 토지이동관련 소송 수행 업무	기안		○				
5.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계획 수립	기안			○			
	나.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기안		○				
	다.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 및 이전	기안		○				
	라.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실태 조사 및 보고	기안		○				
	마. 국가기준기준점 현황조사 및 보고	기안		○				
6.	토지이용계획 관련 사무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승인관리	○						
	나. 도시계획 및 연속지적 변동사항 정리	○						
	다. 토지데이터베이스 자료 제공	기안		○				
	라. 토지이용계획도 보존 관리	기안	○					
7.	지적전산 관련 업무							
	가. 지적전산 사용자 권한 관리 업무	기안		○				
	나. 부동산정보관리센터 업무	기안		○				
	다. 지적정보센터 업무	기안		○				
	라. 조상땅 찾기 업무	○						
	마.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업무	기안	○					

	바. 지적전산 일반	기안		○				
	사. 지적전산정보 자료제공 업무	기안		○				
8.	개발부담금 대상사업관리 및 부담금 부과							
	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조사	기안		○				
	나. 개발비용 확인 및 재산정의뢰 기관 선정	기안		○				
	다. 개발부담금 예정통지	기안		○				
	라. 개발부담금 부과 결정	기안			○			
	마. 개발부담금 납부독촉 및 채납처분	기안		○				
	바. 개발부담금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기안		○				
	사.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보고	기안		○				
	아. 물납 신청 및 허가	기안			○			
	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록(변경)신청 등 관리	기안		○				
9.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무							
	가.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개최 및 운영 관리		기안				○	
	나.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위원 위·해촉	기안					○	
	다. 주소 및 권리변동 신고	○						
	라. 조사측량 및 분할조서 작성	기안		○				
	마. 분할조서확정	기안			○			
	바. 지적 공부정리	기안			○			
	사. 공유토지분할 청산금 관리	기안		○				
	아.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및 완료 통지	기안	○					
	자. 공유토지분할 관련 각종 보고	기안		○				
10.	지적제조사 사업							
	가. 실시계획의 수립	기안						○
	나. 주민설명회 개최	기안			○			
	다.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기안		○				
	라. 사업지구 지정 신청	기안			○			
	마. 지적제조사 지구 지정에	기안		○				

	따른 지적공부 정리						
	바.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 수행자 선정	기안			○		
	사.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성과검사	기안		○			
	아.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	기안		○			
	자.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처리	기안		○			
	차. 조정금 산정대상 감정평가 의뢰	기안		○			
	카. 조정금의 산정	기안			○		
	타. 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	기안		○			
	파.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공탁	기안		○			
	하. 지구별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기안				○	
	거. 사업완료에 따른 공고 및 공람	기안		○			
	너. 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기안		○			
	더.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운영	기안		○			
	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및 위원 위·해촉	기안					○
	머.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및 위원 위·해촉	기안			○		
	버.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	기안		○			
11.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						
	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	기안		○			
	나.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추진	기안		○			
	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일일마감	기안		○			
	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기안		○			
	마. 부동산행정정보 자료정비(도면 등)	기안		○			
	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 등록번호 부여	○					
	사.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 등록명서 발급	○					
	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 록사항 변경정리	○					
	자.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사무	기안			○		

	차. 소유자 정리	○					
	카. 소유권사항 오기정정	기안	○				
12.	부동산 거래 관리에 관한 업무						
	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	기안		○			
	나. 부동산 거래계약서 검인	○					
	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접수 및 필증 발급	○					
	라.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부과 및 징수	기안		○			
	마.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기안		○			
	바.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기안		○			
	사. 주택거래신고 접수 및 필증 발급	○		○			
	아. 주택거래신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기안					
	자. 부동산거래 관련 각종 보고	기안		○			
13.	주택 임대차 신고 관리에 관한 업무						
	가. 주택 임대차 신고 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리	기안		○			
	나. 주택 임대차 신고 가격검증 및 정밀조사	기안		○			
	다. 주택 임대차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기안		○			
14.	부동산실명제 운영 관리						
	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조사	기안		○			
	나. 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징수	기안		○			
	다. 실명법 위반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기안		○			
15.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업무						
	가.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 처리	○					
	나. 외국인등의 토지거래허가	기안		○			
	다.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16.	개별공시지가 등의 업무						
	가.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기안		○			
	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안		○			
	라. 개별공시지가 검증 결과 보고	기안		○			
	마.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기안		○			
	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 처리	기안		○			
	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기안			○		
	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위·해촉	기안			○		
	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요청	기안		○			
	차.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기안				○	
	카. 개별공시지가 홍보	기안		○			
	타.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관리	기안		○			
	파. 지가현황도면 작성 및 관리	기안		○			
	하. 개별공시지가 정정	기안		○			
	거. 개별공시지가 예산 관리	기안		○			
	너.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기안		○			
17.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사무						
	가.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기안		○			
	나. 관련부서 협의 및 보고	기안		○			
	다. 선매자 지정 및 통보	기안		○			
	라. 토지의 개발·이용 등 실태조사 계획수립	기안			○		
	마. 토지의 개발·이용 등 실태조사 결과보고	기안			○		
	바. 토지거래계약 허가목적 불이행자 위반사항 조치	기안			○		
	사. 토지거래계약 위반자 조치	기안		○			
	아. 신고포상금제 운영	기안			○		
	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기안			○		
18.	부동산 중개업 등에 관한 사무						
	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계획 수립		기안			○	
	나. 중개업소 행정처분	기안			○		

	다. 각종 부동산업소 관련 보고	기안		○			
	라. 교육 및 지도감독	기안		○			
	마.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분사무소 설치신고)	기안		○			
	바. 부동산중개업 폐업, 휴업, 재·개업, 휴업기간 변경신고	○					
	사. 부동산중개업(업무보증, 보증변경) 설정 신고	○					
	아.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해고 신고	○					
	자.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증 재교부 신청	○					
	차. 부동산중개업 사무소 이전 신고	○					
	카. 부동산중개업 인장변경 신고	○					
	타. 부동산중개업 진정민원 처리	기안		○			
	파. 부동산중개업관련 신원조회 및 범죄이력 조회	기안	○				
19.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						
	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종합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도로명주소법 관련 조례 운영		기안			○	
	다.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1)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기안				○	
	(2)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변경·폐지	기안			○		
	라. 도로명주소위원회 위·해촉	기안				○	
	마.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에 관한 업무						
	(1) 도로명주소 방문 및 서면 고지	기안		○			
	(2) 공시송달	기안		○			
	(3) 도로명주소 고시	기안		○			
	바. 공적장부 주소전환 추진	기안			○		
	사. 도로명주소 지도제작 및 자료 제공	기안		○			
	아. 도로명주소 홍보 및 교육	기안			○		
	자.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 설치 및 관리	기안		○			

	차. 도로명주소대장 관리	기안		○			
	카. 도로명주소 관련 신청						
	(1) 건물번호 부여 및 변경 신청	기안		○			
	(2) 도로명주소대장 기재 내용 정정 신청	기안		○			
	(3) 도로명주소안내도 교부 신청	기안		○			
	(4) 건물번호 재교부 신청	기안		○			
	(5) 도로명주소대장 등본 발급·열람	○					
	(6) 주소일괄변경 신청	기안		○			
	(7)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기안		○			
	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1)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기안		○			
	(2)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기안		○			
	파. 국가기초구역에 관한 사무						
	(1)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폐지	기안			○		
	(2) 국가기초구역 고시	기안		○			
	하. 국가지점번호에 관한 사무						
	(1)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 관리	기안		○			
	(2) 국가기초구역 고시	기안		○			
20.	남동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사무						
	가. 남동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운영	기안				○	
	나. 남동구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안	○			

재 무 과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담	과	국	부	
	당	당	장	장	청 장	

1.	회계분야 심사 및 문서 지도감독						
	가. 사업소, 동, 의회사무기구 회계지도 감독	기안			○		
	나. 각 실·과 일상경비집행 지도감독	기안			○		
	다. 회계실무교육 계획	기안			○		
2.	예산, 재무회계 결산						
	가. 지침서 작성 및 시달	기안		○			
	나. 결산추진계획	기안					○
	다. 재무제표검토용역 계획	기안			○		
	라. 재무제표작성 보고	기안					○
	마. 결산(안) 보고	기안					○
	바. 결산검사 계획수립	기안			○		
	사. 결산검사 결과보고	기안					○
	아. 의회 결산승인 요청	기안		○			
	자. 예산.재무회계결산 일반	기안		○			
3.	연말정산	기안		○			
4.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기안		○			
5.	원천징수금 신고 및 납부	기안		○			
6.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안		○			
7.	일용근로소득 신고	기안		○			
8.	국비, 시비 및 일상경비의 정리	기안		○			
9.	국비 지출 및 디브레인 시스템 관리						
	가. 국비 지출원인행위	기안			○		
	나. 국비 지출결의	기안		○			
10.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가. 복식부기 회계제도 종합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복식부기 기본운영에 관한 사무	기안		○			
	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관리						
	(1)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재무결산)	기안	○				
	(2) 복식부기회계처리 승인(분개)	기안	○				
11.	구 자금관리						
	가. 자금수급 관리계획		기안			○	
	나. 수입금 예치 및 관리	기안			○		
	다. 자금배정	기안		○			

	라. 자금차입선정		기안				○
	마. 회계간 자금전용(타 지출원간)		기안			○	
	바. 자금이월	기안			○		
	사. 자금송부 및 교부	기안		○			
12.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						
	가. 입찰공고 및 결과보고(적격심사)						
	(1) 1억초과 공사, 5천만원 초과 용역·물품 구입	기안			○		
	(2) 1억이하 공사, 5천만원 이하 용역·물품 구입	기안		○			
	나. 지명경쟁입찰 지명통지	기안		○			
	다. 검사 및 검수 입회명령	기안		○			
	라. 공사, 용역, 물품 착·준공계 통보	기안		○			
13.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위해촉	기안			○		
	나.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기안			○		
	다.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14.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기안		○			
15.	계약정보시스템 관리	기안		○			
16.	공유재산 관리						
	가. 공유재산 관리						
	(1)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안				○
	(2) 공유재산 가격결정 및 처분						
	(가) 예정가격 1억원 이상	기안				○	
	(나) 예정가격 1억원 미만	기안			○		
	(3) 처분(매매) 계약체결 및 해지	기안		○			
	(4) 재산 용도폐지 및 변경	기안			○		
	(5) 재산관리관 지정 및 관리전환	기안			○		
	(6)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기안		○			
	(7)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기안				○	
	나. 시유 일반재산 관리						
	(1) 시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안				○	
	(2) 시유재산 가격결정 및 처분	기안			○		
	(3) 소관청 조희 및 관리청 지정	기안		○			
	(4) 시유재산 관리전환 협의	기안		○			
	(5) 등기촉탁						

	(가) 소유권이전 등기	기안		○			
	(나) 무주재산 공고	기안			○		
	(다) 은닉, 망실, 누락재산 색출 및 관리	기안		○			
	다. 시·구유 일반재산 공통업무						
	(1) 측량 및 감정평가 실시	기안		○			
	(2) 처분(매매) 계약체결 및 해지	기안		○			
	(3) 일반재산 대부(임대)						
	(가) 신규 대부	기안		○			
	(나) 계속(갱신)	기안		○			
	(4) 변상금부과 및 관리	기안		○			
	(5) 재산 실태조사						
	(가) 실태조사계획 수립	기안			○		
	(나) 조사결과 보고	기안		○			
	(6) 재산 처분·운용 관련 세입징수 및 관리	기안		○			
	(7) 채납액 관리 및 채납자 납부 독 촉	기안		○			
	(8) 재산증감 현황 및 현재액 보고	기안				○	
	(9) 재산 처분·운용 관련 집행실적 보고	기안		○			
	(10) 공유재산 대장 및 전산관리	기안		○			
	(11) 기타 공유재산 보존 관리	기안		○			
17.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						
	가. 물품 수급관리 계획		기안			○	
	나. 물품 보관 및 출납 관리	기안		○			
	다. 물품분류 및 용도 처분 결정	기안		○			
	라.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기안		○			
	마. 물품 관리전환 및 양여	기안			○		
	바. 물품 소관전환	기안		○			
	사. 물품 양여	기안			○		
	아. 물품불용 결정						
	(1) 단가 5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기안				○	
	(2)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 만의 물품 및 생산물	기안			○		
	(3)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기안		○			
	자. 정수책정 및 배정승인	기안			○		

	차. 불용품 매각 및 폐기	기안			○		
	카. 재물조사 계획수립	기안			○		
	타. 재물조사 결과보고	기안			○		
18.	차량관리에 관한 업무						
	가. 차량관리 및 운용계획	기안			○		
	나. 관용차량 정수배정 승인	기안			○		
	다. 차종·차형 변경, 교체신청 및 조정 승인	기안			○		
	라. 차량등록 말소 운영사항 보고	기안		○			
19.	차량 운영 통제						
	가. 일일배차결정 및 명령	기안	○				
	나. 차량운행일지 및 점검	기안	○				
	다. 관외 운행의 승인	기안		○			
	라. 관용차량 유류 지급	기안	○				
20.	운전원의 관리						
	가. 운전원의 근무지정 및 지도 감독	기안		○			
21.	공공시설물의 관리						
	가. 구청사(시설, 청소) 운영 관리 계획 수립	기안				○	
	나. 구청사(시설, 청소) 관리 위탁 기관(업체) 관리 감독	기안		○			
	다. 공공시설물(건축, 전기, 기계설비 등) 유지 관리	기안		○			
	라. 승강기 유지관리	기안		○			
	마. 시설물 안전 점검	기안		○			
	바. 청사 사용 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	기안		○			
22.	지방재정공제회 관련 업무	기안		○			
23.	중·장기 동청사 신축계획 수립						
	가. 청사 신축 이전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신축사업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24.	공공시설물 설계용역 감독에 관한 사항						
	가. 설계용역 감독원 지정	기안		○			
	나. 건축 협의	기안		○			
	다. 주요 과업지시서 작성 및 변경	기안		○			
	라. 설계용역 착수 및 준공보고						
	(1) 착수보고	기안		○			

	(2) 준공보고	기안		○			
	마. 설계관련 각종 유관기관 등 협의	기안		○			
	바. 중간, 최종보고회에 관한 사항						
	(1) 보고회 개최 보고		기안				○
	(2) 보고회 결과 보고		기안			○	
25.	공공시설물 공사 감독에 관한 사항						
	가. 공사의 자재선정 및 대체사용 승인	기안		○			
	나. 실정보고 검토						
	(1) 공사금액 조정(1억원 이상)	기안			○		
	(2) 공사금액 조정(1억원 미만)	기안		○			
	다. 관급자재 수불	기안		○			
	라. 기성부분 검사 확인	기안		○			
	마. 공사착공 및 준공보고						
	(1) 공사의 착공보고	기안		○			
	(2) 준공보고	기안					○
	바.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및 전기사용신청	기안		○			
	사.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기안	○				

세 무 과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 세정일반							
	가. 세무행정 조정 및 통제		기안		○		
	나. 목표액 책정 및 전망분석		기안		○		
	다. 지방세 홍보계획 수립	기안		○			
	라. 세표작성 및 통계	기안		○			
	마. 세무공무원증 발급	기안		○			
	바. 교육 및 연찬회	기안		○			
	사. 기준 재정수입액 산정 기초자료 보고	기안		○			
2. 과세자료							
	가. 과세자료 조사 및 통, 수보 처리	기안		○			

나. 각종재산 및 과세자료 감정의뢰	기안		○			
다. 과세대장 작성 및 변동자료 정리	○					
라. 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기안		○			
마.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기안		○			
바. 자료공개 및 보안관리	기안		○			
사. 세세직권등재	기안		○			
3. 지방세 부과, 징수, 감액, 감면						
가. 지방세 부과 징수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징수 및 감액 결의						
(1) 건당 400만원 초과	기안			○		
(2) 건당 400만원 이하	기안		○			
(3) 자진신고 징수결의	기안		○			
다. (중)가산금 징수결의	기안		○			
라. 고지서 송달 및 공시송달	기안		○			
마. 징수유예 등의 결정	기안			○		
바. 재해감면 결정	기안			○		
사. 납기연장 결정	기안			○		
아. 지방세 비과세 감면신청 처리 및 확인서 발급						
(1) 건당 10,000만원 이상	기안			○		
(2) 건당 1,000만원 이상 10,000만원 미만	기안		○			
(3) 건당 1,000만원 미만	기안	○				
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기안		○			
차. 지방세 납부고지서, 독촉고지서 등 발급	○					
4. 지방세 소인 및 집계						
가. 지방세 소인	○					
나. 수납집계표 작성 및 일일결산	○					
다. 지방세 지연이체 변상금 부과	기안		○			
라. 지방세, 국세 월보 보고	기안			○		
마. 지방세 세목별 일계전 작성	○					
바. 수입일계표 작성	○					
사. 지방세 결산보고	기안			○		
아. 세입징수액 계산서 보고	기안			○		

5. 과오납금 환부 및 충당						
가. 건당 1,000만원 이상	기안			○		
나. 건당 1,000만원 미만	기안		○			
6. 지방세 자동이체						
가. 자동이체 신청 처리	○					
나. 자동이체 수납 관리	기안		○			
7.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진달	기안		○			
나. 이의신청 결정(구제)	기안			○		
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보정요구	기안		○			
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달	기안		○			
마.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	기안			○		
바. 지방세 구제사건 및 청구결정 보고	기안		○			
사. 의견진술권 접수 및 통지	기안		○			
8. 세무조사						
가. 세무조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기타 세무조사 계획	기안		○			
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안		○			
라.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안		○			
마. 세무조사 실적보고	기안		○			
바. 탈세정보 및 조세범칙 사건처리	기안			○		
9. 재산조회 및 회보	기안		○			
10. 건축물시가표준액 결정						
가. 건축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안 작성	기안		○			
나.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요청	기안		○			
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공시		기안				○
11. 재산세, 과세자료 공람 및 이의신청	기안		○			
12. 재산세, 물납, 감면신청 결정						
가. 재산세 물납 및 감면신청서 접수	기안		○			
나. 재산세 물납 허가여부 통지	기안			○		
다. 재산세 감면여부 조사결정 통지	기안		○			
13. 지방세 전산화 추진 및 관리						
가. 지방세 전산화 추진업무	기안		○			

	나. 전산기기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기안		○			
	다. 전산보안 관리	기안		○			
14.	개별주택에 관한 사무						
	가. 개별주택가격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주택가격산정 작업	기안		○			
	다. 남동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요청	기안		○			
	라. 개별주택가격 확인 요청	기안		○			
	마. 개별주택가격 검증의뢰	기안		○			
	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기안					○
	사.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	기안		○			
	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기안		○			
	자.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교부	기안		○			
	차.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기안			○		
15.	지방세 자진신고서 접수 처리	기안	○				
16.	토지잡정등급확인원		○				
17.	지방세 제증명 발급		○				
18.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수납사항 대사 보고	기안		○			
19.	수입금 출납사무	기안		○			
20.	구 금고관리						
	가. 구 금고계약		기안				○
	나. 수납대행 계약	기안		○			
	다. 수납기관 지도 감독 및 검사	기안		○			
21.	기부금품 모집 심사에 관한 사항	기안			○		
22.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에 관한 사무						
	가. 지방세 지출예산보고서 및 분석보고서 작성	기안		○			
	나. 지방세 지출현황 재정공시	기안			○		
	다. 지방세 지출보고서 편성 및 의회제출	기안				○	

세입징수과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 세정일반							
	가. 세무행정 조정 및 통제		기안		○		
	나. 목표액 책정 및 전망분석		기안		○		
	다. 지방세 홍보계획 수립	기안		○			
	라. 세표작성 및 통제	기안		○			
	마. 세무공무원증 발급	기안		○			
	바. 교육 및 연찬회	기안		○			
2. 과세자료							
	가. 과세자료 조사 및 통, 수보 처리	기안		○			
	나. 각종재산 및 과세자료 감정의뢰	기안		○			
	다. 과세대장 작성 및 변동자료 정리	○					
	라. 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기안		○			
	마.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기안		○			
	바. 자료공개 및 보안관리	기안		○			
	사. 제세직권등재	기안		○			
3. 지방세 부과, 징수, 감액, 감면							
	가. 지방세 부과 징수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징수 및 감액 결의						
	(1) 건당 400만원 초과	기안			○		
	(2) 건당 400만원 이하	기안		○			
	(3) 자진신고 징수결의	기안		○			
	다. (중)가산금 징수결의	기안		○			
	라. 고지서 송달 및 공시송달	기안		○			
	마. 징수유예 등의 결정	기안			○		
	바. 제해감면 결정	기안			○		

사. 납기연장 결정	기안			○		
아. 지방세 비과세 감면신청 처리 및 확인서 발급						
(1) 건당 10,000만원 이상	기안			○		
(2) 건당 1,000만원 이상 10,000만원 미만	기안		○			
(3) 건당 1,000만원 미만	기안	○				
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기안		○			
차. 지방세 납부고지서, 독촉고지서 등 발급	○					
카. 자동차세 연납, 분납, 감면신청 접수처리 및 고지서 발급	○					
4. 지방세 카드수납업무	기안		○			
5.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전달	기안		○			
나. 이의신청 결정(구제)	기안			○		
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보정요구	기안		○			
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전달	기안		○			
마.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	기안			○		
바. 지방세 구제사건 및 청구결정 보고	기안		○			
사. 의견진술권 접수 및 통지	기안		○			
6. 재산조회 및 회보	기안		○			
7. 지방세 체납정리						
가. 체납정리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체납자 재산압류 및 해제	기안		○			
다. 결손처분						
(1) 건당 400만원 이상	기안			○		
(2) 건당 400만원 미만	기안		○			
라. 정수촉탁	기안		○			
마. 교부청구 및 경락대금 수령	기안		○			
바. 부동산 공매	기안		○			
사. 자동차 공매	기안		○			
아. 공공기록정보등록	기안		○			
자. 체납자 형사고발 및 출국금지	기안		○			
차.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기안		○			
카. 관허사업 제한조치	기안		○			

타. 자동차 번호판 영치계획수립	기안			○		
8. 정수포상금 지급	기안			○		
9. 지방세 자진신고서 접수 처리	기안	○				
10.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수납사항 대사 보고	기안		○			
11. 세외수입						
가.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한 종합조정 및 통제		기안			○	
나. 세외수입업무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다. 세외수입 통계 및 결산	기안		○			
라. 세외수입 부과징수 지도 감독	기안		○			
마. 세외 수입 징수보고(월보)	기안		○			
바. 과징현재표 작성	기안		○			
사.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기안		○			
12. 세외수입 체납정리						
가. 체납정리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체납자 압류등록 및 해제	기안		○			
다. 압류재산 공매	기안		○			
라. 결손처분						
(1) 건당 400만원 이상	기안			○		
(2) 건당 400만원 미만	기안		○			
마. 관허사업 제한조치	기안		○			
바. 기타 체납처분	기안		○			
13. 채권현재액 보고	기안			○		

기업지원과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담	과	국	부	
	당	당	장	장	장	
1.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사업						
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사업 계		기안				○

	회수립						
	나.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기안			○		
2.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사업						
	가. 해외박람회 단체참가지원사업						
	(1) 해외박람회 단체참가지원사업 계획수립	기안			○		
	(2) 해외박람회 단체참가지원	기안		○			
	나.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지원사업						
	(1)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지원사업 계획수립	기안			○		
	(2)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지원	기안		○			
3.	해외지사화 사업						
	가. 해외지사화 사업 운영계획수립	기안			○		
	나. 해외지사화 사업 운영	기안		○			
4.	수출상담회 등 수출지원사업						
	가. 수출상담회 개최계획 수립		기안				○
	나. 수출상담회 및 수출지원 사업 운영	기안		○			
5.	중소기업 통·번역 수수료 지원사업	기안		○			
6.	기타통상업무에 관한 사항	기안		○			
7.	구청장 기업탐방	기안			○		
8.	기업 홈페이지 운영	기안		○			
9.	남동구 공동브랜드 개발 및 지원사업						
	가. 남동구 공동브랜드 개발 및 지원사업 계획 수립	기안			○		
	나. 남동구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운영	기안			○		
	다. 남동구 공동브랜드 사용 지원	기안		○			
10.	경제동향 분석	기안		○			
11.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사업						
	가.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계획 수립	기안			○		
	나.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	기안		○			
12.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사업						
	가.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사업	기안			○		

	계획						
	나.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기안		○			
13.	국제지식재산권분쟁예방 지원사업						
	가. 국제지식재산권분쟁예방 지원계획 수립	기안			○		
	나. 국제지식재산권분쟁예방 지원	기안		○			
14.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운영사무						
	가.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나.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운영	기안		○			
15.	아이디어사업화 지원사업						
	가. 아이디어사업화 지원사업 계획 수립	기안			○		
	나. 아이디어사업화 지원	기안		○			
16.	기술개발장비사용료 지원사업						
	가. 기술개발장비사용료 지원사업 계획 수립	기안			○		
	나. 기술개발장비사용료 지원	기안		○			
17.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가.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계획 수립	기안			○		
	나.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기안		○			
18.	기타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지원	기안		○			
19.	미니클러스터 구성 및 운영						
	가. 미니클러스터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나. 미니클러스터 운영	기안		○			
	다. 클러스터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계획 수립	기안			○		
	라. 클러스터 무역사절단 파견지원	기안		○			
20.	스마트공장확산지원 사업						
	가. 스마트공장확산지원 사업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스마트공장확산 지원	기안		○			
21.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안		○			
22.	노동행정에 관한 종합적인 운영 계획						
	가. 노동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기안				○

	시행						
23.	지역내 노동동향 파악 및 자료관리	기안		○			
24.	노동단체의 지도육성	기안			○		
25.	모범근로자 표창	기안			○		
26.	노동대책·쟁의에 관한 사항	기안			○		
27.	근로자 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기안			○		
28.	노동조합설립, 변경, 해산신고 처리						
	가. 노동조합(노동단체) 설립신고	기안		○			
	나. 노동조합(노동단체)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기안		○			
	다. 노동조합(노동단체) 설립신고증 재교부	기안		○			
	라. 노동조합(노동단체) 해산신고	○					
29.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가.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노사민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기안			○		
	다. 노사민정 파트너십 및 역량 강화사업 운영	기안		○			
30.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무						
	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계획	기안				○	
	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계획	기안				○	
	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기안		○			
	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진계획		기안				○
	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진	기안		○			
	바. 우수기업인상 시상 계획 수립		기안				○
	사. 남동공단 현황 관리		기안	○			
31.	공장설립에 관한 사무						
	가. 공장설립 육성 및 공업배치, 입지기준 제한		기안				○
	나. 공장설립 승인 및 변경승인	기안		○			
	다. 공장등록 및 변경등록	기안		○			
	라. 공장등록 휴·폐업	기안	○				
	마. 공장등록증명원 발급	○					

	바. 공장이전 예정확인서	○					
	사. 공장실태 조사	기안		○			
32.	우수 공산품 육성지원						
	가. 공예품개발업체(개인) 장려금 지원	기안		○			
	나. 공예품경진대회 홍보 및 참가 신청	기안		○			
	다. 공예·공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기안	○			
	라. 우수공산품 전시장 관리	기안		○			
3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단속 계획(연간)		기안		○		
	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기안		○			
	다. 과태료 처분 및 징수	기안		○			
34.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	기안		○			
	나. 과태료 부과·징수·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	기안		○			
	다.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및 관련사항 공포	기안		○			
35.	계량기에 관한 사무						
	가. 계량업무 추진계획		기안		○		
	나. 계량기 정기검사 계획수립	기안		○			
	다. 계량기 정기검사 연기신청	○					
	라. 계량기 정기검사 소재장소 검사신청	○					
	마. 계량기 수시검사 계획수립	기안		○			
	바. 계량기 검사용 기준기 사후관리	기안		○			
	사. 계량기 상품제출 요구서	기안		○			
	아. 계량기 제작업 등록 및 변경신고	기안		○			
	자. 계량기 수리업 등록 및 변경신고	기안		○			
	차. 계량기 증명업 등록 및 변경신고	기안		○			
	카. 계량기(제작,수리,증명)업 등록증 재교부신청	기안		○			
	타. 과태료처분 및 징수	기안		○			

	파.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의 제작, 수입에 관한 사항	기안		○			
36.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무						
	가. 일반용 전기설비 기준적합명령	기안		○			
	나. 손실보상의 재정신청	기안		○			
	다. 타인의 토지 등 임시사용허가	기안		○			
	라.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기안		○			
	마. 장애식물의 이식 벌채허가	기안		○			
37.	승강기 안전관리 및 행정처분						
	가. 승강기의 운행정지 명령	기안		○			
	나.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	기안		○			
	다.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기안		○			
38.	산업단지 관리업무	기안		○			
39.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가.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전시판매장 운영	기안		○			
40.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가.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명령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표·교환·수리 등의 명령	기안		○			
	나.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생활경제과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담	과	국	부	
	당	당	장	장	장	
1.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관한 사무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에 관한 사무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위한 종합 추진계획 수립		기안				○
	(2)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기안					○
	(3)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신청	기안			○		
	(4)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추진	기안		○			
	(5)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계획수립	기안					○
	(6)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	기안			○		
	(7)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기안		○			
	나. 전통시장 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사무	기안				○	
	다. 전통시장 인정등록에 관한 사무						
	(1) 전통시장(인정시장) 등록, 취소	기안			○		
	(2)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서 교부, 재발급	기안		○			
	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무						
	(1) 골목형 상점가 지정, 취소	기안			○		
	(2)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교부, 재발급	기안		○			
	마.상인회 등록에 관한 사무						
	(1) 상인회 등록	기안			○		
	(2) 상인회 변경, 취소	기안		○			
	(3) 상인회 등록증 교부, 재교부	기안		○			
	바. 임시시장 개설에 관한 사무						
	(1) 임시시장 개설 허가	기안			○		
	(2) 임시시장 등록증 교부, 재교부	기안		○			
	사.시장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무						
	(1) 시장관리자 신청, 변경, 취소	기안		○			
	(2) 시장관리자 지정서 교부, 재교부	기안		○			
	아.전통시장 소액대출 관련 사무						
	(1) 전통시장 소액대출 관련	기안					○

2.	신규 및 연장 협약 체결 (2) 전통시장 소액대출 해지 관련 사무	기안			○		
	자. 기타 시장 일반에 관한 사항	기안		○			
3.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무						
	가. 시장정비사업 계획수립		기안				○
	나. 시장정비사업 추진 위원회 승인						
	(1) 사업추진위원회구성 승인	기안			○		
	(2) 사업추진위원회구성 변경 승인	기안		○			
	다. 사업추진계획 승인 신청				○		
	라. 조합에 관한 사항						
	(1) 조합설립 인가(변경,해산)	기안			○		
	(2) 조합설립 인가(경미한 변경)	기안		○			
	(3) 그 밖에 조합에 관한 사항	기안		○			
	마.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1) 관련부서 협의	기안		○			
	(2)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 중지, 폐지)	기안			○		
	(3) 사업시행계획인가(경미한 변경)	기안		○			
	(4) 공람 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	기안		○			
	바. 시장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의 인가						
	(1) 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 중지, 폐지)	기안			○		
	(2) 관리처분계획 인가(경미한 변경)	기안		○			
	(3) 공람 공고 및 주민의견 청 취	기안		○			
	사. 시장정비사업 준공인가						
	(1) 준공인가신청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	기안		○			
	(2) 준공인가	기안			○		
	아. 그밖의 정비사업과 관한 사항	기안		○			
	대규모점포에 관한 사무						
	가.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기안			○		

	나. 대규모점포 변경 등록	기안		○			
	다. 대규모점포 관리자 신고	기안		○			
	라. 휴업,폐업 및 영업개시 등 신고	기안		○			
	마. 등록취소	기안		○			
	바. 대규모점포에 대한 행정처 분	기안		○			
4.	사. 대규모점포 등록에 따른 결 격사유 조회	기안		○			
	지역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가. 지역물가안정 종합대책 수 립시행		기안				○
	나.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기안				○
	다. 물가안정지도단속 업무	기안		○			
	라. 물가안정 시책추진	기안			○		
	마. 착한가격업소 운영계획수립	기안			○		
	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기안		○			
	사. 지방물가조사 모니터링 운영계획수립	기안			○		
	아. 생활필수품 및 개인서비스 업소 물가조사 공표	기안		○			
5.	상거래질서 지도단속 및 소비자 보호						
	가. 가격표시업소 지정 및 감독	기안		○			
	나. 할부거래(방문판매포함)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기안		○			
	다. 부정경쟁방지업무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라.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사무	기안		○			
	마.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	기안		○			
	바. 위조상표단속	기안		○			
6.	대부업 등록에 관한 사무						
	가. 대부업 단속 및 점검계획 수립	기안		○			
	나. 대부업 등록·폐업·변경 신고(갱신)	기안		○			
	라. 대부업 지도·감독	기안		○			
	마. 고발, 행정처분(과태료부과, 등록 취소)	기안		○			
7.	담배소매업에 관한 사무						
	가. 담배소매인지정신청	기안		○			
	나. 담배소매업 휴·폐업신고	○					

	다. 담배소매인 지정서 재발급 신청	○					
	라. 담배소매인영업소 위치변경 신고	기안		○			
	마. 결격사유조치	○					
	바. 행정처분	기안		○			
8.	방문판매업에 관한 사무	기안		○			
	가. 방문판매업신고	기안		○			
	나. 방문판매업 휴·폐업·영업 재개신고	기안	○				
	다. 방문판매업 변경신고	기안		○			
	라. 행정처분	기안		○			
9.	전화권유판매업에 관한 사무						
	가.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기안		○			
	나.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기안		○			
	다. 전화권유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 신고	기안	○				
	라. 행정처분	기안		○			
10.	통신판매업에 관한 사무						
	가. 통신판매업 신고	기안		○			
	나.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기안		○			
	다. 통신판매업 휴·폐업·영업 재개 신고	기안	○				
	라. 행정처분	기안		○			
11.	세마음금고 인가 및 지도관리						
	가. 인가		기안			○	
	나. 취소		기안			○	
	다. 정관변경 등 합병분할 인가	기안			○		
	라. 청산인의 청산사무 승인	기안		○			
	마. 지도육성 및 감독	기안		○			
12.	가스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기안				○	
13.	고압가스에 관한 사무						
	가. 고압가스 제조, 저장, 판매 허가 및 변경허가	기안		○			
	나. 고압가스 제조 신고, 변경신고	기안		○			
	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기안	○				
	라.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	○					

	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허가·등록 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처분, 고발	기안		○			
	바. 고압가스 관련 기준고시 제정 및 개정		기안			○	
	사. 각종 보고 명령 및 검사	기안		○			
	아. 위해방지 조치명령	기안		○			
	자. 가스공급 중지신고	기안		○			
	차. 고압가스 사업, 저장소사용 개시, 중단, 폐지, 재개 신고	기안	○				
	카. 결격사유조치	기안	○				
	타. 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 등록 및 변경등록	기안		○			
	파.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이하 "용기 등"이라 함)의 제조등록, 변경등록	기안		○			
	하. 안전관리규정 검토 및 변경 명령		기안	○			
	거. 용기 등의 수집, 검사에 따른 결함용기의 회수,교환,환불 및 공표명령	기안		○			
	너. 과태료 부과정수	기안		○			
	더. 고압가스 사업소 지도 점검	기안		○			
14.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사무						
	가. 액화석유가스충전, 집단공급, 판매사업 및 저장소 설치허가	기안			○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집단공급, 판매사업 및 저장소설치 변경허가, 변경신고	기안		○			
	다.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	기안		○			
	라.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	○					
	마.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 위반 허가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처분, 고발	기안			○		
	바. 지위승계 신고	기안		○			
	사. 액화석유가스 관련 허가기준 고시의 제정 및 개정		기안			○	
	아. 각종 보고 명령 및 검사	기안		○			
	자. 과태료 부과정수	기안		○			
	차. 위해방지 조치명령	기안		○			

	카.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기안		○			
	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자의 공급규정 신고 및 변경신 고	기안		○			
	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자의 공급규정 변경명령	기안		○			
	하. 액화석유가스 중전사업 영 업소 설치 허가, 변경허가, 변경 신고	기안		○			
	거. 가스공급 중지신고	기안		○			
	나. 안전관리규정 검토 및 변경 명령	기안		○			
	더. 사업, 저장소 사용 개시, 중 단, 폐지, 재개 신고	기안	○				
	러. 결격사유조치	기안	○				
	머. 가스용품제조 허가 및 변경 허가, 변경신고	기안		○			
	버. 가스용품 수집, 검사에 따른 가스용품의 회수,교환,환불 및 공표 명령	기안		○			
	서. 액화석유가스 사업소 지도 점검	기안		○			
15.	도시가스에 관한 사무						
	가. 도시가스 공사계획 (변경)승 인	기안		○			
	나. 도시가스 공사계획 (변경)신 고	기안	○				
	다. 가스공급시설의 임시 사용	기안		○			
	라.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기안		○			
	마. 특정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및 연장승인	○					
	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행정 처분 및 고발	기안			○		
	사.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과태 료 처분	기안		○			
	아. 도시가스시설 시공자 및 공 사계획 승인 업체 가스 사용시 설에 대한 지도감독, 검사, 점 검, 처분 및 사후관리	기안		○			
	자. 설치공사, 변경공사 등에 따 른 시공감리 등 사후관리	기안		○			
	차. 결격사유조치	기안	○				
	카.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계획 수립	기안			○		

	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기안		○			
	파.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 비 용자 지원	기안		○			
16.	석유판매업에 관한 사무						
	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기안			○		
	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 록	기안		○			
	다.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 고	기안		○			
	라. 석유판매업 변경 등록(신고)	기안		○			
	마. 석유판매업 개시(휴업, 폐 업) 신고	기안	○				
	바.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기안		○			
	사. 행정처분(등록 취소 및 사 업정지, 과징금) 및 고발	기안			○		
	아.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자. 유사석유판매행위자 단속	기안		○			
	차.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판매소) 등록	기안			○		
	가.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판매소) 변경등록	기안		○			
	타. 결격사유조치	기안	○				
	파. 주유소 등록 관련 고시 제 정 및 개정		기안				○
17.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무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 계 획		기안			○	
	나.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 계획	기안				○	
	다. 검사대상기기 검사 및 사후 관리, 행정처분	기안		○			
	라. ESCO사업 관련 업무 관리 및 지원	기안				○	
	마. 탄소중립프로그램 운영	기안		○			
18.	지역에너지 관련 사무						
	가. 지역에너지 사업 계획 수립	기안				○	
	나.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기안			○		
19.	LED 조명기기 관련 사무						
	가. LED 조명기기 교체사업 계 획 수립	기안			○		
	나. LED 교체 사업 추진	기안		○			
20.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무						

	가.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수립	기안				○	
	나. 공공기관 및 민간건물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요조사	기안		○			
	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기안				○	
	라. 신재생에너지 민간투자사업 유치 및 추진	기안				○	
	마.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수립 및 추진	기안				○	
	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추진	기안				○	
	사. 신재생에너지 일반보급사업 추진	기안				○	
	아. RPS 사업 추진	기안				○	
21.	전기자동차 관련 사무						
	가. 전기자동차 보급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전기자동차 구매 추진	기안				○	
	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추진	기안				○	
	라. 전기자동차 수요조사 및 배부	기안				○	
22.	에너지 복지 관련 사무						
	가. 취약계층 연탄쿠폰 지급	기안		○			
	나.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기안		○			
	다.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추진	기안		○			
	라.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 추진	기안		○			
	마. 저소득층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추진	기안		○			
	바. 전기,도시가스요금 지원사업 추진	기안		○			
	사. 저소득층 난방연료 지원사업 추진	기안		○			
	아. 에너지바우처 사업	기안		○			
23.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추진						
	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실시계획 수립	기안				○	
	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특별회계 관리	기안		○			
	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	기안		○			
	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기안				○

24.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 업무(인허가관련 업무 등)	기안		○			
25.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 및 운영						
	가. 시설물 유지 및 관리						
	(1) 유지관리 계획 수립	기안				○	
	(2) 공용시설(건축, 전기, 기계설비 등) 유지 관리	기안		○			
	(3) 관리 위탁 기관(업체) 관리 및 감독	기안		○			
	(4) 시설물 점검(법정, 일상) 용역 계약 및 감독	기안		○			
	(5) 시설물 안전점검	기안			○		
	나. 사용수익허가 및 세입징수 관리						
	(1) 어시장 관리 및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2) 사용자 지위승계 계획 수립		기안			○	
	(3)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기안		○			
	(4) 사용자 추가선정	기안			○		
	(5) 세입(사용료 및 관리비 등) 징수 및 관리	기안		○			
	(6) 변상금 부과 및 관리	기안		○			
	(7) 체납액 관리 및 체납자 납부 독촉	기안		○			
	다. 재산사용 관리 감독 및 허가조건 위반 처분 등에 관한 사무						
	(1)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보고	기안					○
	(2) 허가조건 및 관리운영협약 위반 처분	기안			○		
	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편의시설 활성화						
	(1) 편의시설 활성화 및 운영 지원 계획 수립		기안				○
	(2) 편의시설 활성화 및 운영 지원 사업 세부 사업계획 수립	기안			○		
	(3) 편의시설 활성화 및 운영 지원 사업 시행	기안		○			
	마.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1) 활성화 지원사업 종합 추진계획 수립		기안				○
	(2)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계획	기안				○	

회 수립						
(3)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기안			○		
(4)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기안		○			
바.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소비 자 신고센터 운영						
(1)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 계 획 수립		기안				○
(2) 접수 민원 처리 및 이관	기안		○			

농축수산물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담	과	국	부	
	당 자	당 장	장	장	구 청 장	
1. 농지 보전 및 관리						
가. 농지전용(일시전용) 협의	기안		○			
나. 농지원부 작성관리	기안	○				
다. 농지원부 발급	○					
라.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협의	기안		○			
마.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기안	○				
바. 자경 증명발급	기안	○				
사. 농지이용실태조사	기안		○			
아. 농지이용계획 수립 및 추진		기안		○		
자. 농지불법 전용단속	기안		○			
차. 농지조성비 부과	기안		○			
2. 농업인 육성지원						
가. 후계농업인 선정	기안		○			
나. 농업인단체 사업지원		기안		○		
다.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발급	○					
3. 식량작물 생산 및 구조개선						

가. 식량작물 생산계획 수립	기안				○	
나. 고품질 쌀생산시책추진	기안			○		
다. 토양개량제 공급	기안		○			
라. 인공상토공급	기안		○			
마. 농촌일손돕기추진	기안		○			
4. 농작물병해충방제						
가. 병해충공동방제계획수립	기안			○		
나. 공동방제용 농약공급 지원	기안		○			
다. 병해충 피해조사	기안		○			
5. 농업 기계화 사업						
가. 공급 계획수립	기안		○			
나. 농기계 보유량 조사	기안		○			
다. 농기계사후관리업소 등록	기안		○			
6. 농업재해대책 추진						
가. 농업재해대책계획수립 추진	기안			○		
나. 농업재해발생 피해조사	기안		○			
다.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기안				○	
7. 전작, 원예, 특용작물 생산 지원 등에 관한 사무						
가. 실 수확량 조사	기안	○				
8. 농림사업 실시업무						
가. 농림사업계획 수립	기안			○		
나. 농림사업 신청접수	기안		○			
다. 사업대상자 심의 선정	기안		○			
9. 농림수산물식품부 소관 국유 재산관리						
가. 국유재산 실태조사	기안		○			
나.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기안		○			
다. 국유재산 무상귀속 및 양여	기안		○			
라. 관리청 지정 및 변경요청	기안		○			
마. 국유재산 용도폐지	기안		○			
10. 양곡관리업무						

	가. 공공비축미곡계획수립	기안			○		
	나. 공공비축미곡약정	기안		○			
	다. 공공비축미곡실적보고 및 정산	기안		○			
11.	양곡유통관리						
	가. 소규모도정업 신고처리	기안		○			
	나. 도정업 휴·폐업 신고처리	기안	○				
	다. 양곡가공업 등록처리	기안		○			
	라. 양곡가공업 휴·폐업 신고처리	기안	○				
	마. 양곡부정유통단속	기안		○			
12.	농약관매업 등록관리						
	가. 농약관매업 신고처리	기안		○			
	나. 농약관매업 휴·폐업 신고처리	기안	○				
13.	농약, 비료, 종자 부정유통 단속						
	가. 부정유통단속계획 수립	기안		○			
	나. 위반자 조치	기안		○			
14.	농산물 유통개선						
	가. 농산물유통시설지원계획 수립		기안		○		
	나. 농산물유통관리 사후관리	기안		○			
	다. 농산물유통시설 조사	기안		○			
15.	농산물 직거래						
	가. 직거래장터운영계획수립	기안					○
	나. 직거래장터 운영	기안		○			
16.	농산물(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관한 업무						
	가. 원산지표시단속계획 수립	기안			○		
	나. 원산지표시위반자 조치	기안		○			
17.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지원						
	가.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지원계획수립	기안			○		
	나.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기안		○			
	다. 지원대상자 선정	기안		○			

	라. 보조금 정산보고	기안		○			
18.	기본형 공익직접 지불사업						
	가. 지원대상자 선정	기안		○			
19.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 지원 사업						
	가.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 계획수립	기안		○			
	나. 지원대상자 선정	기안		○			
20.	곤충산업 지원업무						
	가. 곤충산업 신고	기안		○			
21.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						
	가. 유기질비료 지원계획 수립	기안			○		
	나. 신청서 접수	○					
	다. 유기질비료 심의 선정	기안		○			
22.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 학자금지원 계획수립	기안			○		
	나. 지원대상자 선정	기안		○			
	다. 보조금 정산보고	기안		○			
23.	농림분야 비상계획 업무						
	가. 계획수립	기안					○
24.	축산진흥						
	가. 가축증식 및 사업지도	기안		○			
	나. 종축의 대여 및 교환	기안		○			
	다. 송아지생산안전제 추진	기안		○			
	라. 축사환경개선관리	기안		○			
	마. 가축통계조사 계획 및 결과	기안		○			
	바. 자가가축사실확인	○					
25.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가. 가축방역 계획 수립	기안					○
	나. 가축방역 계획에 따른 시행	기안		○			
	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계획 수립	기안			○		
	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시행	기안		○			

	마. 방역대책 협의	기안		○			
	바. 살처분 명령	기안		○			
	사. 도태의 권고	기안		○			
	아. 축사 등의 소독실시 명령	기안		○			
	자. 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및 제한명령	기안		○			
	차. 가축의 검사, 주사, 약물목욕, 투약	기안		○			
	카. 가축의 격리, 이동제한, 억류 및 교통차단	기안		○			
	타.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발굴금지	기안		○			
	파. 죽거나 병든 가축의 보고	기안		○			
	하.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위반과태료 부과	기안		○			
	파.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기안			○		
26.	공수의에 관한 사항						
	가. 공수의 위촉	기안			○		
	나. 공수의 업무지도 감독	기안		○			
27.	조사료생산기반에 관한 사항						
	가. 조사료생산기반시설 계획수립 및 시행	기안		○			
	나. 사료작물 재배관리	기안		○			
	다. 초지조성허가	기안		○			
	라. 손실보상청구신청	기안		○			
	마. 초지 안에서의 제한행위 관리	기안		○			
	바. 초지전용허가(신고) 관리	기안		○			
	사. 대체초지조성비 부과 관리	기안		○			
	아. 초지조성 관리실태 조사	기안		○			
28.	축산업 지원관리						
	가. 가축인공수정소 신고처리	기안		○			
	나. 가축인공수정소 지도감독	기안		○			
	다. 부화업 신고	기안		○			
	라. 종축업 신고	기안		○			

	마. 부화업, 종축업 지도감독	기안		○			
	바. 가축사육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					
29.	동물병원에 관한 사항						
	가. 동물병원 개설신고	기안		○			
	나. 동물병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기안		○			
	다. 동물병원 휴·폐업 신고	○					
	라. 동물병원 지도감독	기안		○			
	마. 동물병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및 징수 포함)	기안		○			
30.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	○					
	나.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	○					
	다.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해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 현황(변동) 신고	○					
31.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에 관한 사항						
	가. 동물약품 개설 등록	기안		○			
	나. 동물약품 개설 신고	기안		○			
	다. 동물약품등록(신고)사항 변경 신청(신고)	기안		○			
	라.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	기안		○			
	마. 동물용의약품 관리약사 변경 신고	기안	○				
	바.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신고	기안		○			
	사. 동물용의약품 등 허가(신고)사항 변경신청(신고)	기안	○				
	아. 허가(신고, 등록)증 재교부	○					
	자. 폐업, 휴업, 재개업신고	○					
	차.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및 징수 포함)	기안		○			
32.	축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축산물 관리 계획 수립	기안			○		

	나.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기안		○			
	다. 축산물 보관업 허가	기안		○			
	라. 축산물 운반업 신고	기안		○			
	마. 축산물 판매업 신고	기안		○			
	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	기안		○			
	사. 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기안		○			
	아. 신고사항 변경신고	기안		○			
	자. 허가(신고)증 재교부 신고	○					
	차. 휴·폐업 신고	○					
	카. 부정축산물 지도단속	기안		○			
33.	다. 행정처분(과태료,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포함)	기안		○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가. 유기동물 보호처리 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34.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가. 유기동물 보호 계획 수립	기안			○		
	나. 유기동물 보호 업무			○			
	다. 유기동물 보호공고	○					
35.	동물등록에 관한 사항						
36.	가. 동물등록제 계획 수립	기안			○		
	나. 동물등록제 운영			○			
	다. 동물등록 신규신청	기안	○				
	라. 동물등록 변경신고	기안	○				
	마. 등록증 재발급	○					
	동물 관련 영업 허가·등록에 관한 사항						
	가. 동물 관련 영업 신규허가·등록	기안		○			
	나. 동물 관련 영업 변경신고	기안		○			
	다. 휴·폐업신고	○					
	말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7.	가. 말산업육성지원 계획수립	기안			○		

	나.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기안		○			
	다. 지원대상자 선정	기안		○			
	라. 보조금 정산보고	기안		○			
38.	연안(구획)어업에 관한 사항						
	가. 연안어업허가	기안		○			
	나. 구획어업허가	기안		○			
	다. 종묘생산어업허가	기안		○			
	라. 육상해수양식어업	기안		○			
	마. 어업허가 유예신청	기안		○			
	바. 어업허가 지위승계	기안		○			
	사. 어업변경허가 신청	기안		○			
	아. 한시어업	기안		○			
	자.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기안	○				
	차. 어업(폐업·휴업·휴업연장·개시)신고	기안	○				
	카. 어업신고	기안		○			
	타. 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 신청	기안		○			
	파. 어업생산실적 조사	기안		○			
	하. 어업허가증 재발급	기안	○				
39.	수산물가공업에 관한 사항						
	가. 수산물가공업 신고	기안		○			
	나.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 재발급	기안	○				
	다. 수산물가공업 생산실적 보고	기안		○			
	라. 수산물가공업 신고사항의 보고	기안		○			
	마. 행정처분	기안		○			
	바.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 재발급	기안	○				
	사. 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	기안	○				
40.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가. 내수면 어업허가	기안		○			
	나. 내수면 어업신고	기안		○			
	다.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기안	○				

41.	라. 신고사항 변경신고	기안	○				
	마. 어업생산량 조사	기안		○			
	바.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처분사항 보고	기안		○			
	사. 내수면어업 지도단속	기안		○			
	어선 허가(등록, 신고)사항						
	가. 어선 건(개)조 (발주)허가	기안		○			
	나. 어선 건(개)조 (발주)허가사항 변경	기안	○				
	다. 어선등록 신청	기안		○			
	라. 어선변경등록 신청(소유자, 선적항 등)	기안		○			
	마. 어선변경등록 신청(기관, 주소 등)	기안	○				
	바. 어선등록 말소 신청	기안		○			
	사. 등록사항 정정신청	기안	○				
	아. 증서등 재발급 신청	기안	○				
	자. 어선원부 열람 및 등·초본 발급신청	○					
	차. 선적항 변경지정 가능여부 조회	기안		○			
	가. 소형선박 저장권 설정 등록	기안		○			
	다. 소형선박 저장권 말소 등록	기안		○			
	파. 소형선박 저장권 변경·이전 등록	기안	○				
	하. 어선표지판 교부신청 및 봉인	기안		○			
42.	수산시설에 관한 사항						
	가. 관리상황 조사 및 보고	기안		○			
	나. 시설의 활용 및 보조금 반환	기안		○			
	다. 수산시설 사업의 추진	기안		○			
	라. 투·융자 추진상황 보고	기안		○			
43.	마. 통합 수산사업의 추진	기안		○			
	어업진흥 및 어장관리						
	가. 어업인 소득증대사업 개발 및 지원		기안		○		
	나.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 및 징수	기안		○			

	다.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	기안		○			
	라.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	기안		○			
	마. 어선장비 및 설비 개량 사업	기안		○			
	바. 어장정화	기안			○		
	사.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기안		○			
	아. 수산유통 처리시설 사업	기안		○			
	자. 어업인 육성지원 사업	기안		○			
	차. 어업인 확인서 발급	기안	○				
	어선관리에 관한 사항						
44.	가.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및 징수)	기안		○			
	나. 방치어선 및 동원어선의 관리	기안		○			
	다. 어선등록 및 건(개)조 허가사항 보고	기안		○			
	라. 어선수검 미수검(검사) 독려	기안		○			
	마. 해난사고 어선에 대한 사고수습대책 수립, 대책본부 구성 운영		기안			○	
	어업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가. 불법어업 지도단속	기안		○			
45.	나. 행정처분(과태료,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포함)	기안		○			
	다. 불법어업 단속상황 보고	기안		○			
	라. 어업허가 및 신고 처분 상황 보고	기안		○			
	수산사범 사건처리						
46.	가. 수산사범 사건송치(구속, 불구속) 및 검사 지휘품 신		기안			○	
	나. 범죄인지 보고	기안		○			
	다.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					
	라. 출석요구	기안		○			
	마. 범죄경력 조회	기안		○			
	바. 기타 수사상황 보고	기안		○			
	남시어선업 및 남시터업에 관한 사항						
47.	가. 남시어선업의 신고	기안		○			

	나. 낚시어선업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기안	○				
	다. 낚시어선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기안	○				
	라.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수습대책 수립	기안			○		
	마. 낚시어선의 안전점검과 지도단속	기안		○			
	바. 행정처분(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포함)	기안		○			
	사. 낚시어선업 신고사항 보고	기안		○			
	아. 낚시터업 허가(등록)	기안		○			
	자. 낚시터업 변경허가(등록)	기안		○			
	차. 낚시터업 지위승계	기안		○			
	카. 낚시터업 폐업(휴업, 영업제개, 휴업기간연장)	기안	○				
48.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가. 수산동식물 이식승인	기안		○			
	나. 수산물원산지 지도단속	기안		○			
	다. 수산물원산지 과태료 부과처분	기안		○			
	라. 수산물 안전성 조사	기안		○			
	마. 수산전통식품의 개발	기안			○		
	바.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관리	기안		○			
49.	어항개발에 관한 사항						
	가. 어항개발계획수립		기안				○
	나. 어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기안				○
	다. 어항시설의 유지, 관리	기안		○			
	라.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기안			○		
	마. 사용료징수 및 변상금 부과	기안		○			
	바. 행정처분	기안		○			
50.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가.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기안		○			
	나. 배분량 할당 승인	기안		○			
	다. 포획, 채취실적 보고	기안		○			
	라. 보호수면의 지정 및 해		기안			○	

	제						
	마. 어업질서확립추진계획	기안		○			
	바. 위생관리를 위한 어업제한		기안			○	
	사.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관리	기안		○			
51.	어획물운반업에 관한 사항						
	가. 어획물운반업 등록	기안		○			
	나. 어획물운반업 등록사항 변경	기안	○				
	다. 어획물운반업 폐지	기안	○				
	라. 어획물운반업 휴업	기안	○				
	마. 어획물운반업 휴업기간 중의 재개	기안	○				
	바. 어획물운반업 재발급	기안	○				

복지정책과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담	과	국	부	
		당	당	장	장	구 청 장	
1.	사회복지 시책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무	기안			○		
2.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무						
	가. 사회복지법인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	기안			○		
3.	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사무						
	가. 시설의 운영지원	기안		○			
	나. 시설의 지도 및 감독	기안		○			
	다. 소재지 변경 허가	기안		○			
	라. 시설의 설치허가·폐지 또는 사업정지 신고	기안			○		
	마. 명칭 또는 시설의 장 변경 신고	기안		○			
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관한 사무						
	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운영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5.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무						
	가.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저소득가구 위문 실시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6.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전산 관리에 관한 사무						
	가. 보건복지행정 전산사용 권한 승인 및 권한 부여에 관한 사항	○					
7.	국가보훈단체 지원 및 의사상자에 관한 사무						
	가.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 총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보훈단체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보훈단체 보조금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에 관한 사항	기안		○			
	마.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에 관한 사항	기안		○			
	바. 보훈회관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사. 의사상자에 관한 사항	기안		○			
8.	지역자원의 발굴·연계·관리						
	가. 자원발굴 종합 계획 수립		기안				○
	나. 지역자원 현황 조사 및 관리	기안		○			
	다. 자원개발 및 연계	기안			○		
	라. 민간 후원금 관리 업무	기안		○			
9.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활성화 운영						
	가. 운영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사업자 신고	기안		○			
10.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가.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대상자 결정 및 통지	기안		○			
	나.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지도점검 및 관리	기안			○		
	다. 수급자무료간병서비스사업 연계	기안		○			
11.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무						
	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기안				○

12.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총괄 업무						
	가. 동 복지허브화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1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가. 대표협의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실무협의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실무분과사업 협업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1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						
	가. 위원 위·해촉	기안		○			
	나. 동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기안		○			
15.	희망복지사업단 시책 홍보 및 교육	기안			○		
16.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무						
	가. 통합사례관리사업 종합추진계획수립		기안				○
	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종결	기안		○			
	다.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계획수립	기안	○				
	라.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기안		○			
	마. 민·관 사례관리 협의체 운영 및 관리	기안			○		
	바. 사례관리 사업비 관리	기안		○			
17.	방문형서비스사업 연계						
	가. 방문형서비스사업 연계계획 수립	기안			○		
	나. 방문형서비스 현황 조사	기안		○			
	다. 협력 회의 운영	기안		○			
18.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사무						
	가. 긴급복지지원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결정	기안		○			
	다. 긴급복지 사업비 지원	기안		○			
	라.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사후관리	기안		○			
	마.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기안					○
19.	지역자활지원계획 및 운영						
	가.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상담		기안				○
	나. 지역자활지원협의체 운영		기안		○		
20.	자활근로사업 추진						
	가. 자활사업 수행기관 지도 점검	기안			○		

나. 자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자활프로그램(교육 등) 운영 지원	기안		○			
라.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지원	기안		○			
마.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배치 및 관리	기안		○			
바. 자활근로사업 위탁 의뢰, 참가 결과 관리	기안		○			
사. 자활사업참여 확인서, 급여명세서, 이직확인서 등 발급	○					
아. 자활사업참여자 사업장 관리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등	○					
자.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및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추진	기안	○				
21.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관리						
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급	기안		○			
나. 운영비 정산 보고	기안		○			
다. 지역자활센터 지도 감독	기안			○		
22. 조건부 수급자 관리						
(1) 조건부수급자 자활지원계획 수립 상담	기안		○			
(2) 조건제시유예자 결정 및 관리	기안		○			
(3) 조건불이행자 결정 및 관리	기안		○			
23.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						
가. 희망키움통장 I 사업 추진						
(1) 희망키움통장 I 사업 해지 관련 서류 접수	기안	○				
(2) 희망키움통장 I 가입자 결정처리 및 통보	기안		○			
(3) 희망키움통장 I 만기 및 환수해지 결정 처리	기안		○			
(4) 희망키움통장 I 근로소득 장려금 생성	기안		○			
(5) 희망키움통장 I 가입자 변동사항 관리	기안		○			
나. 내일키움통장 사업 추진						
(1) 내일키움통장 사업 해지 관련서류 접수	기안	○				
(2)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결정처리 및 통보	기안		○			
(3) 내일키움통장 만기 및 환수해지 결정 처리	기안		○			
(4) 내일키움통장 근로 장려금 생성	기안		○			
(5)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변동사항 관리	기안		○			
(6)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자립역량 강화교육	기안			○		
다. 희망키움통장II 사업 추진						

(1) 희망키움통장II 해지관련 서류 접수	기안	○				
(2) 희망키움통장II 가입자 결정처리 및 통보	기안		○			
(3) 희망키움통장II 만기 및 환수해지 결정 처리	기안		○			
(4) 희망키움통장II 근로소득 장려금 생성	기안		○			
(5) 희망키움통장II 가입자 변동사항 관리	기안		○			
(6) 희망키움통장II 가입자 자립역량 강화교육	기안			○		
라.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추진						
(1) 청년희망키움통장 해지관련 서류 접수	기안	○				
(2)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결정처리 및 통보	기안		○			
(3) 청년희망키움통장 만기 및 환수해지 결정 처리	기안		○			
(4)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공제금 생성 및 지급자 결정 처리	기안		○			
(5)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기안		○			
(6)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변동사항 관리	기안		○			
24. 자활기금 운용 관리						
가.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자활사업 참여자 복지증진 사업 지원	기안		○			
다.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업비 지원	기안		○			
라. 자활사업 자금 지원	기안			○		
마. 자활기금 융자 관리	기안		○			
25. 생업자금 융자사업 관리	기안		○			

사회보장과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장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사무(총괄)						
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 보장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1) 복지대상자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 적용	○					

및 관리						
(2) 기초생활수급자 신규조사 및 결정 통지	기안		○			
(3) 한부모가족 신규조사	기안		○			
(4) 기초노령연금 신규조사	기안		○			
(5) 차상위급여대상자 신규조사	기안		○			
(6) 장애인연금 신규조사	기안		○			
(7) 회귀난치성 질환자 신규조사	기안		○			
(8) 장애인 자녀학비 신규조사	기안		○			
(9) 아동수당 신규조사	기안		○			
(10)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기안		○			
다. 복지대상자 중지 및 보장변경 결정 통지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범정부사업 신규조사에 관한 사항						
(1) 초중고 교육비 신규조사	기안		○			
(2) 임대주택 신규조사	기안		○			
(3) 희망키움통장Ⅱ 신규조사	기안		○			
(4) 국가유공자 신규조사	기안		○			
마. 복지대상자 확인조사(월별, 정기) 관련 사항 총괄	기안		○			
2.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관한 사무						
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조사	기안		○			
3.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가. 기초생활보장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보장비용 정수(부정수급자)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생계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마. 해산·장제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바.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사.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기안		○			
아. 기타 수급자격조사와 정보공유에 관한 협조사항	기안		○			
4.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가.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보장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5. 의료급여 지원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관리						

에 관한 사무						
가. 의료급여증 발급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의료급여지원대상 전산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의료급여대상자 책정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마. 의료급여 대지급금 상환통지에 관한 사항	기안		○			
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	기안		○			
사.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아. 의료급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기안		○			
자. 의료급여 대지급 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기안		○			
차. 의료급여대상자 각종 증명서 및 사실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					
카.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6. 행려자 및 행려사망자 처리						
가. 행려자 시설 입소	기안		○			
나. 시설관리 및 지도감독	기안		○			
다. 행려사망자 발생 통보	기안		○			
라.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급	기안		○			
마. 행려환자 입원	기안		○			
바. 행려환자 진단비 지출	기안		○			

노인장애인과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 노인복지						
가. 노인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효실천 및 경로행사 계획 수립		기안			○	
다. 노인건강 진단	기안		○			
라.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기안		○			
마. 장수어르신 지원	기안		○			

바. 기초(노령)연금 지원	기안		○			
사.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아.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 운영 및 지급	기안		○			
자. 노인단체에 관한 사무	기안			○		
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관 (재)지정	기안			○		
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운영 및 지원	기안		○			
타. 무료급식사업 운영 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	기안			○		
파. 무료급식사업 운영 지원	기안		○			
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기안			○		
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	기안			○		
너.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지원계획 수립	기안					○
더.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 및 지원	기안			○		
2. 장난감 수리센터 운영						
가. 장난감수리센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참여자 모집 및 관리	기안			○		
다. 급여지급 및 사업예산 관리	기안			○		
3. 노인복지시설						
가. 노인복지관 수탁기관 선정	기안					○
나.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계획 수립	기안					○
다. 경로당 운영 지원 계획 수립	기안					○
라. 경로당 운영 지원	기안			○		
마.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 운영 및 지원	기안			○		
사. 노인대학 운영 지원 계획 수립	기안				○	
아. 노인대학 운영 지원	기안			○		
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기안			○		
차. 노인복지시설 지도감독	기안				○	
카.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기안			○		
타. 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기안			○		
파. 노인복지시설 업소 신청	기안			○		
하. 노인복지시설 비용 수납신고	기안			○		
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변경)신고	○					
4.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원 및 지도점검	기안				○	
5. 장사 등에 관한 업무						
가. 묘지정비 및 운영관리	기안				○	
나. 사설묘지(종중, 문중, 가족, 개인) 설치 허가	기안				○	

다. 사설화장장 및 봉안당 설치인가		기안			○	
라. 묘지 이외의 토지 또는 타인의 묘지 등 개장 허가	기안			○		
마. 묘지 이외의 토지 또는 타인의 묘지 등 개장 신고	기안			○		
바. 사설묘지구역 변경허가	기안			○		
사. 사설화장장 및 사설봉안당 폐지허가	기안			○		
아. 사설장례식장 영염(변경) 신고	기안			○		
6. 장기요양기관 설치(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						
가. 장기요양기관 설치(지정) 신고	기안			○		
나. 장기요양기관 휴업·폐업 신고	기안			○		
다.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기안			○		
라. 장기요양기관 업소(이용) 신청	기안			○		
마. 장기요양기관 관리 및 지도감독	기안				○	
바. 장기요양기관 인력 (변경)신고	○					
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	기안			○		
7.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에 관한 사무						
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계획 수립	기안				○	
나.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및 일반	기안			○		
다. 남동사할린센터 운영 및 관리	기안			○		
8.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무						
가.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기안				○
나.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기안				○
다. 장애인연금 및 각종 수당 지원	기안			○		
라. 장애인의료비 지원	기안			○		
마.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기안			○		
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기안			○		
사.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사업	기안			○		
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기안			○		
자. 장애인일자리 운영	기안			○		
차. 발달재활서비스사업	기안			○		
카.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기안			○		
타. 장애인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기안			○		
파. 기타 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하.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및 관리	기안		○			
	거.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기안		○			
	너.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	기안		○			
9.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가. 장애인복지관 수탁기관 선정	기안					○
	나.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	기안			○		
	다. 장애인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기안			○		
	라. 장애인복지시설(관) 운영지원	기안			○		
	마. 장애인복지시설 지도감독	기안			○		
	바. 장애인복지 시설 입소의뢰	기안			○		
	사. 장애인자립 관련 시설의 설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기안			○		
	아. 장애인자립 관련 시설 지원	기안			○		
10.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가. 장애인행복나들이사업	기안			○		
	나. 저소득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	기안			○		
	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업	기안			○		
	라. 언어발달지원 사업	기안			○		
	마.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 사업	기안			○		
	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기안			○		
	사. 장애인복지 서비스 위탁기관 지정	기안			○		
	아.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기안			○		
	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기안			○		
	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기안			○		
	카.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	기안			○		
	타. 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사업	기안			○		
1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가. 건축허가 협의 및 결과통보	기안			○		
	나. 사용승인 협의 및 결과통보	기안			○		
	다. 실태조사	기안	○				
	라.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	기안			○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기안			○		

	나. 이의신청접수 및 처리	기안		○			
	다. 압류등록	기안		○			
	라. 압류해제	기안	○				
1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추진	기안		○			

여성가족과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다.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계획 수립	기안					○
	라.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마.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위원 위.해촉	기안					○
	바. 여성친화도시 민관협력 사업	기안			○		
	사. 여성친화도시 조성 인식개선 사업	기안			○		
	아.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기안		○			
	자.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결과보고	기안					○
	차.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위·해촉	기안			○		
	카.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운영	기안		○			
	타. 여성친화도시조성 공모사업	기안					○
	파.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제 운영·관리	기안		○			
	하. 여성친화 사전검토제 운영·관리	기안		○			
2.	양성평등기반 확립						
	가. 성인지 교육	기안					○
	나. 위원회 여성위원 관리	기안		○			
	다.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계획 수립		기안				○
	라.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기안		○		

	마.여성단체 지원·육성	기안			○		
	바.여성단체협의회 운영	기안		○			
3.	여성 총무계획 수립	기안					○
4.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가.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기안		○			
	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상담소 설치 신고 및 운영	기안		○			
	다. 성폭력,가정폭력피해상담소 사업비 지원 및 정산보고	기안		○			
	라. 성폭력,가정폭력피해상담소 지도 점검	기안		○			
	마.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시책추진	기안			○		
5.	성폭력,가정폭력시설 종사자(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						
	가.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서 접수 처리	기안		○			
	나. 교육훈련시설 사업지침 시달	기안		○			
	다. 교육훈련시설 지도.점검	기안		○			
	라. 교육훈련시설 설치보고 및 훈련 실시 결과보고	기안		○			
6.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종합추진 계획 수립	기안			○		
	나.지역연대 행사 운영	기안			○		
	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라.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 위원 위·해촉	기안			○		
7.	여성안심사업 추진						
	가. 여성안심무인택배함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여성안심무인택배함 운영	기안		○			
	다. 여성아동안심지킴이집 운영	기안		○			
	라. 디지털폭력예방사업	기안		○			
8.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사업						
	가.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방지조치 결과 보고	기안		○			
	다. 성희롱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라. 성희롱심의위원회 위원 위·해촉	기안				○	
9.	성별영향평가 실시						
	가. 성별영향평가 종합추진계획 수립	기안			○		

	나.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위·해촉	기안				○	
	라.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기안		○			
	마.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 운영	기안		○			
	바.성별영향평가 공무원 특별교육	기안					○
	사. 성별영향평가 종합결과 보고	기안		○			
10.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및 관리						
	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기안		○			
	나. 저소득 한부모가정 대상 관리	기안		○			
	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기안		○			
	라. 한부모가족사업 지원	기안		○			
	마. 한부모 공동생활형 주거지원	기안		○			
	바.부자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및 관리	기안		○			
	사. 부자보호시설 지도점검	기안		○			
11.	남동구 세계주간·다문화가정의날 행사운영						
	가. 기본계획수립	기안					○
	나. 세부추진계획 추진	기안		○			
12.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지도						
	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관리	기안		○			
	나.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및 일반	기안		○			
13.	거주외국인 지원 및 민원사무						
	가. 거주외국인 지원계획 수립		기안	○			
	나. 거주외국인 실태조사	기안		○			
	다. 외국인시책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기타 거주외국인 지원 및 일반	기안		○			
	마. 남동하모니센터 운영 및 관리	기안		○			
14.	결혼중개업 관리 및 운영지도						
	가. 결혼중개업 신고 및 변경 신고	기안		○			
	나. 결혼중개업 지도감독(행정처분)	기안		○			
	다. 결혼중개업 일반 및 관리	기안		○			
15.	청소년 육성						
	가. 청소년 육성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기안				○	

16.	청소년 보호사업						
	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기안		○			
	나. 청소년 유해환경 관리	기안		○			
	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행정처분	기안		○			
	라. 과징금 부과, 징수, 체납 관리	기안		○			
	마. 과징금 결손처분(400만원 이상)	기안			○		
	바. 과징금 결손처분(400만원 미만)	기안		○			
	사. 「청소년보호법」 행정소송	기안		○			
17.	청소년 건강지원						
	가. 저소득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기안		○			
18.	청소년 복지사업						
	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기안		○			
	나.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지원	기안		○			
	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기안			○		
	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안		○			
	마.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지원	기안		○			
	바.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	기안		○			
	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	기안		○			
19.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가. 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 운영	기안		○			
	나. 청소년 참여사업 발굴 운영	기안		○			
	다. 청소년증 관련 사무	기안		○			
	라.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기안		○			
20.	청소년 활동 사업						
	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기안		○			
	나.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기안		○			
	다.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기안				○
	라. 청소년 문화축제 운영	기안		○			
	마.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지원	기안		○			
	바. 청소년 수련시설 신고 처리	기안		○			
	사.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 처리	기안		○			

아동복지과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청 장	
1.	아동친화도시 관련					
	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기안				○
	다. 아동 참여위원회 운영	기안		○		
	라. 아동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기안		○		
	마. 아동친화사업 예산분석	기안		○		
	바. 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	기안		○		
	사. 아동 참여기구 설치	기안		○		
	아. 아동권리 인식도 조사	기안		○		
	자.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해측	기안		○		
	차.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기안		○		
2.	아동복지					
	가. 아동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아동복지관련 위원회 운영	기안		○		
	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기안		○		
	라.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	기안		○		
	마. 아동복지시설 폐지 및 휴지신고	기안		○		
	바. 아동복지교사 지원	기안		○		
	사. 아동복지시설 지도감독 및 지원	기안		○		
	아. 아동급식계획수립	기안		○		
	자. 결식아동 선정, 지원	기안		○		
	차. 아동발달지원계좌 운영 및 관리	기안		○		
	카. 아동수당 지급	기안		○		
	타. 아동보호구역 지정 운영	기안		○		
3.	아동보호					

	가. 피해아동보호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아동학대 현장 조사	기안		○			
	다. 관계기관 협력	기안			○		
	라. 아동학대 예방교육 · 인식개선	기안			○		
	마. 요보호시설 아동 시설 입소	기안		○			
	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	기안		○			
	사.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기안	○				
	아. 국내입양아동 지원	기안		○			
	바. 그룹홈 지도점검 및 보조금 지원	기안		○			
4.	아이돌봄 운영지원 및 관리	기안		○			
5.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가. 설치 계획 수립	기안			○		
	나. 운영 지원	기안		○			
	다. 지도점검	기안		○			
	라. 수탁기관 심의 및 선정	기안			○		
	마. 위탁운영 협약 체결	기안					○
6.	드림스타트 사업						
	가. 드림스타트사업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운영		기안			○	
	다. 드림스타트후원기관 협약체결 및 관리	기안			○		
	라. 드림스타트센터 운영관리	기안		○			
	마.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채용	기안			○		
	바.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관리	기안		○			
	사. 분야별 서비스 연계프로그램 계획수립	기안			○		
	아. 대상아동 인테이크 및 사례관리	기안	○				
	자. 실무위킹그룹 사례회의 운영	기안			○		

보육정책과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담 당	담	과	국	부 구 청	

	자	당	장	장	장	장
1. 보육사업						
가. 보육계획 및 연간시행계획 수립		기안				○
나.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기안				○	
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	기안		○			
라. 보육시설 보조금 정산 보고	기안	○				
마. 보육상담실 운영	기안		○			
2. 영유아 복지 증진						
가. 보육시설 아동 지원	기안		○			
나.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기안		○			
다. 영유아 복지 대상자 선정	기안		○			
3.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 및 지원						
가. 보육시설 행사개최 계획 수립	기안			○		
나. 보육시설 행사운영 지원	기안		○			
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계획 수립	기안			○		
라.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기안		○			
마.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기안		○			
바.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보고	기안	○				
사. 보육시설 종사자 신원조회	기안		○			
아. 보육시설 종사자 경력증명	○					
4. 저출산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가. 출산장려금 지급	기안		○			
나. 아이낳기좋은세상 만들기 홍보 및 행사운영	기안		○			
5. 보육시설						
가. 어린이집 수(공)급 계획 수립		기안				○
나.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계획 수립	기안					○
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계획 수립	기안				○	
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	기안			○		
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	기안		○			
바. 정부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기안		○			
사. 어린이집 인가(설치, 변경)	기안		○			
아. 어린이집 신고(폐지, 휴지, 재개)수리	기안		○			

	자. 특수 보육시설 지정 및 관리	기안		○		
	차. 용자 보육시설 관리 및 지원	기안		○		
	카.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 및 관리	기안		○		
6.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					
	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획 수립	기안			○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	기안		○		
	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	기안		○		
7.	아이사랑꿈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					
	가. 아이사랑꿈터 위탁계획 수립	기안			○	
	나. 아이사랑꿈터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	기안		○		
	다. 아이사랑꿈터 지원 및 관리	기안		○		
8.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무	기안		○		
6.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가.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위탁계획 수립	기안			○	
	나.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	기안		○		
	다.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지원 및 관리	기안		○		
7.	보육시설 지도점검 계획 수립	기안			○	
8.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보고	기안		○		
9.	보육시설 행정처분					
	가. 보조금 환수 및 인적·물적 처분	기안			○	
	나. 기타 처분 (시정명령, 과태료 등)	기안		○		
10.	보육멘토 사업					
	가. 보육멘토 계획 수립	기안			○	
	나. 보육멘토 운영	기안		○		
11.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기안		○		
12.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가. 운영비 지원	기안				○
	나. 조리원인건비 지원	기안		○		
13.	인천형어린이집 지원					
	가. 인건비 지원	기안			○	
14.	급식재료공동구매 공동업체 선정 계획 수립	기안			○	

청소행정과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담	과	국	부	
	당	당	장	장	구 청 장	
1.	폐기물 처리 종합조정 계획					
	가.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청소업무 종합 조정계획		기안		○	
2.	친환경 자원환경시설에 관한 업무	기안				○
3.	환경미화원 관리, 장비의 배치 감독 및 관리					
	가. 도로 환경미화원 채용		기안			○
	나. 도로 환경미화원 사역지도 및 관리 감독	기안		○		
	다. 도로 환경미화원 청소구역 지정, 전보 및 조정	기안		○		
	라. 청소 장비의 개선 및 보강		기안	○		
	마. 청소 장비의 배치 및 관리	기안		○		
4.	환경미화원 지원에 관한 업무					
	가. 환경미화원 임금 및 단체협약 계획 수립		기안			○
	나. 환경미화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기안				○
	다. 환경미화원 노조 관련 일반 업무	기안		○		
5.	쓰레기종량제 시책추진		기안		○	
6.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 관리 감독	기안		○		
7.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업 신고	기안		○		
8.	폐기물처리 수수료 수입 관리	기안		○		
9.	폐기물 위탁처리에 관한 사항	기안			○	
10.	쓰레기 배출업소 지도 단속	기안		○		
1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추진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기안				○

	계약 및 영업구역 지정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 지도점검	기안				○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 평가 및 평가위원회 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및 원가산정	기안				○		○
12.	무단투기 방지시책 계획 수립 및 추진		기안			○		
13.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기안	○					
14.	폐기물 처리 위반자의 조치 및 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15.	과태료 압류등록 및 해제							
	가. 과태료 압류등록	기안	○					
	나. 과태료 압류해제	○						
16.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 업무	기안				○		
17.	재활용 운영관리							
	가. 자원순환 기본(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재활용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기타 경미한 사무	기안	○					
18.	재활용품 수집, 운반 및 선별 처리에 관한 민간위탁							
	가. 대행계약 및 영업구역 지 정	기안						○
	나. 수탁자 관리	기안			○			
19.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 한 사무							
	가. 포장폐기물 등 발생억제를 위한 업무(1회용품, 과대포장 등)	기안			○			
	나. 공공기관 재활용에 관한 업무	기안			○			
	다. 1회용품 사용억소 지도감 독	기안			○			
	라. 1회용품 사용억제에 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안			○			
	마. 1회용품 및 과대포장에 관 한 과태료 부과	기안			○			
	바. 기타 재활용 관련 사무	기안			○			
20.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기안			○			
21.	자원재활용 교육에 관한 사무	기안			○			
22.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에 관한							

	사무							
	가. 가전제품 수거	기안			○			
	나. 건전지, 형광등, 종이팩 수 거	기안			○			
	다. 영농폐비닐 수거	기안			○			
	라.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수거	기안			○			
23.	나눔장터 계획수립 및 운영	기안				○		
24.	음식물류 폐기물 기본계획 수 립 및 추진							
	가.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기안		○		
	나.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지역 고시			기안				○
	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 반 처리수수료 부과 및 징수	기안				○		
	라. 음식물류 폐기물 혼합 배 출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기안			○			
	마.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	기안				○		
25.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건설추진 및 운영관리							
	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나. 시설운영에 관한 사무			기안			○	
	다. 기타 경미한 사무	기안			○			
26.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수거원 관리			기안		○		
27.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 업장 관리							
	가. 다량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및 관리	기안				○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 제 및 처리계획(변경)신고	기안				○		
28.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관 리	기안				○		
29.	폐기물 수집·운반업							
	가. 사업계획서 및 허가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			기안			○	
	(2) 사업장(생활계 및 배출 시설계) 폐기물 및 건설 폐기 물	기안					○	
	나. 변경 허가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기안				○		

	(2) 사업장(생활계 및 배출 시설계) 폐기물 및 건설 폐기물	기안		○			
	다. 수집, 운반업 대행 계약		기안			○	
30.	폐기물처리업						
	가. 사업계획서 및 허가	기안			○		
	나. 사업계획서 변경 및 변경 허가	기안		○			
31.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및 지도 관리						
	가. 설치 승인	기안			○		
	나. 설치 신고	기안		○			
	다. 변경 승인 및 변경 신고	기안		○			
32.	폐기물 재활용업체 지도관리						
	가. 폐쇄신고	기안		○			
	나.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위반사업장 고발	기안		○			
	다.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위반사업장(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안		○			
33.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추진		기안			○	
3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무		기안			○	
35.	폐기물 처리신고자 지도관리						
	가. 폐기물 처리신고자 위반사항 처분	기안		○			
	나. 폐기물 처리 신고	기안		○			
	다. 폐기물처리 신고업 휴·폐업신고	기안		○			
	라. 폐기물처리 변경신고	기안		○			
	마. 폐기물 처리신고자 지도, 점검	기안		○			
36.	수도권매립지 반입규정 위반 조치	기안		○			
37.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지도점검						
	가. 사업장 일반폐기물	기안		○			
	나. 건설폐기물	기안		○			
38.	다량 배출신고와 지도 단속	기안		○			
39.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및 지도 점검	기안		○			

40.	폐기물처리업 휴·폐업신고	기안		○			
41.	폐기물처리업 재개업신고	기안		○			
42.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	기안	○				
43.	폐기물처리증명 완화처분	기안		○			
44.	권리의무 승계 신고	기안		○			
45.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재교부	기안		○			
46.	처리이행 보증금 예치	기안		○			
47.	대형소각장 건설 추진 및 운영						
	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나. 시설운영에 관한 사무		기안		○		
	다. 기타 경미한 사무	기안		○			
48.	폐기물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에 관한 업무	기안		○			
49.	건설폐기물 순환활재 의무사용에 관한 업무	기안		○			

환경보전과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						
	가.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단위사무별 계획 수립	기안		○		
	다.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기안		○		
	라. 환경보전에 관한 일반 사항	기안		○		
2. 환경영향평가(초안) 관련 업무						
	가. 환경영향평가(초안) 접수 및 공람 공고	기안		○		
	나. 환경영향평가 사항	기안		○		
	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 의견서 및 주민의견 통지	기안			○	

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						
	가. 징수결의 및 고지	기안		○			
	나. 수납, 징수부 정리	○					
	다. 압류처분	기안		○			
	라. 압류해제 처분	○					
	마. 환경개선 부담금 조정신청	기안		○			
4.	중수도 시설 설치 관리 업무						
	가. 중수도 시설 설치 권장 및 홍보	기안		○			
	나. 중수도 설치 관리 및 이행 명령	기안		○			
	다. 과태료 부과	기안		○			
	라. 중수도 설치비용 지원	기안			○		
	마. 중수도 년차별 보급 목표 및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5.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설치신고 등)에 관한 사무						
	가.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및 신고	기안		○			
	나. 빗물이용시설 관련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6.	자연보호 관련 업무						
	가. 자연보호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자연보호 협회 운영관리	기안		○			
	다. 자연보호 시설물 설치 관리	기안		○			
	라. 자연보호 활동, 조사	기안		○			
7.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가. 수렵면허(신규, 갱신) 신청	기안		○			
	나. 수렵면허(재교부, 변경) 신청	○					
	다. 박제업 등록 신청(변경) 신고	기안		○			
	라. 유해조수 포획 허가 신청	기안		○			
	마. 밀렵단속						
	(1) 계획수립	기안				○	
	(2) 지도단속	기안		○			
8.	EM활용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 사업						
	가. EM운영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EM 주민교육 및 홍보	기안		○			
	다. EM 환경보전 전개	기안		○			
	라. EM생산 및 공급관리	기안		○			
	마. 수질변화 모니터링 및 EM 사업 평가	기안		○			
9.	절수기 설치 보급, 홍보						
	가. 설치, 보급계획	기안			○		
	나. 기기보급, 절수 홍보	기안		○			
	다. 신청접수처리	기안	○				
10.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관리						
	가. 배출시설설치 허가 및 신고	기안		○			
	나. 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기안		○			
	다. 배출시설 변경신고						
	(1) 시설변경	기안		○			
	(2) 상호 및 대표자 변경, 시설일체 폐쇄신고	○					
	라. 배출·방지 시설 가동개시 신고						
	(1) 대기, 수질	○					
	마. 배출·방지 시설 가동개시 일 변경신청	○					
11.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업무	기안		○			
12.	명예환경감시원 위·해촉	기안		○			
13.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리						
	가.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청		기안				○
	나. 악취배출시설 신고						
	(1) 악취배출시설 신고	기안		○			
	(2) 악취배출시설 변경 신고						
	(가) 시설변경	기안		○			
	(나) 상호 및 대표자변경, 시설일체 폐쇄신고	○					
	(3) 악취배출시설 권리·의무 승계	○					
	다. 악취배출시설 지도·감독·행정처분						
	(1) 지도 점검 계획수립	기안			○		
	(2)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계획과 관련한 행정처분	기안		○			
14.	연료사용 규제						

	가. 연료사용 규제고시에 따른 연료변경 명령	기안		○			
	나. 연료사용 규제 고시 안내	기안	○				
	다. 저유황유 사용업소 지도감독 및 위반업소 청문 실시	기안		○			
15.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 및 행정 처분	기안		○			
1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지도 감독·행정 처분						
	가. 지도감독 계획 수립		기안		○		
	나. 개선명령 및 청문 실시	기안		○			
	다. 배출부과금 부과	기안		○			
	라. 배출부과금 조정 신청	기안		○			
	마.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 신청	기안		○			
	바. 오염도 검사 의뢰	기안	○				
	사.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개선 조업정지, 중지명령 이행보고	기안		○			
17.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						
	가.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기안		○			
	나.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기안	○				
	다. 기타 수질오염원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18.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배출 시설 관리						
	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배출시설 설치신고	기안		○			
	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배출시설 변경신고	기안	○				
	다.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 처분	기안		○			
19.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						
	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기안		○			
	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기안	○				
	다.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신청	기안		○			
	라.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 검사·누출검사) 관리	기안		○			
	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안		○			

20.	토양오염원 관리						
	가. 토양오염 실태조사 관리	기안		○			
	나. 토양오염 신고	기안		○			
	다. 오염토양 개선사업 관리	기안		○			
	라. 토양보전대책지역안에서의 토지이용제한 및 행위제한	기안		○			
	마. 명령위반자에 대한 대집행	기안		○			
21.	환경측정망 관련 업무						
	가. 무인악취 측정기 관리	기안		○			
	나. 무인악취 모니터링 결과 관리	기안		○			
	다. 오염도 검사 의뢰	기안	○				
	라. 무인악취포집 관련 주민 홍보	기안		○			
	마. 하천수 수질관리	기안		○			
22.	환경기술인 교육관리 등에 관한 업무						
	가.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 및 교육일정 안내	기안		○			
	나. 환경기술인 교육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안		○			
23.	먹는 물 관리에 따른 수질검사 및 관리						
	가. 약수터 관리						
	(1) 약수터 월별 수질채취 감사의뢰 등		기안	○			
24.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기안		○			
	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	기안	○				
	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시설기준 변경 신청	기안		○			
	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25.	특정공사 신고 관리						
	가. 특정공사 사전 신고	기안		○			
	나. 특정공사 변경 신고	기안	○				
	다. 특정공사 사전 신고 사업장 행정처분	기안		○			
26.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련 업무						
	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안			○		

	계획 수립						
	나.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개선명령	기안		○			
	라.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보고 및 검사 등	기안		○			
	마.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과태료 부과	기안		○			
27.	자동차 배출가스 및 매연점검 관련 업무						
	가. 자동차 배출가스 및 매연점검 계획 수립	기안			○		
	나.자동차 배출가스 및 매연점검	기안		○			
	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안		○			
	라. 매연과다발산 신고차량 정비 안내	기안	○				
28.	자동차 배출가스(정밀, 특정경유차) 검사 관련업무						
	가. 배출가스 검사 과태료 완납에 의한 압류 해제	○					
29.	자동차 공회전제한 관련 업무						
	가. 자동차 공회전제한 단속	기안		○			
	나. 자동차 공회전제한 행정처분	기안		○			
30.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관련 업무						
	가. 전문정비사업자 등록(변경)	기안		○			
	나. 전문정비사업자 지도점검	기안		○			
	다. 전문정비사업자 행정처분	기안		○			
31.	석면피해구제 관련 업무						
	가. 석면피해인정 신청	기안		○			
	나. 석면피해구제급여 신청	기안		○			
32.	석면안전관리 관련 업무						
	가.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보고	기안		○			
	나. 석면건축물 관리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다.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	기안		○			
	라.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신고	○					
	마. 석면해체, 제거사업장 석면	기안		○			

	비산 농도 측정결과 보고						
	바. 석면해체, 제거사업장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33.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무						
	가.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	기안		○			
	나. 시설의 개선 또는 환경안전 관리기준의 준수 명령	기안		○			
	다.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과 출입 검사	기안		○			
	라. 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34.	빛공해 방지 등에 관한 사무						
	가. 빛방사 허용기준 관련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나. 빛방사 허용기준 적용 제외 승인	기안		○			
35.	공중화장실 관리						
	가.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 수립	기안				○	
	나. 화장실 개·보수(대수선)	기안		○			
	다. 공중·개방화장실 관리	기안		○			
36.	저수조 청소업 및 상수도급수 장치 관련 업무						
	가. 급수장치 위생상 조치 지도 감독	기안		○			
	나. 저수조 청소업 개설 신고	기안		○			
	다. 저수조 청소업 변경 휴업 및 폐지신고	기안	○				
	라. 저수조 청소업 영업 정지	기안		○			
	마.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기안		○			
	바.저수조 소유 관리자 및 청소업체 교육 및 종사자 교육	기안		○			
37.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기안		○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준공검사	기안		○			
	다.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신고	기안		○			
	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38.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 업무						
	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기안			○		

	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준공검사	기안		○			
	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기안		○			
	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준공검사	기안		○			
	마.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39.	분뇨수집·운반업 관련 업무						
	가.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기안			○		
	나. 분뇨수집·운반업 변경신고	기안		○			
	다.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	기안				○	
	라. 분뇨수집·운반업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40.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및 관리						
	가.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법령 또는 명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기안		○			
41.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	기안		○			
42.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관련 업무	기안		○			
43.	기타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 관련 업무	기안		○			
44.	「하수도법」(구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법)위반 과태료 압류 해제	기안	○				
45.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 업무(건축인허가, 용도변경, 표시변경)	기안		○			
46.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제조업, 관리업 관련 업무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제조업, 관리업 등록	기안			○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제조업, 관리업 변경 등록 및 변경신고	기안		○			
	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제조업, 관리업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47.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에 관한 사무						
	가.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계획 수립	기안			○		
	나. 저탄소생활 실천사업 발굴 및 추진	기안			○		
	다. 그린리더 양성 및 관리	기안		○			

48.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무						
	가. 기후변화대응 계획 수립		기안				○
	나. 기후변화대응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	기안				○	
	다.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홍보	기안		○			
	라. 기후변화대응 공모사업 추진	기안			○		
	마. 기후변화주간 등 행사 관리	기안		○			
49.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사무						
	가.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		기안				○
	나.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사항 실적보고	기안				○	
50.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운영						
	가. 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	기안			○		
	나. 추진결과 작성 및 보고	기안		○			
	다. 환경정보 추출 및 등록	기안		○			
51.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추진						
	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 계획 수립	기안			○		
	나.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온실가스 컨설팅 매출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안		○			
	라. 온실가스 컨설팅 추진결과 작성 및 보고	기안			○		
52.	탄소포인트제 운영 관리						
	가. 탄소포인트제추진 연간계획 수립	기안			○		
	나. 탄소포인트제 관련 주민 홍보	기안		○			
	다. 탄소포인트제 실적 관리 및 입력	기안		○			
	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기안			○		
53.	의제21추진 관련 업무						
	가. 기본방침결정		기안			○	
	나. 실천협의회 운영	기안		○			
	다. 세부사업계획수립	기안		○			
	라. 사업추진지원, 자료작성	기안		○			
54.	무인항공기(드론) 관련 업무						

55.	가. 무인항공기(드론)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나. 무인항공기(드론) 운영 및 관리	기안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관련 업무					
56.	가. 지원 사업 계획 수립	기안				○
	나. 보조금 지급 및 정산보고	기안		○		
	다. 관리실태 점검	기안		○		
57.	미세먼지 관련 업무					
	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기안		○		
	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응 체계 구축 운영	기안		○		
58.	다. 사회재난관리(조미세먼지) 대응	기안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 업무					
	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 계획 수립	기안			○	
59.	나. 보조금 지급 및 정산보고	기안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보조금 관련 업무					
	가. 지원 사업 계획 수립	기안		○		
60.	나. 보조금 지급	기안		○		
	이륜차 정기검사 관련 업무					
	가.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기안		○		
61.	나. 정기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안		○		
	생활소음 배출원 지도점검 및 민원처리 업무					
	가. 생활소음 배출원(사업장) 생활소음규제기준 지도, 점검	기안		○		
62.	나. 생활소음규제기준 과태료 또는 준수 명령	기안		○		
	녹색제품 관련 업무					
	가. 녹색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 이행계획 공표	기안		○		
63.	나. 녹색제품 구매촉진 계획 수립	기안			○	
	다.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교육	기안		○		
	라. 녹색제품 구매 협조 요청	기안		○		
64.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관리					

63.	가.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보고 안내	기안		○		
	나.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이행 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관련 업무					
64.	가.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기안				○
	다. 수당지급	기안		○		
65.	환경단체보조금 지원					
	가. 지원 사업 계획 수립	기안				○
	나. 보조금 지급 및 정산보고	기안		○		
66.	다. 관리실태 점검	기안		○		

도시경관과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장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 도로불법점용상인 및 도로불법적치물 정비						
가. 도로불법점용상인 및 도로불법적치물 정비 기본계획		기안				○
나. 도로불법점용상인 및 도로불법적치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기안		○			
다. 도로불법점용상인 및 도로불법적치물 현장 계고서 발부	○					
라. 도로불법점용상인 및 도로불법적치물 행정대집행 계획		기안	○			
마. 도로불법점용상인 및 도로불법적치물 정비 실적보고	기안		○			
바. 도로불법점용상인 및 도로불법적치물 실태조사 계획	기안		○			
사. 도로불법점용상인 및 도로불법적치물 단속 및 특별정비		기안	○			
아. 도로불법점용상인 및 도로불법적치물 압수물품 처리	기안		○			
자. 도로불법점용상인 및 도로불법적치물 정비 민간용역 사업계획		기안				○
차. 도로불법점용상인 및 도로불법적치물 정비	기안			○		

비 민간용역 과업운영 결과 보고 가. 도로불법점용상인 및 도로불법적치물 정비 비용역원 지도·감독 및 관리	기안		○			
2. 옥외광고물 정비 기본 계획		기안			○	
3.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기안				○
4. 안전도검사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가. 위탁 계획 수립 선정		기안			○	
나. 안전도 검사 실시	기안		○			
다. 위탁업체 관리	기안		○			
5. 위반 옥외(고정)광고물 정비						
가. 정비계획 수립		기안		○		
나. 광고물 전수조사	기안		○			
다. 계고장 발부	기안		○			
라.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및 행정대집행		기안		○		
마.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기안		○			
6. 위반 유동광고물 정비						
가. 정비계획 수립		기안		○		
나. 계고장 발부		○				
다.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기안		○			
7.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						
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및 계획 수립		기안			○	
나. 기금집행, 운영	기안			○		
8.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가.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나. 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 설정	기안			○		
다. 회의개최 의결 사항 집행	기안		○			
9.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가.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기안	○				
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기간연장(사항변경)	기안	○				
다.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반려처리	기안		○			
10.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가. 옥외광고물 표시신고(기간연장 및 사항변 경)	기안	○				
나.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반려처리	기안		○			

11. 옥외광고업 등록관리						
가. 옥외광고업 등록(변경) 신청	기안		○			
나. 옥외광고업 폐업 및 직권폐쇄	기안		○			
다. 옥외광고업 행정조치	기안		○			
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계획 수립	기안			○		
마.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기안		○			
12. 도시관리공단 위탁(현수막 게시대)에 관한 업무						
가. 행정용 현수막 게첩 의뢰	기안		○			
나. 현수막 게시대 관련 업무 협조	기안		○			
다. 위탁사업 점검 및 결과보고	기안			○		
13. 광고물관련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						
가. 설치 및 관리계획 수립		기안		○		
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14.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						
가.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가. 도시경관 조성사업 세부계획 수립	기안		○			
나. 도시경관시설(경관시설물,벽화,상징조형물 등) 조성	기안		○			
다. 야간경관 조성사업 추진	기안		○			
15. 도시경관시설 유지관리						
가. 도시경관 시설물 점검 및 보수	기안	○				
나. 도시경관 시설물 관리 용역	기안		○			
다. 야관경관조명 운영	기안		○			
라. 미관저해 시설물 경관개선 협의	기안		○			
16. 공공디자인 운영 및 관리						
가.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기안			○		
나. 공공디자인 및 색채디자인 관리	기안		○			
다. 공공시설물 개선사업 추진	기안		○			
라. 도시컬러링 사업 추진	기안			○		
마.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기안					○
17. 위원회 운영 및 관리						
가. 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기안				○	

18	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회의 개최 및 의결 사항집행	기안		○		
	경관 협정 및 운영회 관리					
	가. 경관 협정 체결	기안		○		
	나. 경관 운영사항 협의	기안		○		

공원녹지과

단 위 사 무 명	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장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 공원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 공원기획						
가. 공원녹지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공원 재정비 계획 수립	기안			○		
다. 민관 상생 업무	기안			○		
라. 민간공원조성 업무	기안			○		
마. 무장애(bf) 공원 계획 수립	기안		○			
바. 노후공원 환경정비	기안		○			
사. 도시자연공원구역 업무	기안			○		
3. 공원문화						
가. 공원문화 증진사업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공원문화 시설 조성	기안			○		
다. 공원 내 행사 운영	기안		○			
라. 공원문화 프로그램 운영	기안		○			
4. 공원조성						
가.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공원조성계획 입안		기안		○		
다. 공원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신청		기안		○		
라. 행정청이 아닌 자의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 및 설치)	기안				○	
마. 공원조성 및 변경공사 추진	기안		○			
5. 공원조성사업에 따른 보상협의 매수, 수용						

가.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통지	기안		○			
나. 보상협의회 개최		기안			○	
다. 공공용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의뢰	기안		○			
라. 감정평가 사정조서 및 확정 통지						
(1) 감정평가 사정액 5천만원 이하	기안		○			
(2) 감정평가 사정액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기안			○		
(3) 감정평가 사정액 3억원 초과	기안				○	
마. 보상협의 촉구 통지	기안		○			
바. 잔여지 매수 결정	기안			○		
사. 수용제결 신청	기안		○			
아. 수용제결 관련 공고 및 통지	기안	○				
자. 협의 매수(수용) 확인서 발급	○					
차.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6. 공공사업에 따른 취득재산 이전에 관한 사항						
가. 토지분할, 주소, 지목변경 등 촉탁	기안		○			
나. 소유권 이전, 협의 취득 촉탁	기안		○			
7. 공원(근린, 체육, 어린이)시설 유지관리	기안		○			
8. 공원시설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공원시설 위탁계획 수립		기안			○	
나. 공원시설 위탁료 산정	기안		○			
다. 공원시설 위탁업체 지도관리	기안	○				
라. 위탁용역 및 공사추진	기안		○			
9. 공원 점용, 사용허가						
가. 공원 사용허가 및 취소	기안		○			
나. 공원 점용허가 및 취소	기안		○			
다. 공원 점용료, 사용료 과징 및 감면	기안		○			
10. 시설녹지 설치 및 관리						
가. 시설녹지 설치계획 입안		기안		○		
나. 시설녹지 유지관리	기안	○				
다. 시설녹지 조성 및 변경공사 추진	기안		○			
라. 시설녹지 점용허가 및 취소	기안		○			
마. 시설녹지 점용료 과징 및 단속	기안		○			
11. 도시공원·시설녹지내 위법행위 단속						

	가. 조성완료 공원·시설녹지 내 위법행위 단속·고발	기안		○			
	나. 조성완료 공원·시설녹지 내 위법행위 행정대집행	기안		○			
	다. 미조성 공원·시설녹지 내 위법행위 단속·고발	기안		○			
	라. 미조성 공원·시설녹지 내 위법행위 행정대집행	기안		○			
12.	산림자원조성						
	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계획 수립	기안		○			
	나.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지도·감독	기안		○			
	다. 조림 및 숲가꾸기 작업관리	기안	○				
	라. 기타 조림 및 숲가꾸기의 일반적인 사항	기안	○				
	마. 임목벌채 및 굴취 허가·신고	기안		○			
13.	산림토목						
	가. 사방사업 계획 및 변경	기안		○			
	나. 사방사업 시행 지도·감독	기안		○			
	다. 사방지 지정 및 해제	기안		○			
	라. 사방지 사후관리 지도·감독	기안		○			
	마. 산사태방지 계획 수립		기안			○	
	바.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해제	기안				○	
	사.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	기안		○			
	아. 산림 기본계획 수립						
	자. 산림문화, 휴양 기본계획 수립						
14.	산림경영						
	가. 산림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산림경영계획 심사협의	기안		○			
	다. 산림경영계획 수립	기안		○			
15.	산림휴양						
	가. 등산로 정비 사업계획 수립		기안		○		
	나. 등산로 정비 사업 시행 지도·감독	기안	○				
	다. 산림 문화, 휴양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라. 학교숲 운영	기안		○			
16.	산림보호						
	가. 산림보호 대책수립	기안		○			
	나. 임산물 생산 확인용 극인타기	기안		○			

	다. 부정임산물 단속 및 행정처분	기안		○			
	라. 산림훼손 허가 및 복구 지도·감독	기안		○			
	마. 불법산림훼손 예방 및 단속	기안	○				
	바. 산림사범 수사 및 입건 송치		기안	○			
	사. 각종 산림허가자 적지검사 지도·감독	기안		○			
	아. 산림병해충 방제계획 수립	기안			○		
	자. 산림병해충 방제 지도	기안	○				
	차. 산지정화	기안	○				
	카. 소나무류 이동 단속	기안		○			
	타. 소나무류 이동 반출증 발급	기안		○			
17.	산불방지						
	가.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		기안				○
	나. 산불예방 및 홍보	기안	○				
	다. 산불발생 및 진화보고	기안		○			
	라. 입산통제 지정 및 해제조치	기안			○		
	마. 입산허가 신청	기안		○			
	바. 산화진화를 위한 동원 및 기타 조치		기안		○		
18.	목재이용						
	가. 목재생산업 등록	기안	○				
	나. 목재품질 단속 및 계도	기안	○				
	다. 목재이용감시원 운영	기안	○				
	마.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기안		○			
	바. 벌채사업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19.	산지이용 및 관리						
	가. 보전산지 지정 및 해제신청	기안			○		
	나. 산지 전용허가·변경·협의	기안		○			
	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기안		○			
	라. 공·사유림내 채석 허가 신청	기안		○			
	마. 토석 매수 신청	기안		○			
	바. 토석 무상 양여 신청	기안		○			
	사. 공·사유림내 토사채취 허가신청	기안		○			
	아. 공·사유림내 채석허가 기간 연장신청	기안		○			
	자. 공·사유림내 토사채취시 면허신청(채석	기안		○			

지) 복구							
20. 산림통계							
가. 산림기본 통계조사	기안		○				
나. 임산물 생산 통계조사	기안		○				
다. 사유림경영정보 시스템 운영	기안	○					
21. 도시녹화							
가. 도시녹화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불량가로수 수종갱신	기안		○				
다. 국토공원화 종합계획	기안			○			
라. 무궁화 식재관리	기안	○					
마. 꽃길조성 및 지도	기안	○					
바. 건축협의(조경부문) 및 조정심의	기안		○				
사. 수목피해변상금 부과·징수	기안		○				
아. 옥상녹화사업(공공·민간) 추진	기안			○			
자. 담장허물고 나무심기사업(공공·민간) 추진	기안			○			
차. 학교 생태숲 조성사업 추진	기안			○			
22. 녹지대 및 가로수							
가. 녹지대 및 가로수 조성계획 수립		기안			○		
나.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 사업 지도·감독	기안	○					
다. 기타 녹지대 및 가로수의 일반적인 사항	기안	○					
23. 쉼터							
가. 쉼터 조성 종합 계획 수립		기안			○		
나. 쉼터 조성 사업 지도·감독	기안		○				
다. 쉼터 관리	기안	○					
24. 광장(일반·경관)의 설치 및 관리							
가. 광장(일반·경관) 조성 계획 수립	기안			○			
나. 광장(일반·경관) 조성사업 지도·감독	기안		○				
다. 기타 광장(일반·경관) 관리의 일반적인 사항	기안	○					

교통행정과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담	담	과	국	부 구	

	당				청		
	자	당	장	장	장	장	
1. 교통행정의 계획 수립 및 조정		기안				○	
2. 교통유발부담금 과징							
가. 징수계획 수립	기안			○			
나. 건축물 일제조사	기안		○				
다. 징수결의	기안		○				
라. 고지서 발송 및 공시송달	기안		○				
마. 가산금 조정 결의	기안		○				
바. 등기 및 부채, 재산권 등록 촉탁	기안		○				
사. 결손처분	기안		○				
아. 채납처분	기안		○				
자. 감액결의	기안		○				
차. 이의신청 결정	기안		○				
카. 이의신청 보정 요구	기안		○				
타. 채납액 정리 계획	기안		○				
3.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가. 계획 수립	기안				○		
나. 공사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기안			○			
다. 공사의 착공과 준공	기안		○				
라. 공사감독관 지정	기안		○				
마. 시설물 유지관리	기안		○				
4.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업무							
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관련 기관 협의	기안		○				
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유지관리 및 일반 민원처리	기안		○				
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사무관리	기안		○				
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공사 관련 협의	기안		○				
5.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역전광장)에 관한 시설물 유지관리	기안		○				
6.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	기안		○				
7. 지구 교통개선사업							
가. 계획 수립	기안				○		
나. 기본조사 및 주민여론 조사	기안			○			
다. 유관기관 협의	기안		○				

	라. 공사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기안			○		
	마. 공사의 착공과 준공	기안			○		
	바. 공사감독관 지정	기안			○		
	사. 시설물 유지 관리	기안			○		
8.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업무						
	가. 계획수립		기안				○
	나. 공사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기안			○		
	다. 공사의 착공과 준공	기안			○		
	라. 공사감독관 지정	기안			○		
9.	공영주차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가. 공영주차장 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나. 공영주차장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기안			○		
	다. 수탁관리자 지도 ·감독	기안			○		
10.	민영노외주차장(설치, 폐지, 변경) 통보	기안			○		
11.	주차장(노상·노외·부설·기계식) 관리에 관한 사무	기안			○		
12.	도로·주택가 주차구획선 구획 및 정비	기안			○		
13.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관한 업무						
	가.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변경계획 수립	기안					○
	나.거주자우선주차제 세부 추진	기안			○		
14.	부설주차장 설치(개방) 지원에 관한 업무						
	가. 그린과경(담장허물어 내집안 주차장 만들기) 사업	기안			○		
	나.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에 관한 업무	기안			○		
	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기안			○		
15.	장·단기 주차시설 확충계획 투자재원 확보		기안			○	
16.	주차장특별회계 운영	기안			○		
17.	주정차금지구역에 관한 업무						
	가. 주정차금지구역 지정·해제(유관기관 협의)	기안			○		
	나. 주정차관련시설물 설치 및 정비	기안			○		
18.	도시관리공단 위탁에 관한 업무	기안			○		
19.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등에 관한 업무						
	가. 불법주정차단속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불법주정차단속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다. 주정차 단속원 복무관리	기안			○		
20.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CCTV설치·운영						

	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무인CCTV설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집행	기안				○	
	다. 공사의 착공 및 준공	기안			○		
	라. 공사감독관 지정	기안			○		
	마. 무인CCTV 관리 및 운영	기안			○		
21.	불법주정차 민간견인 대행에 관한 업무						
	가. 계약체결		기안				○
	나. 세입관리 및 수수료 지급	기안			○		
	다. 민간대행업체 지도·감독	기안			○		
	라. 장기 미반환차량 공매처분	기안			○		
22.	교통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 지도·감독	기안			○		
23.	지하철 및 철도 관련 업무 행정지원		기안		○		
24.	주·정차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무						
	가. 과태료 징수 계획 수립	기안			○		
	나. 과태료 징수 결의	기안			○		
	다. 과태료고지서 발송 및 공시송달	기안			○		
	라. 과태료 감액 결의	기안			○		
	마. 결손처분		기안		○		
	바. 이의신청	기안			○		
	사. 과오납 환불	기안			○		
	아. 체납액정리종합계획 수립		기안			○	
	자. 과태료 체납차량 압류 등록 및 해제	기안			○		
	차. 의견진술 심의 및 결정	기안			○		

자동차관리과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담	과	국	부	
	당	당	장	장	구 청 장	
1. 총무계획 수립	기안					○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가. 사고보고의 수리 및 처리	기안		○			

	나. 사업의 개선 명령		기안	○			
	다. 운송사업자 지도·감독 및 교육	기안		○			
	라. 운행질서 확립 및 지도단속	기안		○			
	마. 행정처분	기안		○			
	바.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기안		○			
	사. 사업용 자동차 환경개선 지도, 점검	기안	○				
	아. 운수업체 종사원 교육 및 훈련계획						
	아. 자동차운송사업 운송 개시	기안	○				
	자. 자동차운송사업 확인 신청	기안	○				
3.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가. 사업계획의 변경	기안	○				
	나. 사업의 양도·양수	기안		○			
	다. 택시 대리운전 신고	기안		○			
	라. 사업의 휴지 및 폐지	기안		○			
	마. 사업용 차량 차령조정 신청	○					
	바. 여객운송사업 개시 신고	○					
4.	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가. 승강장 설치 및 정비계획 수립		기안		○		
	나. 승강장 관리	기안		○			
5.	화물자동차(용달, 개별화물) 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가. 사업의 허가사항 신고	기안		○			
	나. 사업의 취소	기안		○			
	다. 사업등록신청 결격여부 조회	○					
	라. 운임, 요금, 운송 약관의 인가	기안		○			
	마. 공동운수 계약협정 및 변경	기안		○			
	바. 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	기안		○			
	사. 운송사업의 정지 처분	기안		○			
	아. 면허실효 확인	기안		○			
	자. 자동차 사용의 정지	기안		○			
	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기안	○				
6.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에 관한 업무						
	가. 사업의 등록 및 취소	기안		○			
	나. 운임 및 요금수리	기안		○			

	다. 사업계획의 변경	기안		○			
	라. 사업의 양도·양수	기안		○			
	마. 약관 및 정관 변경 신고	기안		○			
	바. 법인의 합병신고	기안		○			
	사. 적합화물의 운송신고	기안		○			
7.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가. 사업계획 변경	기안		○			
	나. 사업의 양도·양수	기안		○			
	다. 법인의 합병 신고	기안		○			
	라. 사업개선평명	기안		○			
	마. 사업의 휴지·폐지 신고	기안		○			
	바. 사업의 상속신고	기안		○			
	사. 사업의 등록	기안		○			
	아. 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안		○			
	자. 면허취소	기안		○			
8.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관한 사무		기안			○	
9.	교통불편신고 및 법규위반 처리						
	가. 행정처분	기안		○			
	나.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기안		○			
10.	자가용 자동차 사용에 관한 업무						
	가. 유상운송 및 임대허가	기안		○			
	나. 공동사용 허가	기안		○			
	다. 사용의 제한 및 금지명령	기안		○			
	라.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기안		○			
11.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업무						
	가. 자동차 대여사업 운송개시 신고	기안		○			
	나.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 등록	기안		○			
	다. 자동차 대여약관 및 변경 신고	기안		○			
	라. 자동차 대여사업 관리 위탁 허가	기안		○			
	마. 자동차 대여사업 양도·양수	기안		○			
	바. 법인 합병 및 상속 신고	기안		○			
	사. 자동차 대여사업 지도 감독	기안		○			
	아.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	○					

12.	자. 사업의 휴업 폐업	기안		○			
	차.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기안		○			
	타. 자동차의 차령제한 등	기안		○			
	하. 자동차 대여사업의 행정처분	기안		○			
13.	자동차관리사업(폐차업, 정비업, 매매업)에 관한 사무						
	가. 등록 및 변경 등록	기안		○			
	나. 지도점검 및 무등록업체 단속	기안		○			
	다. 행정처분	기안		○			
14.	무단방치차량 강제 처리						
	가. 자진처리 명령	기안		○			
	나. 행정처분	기안		○			
	다. 검찰송치	기안		○			
15.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차량 단속						
	가. 자동차 정비명령, 개선명령, 사용정지명령	기안		○			
	나. 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다. 체납처분 및 압류등록	기안		○			
16.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관한 사무						
	가.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 발송	기안		○			
	나. 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다. 체납처분 및 압류등록	기안		○			
17.	라. 검찰송치	기안		○			
	자동차등록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기안			○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에 관한 사항						
	가.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의 지정	기안		○			
18.	나.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취소 및 사업 정지 명령	기안		○			
	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 제작의뢰	기안		○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가. 자동차 신규(부활)등록	○					
19.	나. 자동차 변경등록	○					
	다. 자동차 경정등록	○					
	라. 자동차 말소등록	○					
20.	마. 자동차 이전등록	○					
	바. 자동차 강제 이전등록	기안		○			
	사. 자동차 등록증 교부(재교부)	○					
	아. 자동차 직권말소	기안		○			

19.	자동차 차령초과말소 등록 관련						
	가. 차령초과말소 예고통지	기안		○			
	나. 차령초과말소 회신	기안		○			
	20. 자동차 가압류, 압류등록 및 해제	○					
21.	저당권등록(설정, 이전, 변경, 말소)	○					
	22. 자동차등록관련 제증명 발급						
	가.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					
	나. 등록관련 증명서 발급	○					
22.	다. 자동차말소실시인정서 발급	기안		○			
	23. 자동차 전산자료 발취처리						
	가. 자동차 등록 현황	○					
	나. 일일민원처리 현황	○					
23.	24. 자동차검사에 관한 사무						
	가. 정기검사기간 경과차량 안내 통지	기안		○			
	나. 정기검사기간 경과차량 검사명령	기안		○			
	다. 정기검사명령 미이행자 고발	기안		○			
24.	라.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처리	기안		○			
	24. 자동차등록에 관한 이의신청 처리	기안		○			
	25. 자동차 임시운행에 관한 사항						
	가.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					
25.	나. 자동차 임시번호판 및 봉인 제작의뢰	기안		○			
	26. 양도증명서 발급 및 관리	○					
	27. 자동차등록관련 과태료에 관한 사항						
	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기안		○			
26.	나. 이의신청접수 및 처리	기안		○			
	다. 압류등록	기안		○			
	라. 압류등록 해제	○					
27.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사무						
	가. 이륜자동차 신고처리(사용, 변경 폐지)	○					
	나. 번호판 재교부, 재봉인 신청처리	○					
	다.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28.	라. 번호판 및 봉인 제작의뢰	○					
	29. 건설기계 등록						
	가. 건설기계 신규등록	○					

	나.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					
	다. 건설기계 등록이전(전입) 신고	○					
	라. 건설기계 등록 자진말소	○					
	마. 건설기계 등록 직권말소	기안		○			
	바.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	○					
	사.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	○					
	아.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초본 교부 및 열람	○					
	자.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반납	○					
	차. 건설기계 임시 운행허가	기안		○			
30.	건설기계 저장권 설정(이전) 및 말소	○					
31.	건설기계 압류 및 가처분등록(변경, 말소)	○					
32.	건설기계 검사 및 점검업무						
	가. 건설기계검사 및 수시검사 명령	○					
	나. 건설기계 정기검사의 최고	기안		○			
	다. 건설기계 정비명령	기안		○			
33.	건설기계 차적조회	○					
34.	건설기계 관리법령 위반조치						
	가. 과태료 부과대상 통지(창구민원)	○					
	나. 과태료 부과대상 통지	기안		○			
	다. 과태료 감액건의 및 이의신청	기안		○			
35.	자동차관리과 과태료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						
	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정리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체납자 재산압류 및 해제	기안		○			
	다. 결손처분						
	(1) 건당 400만원 이상	기안			○		
	(2) 건당 400만원 미만	기안		○			
	라. 교부청구 및 경락대금 수령	기안		○			
	마. 자동차 번호판 영치계획 수립	기안		○			
36.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사무						
	가. 물류창고업 등록 및 변경등록	기안		○			
	나.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기안		○			
	나. 사업의 승계의 신고수리	기안		○			
	다. 사업의 휴업·폐업 및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기안		○			

	라.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기안		○			
	마. 사업자에 대한 과장금의 부과 및 징수	기안		○			
	바. 사업자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기안		○			
	사. 청문	기안		○			
	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기안		○			
37.	특수여객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사무						
	가. 사업의 등록 및 취소	기안		○			
	나. 사업의 양도·양수	기안		○			
	다. 사업의 휴업 폐업	기안		○			
	라. 행정처분	기안		○			
	마. 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안		○			
	바. 사업계획변경 신고	기안		○			

도시재생과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장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 도시관리과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보상협의 매수, 수용						
가.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통지	기안		○			
나. 보상협의회 개최		기안			○	
다. 공공용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의뢰	기안		○			
라. 감정평가 사정조서 및 확정 통지						
(1) 감정평가 사정액 5천만원 이하	기안		○			
(2) 감정평가 사정액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기안			○		
(3) 감정평가 사정액 3억원 초과	기안				○	
마. 보상협의 촉구 통지	기안		○			
바. 잔여지 매수 결정	기안			○		
사. 수용제결 신청	기안		○			
아. 수용제결 관련 공고 및 통지	기안	○				

	자. 협의 매수(수용) 확인서 발급	○				
	차.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2. 공공사업에 따른 취득재산 이전에 관한 사항						
	가. 토지분할, 주소, 지목변경 등 촉탁	기안		○		
	나. 소유권 이전, 협의 취득 촉탁	기안		○		
3. 용지매입, 체비지 분양 및 관리						
	가. 용지매입, 체비지 분양 및 관리 계획		기안			○
	나. 체비지 매각의 감정 평가	기안		○		
	다. 체비지 매각 공고	기안		○		
	라. 예정가격 조서 작성	기안			○	
	마. 매매계약 체결	기안		○		
4. 청산금, 정수금의 정수 및 교부						
	가. 환지청산금 정수·교부계획 수립		기안			○
	나. 청산금 정수 및 교부 통지	기안		○		
	다. 체납액 관리(독촉, 최고처분 등)	기안		○		
5.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사업부서 최초 입안(안) 작성 사항 제외]		기안			○
	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반영여부 결정	기안			○	
	다. 도시관리계획의 주민의견 청취 공고·열람	기안		○		
	라. 도시관리계획의 의회 의견청취	기안			○	
	마. 도시관리계획의 관계(기관)부서 협의	기안		○		
	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기안			○
	사.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기안			○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기안		○		
6.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가. 단계별 집행계획 취합 관리(사업부서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사항 제외)	기안		○		
	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보고		기안		○	
	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기안		○		
	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비관리청) 지정(변경 포함) 및 고시	기안		○		
	마. 실시계획 공고·열람	기안		○		
	바. 실시계획 관계(기관)부서 협의	기안		○		

	사. 비관리청 사업 실시계획 인가(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포함)	기안			○	
	아. 관리청 사업 실시계획 인가(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포함)	기안		○		
	자. 실시계획 변경인가(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포함), 실시계획 고시	기안		○		
	차. 준공검사 협의	기안		○		
	가. 공사완료 공고	기안		○		
	타.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고시	기안		○		
	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지목 '대'인 토지) 매수청구 반영여부 결정	기안			○	
	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신청에 따른 입안 여부 결정	기안			○	
7.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가. 토지에의 출입 허가(비관리청)	기안		○		
	나.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기안		○		
	다. 처분관련 청문	기안		○		
	라. 도시계획시설사업 감독상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기안		○		
	마. 과태료 처분	기안		○		
	바. 도시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자체평가 협의	기안		○		
8.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가. 위원회 개최 계획수립 및 결과 보고		기안			○
	나. 위원회위원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위원회 회의소집	기안		○		
	라. 위원회 운영 일반	기안		○		
9. 도시계획 관련 협의						
	가. 지구단위계획 관련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협의(건축허가, 용도변경허가)	기안		○		
	나. 기타 지구단위계획 관련 협의	기안		○		
	다. 기타 도시계획 관련 협의	기안		○		
	라. 도시관리계획선 대조 확인	기안	○			
10. 도시계획 관련 시스템 관리						
	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관리	기안		○		
	나. 도시계획현황통계시스템(UPSS) 관리	기안		○		
11.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시행 및 감독 포함)						
	가.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사전조사 및 주민의견 청취 동의	기안		○			
(2)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		기안				○
(3)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공람 공고	기안	○				
(4)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안		○			
(5)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기안		○			
(6)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고시	기안			○		
나.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1)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기안			○	
(2) 각종 영향평가 및 도시계획 심리 신청	기안		○			
(3) 관계기관 협의	기안	○				
(4) 공람 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	기안			○		
(5) 사업시행인가						
ㄱ. 500세대 미만	기안		○			
ㄴ. 500세대 이상	기안			○		
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자 선정 및 사업시행협약 체결		기안				○
(2) 주민대표회의 구성 검토	기안					○
(3) 주민대표회의 구성 통지	기안		○			
(4)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보고	기안		○			
12.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가. 택지수급계획 수립 및 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협의		기안				○
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및 준공 관련 협의	기안			○		
다. 공사 시행에 따른 관리업무 시행	기안			○		
라. 사업준공에 따른 인수·협의체 운영 관리	기안		○			
13.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대상지 선정 검토 및 신청		기안		○		
(2) 기본계획 관련 사항	기안		○			
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1)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자료수집 및 현황 조사	기안		○			
(2)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공고	기안		○			
(3) 주민설명회 개최	기안			○		
(4) 구의회 의견청취	기안		○			

(5)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입안		기안				○
(6)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기안		○			
(7)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고시	기안			○		
다.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해제 요청						
(1) 주민공람공고	기안		○			
(2) 구의회 의견청취	기안		○			
(3) 정비구역 등 해제 요청	기안		○			
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변경, 해산)	기안		○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 신고, 운영규정 신고	기안		○			
(3) 그 밖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기안		○			
(4)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등 정보제공 결정	기안			○		
마. 조합에 관한 사항						
(1) 조합설립 인가(변경,해산)	기안		○			
(2) 조합설립 인가(경미한 변경)	기안		○			
(3) 그 밖에 조합에 관한 사항	기안		○			
바. 사업시행인가						
(1) 관련부서 협의	기안		○			
(2) 사업시행인가(변경, 중지, 폐지)						
ㄱ. 500세대 미만	기안		○			
ㄴ. 500세대 이상	기안			○		
(3) 사업시행인가(경미한 변경)	기안		○			
(4) 공람 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	기안			○		
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1) 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 중지, 폐지)		기안		○		
(2) 관리처분계획 인가(경미한 변경)	기안		○			
(3)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기안		○			
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기안		○			
자. 착공신고	기안	○				
차. 감리자 지정 및 변경	기안		○			
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1) 준공인가신청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기안		○			
(2) 준공인가	기안		○			

(3)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기안		○			
다. 정비사업의 감독 등						
(1) 정비사업 추진실태 점검	기안			○		
(2) 회계감사기관의 선정, 계약	기안		○			
(3) 회계감사기관의 감독	기안		○			
과.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1)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안전상정 및 개최결과 보고	기안				○	
(2) 도시분쟁조정위원회위원 위촉	기안					○
(3) 도시분쟁조정위원회위원 해촉	기안		○			
(4) 도시분쟁조정위원회 회의소집	기안		○			
(5)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일반	기안		○			
14. 도시재생사업						
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및 신청		기안				○
나. 총괄계획가, 총괄코디네이터 선정 및 위촉		기안				○
다. 전략계획, 활성화계획(마스터플랜) 수립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도시재생추진단,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마. 도시재생 마을활동가 선정 및 위촉	기안			○		
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사.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안		○			
아. 공청회, 주민설명회,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열람·공고	기안		○			
차. 사업부지의 협의매수에 관한 사항	기안		○			
카. 설계용역 및 시공, 공사감독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타. 주민공모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15.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가.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마을주택관리소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마을주택관리소 실적보고	기안		○			
16.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1) 도시개발사업 발굴 및 추진계획 수립		기안			○	
(2) 사업계획 및 타당성 검토 등		기안		○		

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1) 구역지정을 위한 관계기관(부서) 협의	기안	○				
(2) 구역지정을 위한 검토 보고		기안			○	
(3)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주민 및 지방의회 의 건청취, 공청회)	기안		○			
(4) 구역지정,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기안				○
다. 사업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기안		○			
(2) 조합설립인가 검토 및 신청	기안		○			
라. 실시계획인가						
(1)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검토		기안		○		
(2)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협의	기안	○				
(3)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안				○
마. 사업완료						
(1) 공사완료보고 검토		기안		○		
(2) 공사완료보고 제출	기안			○		
(3) 공사의 완료 공고	기안		○			
바. 환지계획						
(1) 환지계획수립		기안		○		
(2) 환지에정지 지정	기안		○			
(3) 경미한 환지계획의 변경	기안		○			
(4) 환지계획인가 신청		기안		○		
(5) 사업추진과 관련된 주민의견수렴 및 조정		기안		○		
(6) 공사의 완료 공고 및 환지처분		기안				○
17.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가. 등기축탁 업무	기안	○				
나. 종합전산망 운영(구획정리사업 전반)						
(1) 기존지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기안		○			
(2) 기존지구 환지확정증명원 등 열람 및 발급	○					
18.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가. 취하원	○					
나. 토지형질변경	기안		○			
다. 물건의 적치	기안		○			

라.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기안		○			
마. 준공검사	기안		○			
바. 토석의 채취	기안		○			
사.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기안		○			
아. 개발행위허가 제한 결정 및 해제	기안					○
자.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기안			○		
차. 개발행위허가 제한 결정, 연장, 해제 고시	기안		○			
19.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관한 사항						
가. 지구지정						
(1) 지구지정 협의	기안		○			
(2) 지구지정 검토		기안			○	
(3) 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및 의견제출	기안			○		
나. 지구계획 수립						
(1) 지구계획 승인을 위한 공람공고	기안		○			
(2) 지구계획 수립 협의	기안			○		
(3) 지구계획(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의견제출		기안		○		
20.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가. 관리계획 수립		기안				○
나. 경계표석의 설치 및 관리	기안		○			
다. 주유소 등의 배치계획 수립		기안			○	
라.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기안		○			
마. 주민지원사업관리(사업비 요청)	기안			○		
바. 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	기안		○			
사. 생활비용보조사업관리	기안		○			
21. 개발제한구역내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가. 위법행위 단속 및 정비계획 수립						
(1) 연간계획 수립		기안		○		
(2) 분기별계획 수립	기안		○			
(3) 정기단속 및 결과보고	기안		○			
(4) 항측관측 결과에 따른 처리 및 보고	기안		○			
나. 위법사항 시정명령	기안		○			
다. 위법행위자 고발	기안		○			

라. 행정대집행계획 수립	기안			○		
마. 행정대집행 고고서 발부	기안		○			
바.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기안		○			
사.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기안		○			
22.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가. 건축허가	기안		○			
나. 건축착공신고	○					
다. 건축물철거. 멸실신고	○					
라. 취하원	○					
마. 토지형질변경	기안		○			
바. 물건의 적치	기안		○			
사. 건축물 사용승인	기안		○			
아. 준공검사	기안		○			
자. 토지의 분할	기안		○			
차. 축목 벌채	기안		○			

공영개발과

단 위 사 무 명		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 소래 국가어항 개발							
	가. 개발계획 수립	기안					○
	나. 관계기관 업무협의	기안		○			
2. 연안정비사업 추진							
	가. 연안정비기본계획수립	기안		○			
	나. 연안시설물 유지보수	기안		○			
3. 소래구역 상7블럭 건축행위(허가,신고 등)가.부 결정		기안					○
4. 소래 국가어항구역 건축행정 업무							
	가. 건축행정 건설화 대책수립		기안			○	

나. 위반 건축물 정비에 관한 사항(소래구역 상7블럭 포함)						
(1) 위반 건축물 단속·정비계획 수립	기안			○		
(2) 위반 건축물 자료수집 및 조사	기안		○			
(3)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기안		○			
(4) 위반 행위자 고발	기안		○			
(5) 행정대집행 계획 수립		기안		○		
(6) 행정대집행 고고서 발부	기안		○			
(7) 행정대집행 영장발부	기안		○			
(8)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9) 과오납금 환불	기안		○			
(10)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부	기안	○				
다.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						
(1)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기안		○			
(2)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연장	기안	○				
라.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기안		○			
마. 건축허가·사용승인, 허가취소에 관한 업무(허가사항변경, 대수선회가 포함)						
(1) 건축허가	기안		○			
(2) (임시)사용승인	기안		○			
(3) 관련기관(부서) 협의, 보완요구	기안		○			
(4) 반려 또는 불가 처리	기안			○		
바. 용도변경, 건축신고(신고사항변경, 대수선신고 포함)에 관한 사항						
(1) 허가 처리 및 신고 수리	기안		○			
(2) (임시)사용승인	기안		○			
(3) 관련기관(부서) 협의, 보완요구	기안		○			
(4) 반려 또는 불가 처리	기안			○		
사. 착공신고, 착공연기, 취하원 또는 취소원 처리	○					
아.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수리	○					
자. 건축사 지도 감독						
(1) 위반 건축사 위법사항 보고	기안		○			
(2) 건축사 지도 감독	기안		○			
차. 건축허가 등 취소						

(1) 허가 취소	기안			○		
(2) 신고 취소	기안		○			
5. 소래철교 관리						
가. 소래철교 관리	기안		○			
나. 일반재산 업무						
(1) 측량 및 감정평가 실시	기안		○			
(2) 처분(매매) 계약체결 및 해지	기안		○			
(3) 변상금부과 및 관리	기안		○			
(4) 등기업무(일반)	기안		○			
(5) 체납액 관리 및 체납자 납부 독촉	기안		○			
6.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가. 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 계획 및 시행						
(1)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기안				○
(2)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기안		○			
(3)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변경) 수립	기안			○		
(4) 산업단지개발 준공 인가 신청 및 처분 계획 수립	기안					○
(5) 산업단지 위·수탁 계약 체결 및 변경	기안					○
(6)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기관 협의	기안		○			
나.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구 출자에 관한 사항						
(1) 구 출자 계획(변경) 수립 및 시행		기안				○
(2) 출자관련 관계기관 협의	기안		○			
(3) 출자기관 운영 및 관리	기안		○			
(4) 출자기관 지도 및 감독	기안			○		
(5)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	기안					○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기안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기안				○	
(8) 출자기관 해산에 관한 사항		기안				○
7. 공공사업에 따른 보상협의						
가.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통지	기안		○			
나. 보상협의회 개최		기안			○	
다. 공공용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의뢰	기안		○			
라. 감정평가 사정조사 및 확정 통지	기안		○			

	마. 보상협의 통지	기안		○			
	바. 잔여지 매수결정	기안		○			
	사. 매매계약 체결	기안		○			
	아. 수용제결신청	기안		○			
	자. 수용제결관련 공고 및 통지	기안		○			
	차. 협의매수(수용) 확인서 발급	○					
8.	공공사업에 따른 취득재산 이전에 관한 사항						
	가. 토지분할, 주소, 지목변경 등 촉탁	기안		○			
	나. 소유권 이전, 협의취득 등 등기촉탁 업무	기안	○				
9.	소래지역 중장기 발전 업무						
	가. 발전계획 수립		기안				○
	나. 관계기관 협의	기안		○			
10.	공유수면관리						
	가. 공유수면 매립사업 관련 협의	기안		○			
	나.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협의	기안		○			
	다. 공유수면 장애물 제거 및 관련 협의	기안		○			
	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고시	기안			○		
	마.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기안			○		
	바. 공사완료 고시	기안			○		
11.	해수공급시설 관리						
	가. 해수공급시설 해수사용료 변경		기안				○
	나. 해수공급시설 위탁관련 사업계획 및 예산검토	기안		○			
	다. 해수공급시설 위탁대상 시설물 및 업무범위 변경	기안		○			
	라. 해수공급시설 및 운영관리 위탁업체 지도감독	기안		○			
	마. 해수사용료 징수 및 체납관리	기안		○			
	바. 해수 수질검사 의뢰 및 결과통보	기안	○				

건 설 과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담	과	국	부	
		당	당	장	장	구	
		자	장	장	장	청	장
1.	건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안				○
2.	건설공사용 자재 및 기구 출납보관	기안	○				
3.	사업추진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립 및 조정		기안		○		
4.	공공시설물 인수업무	기안				○	
5.	국·공유재산 관리						
	가.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국·공유 행정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기안		○			
	다. 국·공유 행정재산 용도 폐지		기안			○	
	라. 국·공유 행정재산 무상귀속	기안		○			
	마. 법령위반에 대한 조치	기안		○			
6.	공공사업에 따른 보상협의						
	가.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통지	기안		○			
	나. 보상협의회 개최		기안			○	
	다. 공공용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의뢰	기안		○			
	라. 감정평가 사정조서 및 확정 통지	기안		○			
	마. 보상협의 협의 통지	기안		○			
	바. 잔여지 매수결정	기안		○			
	사. 매매계약 체결	기안		○			
	아. 수용제결신청	기안		○			
	자. 수용제결관련 공고 및 통지	기안		○			
	차. 협의매수(수용) 확인서 발급	○					
7.	공공사업에 따른 취득재산 이전에 관한 사항						
	가. 토지분할, 주소, 지목변경 등 촉탁	기안		○			
	나. 소유권 이전, 협의취득 등 등기촉탁 업무	기안	○				
8.	전문건설업 관리						
	가. 전문건설업 양도(상속, 법인합병)신고	기안	○				

	나. 전문건설업 등록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					
	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기안		○			
	라. 전문건설업 등록 처리	기안		○			
	마.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처리	기안	○				
	바. 전문건설업 분쟁조정 신청	기안		○			
	사. 전문건설업 등록증(수첩) 재교부	○					
	아.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					
	자. 건설업 등록신청에 따른 신원조회 의뢰	○					
9.	골재채취업						
	가. 골재채취허가 내용 변경승인(신고)	기안		○			
	나. 골재선별, 파쇄, 바다골재 선별, 세척신고	기안	○				
	다. 골재채취 허가	기안				○	
	라. 골재채취업 양도, 양수(법인합병, 상속) 신고	기안	○				
	마. 골재채취업 등록신청	기안		○			
	바. 골재채취업 기재사항 변경신고	○					
	사.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에 따른 신원조회 의뢰	○					
	아. 골재채취업 행정처분	기안		○			
	자.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처리	기안	○				
10.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					
	나. 건설기계조종사 기재사항 변경	○					
	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청문)	기안		○			
11.	건설기계사업 관리						
	가. 건설기계사업 신고·등록	기안	○				
	나. 건설기계관련 행정처분 처분(청문)	기안		○			
	다. 건설기계관련 고발 및 과태료 처분	기안		○			
	라. 건설기계주기관 시설보유 확인서 발급	기안	○				
	마. 건설기계사업의 휴지, 폐지, 재개신고	기안	○				
	바.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기안	○				
	사. 건설기계매매업 제시 · 매도신고	○					
12.	시설 동원(일반 토지, 건설업체, 중기정비업체)에 관한 사항	기안		○			
13.	도로관리계획 수립시행		기안		○		
14.	도로유지관리						

	가. 시설용 자재 보급		기안		○		
	나. 공사 착공 및 준공	기안		○			
	다. 공사의 진행 추진	기안		○			
	라. 포장도로 및 보도 유지관리	기안		○			
	마. 도로 부속시설물 유지관리	기안		○			
	바. 도로표지판 유지관리	기안		○			
	사. 지하차도 및 육교 유지관리	기안		○			
	아. 20m이하 교량관리	기안		○			
	자. 법령위반자에 대한 감독 처분	기안		○			
	차. 도로정비 및 수로원 배치 관리	기안	○				
	카. 경미한 건설공사 변경	기안		○			
	타. 공법 등 중요한 변경	기안			○		
15.	자전거전용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가. 자전거이용시설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무	기안				○	
	다.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기안		○			
	라.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	기안		○			
	마. 자전거 보관대, 대여소 신설 및 유지관리	기안	○				
	바. 무단방치자전거 처분	기안		○			
16.	도로의 노선인정과 폐지변경		기안		○		
17.	사도개설 허가	기안		○			
18.	토목, 건설 공사의 조사, 측량 시행	기안		○			
	가. 건설공사 사업계획		기안		○		
	나. 공사 착공 및 준공	기안		○			
	다. 공사의 진행 추진	기안		○			
	라. 경미한 건설공사 변경	기안		○			
	마. 공법 등 중요한 변경	기안			○		
19.	도로조명시설 관리						
	가.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집행	기안			○		
	나. 가로등, 보안등 설계 시공 및 감독	기안			○		
	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기안		○			
	라. 가로등, 보안등 공공요금 납부	기안		○			
	마. 가로등, 보안등 시설물 정기 및 일상점검	기안		○			
	바. 도로조명 유지관리원 관리	기안	○				

	사. 도로조명 유지보수(보수작업일지)	기안	○				
	아. 도로조명 자재관리(자재수불부)	기안	○				
20.	도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기안			○		
21.	도로 차량 운행 제한	기안			○		
22.	교량 등 구조물 관리(철도교량 하부는 제외)						
	가. 지하차도 및 육교관리	기안			○		
	나. 20m이하 교량관리	기안			○		
23.	수로원 배치관리 및 도로시설 관리						
	가. 수로원 배치 및 작업	기안			○		
	나. 포장 및 보도 정비	기안			○		
24.	지하도검 상가 유지관리	기안			○		
25.	기타 도로 시설물에 관한 관리						
	가. 포장도로 및 보도 유지관리(농로는 제외)	기안			○		
	나. 도로 부속시설물 유지관리	기안			○		
39.	건설사업 수익자 부담금						
	가. 수익자 부담금 부과징수 및 기본자료 조사	기안			○		
	나. 수익자 부담금조정자료 작성				기안		○
40.	도로점용 및 도로굴착허가						
	가. 연장 10m 이하 도로굴착 허가						
	(1) 도로점용 및 굴착허가	기안			○		
	(2) 취하원 또는 취소원 처리				○		
	(3) 착·준공계 처리	기안			○		
	(4) 도로점용료 및 굴착복구비 부과.징수	기안			○		
	나. 연장 10m 초과 도로굴착 허가						
	(1) 도로점용 및 굴착허가	기안			○		
	(2) 취하원 또는 취소원 처리	기안			○		
	(3) 착·준공계 처리	기안			○		
	(4) 도로점용료 및 굴착복구비 부과.징수	기안			○		
	다. 점용면적 50㎡ 이하 도로점용허가(굴착허가대상 제외)						
	(1) 도로점용허가	기안			○		
	(2) 취하원 또는 취소원 처리				○		
	(3)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기안			○		
	라. 점용면적 50㎡ 초과 도로점용허가(굴착허가대상 제외)						

	(1) 도로점용허가	기안			○		
	(2) 취하원 또는 취소원 처리	기안			○		
	(3)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기안			○		
	마.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기안		○
	바. 도로굴착 감리원 관리	기안			○		
41.	공동구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무						
	가. 공동구 관리 협의회 운영	기안			○		
	나. 공동구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 징수	기안			○		
	다. 공동구 유지관리	기안			○		
42.	1인 인터넷 민원 처리	기안			○		

방재하수과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장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 우수저류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시행						
가. 우수저류시설 설치계획 수립	기안					○
나. 우수저류시설 시행	기안				○	
다. 우수저류시설 관리	기안			○		
2. 방제시설 및 물자(수방자재)관리						
가. 방제시설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나. 방제시설 관리	기안			○	○	
다. 방제물자 관리 및 유지	기안			○		
3. 빗물배수펌프장 근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재해대책기간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근무일지 등 작성	기안			○		
다. 상용직 근무자 급여지급	기안			○		
4. 해수침투방지용 수문관리에 관한 사항						
가. 수문의 지정 및 폐기	기안			○		
나. 수문 민간관리자 지정 및 폐지	기안			○		
다. 수문 민간관리자 보상금 지급	기안			○		
5. 방제교육 및 훈련실시						

	가. 방제시설훈련 실시	기안			○			
	나. 방제시설교육 실시		기안	○				
6.	지하수관리							
	가.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처리	기안	○					
	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처리	기안		○				
	다.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등록(변경, 양도, 합병, 상속) 신고	기안	○					
	라. 지하수 개발·이용(변경, 준공, 종료) 신고	기안	○					
	마. 지하수 관리계획	기안		○				
	바.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	기안	○					
	사. 법령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	기안		○				
	아. 지하수 정화업 등록(변경)	기안	○					
	자. 타인 토지에의 출입사용 등 허가	기안	○					
	차. 지하수오염방지 및 원상복구 명령	기안		○				
	카.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안	○					
	타.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기안	○					
	파. 지하수 굴착행위 신고 및 종료	기안	○					
7.	지하수 특별회계							
	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기안		○				
	나. 지하수 이용부담금 과오납금 환급	기안		○				
	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체납정리	기안		○				
8.	공공하수도 개선계획 수립							
	가. 공공하수도 개선계획	기안				○		
	나. 공공하수도 관리상태 점검	기안		○				
9.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가.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폐지)인가, 고시(위임사무에 한함)	기안			○			
	나.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기안		○				
	다. 배수설비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기안	○					
	라. 공공하수도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수선 및 유지 포함)	기안		○				
	마. 공공하수도의 수선 및 유지명령	기안		○				
	바. 공공하수도 사용제한	기안		○				
10.	하수도 세외수입							
	가. 공공하수도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기안		○				
	나. 하수도 사용료 집계	기안		○				

	다.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정리	기안		○				
	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기안		○				
11.	기타 하수도에 관한 사무							
	가. 건축협의(실무종합심의회)	기안	○					
	나.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기안	○					
	다. 타인 토지에의 출입사용 등을 위한 처분	기안	○					
	라. 법령 위반자에 대한 감독, 처분	기안		○				
12.	하수도 특별회계(계약 및 지출)에 관한 업무	기안		○				
13.	소하천 정비계획							
	가. 소하천의 지정 및 폐지	기안				○		
	나. 소하천 정비(종합, 중기, 시행) 계획	기안			○			
14.	소하천 유지관리							
	가. 소하천 점용허가	기안		○				
	나. 소하천 폐천부지 등의 교환	기안		○				
	다. 소하천에 관한 권리, 의무, 상속, 이전 등 신고	기안	○					
	라. 법령위반자에 대한 감독, 처분	기안		○				
15.	소하천 세외수입							
	가. 점용료 부과 및 징수	기안		○				
	나. 점용료 과오납금 환급	기안		○				
	다. 점용료 체납액 정리	기안		○				
16.	지방하천 유지관리계획							
	가. 하천유지관리사업 계획	기안			○			
	나. 하천시설 점검계획	기안		○				
17.	지방하천 유지관리							
	가. 하천구역내 점용허가 및 협의	기안	○					
	나. 하천에 관한 권리, 의무, 상속, 이전 등 신고	기안	○					
	다. 하천유수의 사용관리	기안	○					
	라. 타 공작물 공사 및 유지관리	기안		○				
	마. 타인 토지에의 출입사용 등을 위한 처분	기안	○					
	바. 폐천부지 등의 교환	기안		○				
	사. 폐천부지 등의 고시	기안			○			
	아. 폐천부지의 등의 양여	기안		○				
	자. 폐천부지 등에 관한 비용	기안		○				

18.	하천 세외수입						
	가.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 징수	기안		○			
	나. 하천유수 사용료 징수	기안		○			
	다. 하천 점.사용료 과오납금 환급 및 채납관리	기안		○			

건 축 과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 건축행정 건설화 대책수립		기안			○	
2. 위반 건축물 정비에 관한 사항						
가. 위반 건축물 단속·정비계획 수립	기안			○		
나. 위반 건축물 자료수집 및 조사	기안		○			
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기안		○			
라. 위반 행위자 고발	기안		○			
마. 행정대집행 계획 수립		기안		○		
바. 행정대집행 계고서 발부	기안		○			
사. 행정대집행 영장발부	기안		○			
아.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자. 과오납금 환불	기안		○			
차. 채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부	기안	○				
3. 항공측량 관련 업무						
가. 정비계획 수립	기안		○			
나. 자료수집 및 조사	기안		○			
다.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정비실적 관리	기안		○			
4.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						
가.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기안		○			
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연장	기안	○				

5.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기안	○				
6.	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안		○			
7.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기안		○			
8.	건축선의 지정		기안				○
9.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기안				○
10.	건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가. 건축위원회 운영		기안			○	
	나.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	기안				○	
11.	건축허가·사용승인, 허가취소에 관한 업무(허가사항변경, 대수선허가 포함)						
	가. 동당 연면적 3,000㎡ 미만인 건축물(대수선은 공사 면적)						
	(1) 건축허가	기안	○				
	(2) (임시)사용승인	기안	○				
	(3) 관련기관(부서) 협의, 보완요구	기안	○				
	(4) 반려 또는 불가 처리	기안		○			
	나. 동당 연면적 3,000㎡ 이상 50,000㎡ 미만인 건축물(대수선은 공사 면적)						
	(1) 건축허가	기안		○			
	(2) (임시)사용승인	기안		○			
	(3) 관련기관(부서) 협의, 보완요구	기안	○				
	(4) 반려 또는 불가 처리	기안			○		
	다. 동당 연면적 50,000㎡ 이상인 건축물(대수선은 공사 면적)						
	(1) 건축허가	기안			○		
	(2) (임시)사용승인	기안		○			
	(3) 관련기관(부서) 협의, 보완요구	기안	○				
	(4) 반려 또는 불가 처리	기안				○	
12.	용도변경, 건축신고(신고사항변경, 대수선신고 포함)에 관한 사항						
	(1) 허가 처리 및 신고 수리	기안	○				
	(2) (임시)사용승인	기안	○				
	(3) 관련기관(부서) 협의, 보완요구	기안	○				

	구						
	(4) 반려 또는 불가 처리	기안		○			
13.	착공신고, 착공연기, 취하원 또는 취소원 처리	○					
14.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수리	○					
15.	건축사 지도 감독						
	가. 위반 건축사 위법사항 보고	기안		○			
	나. 건축사 지도 감독	기안		○			
16.	건축허가 등 취소						
	가. 허가 취소	기안		○			
	나. 신고 취소	기안	○				
17.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업무						
	가. 건축물대장 관리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정정 및 전환·합병 신청처리	기안	○				
	다. 건축물소유권(변경, 정정)정리	○					
	라. 건축물대장 작성, 말소, 부존재 증명, 관리	기안	○				
	마.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	기안		○			
18.	건축물 등의 해체·멸실신고의 수리						
	가. 건축물 해체·멸실신고	○					
	나. 건축물 해체·멸실허가	기안	○				
19.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위해우려 건축물의 지정 및 안전관리	기안		○			
	나. 시공 중인 대형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안		○			
	다. 재난관리대상건축물의 조사 및 사후 안전관리	기안		○			
20.	건축물 유지관리						
	가. 안전관리대상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 지도·점검	기안		○			
	나. 다세대주택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상설점검반 운영	기안		○			
21.	건축행정정보화사업 관련 사항		기안		○		
22.	건축물 분야에 관한 사항(사업계획 승인 대상 제외)						
	가. 분양신고	기안		○			

23.	건축물대장 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	기안	○				
24.	소규모주택정비(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무	기안		○			
25.	제3종 시설물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기안		○			
26.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기안		○			
27.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기안		○			
28.	기계설비법 관련 사항						
	가. 기계설비 공사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기안		○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기안	○				
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가. 관리인 선임 신고	기안	○				
30.	공사감리업무 적합성 확인에 관한 사무	○					
3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기안		○			
32.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에 관한 사무	○					

공동주택과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구 청 장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1. 주택단지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가. 30,000㎡미만	기안		○			
	나. 30,000㎡이상	기안			○		
2. 주택건설사업							
	가. 리모델링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기안		○			
	나. 조합설립인가(지역, 직장, 리모델링)	기안		○			
	다. 사업계획 승인						

	(1) 500세대 미만	기안	○			
	(2) 500세대 이상	기안		○		
	라. 감리자 지정 및 변경	기안	○			
	마. 착공신고	기안	○			
	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기안	○			
	사. 사용승인					
	(1) 500세대 미만	기안	○			
	(2) 500세대 이상	기안		○		
3.	임대사업자에 관한 업무	기안	○			
4.	주택관리업에 관한 사항	기안	○			
5.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사항	기안	○			
6.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기안	○			
7.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가.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	기안				○
	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기안	○			
	다. 안전진단(주택재건축) 및 시행여부 결정	기안	○			
	라. 조합설립인가	기안	○			
	마. 사업시행인가					
	(1) 500세대 미만	기안	○			
	(2) 500세대 이상	기안		○		
	바. 관리처분인가	기안	○			
	(1) 500세대 미만	기안	○			
	(2) 500세대 이상	기안		○		
	사. 감리자 지정 및 변경	기안	○			
	아. 착공신고	기안	○			
	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기안	○			
	차. 사용승인	기안	○			
	(1) 500세대 미만	기안	○			
	(2) 500세대 이상	기안		○		
8.	미분양 주택 관리 사무	기안	○			
9.	공동주택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이행강제금	기안	○			

	부과 등)					
10.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가. 조합설립인가	기안	○			
	나.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포함)	기안	○			
	다. 감리자 지정 및 변경	기안	○			
	라. 착공신고	기안	○			
	마.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기안	○			
	바. 준공인가	기안	○			
11.	공동 주택관리에 관한 사무					
	가.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및 사용검사	기안	○			
	나. 공동주택 관리방법 신고 및 실태조사	기안	○			
	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감독	기안	○			
	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운영	기안	○			
12.	공동주택 지도 감독					
	가. 공동주택 현장 지도감독 및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주택법, 재난관리법 및 시특법 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기안	○			
13.	공동주택 관리감사에 관한 사무	기안		○		
14.	공동주택 관리주체 외부 회계감사	기안	○			
15.	공동주택 각종 위원회 운영					
	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나. 공동(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다.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16.	임차급여에 관한 사무					
	가. 임차급여 대상자 보장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보장비용 징수(부정수급자)에 관한 사항	기안	○			
17.	수선유지급여에 관한 사무					
	가. 수선유지급여 위탁계약 계획 수립	기안				○
	나.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수급자 집수리) 지급에 관한 사항	기안	○			
18.	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사무					
	가.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및 선정 운	기안	○			

영에 관한 사항						
나.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및 선정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의뢰	기안	○				
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및 선정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마.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사.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기안	○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부서 이관사무의 정비를 통해 사무배분 원칙 및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별표 1] 본청 사무전결 일부 개정
 - 사무 이관에 따른 사무전결 정비
 - 장난감수리센터 운영 : 일자리정책과 → 노인장애인과

규 칙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12월 30일

남동구 규칙 제1083호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제4호 중 “정기대관”을 “대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하되”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15일”을 “7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대관”을 “대관”으로, “사용신청일자”를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우선 적용하며, 제2호와 같이 사용신청이”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되,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회관”을 “아트홀”로, “주최하는”을 “주최하거나 지원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연·전시 실적이 많은 단체 또는 개인”을 “사용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의 대관 공고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 고득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계약금 명목으로 50퍼센트를”을 “전체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일수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며 이 경우 공제금액의 상한선은 전체 사용료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기본시설 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기타사용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 반환 시에도 적용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 관람료를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를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100분의 50 범위 이내로 할인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기회원제(유료) 가입자
2. 단체관람제 운영 및 이벤트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다만, 대관공연에 대한 관람료는 제외한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를 받는 사람(단, 주민등록증 및 그 밖의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각 1명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주관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1.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각종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
2. 신년 및 송년 행사 및 지역발전을 경축하는 각종 행사 등

제26조의 제목 “(문화교육 강좌 수강료 감면)”을 “(문화교육 강좌 수강료 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 대상자에게는 수강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으며”를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에게는 아트홀에서 주관하는 문화교육 강좌 등에 대한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하며” 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이미 시행된 대관공고에 따른 사용신청 및 사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남동소래아트홀 사용신청서				처리기간	
				정기 30일 / 수시 7일	
단 체 명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법인번호 /주민등록 번호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전 시 · 공 연 행사의 명칭					
전 시 · 공 연 행사의 내용					
사 용 일 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회	시간)
행 사 · 안 내 요 원 수			출 연 인 원 수		
			관람예상인원수		
사용시설 및 설비	기본시설	☐ 대공연장 ☐ 소공연장 ☐ 전시실(갤러리)			
	부속시설	☐ 스튜디오 () ☐ 연습실 () ☐ 야외공연장 ☐ 문화교실 () ☐ 회의실 (대, 소)			
입 장 료					
첨 부	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필증(또는 사본 각 1부) 2. 기타 입증서류 1부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인)					
남동구청장 귀하					

<뒷면 계속>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남동소래아트홀은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용료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 대관 신청 정보 제공
 - 본 아트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 등
2. 수집하려는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1년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대관 신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며, 사용료 납부 및 환불시 본인 확인이 불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허 가 조 건

(덧면계속)

- 사용료를 사용허가일로부터 14일 내에 전체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대관일 경우에는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허가를 취소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 규칙 제9조, 규칙 제12조)
- 허가받은 시간 외의 사전사용(무대연습, 무대설비 등)은 할 수 없으며, 사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규칙 제9조)
- 사용기간이 지연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 제1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조례 제10조)
-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시설사용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전체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전체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일수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며 해당 공제금액의 상한선은 전체 사용료 이내로 한다. (규칙 제14조)
- 남동구청장은 천재지변 및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조례 제8조)
 - 사용허가조건 위반 및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
 -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본 아트홀의 검인이 없는 초대권 및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으며, 검인신청은 공연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입장금액,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조례 제13조 및 규칙 제19조)
- 음향 및 조명시설물 등은 본 아트홀의 시설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외부로부터 반입할 경우 대관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는 공연장과 아트홀내·외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사진행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발생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함은 물론 관람객의 각종 안전사고발생 및 시설물 훼손 시에도 모든 책임을 저야 합니다. (조례 제11조, 규칙 제15조 및 제16조)
-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무대스텝과 공연진행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무대스텝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규칙 제17조)
- 공연장내 촬영과 녹음은 공연자의 동의를 얻은 후, 무대스텝의 허가 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귀 아트홀의 허가조건 및 아트홀사용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성명 :

(서명)

아트홀사용시 유의사항

행사 및 공연을 하기 위해 남동구소래아트홀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시설 유지상 또는 공중위생상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읽어 보시고 행사 및 공연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 공연장 안에서는 음료수, 커피, 물 등을 마시거나 식사 등은 절대 불가하며, 화환, 꽃다발, 음식물 등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2. 행사 중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하여는 규격봉투를 미리 준비하여 행사 종료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시고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반출해 나가야 합니다.
3. 행사시 도난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아트홀이 책임지지 않사오니 귀중품은 주최 측의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4. 주최자는 행사 및 공연시작 전 반드시 위의 1, 2, 3항을 행사 참석자 및 관람자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5. 본 아트홀 내 부착할 광고물(현수막, 현판 등)은 아트홀과 협의 하여야 하며, 현수막 게시는 각 1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현수막은 광장 현수막 게시대(6m×0.9m), 대공연장 바텐(14m×1m이내), 소강당 현수막 게시대(9m×0.6m)에 일정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행사 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광고물은 아트홀 내 부착할 수 없습니다.(규칙 제16조)
6. 각종 홍보물(현수막 및 벽보 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법하게 부착하여야 하고, 현수막은 남동구청 도시경관과에서 필히 검인을 득하여야 하며, 만일 불법게시로 적발되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고발 조치합니다. 또한, 공연 및 행사 후에는 반드시 홍보물(현수막 및 벽보 등)을 철거하여야 합니다.
7. 아트홀의 시설과 공연장은 주민의 문화예술 생활을 위해 지어진 시설이므로 개최하는 행사 및 공연 내용이 본래의 대관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깨끗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을 준수하시어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아트홀대관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남동구소래아트홀 (☎ 032-453-5190 / Fax 032-453-5189)로 연락바랍니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안」에 따라 남동소래아트홀 운영 규정을 이용자 권리보장과 공정성 강화를 중심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소래아트홀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 작성 및 결과공개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사용변경 허가 신청 요건 완화(안 제9조)
- 사용신청 경합 시 허가결정기준 마련(안 제11조)
- 사용료에 대한 계약금 납부 금액 하향 조정(안 제12조)
- 사용료 반환 신청 제한사항 완화(안 제14조)
- 관람료 할인 대상자 확대(안 제21조)
- 수강료 할인 대상자 확대(안 제26조)

훈 령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12월 30일

남동구 훈령 제389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훈령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본청 각 부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777	
대변인	계		8	
	일반직	소 계	8	
		5 급	1	행정1
		6 급	3	행정3
		7 급	2	행정1, 행정·전산1
소통협력 담당관	계		9	
	일반직	소 계	9	
		5 급	1	행정1
		6 급	3	행정1, 행정·세무1, 행정·사회복지1
		7 급	2	행정2
감사실	계		13	
	일반직	소 계	13	
		5 급	1	행정1
		6 급	5	행정3, 행정·시설1, 행정·세무·사회복지1
		7 급	7	행정6, 행정·사회복지·시설1
기 획 예산과	계		21	
	일반직	소 계	21	
		4 급	1	지방서기관1
		5 급	1	행정1
		6 급	6	행정6
일자리 정책과	계		17	
	일반직	소 계	17	
		5 급	1	행정1
		6 급	6	행정6
		7 급	6	행정6
안 전 총괄과	계		22	
	일반직	소 계	22	
		5 급	1	행정·시설1
		6 급	4	행정·공업2, 행정·시설1, 행정·방송통신1
		7 급	6	행정1, 공업1, 방송통신1, 행정·시설2, 공업·시설1
	계		7	
	일반직	소 계	7	
		5 급	1	행정1, 공업1, 시설2, 방송통신2, 행정·방재안전1
		6 급	4	
		7 급	2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미디어 정보과	계		17	
	일반직	소 계	17	
		5 급	1	행정1
		6 급	4	전산1, 방송통신1, 행정·전산2
		7 급	7	전산5, 방송통신2
		8 급	4	전산3, 방송통신1
총무과	계		34	
	정무직	-	1	(구청장)
	일반직	소 계	29	
		2 급	1	지방이사관1
		4 급	1	지방서기관1
		5 급	1	행정1
		6 급	7	행정7
		7 급	11	행정10, 행정·전산1
		8 급	7	행정6, 행정·전산1
		9 급	1	행정1
	별정직	소 계	4	
		5 급	1	비서실장1
		6 급	1	비서요원1
		7 급	1	비서요원1
		8 급	1	비서요원1
평 생 교육과	계		32	
	일반직	소 계	32	
		5 급	1	행정1
		6 급	7	행정5, 행정·사서2
		7 급	10	전산1, 시설1, 행정·사서8
		8 급	7	사서3, 행정·사서4
		9 급	7	사서5, 행정·사서2
문 화 관광과	계		12	
	일반직	소 계	12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2, 행정·시설2
		7 급	4	행정2, 행정·시설2
		8 급	2	행정2
		9 급	1	행정1
체 육 진흥과	계		12	
	일반직	소 계	12	
		5 급	1	행정1
		6 급	3	행정2, 시설1
		7 급	6	행정1, 행정·녹지1, 행정·시설2, 녹지·시설2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민 원 봉사과	계		21	
	일반직	소 계	20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4
		7 급	6	행정6
		8 급	8	행정8
		9 급	1	행정1
	연구직	6 급	1	기록연구사1
토 지 정보과	계		21	
	일반직	소 계	21	
		5 급	1	시설1
		6 급	6	시설4, 행정·시설2
		7 급	9	시설8, 행정·시설1
		8 급	3	시설2, 행정·시설1
		9 급	2	시설2
재무과	계		29	
	일반직	소 계	29	
		4 급	1	지방서기관1
		5 급	1	행정1
		6 급	9	운전3, 기계운영1, 행정·세무2, 행정·시설2, 행정·운전1
		7 급	12	행정3, 공업2, 시설2, 방송통신1, 운전2, 행정·세무2
세무과	계		31	
	일반직	소 계	31	
		5 급	1	행정1
		6 급	10	세무7, 행정·세무3
		7 급	16	세무12, 행정·세무4
세 입 징수과	계		37	
	일반직	소 계	37	
		5 급	1	행정1
		6 급	9	세무7, 행정·세무2
		7 급	18	세무14, 행정·세무4
		8 급	4	세무3, 행정·세무1

		9 급	5	세무4, 행정·세무1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기 업 지원과	계		14	
	일반직	소 계	14	
		5 급	1	행정·공업1
		6 급	4	행정2, 공업·시설2
		7 급	6	행정3, 공업2, 공업·시설1
		8 급	2	행정2
	9 급	1	행정1	
생 활 경제과	계		19	
	일반직	소 계	19	
		5 급	1	행정1
		6 급	5	행정2, 공업1, 행정·공업1, 행정·해양수산1
		7 급	6	행정3, 행정·시설1, 행정·공업1, 시설·해양수산1
		8 급	6	행정3, 공업2, 행정·공업1
	9 급	1	공업1	
농 축 수산과	계		19	
	일반직	소 계	19	
		5 급	1	행정·농업·해양수산1
		6 급	4	행정·농업1, 행정·해양수산1, 행정·농업·수익2
		7 급	9	행정1, 농업4, 수익2, 해양수산2
		8 급	5	농업3, 해양수산1, 행정·해양수산1
복 지 정책과	계		23	
	일반직	소 계	23	
		4 급	1	지방서기관1
		5 급	1	행정·사회복지1
		6 급	5	행정1, 행정·사회복지4
		7 급	8	행정3, 사회복지5
	8 급	7	행정2,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2	
	9 급	1	행정·사회복지1	
사 회 보장과	계		40	
	일반직	소 계	40	
		5 급	1	행정·사회복지1
		6 급	6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2
		7 급	14	행정6, 사회복지8
		8 급	18	행정6, 사회복지12

		9 급	1	사회복지1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노 인 장애인과	계		26	
	일반직	소 계	26	
		5 급	1	행정·사회복지1
		6 급	6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3
	7 급	10	행정3, 사회복지3, 시설1, 행정·사회복지2, 행정·시설1	
	8 급	9	행정4, 사회복지5	
여 성 가족과	계		13	
	일반직	소 계	13	
		5 급	1	행정·사회복지1
		6 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2
	7 급	3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8 급	4	행정2, 사회복지2	
	9 급	1	사회복지1	
아 동 복지과	계	1)	20	
	일반직	2) 소계	20	
		5 급	1	행정·사회복지1
		6 급	6	행정1,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3
	7 급	7	행정2, 사회복지4, 행정·간호1	
	8 급	6	행정1, 사회복지4, 보건1	
보 육 정책과	계	3)	20	
	일반직	소 계	20	
		5 급	1	행정·사회복지1
		6 급	6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3
	7 급	5	행정3, 사회복지2	
	8 급	8	행정4, 사회복지3, 시설1	
가) 청 소 행 정 과	(1) 계	(가)	① 19	
	일반직	소 계	19	
		4 급	② 1	지방서기관1
		5 급	③ 1	행정·환경1
	6 급	④ 7	행정3, 환경2, 행정·환경2	
	7 급	⑤ 5	행정3, 환경2	
	8 급	⑥ 5	행정3, 환경2	
환 경	계		⑦ 23	

보전과	일반직	소 계	⑧ 23	
		5 급	⑨ 1	행정·환경1
		6 급	⑩ 8	환경3, 행정·환경1, 공업·환경3, 사무운영1
		7 급	⑪ 12	행정1, 환경10, 공업·환경1
		8 급	⑫ 2	환경1, 공업·환경1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도 시 경관과	계		18	
	일반직	소 계	18	
		5 급	1	행정·시설1
		6 급	4	행정2, 행정·시설2
		7 급	7	행정6, 행정·시설1
		8 급	4	행정2, 행정·시설2
		9 급	2	행정1, 시설1
공 원 녹지과	계		22	
	일반직	소 계	22	
		5 급	1	행정·녹지1
		6 급	6	녹지3, 행정·녹지3
		7 급	8	녹지8
		8 급	6	녹지4, 행정·녹지2
		9 급	1	녹지1
교 통 행정과	계		24	
	일반직	소 계	24	
		5 급	1	행정·시설1
		6 급	5	행정1, 행정·세무1, 행정·시설3
		7 급	12	행정2, 전산1, 시설5, 운전1, 행정·세무2, 행정·시설1
		8 급	6	행정3, 행정·시설3
자동차 관리과	계		25	
	일반직	소 계	25	
		5 급	1	행정1
		6 급	5	행정1, 사무운영1, 행정·세무2, 행정·공업1
		7 급	7	행정4, 세무1, 행정·세무1, 행정·공업1
		8 급	9	행정8, 공업·시설1
		9 급	3	행정3
도 시 재생과	계		29	
	일반직	소 계	29	

		4 급	1	지방기술서기관1
		5 급	1	시설1
		6 급	7	시설5, 행정·시설2
		7 급	9	시설8, 행정·시설1
		8 급	9	시설4, 사무운영1, 행정·시설4
		9 급	2	시설2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공 영 개발과	계		11	
	일반직	소 계	11	
		5 급	1	행정·시설1
		6 급	4	시설2, 행정·공업1, 시설·해양수산1
		7 급	3	행정·시설2, 공업·시설1
		8 급	1	시설1
		9 급	2	시설1, 행정·녹지1
건설과	계		26	
	일반직	소 계	26	
		5 급	1	시설1
		6 급	6	시설3, 사무운영1, 행정·시설1, 공업·시설1
		7 급	10	행정1, 시설6, 운전1, 기계운영1, 행정·공업1
		8 급	6	공업2, 시설3, 행정·공업1
		9 급	3	행정1, 시설2
방 재 하수과	계		15	
	일반직	소 계	15	
		5 급	1	행정·시설1
		6 급	4	공업1, 시설2, 행정·시설1
		7 급	4	공업1, 시설3
		8 급	4	공업2, 시설2
		9 급	2	행정1, 시설1
건축과	계		20	
	일반직	소 계	20	
		5 급	1	시설1
		6 급	5	시설4, 행정·시설1
		7 급	6	시설2, 행정·시설4
		8 급	6	시설4, 행정·시설2
		9 급	2	공업1, 시설1
공 동	계		15	

주 택 과	일반직	소 계	15	
		5 급	1	행정·시설1
		6 급	4	행정1, 시설1, 행정·시설1, 사회복지·시설1
		7 급	4	사회복지1, 시설3
		8 급	4	사회복지1, 시설3
		9 급	2	행정2

【별표 2】

의회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⑬	28	
의 회 사무국	계		28	
	일반직	소 계	28	
		4 급	1	지방서기관1
		5 급	2	행정2
		6 급	8	행정5, 속기1, 행정·사회복지1, 행정·속가사무운영1
		7 급	15	행정 10, 속기2, 운전1, 사무운영1, 공업·방송통신1
		8 급	2	행정2

【별표 3】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제3항 관련)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138	
보 건 행정과	계		41	
	일반직	소 계	41	
		4 급	1	지방기술서기관1
		5 급	3	의무2, 행정·보건·간호1
		6 급	9	운전1, 행정·보건1, 보건·의료기술2, 보건·간호1, 의료기술·간호2, 행정·보건·간호1, 보건·간호·간호조무1
		7 급	17	보건·의료기술4, 보건·간호7, 의료기술·간호5, 간호·간호조무1
		8 급	8	보건1, 의료기술1, 간호1, 운전1, 보건·의료기술1, 보건·간호1 , 행정·보건·간호1, 보건·의료기술·간호1
		9 급	3	보건2, 의료기술1
	계		40	
건 강 증진과	일반직	소 계	40	
		5 급	3	의무2,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1
		6 급	4	보건·간호1, 의료기술·간호1, 행정·보건·간호1, 보건·의료기술·간호1
		7 급	16	의료기술1, 간호10, 행정·보건1, 보건·간호4
		8 급	17	보건2, 간호14, 보건·의료기술·간호1
치매정신 건강과	계		25	
	일반직	소 계	25	
		5 급	1	의무·보건·의료기술·간호1
		6 급	4	보건·간호2, 행정·보건·간호1, 보건·의료기술·간호1
		7 급	7	간호4, 보건·간호3
		8 급	11	간호9, 의료기술2
식 품 위생과	계		22	
	일반직	소 계	22	
		5 급	1	행정·보건·간호1
		6 급	5	행정1 , 보건2, 행정·보건2
		7 급	6	보건6
간석건강 생활지원 센터	계		10	
	일반직	소 계	10	
		5 급	1	보건·간호1
		6 급	3	보건·간호1, 보건·의료기술·간호2
		7 급	3	보건1, 보건·간호2
		8 급	3	의료기술1, 간호1, 보건·간호1

【별표 4】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⑭	14	
남동산단 지원사업소	계		14	
	일반직	소 계	14	
		5 급	1	행정·시설1
		6 급	3	행정·세무1, 행정·공업1, 행정·녹지·환경1
		7 급	5	행정1, 운전1, 행정·세무1, 공업·시설2
		8 급	5	세무1, 녹지2, 환경1, 공업·시설1

【별표 5】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제6항 관련)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353	
구월1동	계		18	
	일반직	소 계	18	
		5 급	1	행정1
		6 급	5	행정3,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7 급	5	행정3, 사회복지2
		8 급	6	행정3, 사회복지3
		9 급	1	행정1
구월2동	계		18	
	일반직	소 계	18	
		5 급	1	행정1
		6 급	5	행정3,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7 급	5	행정3, 사회복지2
		8 급	6	행정3, 사회복지3
		9 급	1	행정1
구월3동	계		18	
	일반직	소 계	18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7 급	5	행정3, 사회복지2
		8 급	6	행정3, 사회복지3
		9 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구월4동	계		17	
	일반직	소 계	17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2
		7 급	6	행정3, 사회복지2, 사무운영1
		8 급	4	행정1, 사회복지2, 운전1
		9 급	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간석1동	계		18	
	일반직	소 계	18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7 급	5	행정3, 사회복지2
		8 급	6	행정1, 사회복지3, 운전1, 사무운영1
	9 급	2	행정1, 사회복지1	
간석2동	계		16	
	일반직	소 계	16	
		5 급	1	행정·보건1
		6 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7 급	6	행정3,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8 급	4	행정2, 사회복지2
	9 급	1	행정1	
간석3동	계		18	
	일반직	소 계	18	
		5 급	1	행정·사회복지1
		6 급	4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2
		7 급	5	행정3, 사회복지2
		8 급	6	행정3, 사회복지3
	9 급	2	행정1, 사회복지1	
간석4동	계		17	
	일반직	소 계	17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7 급	5	행정3, 사회복지2
		8 급	6	행정3,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9 급	1	행정1	
만수1동	계		18	
	일반직	소 계	18	
		5 급	1	행정·사회복지1
		6 급	4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7 급	6	행정4, 사회복지2
		8 급	5	행정2, 사회복지3
	9 급	2	사회복지2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만수2동	계		17	
	일반직	소 계	17	
		5 급	1	행정·시설1
		6 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7 급	7	행정3, 사회복지3, 운전1
		8 급	4	행정2, 사회복지2
만수3동	계		16	
	일반직	소 계	16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7 급	6	행정3,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8 급	4	행정1, 사회복지2, 사무운영1
만수4동	계		16	
	일반직	소 계	16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2, 행정·세무1, 행정·사회복지1
		7 급	5	행정3, 사회복지2
		8 급	5	행정3, 사회복지2
만수5동	계		16	
	일반직	소 계	16	
		5 급	1	행정·시설1
		6 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1, 행정·보건·간호1
		7 급	6	행정3, 사회복지3
		8 급	4	행정1,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만수6동	계		17	
	일반직	소 계	17	
		5 급	1	행정1
		6 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7 급	7	행정4, 사회복지3
		8 급	4	행정2, 사회복지2

구 분	직 종	계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장수서창동	계		17	
	일반직	소 계	17	
		5 급	1	행정·복지1
		6 급	5	행정3, 행정·세무1, 행정·사회복지1
		7 급	6	행정3, 사회복지3
		8 급	4	행정3, 사회복지1
서창2동	계		20	
	일반직	소 계	20	
		5 급	1	행정1
		6 급	5	행정3,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7 급	5	행정3, 사회복지2
		8 급	7	행정3, 사회복지4
남촌도림동	계		18	
	일반직	소 계	18	
		5 급	1	행정·시설1
		6 급	5	행정3, 행정·사회복지1, 행정·보건·간호1
		7 급	6	행정2, 사회복지3, 전화상담운영1
		8 급	5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논현1동	계		19	
	일반직	소 계	19	
		5 급	1	행정1
		6 급	5	행정3,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7 급	6	행정3, 사회복지2, 운전1
		8 급	5	행정2, 사회복지3
논현2동	계		20	
	일반직	소 계	20	
		5 급	1	행정·사회복지1
		6 급	5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2
		7 급	6	행정3, 사회복지2, 운전1
		8 급	6	행정3, 사회복지3
논현고잔동	계		19	
	일반직	소 계	19	
		5 급	1	행정·공업·환경1
		6 급	5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2
		7 급	7	행정3, 사회복지3, 운전1
		8 급	4	행정1, 사회복지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및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 후속 조치로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정」 별표에 규정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각 동별 공무원의 직렬·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별표 1] 구 본청 주요 조정 현황

- 신규 행정수요 정원확보 및 인력 보강 등 ⇒ 7명 증원

부서명	정원			부서명	정원		
	전	후	증감		전	후	증감
재무과	29	29	-	아동복지과	19	20	+1
세입징수과	36	37	+1	방재하수과	14	15	+1
사회보장과	37	40	+3	건축과	19	20	+1

- [별표 2] 의회사무국 주요 조정 현황

-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및 정책지원관 인력 보강 ⇒ 5명 증원

부서명	정원		
	전	후	증감
의회사무국	23	28	+5

- [별표 3] 직속기관(보건소) 주요 조정 현황

- 감염병 대응 인력 보강 등 ⇒ 5명 증원

부서명	정원		
	전	후	증감
보건행정과	37	41	+4
건강증진과	40	40	-
식품위생과	21	22	+1

- [별표 4] 사업소 주요 조정 현황

- 공원 녹지 관리 인력 보강 ⇒ 1명 증원

부서명	정원		
	전	후	증감
남동산단지원사업소	13	14	+1

- [별표 5] 동 주요 조정 현황

- 직렬 조정

부서명	정원		
	전	후	증감
구월3동	18	18	-
간석4동	17	17	-
만수1동	18	18	-

훈 령

남동구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12월 30일

남동구 훈령 제390호

남동구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남동구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기간제근로자의 관리)”를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이 필요한 사용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9월말까지 다음연도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기간,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부서 및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지속성 여부, 기간제근로자 남용 방지 등 심사기준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⑤ 사용부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사용부서의 장은 사전에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관리부서는 사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대하여 신체검사와”를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채용신체검사서 등)”을 “(국가건강검진 결과서 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적 조건이 요구되어 부득이 채용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가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사용부서”를 “관리부서 또는 사용부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직근로자 정수표

1. 공무직 정수

부 서 별	계	행 정 보조원	단 순 노무원	환 경 미회원
총 계	258	61	57	140
본청 소계	214	40	34	140
대변인	1	1		
일자리정책과	4	4		
총무과	1	1		
평생교육과	5	5		
민원봉사과	2	2		
생활경제과	2		2	
복지정책과	6	6		
사회보장과	5	5		
여성가족과	1	1		
아동복지과	4	4		
보육정책과	1	1		
청소행정과	140			140
환경보전과	2		2	
도시경관과	7	1	6	
공원녹지과	3		3	
교통행정과	8	7	1	
도시재생과	2		2	
건 설 과	7	1	6	
방재하수과	13	1	12	
직속기관 소계	23	21	2	
보건소	보건행정과	4	2	2
	건강증진과	12	12	
	치매정신건강과	4	4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3	3	
사업소 소계	1		1	
남동산단지원사업소	1		1	
동 소계	20		20	
구월1동	1		1	

구월2동	1		1	
구월3동	1		1	
구월4동	1		1	
간석1동	1		1	
간석2동	1		1	
간석3동	1		1	
간석4동	1		1	
만수1동	1		1	
만수2동	1		1	
만수3동	1		1	
만수4동	1		1	
만수5동	1		1	
만수6동	1		1	
장수서창동	1		1	
서창2동	1		1	
남촌도림동	1		1	
논현1동	1		1	
논현2동	1		1	
논현고잔동	1		1	

2. 청원경찰의 정수

부 서 별	합 계	경비청원경찰	기 타
총 계	21	21	
본청 소계	21	21	
총 무 과	21	2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기간제근로자 관리 강화 및 채용 사전심사 근거규정 마련
-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에 따른 신체검사서 제출 최소화 및 구직자 비용부담 금지 명시
- 정년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사전심사 및 관리 강화(안 제4조)
- 신체검사서 제출 최소화 및 비용부담 금지(안 제10조제4항)
- [별표] 공무원직근로자 정수표
 - 총 정수 282 → 279(감3) : 퇴직 -5, 증원 2

부서(동)명	인원			사유
	현행	변경	증감	
평생교육과	4	5	1	기간제채용심사(정수채정)
사회보장과	4	5	1	기간제지속채용(정수채정)
환경보전과	3	2	-1	기간제채용심사(정수조정)
도시경관과	9	7	-2	정년퇴직1, 정수조정1
공원녹지과	4	3	-1	정수조정1
건설과	9	7	-2	정수조정2
보건행정과	5	4	-1	정수조정1
치매정신건강과	5	4	-1	정년퇴직
구월2동	0	1	1	정수채정(운전직 인사)
만수2동	0	1	1	정수채정(운전직 인사)
논현1동	0	1	1	정수채정(운전직 인사)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2461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우리 구 남촌동 121-1번지 및 도림동 515-2번지 일원에서 시행된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건립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사업
2.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3. 지적공부 폐쇄 및 확정 내역

토지소재지	종전 지적공부(폐쇄)		확정 지적공부(시행)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남촌동	142	166,676	10	166,860.3	지번조서 별첨
도림동	29	20,743	7	20,740.2	지번조서 별첨

4. 공고기간 : 2021. 12. 23. ~ 2022. 1. 7.(15일간)
5. 시 행 일 : 2021. 12. 23.
6.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
8. 문 의 사 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토지정보과 032)453-24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전토지지번별조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연번	소재지	토 지 내 역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면적(㎡)		
1	남촌동	121-1	전	351	인천광역시	
2	남촌동	122-3	전	330	인천광역시	
3	남촌동	122-4	전	495	인천광역시	
4	남촌동	122-5	전	363	인천광역시	
5	남촌동	122-6	전	430	인천광역시	
6	남촌동	122-7	전	173	인천광역시	
7	남촌동	122-8	전	324	인천광역시	
8	남촌동	123	전	1,458	인천광역시	
9	남촌동	124	전	2,050	인천광역시	
10	남촌동	125-1	전	1,029	인천광역시	
11	남촌동	127-3	전	3,049	인천광역시	
12	남촌동	128-5	전	124	인천광역시	
13	남촌동	128-6	전	19	인천광역시	
14	남촌동	128-7	전	1	인천광역시	
15	남촌동	136-1	전	605	인천광역시	
16	남촌동	137-1	전	1,076	인천광역시	
17	남촌동	138-1	전	4,079	인천광역시	
18	남촌동	138-2	전	803	인천광역시	
19	남촌동	138-3	전	347	인천광역시	
20	남촌동	139	전	1,791	인천광역시	
21	남촌동	139-1	전	1,323	인천광역시	
22	남촌동	139-2	전	1,792	인천광역시	
23	남촌동	140	전	324	인천광역시	
24	남촌동	141-1	전	1,908	인천광역시	
25	남촌동	142-1	전	116	인천광역시	
26	남촌동	143-1	전	248	인천광역시	
27	남촌동	144-5	전	1,226	인천광역시	
28	남촌동	144-6	전	915	인천광역시	
29	남촌동	144-7	전	837	인천광역시	

30	남촌동	145-1	전	2,932	인천광역시	
31	남촌동	145-2	전	2,221	인천광역시	
32	남촌동	146-1	전	888	인천광역시	
33	남촌동	147-1	전	1,015	인천광역시	
34	남촌동	148-2	전	4	인천광역시	
35	남촌동	148-3	전	540	인천광역시	
36	남촌동	149	전	1,002	인천광역시	
37	남촌동	149-5	전	629	인천광역시	
38	남촌동	149-6	전	762	인천광역시	
39	남촌동	149-7	전	162	인천광역시	
40	남촌동	149-8	전	1,172	인천광역시	
41	남촌동	152-5	전	1,320	인천광역시	
42	남촌동	152-6	대	7	인천광역시	
43	남촌동	153-1	전	453	인천광역시	
44	남촌동	153-2	대	331	인천광역시	
45	남촌동	153-8	창	200	인천광역시	
46	남촌동	153-11	대	49	인천광역시	
47	남촌동	153-12	대	13	인천광역시	
48	남촌동	153-13	대	7	인천광역시	
49	남촌동	153-14	도	20	인천광역시	
50	남촌동	153-15	전	1,731	인천광역시	
51	남촌동	154-3	전	3,751	인천광역시	
52	남촌동	154-4	차	155	인천광역시	
53	남촌동	155	전	2,779	인천광역시	
54	남촌동	155-1	전	484	인천광역시	
55	남촌동	156	전	628	인천광역시	
56	남촌동	157	전	2,526	인천광역시	
57	남촌동	158	전	1,064	인천광역시	
58	남촌동	159	전	1,627	인천광역시	
59	남촌동	159-1	전	490	인천광역시	
60	남촌동	159-2	전	3,013	인천광역시	
61	남촌동	160	전	3,614	인천광역시	
62	남촌동	160-1	전	2,072	인천광역시	
63	남촌동	161	전	3,775	인천광역시	
64	남촌동	162	전	3,193	인천광역시	

65	남촌동	163	전	1,544	인천광역시	
66	남촌동	163-1	전	1,544	인천광역시	
67	남촌동	164	전	3,094	인천광역시	
68	남촌동	165	전	846	인천광역시	
69	남촌동	166	전	1,567	인천광역시	
70	남촌동	167	전	1,021	인천광역시	
71	남촌동	168	전	1,223	인천광역시	
72	남촌동	169	전	1,002	인천광역시	
73	남촌동	169-1	전	1,487	인천광역시	
74	남촌동	170	전	942	인천광역시	
75	남촌동	171-1	전	2,034	인천광역시	
76	남촌동	171-2	도	208	인천광역시	
77	남촌동	171-3	전	367	인천광역시	
78	남촌동	171-4	임	1,103	인천광역시	
79	남촌동	171-5	도	1,460	인천광역시	
80	남촌동	172-1	전	3,467	인천광역시	
81	남촌동	172-2	전	1,794	인천광역시	
82	남촌동	172-10	전	203	인천광역시	
83	남촌동	172-12	전	187	인천광역시	
84	남촌동	172-17	임	216	인천광역시	
85	남촌동	172-19	임	169	인천광역시	
86	남촌동	173-1	전	50	인천광역시	
87	남촌동	173-2	전	2,449	인천광역시	
88	남촌동	173-3	전	1,174	인천광역시	
89	남촌동	173-11	차	198	인천광역시	
90	남촌동	173-12	전	562	인천광역시	
91	남촌동	173-13	전	1,101	인천광역시	
92	남촌동	173-17	대	309	인천광역시	
93	남촌동	173-18	전	1,074	인천광역시	
94	남촌동	173-19	전	1,077	인천광역시	
95	남촌동	173-20	전	2,351	인천광역시	
96	남촌동	173-21	전	1,043	인천광역시	
97	남촌동	174-3	전	555	인천광역시	
98	남촌동	175	전	1,370	인천광역시	
99	남촌동	175-1	전	445	인천광역시	

100	남촌동	176-1	전	1,970	인천광역시	
101	남촌동	176-4	전	2,330	인천광역시	
102	남촌동	176-5	전	933	인천광역시	
103	남촌동	176-8	도	1,769	인천광역시	
104	남촌동	176-9	전	3,584	인천광역시	
105	남촌동	177-1	전	3,282	인천광역시	
106	남촌동	177-3	전	321	인천광역시	
107	남촌동	178-1	전	992	인천광역시	
108	남촌동	178-2	전	727	인천광역시	
109	남촌동	178-3	전	909	인천광역시	
110	남촌동	179-1	전	1,000	인천광역시	
111	남촌동	179-2	전	446	인천광역시	
112	남촌동	179-3	전	726	인천광역시	
113	남촌동	180	전	813	인천광역시	
114	남촌동	181	전	774	인천광역시	
115	남촌동	182	전	892	인천광역시	
116	남촌동	183-1	전	727	인천광역시	
117	남촌동	183-2	전	2,102	인천광역시	
118	남촌동	183-3	전	1,636	인천광역시	
119	남촌동	183-4	전	1,822	인천광역시	
120	남촌동	183-5	전	536	인천광역시	
121	남촌동	183-6	전	1,537	인천광역시	
122	남촌동	183-7	전	661	인천광역시	
123	남촌동	183-8	전	1,227	인천광역시	
124	남촌동	184-4	전	296	인천광역시	
125	남촌동	184-5	전	1,891	인천광역시	
126	남촌동	185-2	도	6	인천광역시	
127	남촌동	185-3	전	1,474	인천광역시	
128	남촌동	185-10	전	3,975	인천광역시	
129	남촌동	186-53	전	1,870	인천광역시	
130	남촌동	186-54	전	1,099	인천광역시	
131	남촌동	189-1	전	1,054	인천광역시	
132	남촌동	190	답	2,863	인천광역시	
133	남촌동	191-3	답	302	인천광역시	
134	남촌동	193-3	전	627	인천광역시	

135	남촌동	194-3	전	822	인천광역시	
136	남촌동	195-2	전	2,361	인천광역시	
137	남촌동	196-2	전	177	인천광역시	
138	남촌동	198-7	전	25	인천광역시	
139	남촌동	199-7	임	398	인천광역시	
140	남촌동	200-3	전	326	인천광역시	
141	남촌동	598-85	전	232	인천광역시	
142	남촌동	598-87	도	3,711	인천광역시	
143	도림동	515-2	전	17,566	인천광역시 남동구	
144	도림동	528-5	전	480	인천광역시	
145	도림동	528-8	전	417	인천광역시	
146	도림동	530-7	전	235	인천광역시	
147	도림동	530-8	대	360	인천광역시	
148	도림동	530-9	전	532	인천광역시	
149	도림동	558-26	도	11	인천광역시	
150	도림동	561-5	전	267	인천광역시	
151	도림동	561-6	도	42	인천광역시	
152	도림동	561-7	도	341	인천광역시	
153	도림동	562-10	도	8	인천광역시	
154	도림동	617-46	도	179	인천광역시	
155	도림동	617-72	도	305	인천광역시	
합 계		155 필		187,419		

확정토지 지번별조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연번	소재지	토 지 내 역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면적(㎡)		
1	남촌동	652	대	137,959.6	인천광역시	
2	남촌동	652-1	공	4,151.3	인천광역시	
3	남촌동	652-2	도	1,713.6	인천광역시	
4	남촌동	652-3	공	3,240.8	인천광역시	
5	남촌동	652-4	도	1,720.0	인천광역시	
6	남촌동	652-5	공	2,764.3	인천광역시	
7	남촌동	652-6	공	13,822.4	인천광역시	
8	남촌동	652-7	도	322.4	인천광역시	
9	남촌동	652-8	대	208.0	인천광역시	
10	남촌동	652-9	공	957.9	인천광역시	
11	도림동	726	공	17,574.6	인천광역시 남동구	
12	도림동	726-1	대	127.4	인천광역시	
13	도림동	726-2	공	1,412.0	인천광역시	
14	도림동	726-3	도	660.4	인천광역시	
15	도림동	727	대	638.7	인천광역시	
16	도림동	727-1	공	169.2	인천광역시	
17	도림동	727-2	공	157.9	인천광역시	
합 계		17 필		187,600.5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1-2463호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축구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의 여가 선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남동구민축구단 육성·지원을 위한 목적을 규정 (안 제1조)
- 남동구민축구단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구청장은 구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민축구단 사업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안 제3조)
- 구민축구단이 경기 및 훈련 등의 사유로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하고 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음 (안 제4조~제5조)
- 구민축구단에게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를 할 수 있음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체육진흥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6273 FAX 453-215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 입법예고)

4. 참고사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6조 및 제18조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12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남동구민축구단을 적극 육성·지원하여 53만 남동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의 화합과 정주의식을 고취시켜 행복한 남동구의 초석을 다지기 위함
- 지역 축구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의 여가 선용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남동구민축구단 육성·지원을 위한 목적을 규정 (안 제1조)
- 남동구민축구단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구청장은 구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민축구단 사업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안 제3조)
- 구민축구단이 경기 및 훈련 등의 사유로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하고 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음 (안 제4조 제5조)
- 구민축구단에게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를 할 수 있음 (안 제6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국민체육진흥법」 관련조문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축구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의 여가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남동구민축구단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동구민축구단(이하 “구민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지역의 구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고 남동구와 연고지 협약을 한 축구단을 말한다.
2. “경기장”이란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운동장을 말한다.

제3조(구민축구단 육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단체 등에게 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축구단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축구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리그 참가
2.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한 훈련 및 유소년 축구단 운영
3. 그 밖에 구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구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민축구단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축구단을 운영하는 경우
3. 국제축구교류 및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민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경기장의 우선사용) 구청장은 구민축구단에게 경기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제대회 등으로 경기장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경기장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구민축구단에게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프로 경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마와 경륜·경정 등 국민 여가 체육 활동이 건전하게 시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1-2464호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1640호, 2019. 9. 27.) 부칙 제2조 유효기간(2021년 12월 31일자)경과에 따라 조례 폐지

2. 주요내용

-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체육진흥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6273 FAX 453-215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 입법예고)

4. 참고사항

-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12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1640호, 2019. 9. 27.) 부칙 제2조 유효기간(2021년 12월 31일자)경과에 따라 조례 폐지

☐ 주요내용

-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09.27 조례 제164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축구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의 여가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남동구민축구단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동구민축구단(이하 “구민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지역의 구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고 남동구와 연고지 협약을 한 축구단을 말한다.
2. “경기장”이란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관리 하고 있는 운동장을 말한다.

제3조(구민축구단 육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단체 등에게 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축구단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축구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리그 참가
2.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한 훈련 및 유소년 축구단 운영
3. 그 밖에 구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구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민축구단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축구단을 운영하는 경우
3. 국제축구교류 및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민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경기장의 우선사용) 구청장은 구민축구단에게 경기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제대회 등으로 경기장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경기장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구민축구단에게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40호, 2019.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248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362호선, 소로2-2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362호선, 소로2-2호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신청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건설과(☎032-453-2722), 도시재생과(☎032-453-2955)에 갖추어 놓았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30.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5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능골로 2-362호선 도로개설공사 외 1개소

제1654호

남동구 구보

2021. 12. 30. 목요일

3. 사업규모

☐ 소로2-362호선: L=320m, B=8m, A=3,168㎡

☐ 소로2-2호선: L=55m, B=8m, A=697㎡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남동구청장(건설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 2024.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7.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8. 열람 장소

☐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55, 남동구 소래로 633)

9.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283

제1654호		남동구 구보			2021. 12. 30. 목요일				
용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소로 2-362	소로 2-2	성명	주소	
1	수산동	501	전	959	104	-	송*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	
2	수산동	502	전	1,279	426	-	천*현	서울 양천구 신정동 ***	
3	수산동	597-110	도	959	536	-	국	건설부	
4	수산동	499-3	전	1,920	134	-	최*창	서울 강남구 광평로 10길 ***	
5	수산동	506	전	1,137	238	-	최*식	인천 남구 인하로 430번길 ***	
6	수산동	507	전	1,256	45	-	신*일	인천 남동구 만수동 ***	
7	수산동	499-1	전	1,921	470	-	최*관	인천 남동구 능골로 ***	
8	수산동	498	전	583	77	-	송*노	인천 남동구 능골로 ***	
9	수산동	354-5	전	992	31	-	정*량	남구 주안동 ***	
10	수산동	354-4	전	1,818	40	-	김*은	인천 남동구 능골로 ***	
11	수산동	600	도	1,368	210	43	국	건설부	
12	수산동	598-5	구	2,553	654	32	국	농림축산식품부	
13	수산동	354-9	답	1,897	155	170	천*분	서울 동작구 사당로 ***	
14	수산동	492-2	전	1,076	48	-	최*미외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	
15	수산동	354-7	잡	400	-	232	이*승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662번길 ***	
16	수산동	354-15	답	73	-	73	김*창	인천 남구 학익동 ***	
17	수산동	354-10	전	1,248	-	41	김*창	인천 남구 학익동 ***	
18	수산동	356	답	99	-	5	**중친회	487	
19	수산동	357	답	142	-	89	**중친회	487	
20	수산동	354-1	대	330	-	5	김*창외1	인천 남구 학익동 ***	
21	수산동	345-9	도	2,220	-	7	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				24,230	3,168	697			

284

지장물 조서

	소재지	지번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산출근거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소	
1	수산동	499-1	비닐하우스	5.0 x 17.0	1	84㎡	최*관	인천 남동구 능골로 *** (수산동)	
2	수산동	499-1	비닐하우스	5.7 x 10.5	1	60㎡	최*관	인천 남동구 능골로 *** (수산동)	
3	수산동	499-1	비닐하우스	6.0 x 6.3	1	38㎡	최*관	인천 남동구 능골로 *** (수산동)	

한전주 조서

	소재지	지번	도로	위치 (STA)	방향	번호	비고
1	수산동	502	소로2-362	0+003.85	우	도림지 57,213	한전
2	수산동	501	소로2-362	0+008.21	좌	도림지 57,L13,A1	한전
3	수산동	502	소로2-362	0+035.40	좌	도림지 57,L13,H1	한전
4	수산동	597-110	소로2-362	0+056.74	우	도림지 57,L12	한전
5	수산동	499-3	소로2-362	0+100.00	좌	도림지 57,L11	한전
6	수산동	499-1	소로2-362	0+116.70	우	도림지 57,L10	한전
7	수산동	597-110	소로2-362	0+175.89	우	도림지 57,L9	한전
8	수산동	354-5	소로2-362	0+187.00	좌	도림지 57,L9,A1	한전
9	수산동	354-9	소로2-362	0+222.00	좌	도림지 57,L8	한전
10	수산동	600	소로2-362	0+264.90	좌	도림지 57,L7	한전
11	수산동	354-7	소로2-2	0+033.00	우	도림지 57,L7,R1	한전

285

통신주 조서

	소재지	지번	도로	위치 (STA)	방향	내용	비고
1	수산동	502	소로2-362	0+003.65	우	-	KT
2	수산동	597-110	소로2-362	0+055.39	우	-	KT
3	수산동	354-9	소로2-362	0+220.80	좌	-	KT

286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248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68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 · 열람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68호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신청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건설과(☎032-453-2722), 도시재생과(☎032-453-2955)에 갖추어 놓았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30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42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서창동 3-268호선 보행로 설치공사

3. 사업규모

- L=40m, B=3m, A=318㎡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남동구청장(건설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 2024.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7.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8. 열람 장소

-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55, 남동구 소래로 633)

9.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제1654호

남동구 구보

2021. 12. 30. 목요일

[별첨] 용지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주 소
1	서창동	415-3	임	478	9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	서창동	416-1	전	24	1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3	서창동	420-2	임	1	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4	서창동	419-2	전	136	6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5	서창동	420	임	207	33	이*옥	남구 주안동 31-1 ***
6	서창동	419	전	164	85	한국토지주택공사 외2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7	서창동	558-1	공	17,258.3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8	서창동	415	임	613	5	김*식	인천시 남동구 장아산로 ***
합 계				18,881.3	318		

제1654호

남동구 구보

2021. 12. 30. 목요일

공 고

남동구 고시 2021-2487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무단전출, 소유자 미상, 이사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1.12.28. ~ 2022.1.12. (15일간)

3. 공 고 대 상 : 42도3716 외 3대

4. 공고내용

가.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도 범칙금이 20~30만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로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 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법 제 88조 규정에 의하여 방치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제1654호

남동구 구보

2021. 12. 30. 목요일

자진처리명령서 반송 내역서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방치장소 (인천광역시남동구)	수취인명	주 소	발송일자 (1,2차)	미배달사유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비고
1	2021-00186	42도3716	그랜저 (GRAND EUR)	간석동 456-2	김*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0*번길 10-1*, 10*호(간석동, 대림빌라)	2021.9.15.~2021.9.29. 2021.10.5.~2021.10.19.	기타 기타	2021.8.13.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2	2021-00546	08거8811	마티즈	간석동 317-1 한일빌딩 뒤 주차장	김*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6*번길 2*, 120*호(구월동, 파라디아빌딩)	2021.11.3.~2021.11.17. 2021.11.18.~2021.12.2.	수취인불명 수취인불명	2021.10.15.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3	2021-00587	인천남동카1132	이룬차	논현동 557-5 CU편의점 뒤 실외기쪽	W***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13* (고잔동)	2021.11.3.~2021.11.17. 2021.11.18.~2021.12.2.	주소불명 주소불명	2021.10.22.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4	2021-00589	40나7448	BMW 528i	남동구 장도로64 동아씨랜드26 지하1층	서*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3*, 10*동 130*호(논현동, 논현유호엔시티 1단지)	2021.11.3.~2021.11.17. 2021.11.18.~2021.12.2.	수취인불명 수취인불명	2021.10.20.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제1654호

남동구 구보

2021. 12. 30. 목요일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2498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기 간 : 2021.12.29. ~ 2022.1.13.
- 강제처리(폐차)일시 : 공고 이후
- 강제처리(폐차)장소 : 첨부파일 참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53너5556 외 7대
-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자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3)

2021년 12월 29일

남 동 구 청 장

292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대상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유자	생년월일 (법인/사업자)	주소	건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1	2021-00508	53너5556	그랜저(GR ANDEUR)	남동구 구월동 1248-23	최*호	66****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 10*	2021.9.2.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2	2021-00511	37다3163	K9	남동구 청능대로 448번길 158	이*현	5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천남길 6*-1(회원동)	2021.9.8.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3	2021-00513	05도1252	에쿠스	논현로 678-4 동아씨랜드26 주차장4층	서*호	65****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3*, 10*동 130*호(논현동, 논현유호엔시티 1단지)	2021.9.8.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4	2021-00516	26모4454	아반떼 (AVANTE)	만수동 980-8 초이스마트 앞	류*상	96****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4*0, *동 40*호(작전동, 삼천리아파트)	2021.9.17.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5	2021-00522	인천서타4164	이룬차	간석동 249-2 1층 주차장	류*섭	88****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6*번길 3*, 40*호(간석동)	2021.9.15.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6	2021-00528	24저5453	에쿠스JL350	만월로 181 대광빌라 앞	김*권	6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6*번길 *3-7, B0*호(간석동, 소망주택)	2021.9.3.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7	2021-00536	88다6507	포터 II (PORTER II)	고잔동 139번지 시원구내식당 옆 주차장입구	채*희	6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18*번길 10, 20*호(둔산동)	2021.10.7.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8	2021-00543	10두8331	오피러스	남동구 서판로 71-4	김*희	00****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남*길 5*-2*(국동)	2021.9.28.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대상 압류 및 저당내역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소유주	생년월일	사용본거지	구분	채권자/축탁기관/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2021-00508	53너5556	그랜저(GR ANDEUR)	최*호	66****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 10*	압류	충청북도 충주시	2020.06.01	세무2과-4686	지방세 체납
						압류	충청북도 충주시	2020.06.17	세무2과 세정팀-5201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에 따른 대체압류
						압류	충주경찰서	2020.07.14	2020D1503005742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50370190551181)
						압류	충청북도 음성군	2020.09.03	세정과-18924	지방세 체납
						압류	음성군청(건설교통과)	2020.10.10	건설교통과-97246(2020.10.8.)호	의무보험 체납에 따른 과태료(2020.8.11.부과분)(대체:07우8234)(20200811001539)
						압류	음성경찰서	2021.03.22	2021D1509000138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50970200580859)
						압류	음성경찰서	2021.03.22	2021D1509001965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50970200432634)
						압류	음성경찰서	2021.03.22	2021D1509002035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50970200428019)
						압류	음성경찰서	2021.03.22	2021D1509002387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50970200407355)
						압류	음성경찰서	2021.04.13	2021D1509008653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50970200618175)
						압류	음성경찰서	2021.04.13	2021D1509008650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50970200618234)
						압류	음성경찰서	2021.04.15	2021D1509008741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50970200630463)
						압류	음성경찰서	2021.07.27	2021D1509010682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50970210115744)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대상 압류 및 저장내역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소유주	생년월일	사용본거지	구분	채권자/축타기관/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2021-00511	37다3163	K9	이*현	5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천남길 6*1(회원동)	저당	와이앤케이파트너스 대부 주식회사 *저당올부번호 : 482a-2018-012395	2018.02.23	12,000,000	
						압류	마산차량등록과	2018.07.09	마산차량등록과-7788	의무보험과태료(20180504008105)
						압류	마산차량등록과	2018.07.09	마산차량등록과-7788	의무보험과태료(20180504008106)
						압류	인천미추홀구청자동차관리과	2018.09.10	자동차관리과-12261	주정차위반과태료(2018-06-001233)
						압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18.09.10	세무2과-3057	지방세 체납
						압류	창원시 마산회원구	2019.02.11	세무과-1735	지방세 체납
						압류	마산동부경찰서	2019.04.16	2019D2025005951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02570181052163)
						압류	마산동부경찰서	2019.04.16	2019D2025005961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02570181051974)
						압류	마산동부경찰서	2019.05.23	2019D2025008213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02570181057929)
						영치	김포시차량등록사업소	2018.11.26	박지수	운행정지명령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마산지사	2021.08.27	자격징수부-909457	건강(요양)연금, 고용, 산재보험 체납,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대상 압류 및 저장내역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소유주	생년월일	사용본거지	구분	채권자/축타기관/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2021-00513	05도1252	에쿠스	서*호	65****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3* 10*동 130*호(논현동, 논현유호엔시티 1단지)	압류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2013.10.10	남구세무과-16967	지방세 체납(054-270-6271)
						압류	포항남부경찰서	2014.11.11	2014D1931020970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93170140532068)
						압류	포항남부경찰서	2014.11.11	2014D1931021003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93170121458351)
						압류	포항남부경찰서	2014.11.11	2014D1931021008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93170121392085)
						압류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	2014.11.12	차량등록사업소-17260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체납(20140812005476)
						압류	포항시청	2015.02.23	재정관리과-5314	세외수입체납에따른 대체압류-손배법위반(19990331006552)
						압류	포항시청	2015.02.23	재정관리과-5314	세외수입체납에따른 대체압류-손배법위반(20000603004714)
						압류	포항시청	2015.02.23	재정관리과-5314	세외수입체납에따른 대체압류-손배법위반(20001020008893)
						압류	포항시청	2015.02.23	재정관리과-5314	세외수입체납에따른 대체압류-손배법위반(20040109000098)
						압류	포항시청	2015.02.23	재정관리과-5314	세외수입체납에따른 대체압류-손배법위반(20051011506100)
						압류	포항시청	2015.02.23	재정관리과-5314	세외수입체납에따른 대체압류-손배법위반(20131113021999)
						압류	포항시청	2015.02.23	재정관리과-5314	세외수입체납에따른 대체압류-손배법위반(20131113022000)
						압류	포항시청	2015.02.23	재정관리과-5314	세외수입체납에따른 대체압류-검사지연과태료(20011126009753)
						압류	포항시청	2015.02.23	재정관리과-5314	세외수입체납에따른 대체압류-검사지연과태

제1654호		남동구 구보		2021. 12. 30. 목요일	
					료(20011112008423)
	압류	포항시청	2015.02.23	재정관리과-5314	세외수입체납에따른 대체압류-검사지연과태 료(20011227010942)
	압류	포항시청	2015.02.23	재정관리과-5314	세외수입체납에따른 대체압류-검사지연과태 료(20030605006235)
	압류	포항시청	2015.02.23	재정관리과-5314	세외수입체납에따른 대체압류-검사지연과태 료(20051004023512)
	압류	포항시청	2015.02.23	재정관리과-5314	세외수입체납에따른 대체압류-검사지연과태 료(20131111006261)
	압류	포항시청	2015.02.23	재정관리과-5314	세외수입체납에따른 대체압류-검사지연과태 료(20140812005476)
	압류	포항남부경찰서	2015.05.21	2015D1931008538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9317015004 4685)
	압류	포항남부경찰서	2015.06.22	2015D1931010576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9317015011 6925)
	압류	포항남부경찰서	2016.01.28	2016D1931001188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19317015064 8775)
	압류	포항시 도시건설사업소 차량등록과	2016.04.12	차량등록과-835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체납에의한 압류(20160211005295)
	압류	포항시 도시건설사업소 차량등록과	2016.04.12	차량등록과-835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체납에의한 압류(20160211005296)
	압류	경기도 광명시	2017.01.10	지도민원과-1220	주정차위반 (W) 2016-162521
	압류	남동구청교통행정 과	2018.05.17	교통행정과-12843	주정차위반과태료(2015 -01-004461)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8.09.07	세입징수과-10315	지방세 체납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2019.08.30	징수부-3114	건강(요양)연금 고용,산 재보험 체납,

제1654호

남동구 구보

2021. 12. 30. 목요일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대상 압류 및 저당내역

접수번호	차량등록 번호	차명	소유주	생년월일	사용본거지	구분	채권자/추탁기관/단 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 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2021-00516	26모4454	아반떼 (AVANTE)	류*상	96****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도로 4*0. *동 40*호(작전동, 삼천리아파트)	저당	신한캐피탈주식회사 *지당을부번호 : 2826-2017-020929	2017.07.26	11,500,000	
						압류	부평구청주차지도과	2018.02.06	주차지도과-2470	주정차위반과태료(2 017-11-001612)
						압류	인천서구청주차관리 과	2018.05.09	주차관리과-16168	주정차위반과태료(2 018-01-001318)
						압류	인천서구청주차관리 과	2018.05.09	주차관리과-16168	주정차위반과태료(2 018-01-002267)
						압류	한국도로공사	2018.07.26	한국도로공사 수도권-2944(2018. 07.23)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 따른 자동차 등록압류
						압류	인천 계양구청	2018.08.08	교통민원과-59066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체납(201806080022 83)
						압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18.09.20	경제교통과-23228	주정차위반 (2018-093200 W)
						압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18.09.20	경제교통과-23228	주정차위반 (2018-094265 W)
						압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18.09.20	경제교통과-23228	주정차위반 (2018-094525 W)
						압류	한국도로공사	2018.10.12	한국도로공사 수도권-1349(2018. 10.01)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 따른 자동차 등록압류
						압류	한국도로공사	2018.10.12	한국도로공사 수도권-1349(2018. 10.01)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 따른 자동차 등록압류
						압류	한국도로공사	2018.10.12	한국도로공사 수도권-1349(2018. 10.01)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 따른 자동차 등록압류
						압류	한국도로공사	2018.10.12	한국도로공사 수도권-1349(2018. 10.01)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 따른 자동차 등록압류
						압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18.10.25	경제교통과-26679	주정차위반 (2018-125101 W)

				)
압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18.10.25	경 제교통과-26679	주정차위반 (2018-125333 W)
압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18.10.25	경 제교통과-26679	주정차위반 (2018-125564 W)
압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18.10.25	경 제교통과-26679	주정차위반 (2018-125815 W)
압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18.10.25	경 제교통과-26679	주정차위반 (2018-126502 W)
압류	한국도로공사	2018.12.27	한국도로공사 수도권-1712(2018.12.26)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 따른 자동차 등록압류
압류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09.04	세무2과-9447	지방세 체납
압류	계양구청교통민원과	2019.10.10	교통민원과-02482	주정차위반과태료(2019-07-001089)
압류	한국도로공사	2020.01.29	한국도로공사 수도권-281(2020.01.28)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 따른 자동차 등록압류
압류	계양구청 교통행정과	2020.03.23	교통행정과-2605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차량 압류 (20200107000052)
압류	계양구청교통민원과	2020.11.09	교통민원과-74216	주정차위반과태료(2020-08-001663)
영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징수과	2020.11.03		보관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세입징수과
압류	계양구청 교통행정과	2020.11.19	교통행정과-17374	의무보험 미가입 체납차량 압류등록 (20200907003097)
압류	부산시설공단	2020.12.28	교량운영팀-10152	통행료체납(2020-68845,10000)
압류	한국도로공사	2021.03.23	수도권본부-1312(2021.03.19)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 따른 자동차 등록압류

압류	한국도로공사	2021.03.25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영업팀-701(2021.03.22)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 따른 자동차 등록압류
압류	한국도로공사	2021.05.24	한국도로공사 수도권-2394(2021.05.18)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 따른 자동차 등록압류
압류	계양구청 교통행정과	2021.07.26	교통행정과-11058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차량 대체압류 (20180608000455)
압류	계양구청 교통행정과	2021.07.26	교통행정과-11058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차량 대체압류(20200907003097)
압류	계양구청 교통행정과	2021.07.26	교통행정과-11058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차량 대체압류(20200107000052)
압류	계양구청 교통행정과	2021.10.12	교통행정과-14874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차량 압류등록(20210806002252)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대상 압류 및 저당내역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소유주	생년월일	사용본거지	구분	채권자/촉탁기관/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2021-00522	인천서타4164	이륜차	류*섭	88****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6*번길 3*, 40*호(간석동)				해당없음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대상 압류 및 저당내역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소유주	생년월일	사용본거지	구분	채권자/촉탁기관/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2021-00528	24저5453	에쿠스JL350	김*권	6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6*번길 *3-7, B0*호(간석동, 소망주택)	저당	현대캐피탈(주) *저당물부번호 : 2820-2008-000921	2008.02.01	10,000,000	
						저당	최경애 *저당물부번호 : 2823-2008-006761	2008.11.12	30,000,000	
						압류	인천 부평구(509-6671)	2008.08.12	환경위생과-27985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압류	인천부평경찰서(514-9937)	2008.08.18	경비교통과-006451	과태료체납(200872304012482,70000)
						압류	인천부평구교통과	2008.09.19	교통행정과-42595	자동차관리법 위반(2008-004461)
						압류	인천 부평경찰서	2009.05.29	교통63310-090529	과태료체납 (200872304033840)
						압류	인천 부평경찰서	2009.05.29	교통63310-090529	과태료체납 (200872304033649)
						압류	인천부평경찰서	2009.08.06	경비교통과-005849	과태료체납(과태료 체납(200972304003307))
						압류	인천부평경찰서	2009.08.06	경비교통과-005849	과태료체납(과태료 체납(200972304003320))
						압류	안양시 만안구	2009.09.08	건설교통과-17252	주정차위반 과태료(2008-11-100320)
						압류	군포시	2009.09.28	교통지도과-14267	주정차위반(2009-05-101437)
						압류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2009.10.19	만안주차견인팀	주차요금체납
						압류	인천부평경찰서	2009.10.21	교통63310-001020	과태료체납 ((200972304011861))
						압류	인천부평경찰서	2009.10.21	교통63310-001020	과태료체납 ((200972304009943))

압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3.03.28	세무1과-4983	지방세 체납(032-509-6299)
압류	인천광역시남구청교 통민원과	2013.08.07	교통민원과-44803	주정차위반과태료(20 13-05-001427)
압류	부평구청주차지도과	2013.12.06	주차지도과-22027	주정차위반과태료(20 13-08-001861)
압류	부평구청주차지도과	2013.12.06	주차지도과-22027	주정차위반과태료(20 13-09-002644)
압류	서울 종로구	2014.02.17	교통행정과-6989	버스전용차로위반과 태료[2013-08-1002 06]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2014.03.06	징수부-901587	건강(요양),연금,고용, 산재보험,체납액(건강 :1593560연금:0고용: 0산재:0)
압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4.04.11	교통행정과-180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의무보험)위반과태 료(20140113005739)
압류	인천부평경찰서	2014.10.01	2014D2304010753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30470130 393571)
압류	연수구청차량민원과	2014.11.28	차량민원과-37201	주정차위반과태료(20 14-05-002110)
압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2015.01.08	경제교통과-723	주정차위반 (2014-015610 ₩)
압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2015.01.08	경제교통과-723	주정차위반 (2014-016348 ₩)
압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5.04.09	교통행정과-163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의무보험)위반과태 료(20150109003290)
압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5.04.09	교통행정과-163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의무보험)위반과태 료(20150109003291)
압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5.05.11	교통행정과-22493	자동차등록위반(2015 0209000506)
압류	인천부평경찰서	2015.09.30	2015D2304015461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30470150 243347)

압류	부평구청주차지도과	2016.01.07	주차지도과-370	주정차위반과태료(20 15-10-002625)
압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6.01.13	교통행정과-18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의무보험)위반과태 료(20151007029073)
압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6.01.13	교통행정과-18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의무보험)위반과태 료(20151007029074)
압류	경기 부천시 원미구	2016.04.15	경제교통과-12069	주정차위반과태료[20 15-12-103389]
압류	인천부평경찰서	2016.04.25	2016D2304004123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30470150 336427)
압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6.06.08	교통행정과-295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의무보험)위반과태 료(20160309004269)
압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6.06.08	교통행정과-295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의무보험)위반과태 료(20160309004270)
압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6.06.08	교통행정과-295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의무보험)위반과태 료(20160308005317)
압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6.06.08	교통행정과-295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의무보험)위반과태 료(20160308005318)
압류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12.09	교통행정과-69283(20161209)	자동차의무보험 압류등록-2016년9월 부과분(20160909018 265)
압류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12.09	교통행정과-69283(20161209)	자동차의무보험 압류등록-2016년9월 부과분(20160909018 266)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7.03.14	세무2과-3179	지방세 체납
압류	남동구청교통행정과	2017.05.12	교통행정과-11423	주정차위반과태료(20 17-02-000592)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과	2017.06.16	자동차관리과-4237 4	의무보험미가입과태 료 체납차량 압류(201703140044 49)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과	2017.06.16	자동차관리과-4237 4	의무보험미가입과태 료 체납차량 압류(201703140044 49)

				50)
압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2017.08.28	경제교통과-36851	주정차위반 (2017-024117W)
압류	남동구청교통행정과	2017.10.18	교통행정과-25887	주정차위반과태료(2017-07-001207)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18.04.13	자동차관리과-26277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20180111004986)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18.04.13	자동차관리과-26277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20180111004987)
압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03.12	교통행정과-13241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20191010004212)
압류	충청남도 서천군	2021.08.20	재무과-27136	지방세 체납
영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교통행정과	2018.05.03	체납징수팀	무보험,과태료,자동차세체납(심정동 186-425)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대상 압류 및 저당내역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소유주	생년월일	사용본거지	구분	채권자/촉탁기관/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2021-00536	88다6507	포터 II (PORTER II)	채*희	6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18*번길 10, 20*호(둔산동)	저당	현대캐피탈(주) *저당을부번호 : 3001-2006-013068	2006.12.18	9,700,000	
						압류	대전광역시 서구청 ☎042-611-5687	2007.07.10	환경관리과-8032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압류	대전광역시 서구청	2008.04.24	세무행정과-657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압류	인천광역시(2008-02-100839)	2008.05.28	교통관리과-6971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압류	국민연금공단/남동연수지사 ☎032-451-0837	2008.06.26	남동연수고객지원-4391	국민연금보험료체납압류,
						압류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장 ☎032-451-9509	2008.07.17	납부지원2부-14502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압류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042-224-7103)	2008.09.10	차등-3580	정기검사미필(2008-014728-00)
						압류	대전차량등록사업소	2008.09.11	차등-3580	과태료(2008-014728)
						압류	인천남동구청(032-453-2890)	2009.02.10	주차관리과-1789	주정차위반(2008-07-004006)
						압류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장	2009.02.25	납부지원2부-14502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압류	대전둔산경찰서	2009.12.18	경비교통과-012241	과태료체납(200972506066878)
						압류	대전광역시 서구청	2010.10.15	교통기획-39196/10018715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압류	대전광역시 서구청	2010.10.15	교통기획-39196/10018716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교통행정과	2011.03.15	교통행정과-4047	주정차위반과태료(2010-12-003782)

압류	대전광역시 서구청	2011.04.11	교통과-17 634/1100 0673	의무보험미가입과 태료
압류	대전광역시 서구청	2011.04.11	교통과-17 634/1100 0674	의무보험미가입과 태료
압류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환경국 환경과	2011.08.02	환경과-23 646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교통행정과	2011.10.13	교통행정 과-20291	주정차위반과태료(2011-07-001536)
압류	대전도산경찰서	2011.11.28	2011D250 6038004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506701 10534806)
압류	대전도산경찰서	2011.11.28	2011D250 6038010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506701 10534369)
압류	대전도산경찰서	2011.11.28	2011D250 6038015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506701 10533328)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교통행정과	2012.01.12	교통행정 과-868	주정차위반과태료(2011-10-000142)
압류	대전광역시서구청(042-611-568 5)	2012.02.13	환경과-43 56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처분(대체포함 (2011.2)
압류	대전도산경찰서	2012.07.13	2012D250 6026788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506701 20074185)
압류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환경국 환경과	2012.08.08	26817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
압류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환경국 환경과	2013.01.21	환경과-24 93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2012.2기 분)
압류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2013.08.09	주차사업	주차요금

			팀-1583	채납압류(2011-70 06)
압류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환경국 환경과	2013.08.23	환경과-31 947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2013-1)
압류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환경국 환경과	2014.02.04	환경과-42 28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
압류	인천광역시	2014.04.08	세정과-75 96	지방세 채납
압류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환경국 환경과	2014.09.05	환경과-10 178	2014.1기분 자동차환경개선부 담금 채납압류
압류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환경국 환경과	2015.02.11	환경과-50 41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2014.2기 분)
압류	대전도산경찰서	2015.04.20	2015D250 6010587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506701 42601872)
압류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환경국 환경과	2015.08.18	환경과-30 394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
압류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환경국 환경과	2016.02.01	환경과-40 07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 (2015-2채납)
압류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환경국 환경과	2016.08.09	환경과-29 209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2016.1기 분 채납)
압류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환경국 환경과	2017.01.16	환경과-14 03	2016.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
압류	대전광역시 서구	2017.04.10	교통과-19 966	의무보험미가입과 태료(2017010600 4276)
압류	대전광역시 서구	2017.04.10	교통과-19 966	의무보험미가입과 태료(2017010600 4277)
압류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환경국 환경과	2017.07.20	환경과-26 603	2017.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
압류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환경국 환경과	2018.01.08	환경과-10 21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에 의한 압류
압류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환경국	2018.07.03	환경과-23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과		531	채납압류
압류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환경국 환경과	2019.01.04	환경과-46 5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	
압류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19.06.26	차등-132 71	자동차정기검사미 필과태료(2009-00 3506)(대체:88라3 310)	
압류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환경국 환경과	2019.07.08	환경과-26 609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	
압류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환경국 환경과	2019.07.25	환경과-28 953	환경개선부담금 채납 대체압류(88라331 0)	
압류	경기 부천시청	2019.10.04	주차지도 과-47956	주정차위반 과태료 (200911-100309) 대체:88라3310	
압류	경기 부천시청	2019.10.04	주차지도 과-47956	주정차위반 과태료 (201603-112966) 대체:88라3310	
압류	경기 부천시청	2019.10.04	주차지도 과-47956	주정차위반 과태료 (201604-113205) 대체:88라3310	
압류	대전광역시 서구	2019.11.04	세무2과세 외수입-11 04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위반과태료(대 체: 88라3310)(201007 12018763)	
압류	대전광역시 서구	2019.11.04	세무2과세 외수입-11 04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위반과태료(대 체: 88라3310)(201007 12018765)	
압류	대전광역시 서구	2019.11.04	세무2과세 외수입-11 04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위반과태료(대 체: 88라3310)(201208 10068223)	
압류	대전광역시 서구	2019.11.04	세무2과세 외수입-11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위반과태료(대	

			04	체: 88라3310)(201208 10068224)	
압류	남동구청교통행정과	2019.11.22	교통행정 과-28709	주정차위반과태료- 88라3310(2008-0 7-003383)	
압류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환경국 환경과	2020.01.02	환경과-77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2019.2기 분)	
압류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환경국 환경과	2020.01.06	환경과-47 3	환경개선부담금 채납대체압류(88라 3310)	
압류	대전둔산경찰서	2020.03.19	2020D250 6003496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506701 41770444)	
압류	대전둔산경찰서	2020.03.19	2020D250 6003493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506701 00422371)	
압류	대전둔산경찰서	2020.03.19	2020D250 6003497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506701 41811451)	
압류	대전둔산경찰서	2020.03.19	2020D250 6003495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506701 41448457)	
압류	대전둔산경찰서	2020.03.19	2020D250 6003499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506701 60639730)	
압류	대전둔산경찰서	2020.03.19	2020D250 6003494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506701 00511537)	
압류	대전둔산경찰서	2020.03.19	2020D250 6003498	과태료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506701 60503607)	
압류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환경국 환경과	2020.10.07	환경과-42 532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	
압류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환경국	2021.01.04	환경과-8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과			채납압류(2020-2)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	2021.06.16	징수부-903947	건강(요양),연금,고용,산재보험 채납.
압류	대전광역시 서구 경제환경국 기후환경과	2021.07.03	기후환경과-14898	환경개선부담금 채납압류(2021.1)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대상 압류 및 저당내역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소유주	생년월일	사용본거지	구분	채권자/촉탁기관/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2021-00543	10두8331	오피러스	김*희	00****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남*길 5*-2*(국동)	압류	여수시 차량등록사업소	2021.07.20	차량등록사업소-17613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20210401001129)

강제처리 대상차량 및 이해관계인 내역

일련 번호	차량등록 번 호	차 명	성 명 생년월일 (법인/사업자)	주 소	보관장소 /보관일	압류(저당)권설정내역
2021-00508	53너5556	그랜저	최*호 66****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시*로 10*	㈜인천폐차사업소/ 2021.9.2.	충주시(세무과) 충주경찰서 음성군(세정과, 건설교통과) 음성경찰서
2021-00511	37다3163	K9	이*현 5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천남길 6*~*(회원동)	㈜인천폐차사업소/ 2021.9.8.	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 (주) 마산차량등록과 미추홀구(자동차관리과, 세무과) 마산회원구(세무과) 마산동부경찰서 김포시차량등록사업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마산지사(자격징수부)
2021-00513	05도1252	에쿠스	서*호 65****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3*, 10*동 130*호(논현동, 논현유호엔시티 *단지)	㈜인천폐차사업소/ 2021.9.8.	포항시남구(세무과) 포항남부경찰서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 포항시(재정관리과) 포항시 도시건설사업소(차량등록과) 광명시(지도민원과) 남동구(교통행정과, 세입징수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2021-00516	26모4454	아반떼	류*상 96****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도로 470, *동 40*호(작전동, 삼천리아파트)	㈜인천폐차사업소/ 2021.9.17.	신한캐피탈주식회사 부평구(주차지도과) 인천서구(주차관리과) 한국도로공사 계양구(교통민원과, 세무과) 안산시단원구(경제교통과) 남동구(세입징수과) 부산시설공단
2021-00522	인천서타41 64	이룬차	류*섭 88****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6*번길 3*, 40*호(간석동)	㈜인천폐차사업소/ 2021.9.15.	해당없음
2021-00528	24저5453	에쿠스JL	김*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6*번길 3*~*,	㈜인천폐차사업소/	현대캐피탈(주)

313

		350	63****	B0*호(간석동, 소망주택)	2021.9.3.	최*애 부평구(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세무과, 주차지도과) 인천부평경찰서 안양시만안구(건설교통과) 안양시시설관리공단 군포시(교통지도과) 미추홀구(교통민원과) 종로구(교통행정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연수구(차량민원과) 안산시상록구(경제교통과) 부천시원미구(경제교통과) 남동구(세무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서천군(재무과)
2021-00536	88다6507	포터 II	채*희 6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18*번길 1*, 20*호(둔산동)	㈜인천폐차사업소/ 2021.10.7.	현대캐피탈(주) 대전서구청(환경관리과, 세무행정과) 인천광역시(교통관리과, 세정과)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대전 차량등록사업소 남동구(교통행정과)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대전둔산경찰서 부천시(주차지도과)
2021-00543	10두8331	오피러스	김*희 00****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남6길 5*~2*(국동)	㈜인천폐차사업소/ 2021.9.28.	여수시차량등록사업소

314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2501호

「남동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일부 개정되고 상위 법규인 「남동구 지역정보화 조례」가 「남동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인 「남동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을 현행화하여 정보화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및 용어, 띄어쓰기 정비(안 제1조, 제5조,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3조)
- 조문의 인용근거를 변경하고 보안대책의 보안심사위원회 심사제

폐지 사항을 반영하여 보안성검토와 보안관리 사항을 명시(안 제6조)

- 정보화사업 발주금액의 산정기준을 상위 법률에 맞게 규정(안 제10조)
- 제안평가서(과업지시서)의 기술검토 요청범위를 모든 정보화 사업으로 변경하고 기술검토를 생략하는 경우 협의하여야 함을 명시(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 1. 19.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남동구청장(참조 : 미디어정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 보낼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미디어정보과

- 연 락 처 : ☎ 453-2122, FAX 453-624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자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남동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1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일부 개정되고 상위 법규인 「남동구 지역정보화 조례」가 「남동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인 「남동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을 현행화하여 정보화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 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및 용어, 띄어쓰기 정비(안 제1조, 제5조,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3조)
- 조문의 인용근거를 변경하고 보안대책의 보안심사위원회 심사제 폐지 사항을 반영하여 보안성검토와 보안관리 사항을 명시(안 제6조)
- 정보화사업 발주금액의 산정기준을 상위 법률에 맞게 규정(안 제10조)
- 제안평가서(과업지시서)의 기술검토 요청범위를 모든 정보화사업으로 변경하고 기술검토를 생략하는 경우 협의하여야 함을 명시(안 제11조)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별첨”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 「남동구 지역정보화 조례」”를 “규칙은 「남동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작성하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시스템」”을 “작성하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시스템」”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보안성검토대상 사업인 경우에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발주 전에 보안성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활용하는 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타당성검토요청서”를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본계획”을 “실행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사업시행년도”를 “사업시행연도”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발주금액의 산정) 정보화사업 발주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 기준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가 계산 및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기준
4. 그 밖의 회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제11조의 제목 “(제안요청서작성)”을 “(제안요청서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단위사업비 5천만원 이상 정보화사업 추진 시”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으로, “제안요청서”를 “제안요청서(시스템공급자의 제안이 불필요한 경우 과업지시서)”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토목·건축 등 다른 사업에 부속되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을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인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로, “평가위원은 해당 「남동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를 “평가위원은 해당 「남동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제15조제1항 중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를 “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리기준은 「전자정부법」 제57조”를 “감리기준은 「전자정부법」 제57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산출물을「정보화사업 사전협의시스템」을 “산출물을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시스템」으로 한다.

제23조 중 “사항은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사항은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지역정보화 조례」에 따라 남동구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칙은 「남동구 지능정보화 조례」----- ----- ----- ----- -----.
제5조(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중복개발 방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사전협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후 사전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 ① ----- ----- ----- ----- ----- ----- 작성하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시스템」----- ----- ----- ----- -----.
1. ~ 3. (생략) ②·③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보안성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6조(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국가정보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구의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총괄부서의 협의를 거친 후 국정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원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보안성 검토를 생략하거나 절차 및 제출자료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

1. 유·무선 네트워크를 신·증설하거나 정보시스템을 구축 또는 교체하는 경우

2. 내부 정보통신망을 외부망과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

3. 국정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장비·보안자재·암호논리·암호모듈·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 운용하고자 할 경우

4. 무선랜 등 무선망을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원격근무 지원 등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5. 외부기관 및 업체에 정보통신망 보안감리 또는 보안컨설팅(보안 취약점 분석·평가 포함)을 받거나 정보처리·보안관제 등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보안성 검토대상 사업인 경우에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발주 전에 보안성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활용하는 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정보통신 운용환경 변화로 인하여 별도의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보안성 검토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

제7조(예산타당성 검토) ①·② (생략)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타당성검토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 4. (생략)
5. 행정안전부 및 인천광역시 기본계획과의 연계여부 등
④ (생략)

제9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반영한 정보화사업계획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업시행년도 1월 1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

제7조(예산타당성 검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

-----.

1. ~ 4. (현행과 같음)
5. ----- 실
행계획-----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

----- 사업시행연도 -----

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발주금액의 산정) ① 소프트웨어개발비, 시스템운용 환경 구축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자료입력비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를 적용하며, 정보통신설비공사비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개발비 산정은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로 구분하고, 직접경비에는 출장비, 인쇄비, 회의비, 시스템 사용료 등을 포함한다.

③ 자료입력비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및 이윤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제11조(제안요청서작성) ①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에서는 정보화 대상업무, 정보화관련 요청사항, 품질보증 및 관리계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발주금액의 산정) 정보화사업 발주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 기준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가 계산 및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기준

4. 그 밖의 회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제11조(제안요청서 작성) <삭제>

획이 포함된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단위사업비 5천만원 이상 정보화사업 추진 시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술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토목·건축 등 다른 사업에 부속되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 9. (생략)

제13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경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하며, 위원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 제안요청서(시스템공급자의 제안이 불필요한 경우 과업지시서)-----
--. -----
-----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인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
-----.

1. ~ 9. (현행과 같음)

제13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단체 공무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③ ~ ⑧ (생략)

제14조(협상에 의한 계약시 제안서 평가) 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② ~ ⑤ (생략)

제15조(계약체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7조(감리시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서 규정한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기준은 「전자정부법」 제57조를 준용한다.

제20조(사업완료 및 사후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요청서,

-----.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협상에 의한 계약시 제안서 평가) 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계약체결) ① -----
-----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감리시행) ① -----
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

② ----- 감리기준은 「전자정부법」 제57조-----
-----.

제20조(사업완료 및 사후관리) ① -----

완료보고서 등의 사업완료에 따른 각종 산출물을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3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산출물을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시스템」-----
-----.

제23조(다른 규정의 준용) -----
----- 사항은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

[참고자료]

관련 법령 발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① 국가기관등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절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적정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환경
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도구
3. 소프트웨어사업 비용·일정·규모
4. 소프트웨어사업 품질특성 정보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기준 산정에 필요한 정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 ①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절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1-123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2. 1. 12.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1.12.28. ~ 2022.1.11.(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일반음식점	2016-0200245	불로식당	김0미	서창남로 38, 2층 (서창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7.12.15.	2022. 1. 12.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22. 1. 11. 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3

2021년 12월 28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21-125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의거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일자 : 2022. 1. 13.
3.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1. 12. 29. ~ 2022. 1. 12.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등록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 예정일
식품제조 가공업	2020-0203558	백세식단 시흥점	윤**	남동서로113번길 11 (☞유에치텍 1층일부(고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1-06-28	2022-01-13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2022. 1. 12. 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등록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 ☎ (032)453-2752

2021년 12월 29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남동구 고시 제 2021-209호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 고시

남동구 남촌동 549-3번지 일원 등에 신설된 지적기준점(도근점)에 대하여 그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남 동 구 청 장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좌 표	
	X(m)	Y(m)
	불 입	
기 준 원 점 명	세계측지계좌표	
소 재 지	남동구 장수동 549-3번지 일원	
설 치 일 자	불입참조	
표 지 재 질	불입참조	
측량성과 보관장소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비 고	신설(3점)	

불 입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표(별도첨부) 1부.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21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새말소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새말소공원)]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공원: 새말소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공원녹지과 ☎032-453-6293, 도시재생과 ☎032-453-2955)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남 동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경미한 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산36-35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새말 소공원	소공원	남동구 간석동 1-873번지	4,253	감)62	4,191	2013.06.24. (건고 2701호)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새말소공원	○ 면적 변경 - 면적 : 4,253㎡ → 4,191㎡(감 62㎡)	○ 토지 이동 및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 변경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산36-3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

○ 명칭: 새말소공원 조성사업

3. 사업규모(변경)

○ 기정: A=4,253㎡

○ 변경: A=4,191㎡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남동구청장(공원녹지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19.10.11 ~ 2021.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소재지	기정			변경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간석동	1-873	임야	15	1-873	공	4,191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산36-35	임야	4,238						
합계			4,253			4,191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21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032-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2월 30일

남 동 구 청 장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75-17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청사	간석4동 행정복지센터	간석동 575-17번지 일원	1,281.4	증)148.3	1,429.7	2020.03.06. (남동구 고시 제2020-34호)

※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는 용도지역의 기준을 따름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공공청사 (간석4동 청사)	·공공청사 면적증가 - 1,281.4㎡ → 1,429.7㎡ 증) 148.3㎡	· 인접부지를 추가 편입하여 간석4동 행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주민복지에 더욱 기여하고자 함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212호

도시관리계획(만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만부 지구단위계획)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032-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2월 30일

남 동 구 청 장

I.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의 도시관리계획(만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번지 일원

III. 도시관리계획(만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만부구역	남동구 만수동 1번지 일원	18,791	-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제2종일반주거지역	18,791	-	18,791	100.0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나) 가) 교통시설 (변경)

(1) 도로 (변경 없음)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격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29	8	국지 도로	89	소2-2	소3-8	일반도로	-	'02.05.30	
기정	소로	3	86	6	국지 도로	177	소2-229	소2-2	일반도로	-	'02.05.30	
기정	소로	3	87	6	국지 도로	83	소2-229	소3-86	일반도로	-	'02.05.30	
기정	소로	3	88	6	국지 도로	100	소2-229	소3-87	일반도로	-	'02.05.30	
기정	소로	3	89	6	국지 도로	55	소3-88	소3-87	일반도로	-	'02.05.30	
기정	소로	3	91	6	국지 도로	167	소2-2	소2-229	일반도로	-	'02.05.30	
기정	소로	3	92	6	국지 도로	87	소3-91	소2-229	일반도로	-	'02.05.30	

(2) 주차장 (변경)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73	증) 955	1,628		
기정	1	노외1주차장	만수동 1-148번지	370	-	370	'02.05.30	
변경	2	노외2주차장	만수동 1-60번지 일원	198	증) 404	602	'02.05.30	
기정	3	노외3주차장	만수동 1-90번지	105	-	105	'04.10.08	
신설	4	노외4주차장	만수동 1-270번지 일원	-	증) 551	551	-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노외2주차장	• 면적 증가(증 404㎡) - 198㎡ → 602㎡	○ 만부마을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 증설
4	노외4주차장	• 주차장 신설 - A = 551㎡	○ 만부마을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 신설

다) 나) 공간시설 (변경 없음)

(1) 공원 (변경 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029	-	1,029		
기정	1	만부1호공원	-	만수동 1-110번지	721	-	721	'02.05.30	
기정	2	만부2호공원	-	만수동 1-106번지	308	-	308	'02.05.30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변경)

1) 일반사항

라) 가) 가구 및 획지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계획	○ 폭 4m 이상의 도로 및 지형에 따라 현재 공동체단위가 유지되도록 계획	충
획지계획	○ 소규모 필지면적 현황을 고려, 별도 수립하지 않음	

마) 바)

사) 나) 최대개발규모

구분	최대개발규모	계획내용
계획구역 전체	○ 최대개발규모 : 275㎡ 이하	○ 최대개발규모 : 275㎡ 이하 ○ 최대개발규모의 예외 - 기존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개발규모는 기존 대지규모에 한함) - 관련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정으로 시행하는 경우

아) 자)

차) 다) 공동개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동개발	자율적 공동개발 ○ 가구 내 연결된 필지간 최대개발규모 범위 내에서 자율적 공동개발 가능. 단, 공동개발에 의한 대지의 세장비(단변과 장변의 비)가 1:3 이상이 되는 경우 공동개발 불가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기정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변경		비고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	A1	1,691	만수동 1-91	74		-	A1	1,691	만수동 1-91	74	
			만수동 1-92	50					만수동 1-92	50	
			만수동 1-93	43					만수동 1-93	43	
			만수동 1-94	66					만수동 1-94	66	
			만수동 1-95	41					만수동 1-95	41	
			만수동 1-96	55					만수동 1-96	55	
			만수동 1-97	104					만수동 1-97	104	
			만수동 1-98	28					만수동 1-98	28	
			만수동 1-99	115					만수동 1-99	115	
			만수동 1-100	29					만수동 1-100	29	
			만수동 1-101	41					만수동 1-101	84	
			만수동 1-102	33					만수동 1-102	33	
			만수동 1-103	98					만수동 1-103	98	
			만수동 1-104	45					만수동 1-104	45	
			만수동 1-105	21					만수동 1-105	21	
			만수동 1-196	45					만수동 1-196	45	
			만수동 1-197	34					만수동 1-197	34	
			만수동 1-200	44					만수동 1-200	44	
			만수동 1-201	22					만수동 1-201	22	
			만수동 1-202	39					만수동 1-202	39	
			만수동 1-203	51					만수동 1-203	51	
			만수동 1-221	74					만수동 1-221	74	
			만수동 1-222	63					만수동 1-222	63	
			만수동 1-223	69					만수동 1-223	69	
			만수동 1-228	59					만수동 1-228	59	
			만수동 1-232	43					-	-	1-101에 합병
			만수동 1-233	31					만수동 1-233	31	
			만수동 1-235	36					만수동 1-235	36	
			만수동 1-236	17					만수동 1-236	17	
			만수동 1-239	38					만수동 1-239	38	
			만수동 1-240	33					만수동 1-240	33	
			만수동 1-280	36					만수동 1-280	36	
			만수동 1-281	33					만수동 1-281	33	
			만수동 1-296	36					만수동 1-296	36	
			만수동 1-297	45					만수동 1-297	45	

[표 계속]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기정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변경		비고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	A2	1,174	만수동 1-63	53		-	A2	1,283	만수동 1-63	53	주2
			만수동 1-64	33					만수동 1-64	33	주2
			만수동 1-66	33					만수동 1-66	156	
			만수동 1-69	62					만수동 1-69	62	
			만수동 1-70	70					만수동 1-70	70	
			만수동 1-71	92					만수동 1-71	92	
			만수동 1-72	69					만수동 1-72	69	
			만수동 1-73	86					만수동 1-73	86	
			만수동 1-74	142					만수동 1-74	142	
			만수동 1-194	46					만수동 1-194	46	
			만수동 1-198	33					만수동 1-198	33	
			만수동 1-218	40					만수동 1-218	40	
			만수동 1-226	71					만수동 1-226	71	주2
			만수동 1-227	33					만수동 1-227	33	
			만수동 1-250	33					-	-	1-66에 합병
			만수동 1-251	44					-	-	
			만수동 1-252	32					-	-	
			만수동 1-253	37					-	-	
			만수동 1-254	15					-	-	
			만수동 1-260	69					만수동 1-260	69	주2
			만수동 1-305	33					만수동 1-305	33	주2
			만수동 1-414	48					만수동 1-414	48	주2
			-	-					만수동 1-321	85	누락 필지
			-	-					만수동 1-445	21	누락 필지
			-	-					만수동 1-454	41	1-321 에서 분할
	A3	1,336	만수동 1-75	49		-	A3	1,587	만수동 1-75	49	
			만수동 1-76	8					만수동 1-76	8	
			만수동 1-77	13					만수동 1-77	13	
			만수동 1-78	14					만수동 1-78	14	
			만수동 1-79	103					만수동 1-79	103	
			만수동 1-80	70					만수동 1-80	70	
			만수동 1-81	70					만수동 1-81	70	
			만수동 1-82	98					만수동 1-82	98	
			만수동 1-83	77					만수동 1-83	77	
			만수동 1-84	37					만수동 1-84	77	
			만수동 1-85	133					만수동 1-85	133	

[표 계속]

기정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필지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필지		비고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	A3	1,336	만수동 1-86	133		-	A3	1,587	만수동 1-86	133							
			만수동 1-87	72					만수동 1-87	72							
			만수동 1-88	48					만수동 1-88	48							
			만수동 1-89	36					만수동 1-89	36							
			만수동 1-191	1					만수동 1-191	1							
			만수동 1-192	19					만수동 1-192	19							
			만수동 1-195	33					만수동 1-195	33							
			만수동 1-199	33					만수동 1-199	33							
			만수동 1-219	20					-	-	1-84에 합병						
			만수동 1-220	20					-	-							
			만수동 1-238	7					만수동 1-238	7							
			만수동 1-247	33					만수동 1-247	33							
			만수동 1-248	33					만수동 1-248	33							
			만수동 1-261	16					만수동 1-261	16							
			만수동 1-264	49					만수동 1-264	49							
			만수동 1-268	50					만수동 1-268	50							
			만수동 1-269	31					만수동 1-269	31							
			만수동 1-276	30					만수동 1-276	30							
			-	-					만수동 1-322	251	누락 필지						
			-	A4	2,202				만수동 1-113	90		-	A4	2,652	만수동 1-113	90	
									만수동 1-114	139					만수동 1-114	139	
									만수동 1-115	51					만수동 1-115	51	
									만수동 1-119	40					만수동 1-119	40	
									만수동 1-120	74					만수동 1-120	74	
만수동 1-121	115					만수동 1-121	115										
만수동 1-122	106					만수동 1-122	106										
만수동 1-129	69					만수동 1-129	69										
만수동 1-130	46					만수동 1-130	46										
만수동 1-131	92					만수동 1-131	92										
만수동 1-132	145					만수동 1-132	145										
만수동 1-133	114					만수동 1-133	114										
만수동 1-140	33					-	-	1-282에 합병									
만수동 1-141	104					-	-										
만수동 1-142	121					만수동 1-142	121										
만수동 1-143	115					만수동 1-143	115										
만수동 1-144	217					만수동 1-144	217										

기정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필지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필지		비고	
			위치	면적 (㎡)					위치	면적 (㎡)		
-	A6	1,773	만수동 1-43	137		-	A6	2,014	만수동 1-43	137		
			만수동 1-44	125					만수동 1-44	125		
			만수동 1-45	124					만수동 1-45	124		
			만수동 1-46	122					만수동 1-46	122		
			만수동 1-47	124					만수동 1-47	124		
			만수동 1-48	100					만수동 1-48	100		
			만수동 1-49	118					만수동 1-49	118		
			만수동 1-152	213					만수동 1-152	213		
			만수동 1-153	50					만수동 1-153	50		주4
			만수동 1-154	69					만수동 1-154	69		주4
			만수동 1-156	261					만수동 1-156	261		
			만수동 1-157	66					만수동 1-157	66		주4
			만수동 1-267	49					만수동 1-267	49		주4
			만수동 1-270	54					만수동 1-270	54		주4
			만수동 1-273	39					만수동 1-273	39		주4
			만수동 1-285	122					만수동 1-285	122		
			-	-					만수동 1-337	17		누락 필지 주4, 누락 필지
			-	-					만수동 1-338	224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A1	○ 필지면적 변경 - 1-101번지 : 41㎡ → 84㎡ - 1-232번지 : 41㎡ → 0㎡	○ 만수동 1-232번지가 1-101번지에 합병됨에 따른 면적 변경
-	A2	○ 가구면적 변경 - 1,174㎡ → 1,283㎡ ○ 필지면적 변경 - 1-66번지 : 33㎡ → 156㎡ - 1-250번지 : 33㎡ → 0㎡ - 1-251번지 : 44㎡ → 0㎡ - 1-252번지 : 32㎡ → 0㎡ - 1-253번지 : 37㎡ → 0㎡ - 1-254번지 : 15㎡ → 0㎡ ○ 누락필지 반영 - 1-321번지 : 0㎡ → 85㎡ - 1-445번지 : 0㎡ → 21㎡ ○ 분할필지 반영 - 1-454번지 : 0㎡ → 41㎡	○ 필지 합병 후 지적면적의 변경 및 누락필지의 편입에 따른 면적 변경 ○ 만수동 1-250번지, 251번지, 252번지, 253번지, 254번지가 1-66번지에 합병됨에 따른 면적 변경 ○ 기정 조서에서 누락된 2개 필지를 가구에 편입 ○ 1-321번지에서 분할된 필지를 계획에 반영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A3	○ 가구면적 변경 - 1,336㎡ → 1,587㎡ ○ 필지면적 변경 - 1-84번지 : 37㎡ → 77㎡ - 1-219번지 : 20㎡ → 0㎡ - 1-220번지 : 20㎡ → 0㎡ ○ 누락필지 반영 - 1-322번지 : 0㎡ → 251㎡	○ 필지 합병 후 지적면적의 변경 및 누락필지의 편입에 따른 면적 변경 ○ 만수동 1-219번지, 220번지가 1-84번지에 합병됨에 따른 면적 변경 ○ 기정 조서에서 누락된 1개 필지를 가구에 편입
-	A4	○ 가구면적 변경 - 2,202㎡ → 2,652㎡ ○ 필지면적 변경 - 1-282번지 : 23㎡ → 183㎡ - 1-140번지 : 33㎡ → 0㎡ - 1-141번지 : 104㎡ → 0㎡ - 1-283번지 : 26㎡ → 0㎡ ○ 누락필지 반영 - 1-326번지 : 0㎡ → 5㎡ - 1-327번지 : 0㎡ → 34㎡ - 1-328번지 : 0㎡ → 33㎡ - 1-329번지 : 0㎡ → 30㎡ - 1-330번지 : 0㎡ → 46㎡ - 1-331번지 : 0㎡ → 50㎡ - 1-332번지 : 0㎡ → 68㎡ - 1-333번지 : 0㎡ → 187㎡	○ 필지 합병 후 지적면적의 변경 및 누락필지의 편입에 따른 면적 변경 ○ 만수동 1-140번지, 141번지, 283번지가 1-282번지에 합병됨에 따른 면적 변경 ○ 기정 조서에서 누락된 8개 필지를 가구에 편입
-	A6	○ 가구면적 변경 - 1,773㎡ → 2,014㎡ ○ 누락필지 반영 - 1-337번지 : 0㎡ → 17㎡ - 1-338번지 : 0㎡ → 224㎡	○ 누락필지의 편입에 따른 면적 변경 ○ 기정 조서에서 누락된 2개 필지를 가구에 편입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번호	위치 (가구)	구 분		계 획 내 용
	A1 ~ A6	건축물 용 도	허용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및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4조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총포판매소, 변전소, 장의사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도시계획조례 60%이하
		용적률		○ 도시계획조례 250%이하
		높 이		○ 관계법령에 따름 - 도로사선 :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인천시 건축조례 제3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준용 - 일조사선 :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인천시 건축조례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준용
	A1 ~ A6	배 치		○ 건축물의 방향은 가급적 이웃 건축물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하여 가로경관의 통일감 및 연속성을 하고, 이웃 건축물과 벽면선이 나란히 정렬되도록 하여 시각적 연속성 확보 권장
		형 태 및 외 관		○ 조화로운 경관형성을 위해 평지붕, 경사지붕으로 조성하며, 지붕의 형태 및 색채 등은 저층주거지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주변 건축물과의 가로경관이 고려된 형태로 권장 ○ 경사지붕으로 조성할 경우 경사도는 3/10 이상, 6/10 이하로 하고 평지붕으로 조성할 경우, 에너지절약을 위해 전체 지붕면적의 40% 이상 옥상녹화 또는 텃밭, 정원 등으로 조성하도록 권장 ○ 재료 및 색채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원색적 재료 및 과도한 반사성 재료를 지양하고, 재료 고유의 질감과 특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자연재료의 사용을 권장 ○ 건축물의 외벽은 벽돌, 자연석재, 목재 등 자연친화적 재료의 사용을 권장하고, 과도한 반사성 재료 및 원색계열의 재료의 사용을 제한 ○ 가로에 면한 건축물 외벽에는 에어컨 실외기, 가스배관, 전기 계량기 등 외부 부착물의 설치를 제한하거나 가로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건축물 후면에 설치하도록 권장(다만, 부득이하게 노출되는 경우 적절한 차폐시설을 설치)

[표 계속]

도면 번호	위치 (가구)	구 분	계 획 내 용								
-	A1 ~ A6	색 채	○ 주민 워크숍을 통해 선정된 마을색을 따르되, 자연적이고 친숙한 느낌의 재질과 따뜻한 이미지의 색상 권장 ○ 지붕, 외벽 등 건축물의 주요 부위는 주민 워크숍을 통해 선정된 마을색을 기본으로 하되 인천시 색채디자인 기본계획(2010)에 따르도록 권장한다. 1. 지붕 : 마을색 또는 주거지역 색채 범위(RP, R, YR, Y 등)/명도4이하 / 채도3 이하 2. 건물 외벽 : 마을색 또는 주거지역 색채 범위(PB, BG, R, B, N, YR, GR 등) / 명도4이상 / 채도4 이하 <마을색 선정 우선순위> <table border="1"> <tr> <td>IEC-51 3010-R90B 2.7PB 7.0 / 2.5</td> <td>IEC-48 5020-B70G 4.9BG 5.0 / 2.8</td> <td>IEC-10 3020-Y80R 8.7R 6.6 / 3.6</td> <td>IEC-44 2005-B20G 4.8B 8.1 / 1.2</td> </tr> <tr> <td>1순위</td> <td>2순위</td> <td>3순위</td> <td>4순위</td> </tr> </table> <권장색채-예시>	IEC-51 3010-R90B 2.7PB 7.0 / 2.5	IEC-48 5020-B70G 4.9BG 5.0 / 2.8	IEC-10 3020-Y80R 8.7R 6.6 / 3.6	IEC-44 2005-B20G 4.8B 8.1 / 1.2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IEC-51 3010-R90B 2.7PB 7.0 / 2.5	IEC-48 5020-B70G 4.9BG 5.0 / 2.8	IEC-10 3020-Y80R 8.7R 6.6 / 3.6	IEC-44 2005-B20G 4.8B 8.1 / 1.2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대지안의 조경	○ 건축법 제42조(대지안의 조경) 및 인천시 건축조례 제22조에 따라 설치 ○ 공동개발시 가급적 가로에 면하도록 조성	
대지안의 공지	○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및 인천시 건축조례 제27조에 따라 설치 ○ 공동개발시 가급적 가로에 면하는 전면공지 확보 노력	
환경친화적 마을조성	○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준수 ○ 옥외광고물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설치하되 마을의 이미지를 모티프로 하는 디자인을 권장 ○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준수하며, 환경친화적 마을 조성을 위해 자연지반의 보전 및 옥상녹화, 벽면녹화, 녹색주차장,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를 권장 ○ 가로면 담장은 가급적 미설치하고, 부득이 설치시 최고높이를 1m이하로 하고 환경개선을 위해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 ○ 가로변에 면하지 않고, 이웃건물과 면하는 측면, 후면 담장설치시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낮고 친환경적인 담장 조성을 권장	
주민협정	○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의 가치를 인식하고 가꾸어 가기 위한 사항들을 주민협정으로 구체화하여 실천해 나가도록 함으로서,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유지·관리시스템 마련 권장 ○ 구역 전체 또는 부분을 하나의 협정단위로 정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환경개선, 특성강화 및 주민커뮤니티 창출을 위한 항목을 주민 스스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협정서의 형태로 구체화하도록 권장 ○ 주민협정의 내용은 지역의 경관향상 및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권장사항”의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 체결된 주민협정의 내용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음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경미한 사항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을 따름 ○ 향후 관련 지침 및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제정·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적용함	

IV.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213호

도시관리계획(소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소래 지구단위계획)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032-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2월 30일

남 동 구 청 장

I.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의 도시관리계획(소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10번지 일원

Ⅲ. 도시관리계획(소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 면 표시번호	명 칭	위 치	면 적 (㎡)	비 고
①	소래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10번지 일원	218,947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변경)

1)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218,947	100.0	
주거 지역	소 계	141,062	64.5
	제2종일반주거지역	47,517	21.6
	제3종일반주거지역	53,152	24.5
	준주거지역	40,393	18.4
일반상업지역	73,189	33.3	
자연녹지지역	4,696	2.2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	방화지구	소래포구, 논현2지구일원	171,979 (73,668)	-	-	-	-

주1)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임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 (변경)

○ 도로 총괄표 (변경)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 합계	22	7,041	123,766.0	5	3,059	58,541	13	2,280	30,732.0	4	1,702	34,493
변경 합계	22	7,041	123,964.3	5	3,059	58,541	13	2,280	30,930.3	4	1,702	34,493
기정 대로	2	1,413	37,048.0	-	-	-	1	343	10,098.0	1	1,070	26,950
기정 중로	7	3,994	73,401.0	2	2,763	55,581	4	734	11,010.0	1	497	6,810
기정 소로	13	1,634	13,317.0	3	296	2,960	8	1,203	9,624.0	2	135	733
변경 소로	13	1,634	13,515.3	3	296	2,960	8	1,203	9,822.3	2	135	733

주) ()는 사업지구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 능	연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74	30-34	보조간선	343	논현동 111-407 (논현2지구계)	대1-20	일반도로	인고 제2007-53호		
기정 대로	3	76	25-31	집산도로	1,070 (583)	대3-23	중1-90	일반도로	인고 제2002-310호		
기정 중로	1	90	20	국지도로	180	중1-302	대3-76	일반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중로	1	302	20	보조간선	2,583 (296)	소래,논현지구 지구계남동측	대1-20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58	15-18	국지도로	127	중(소래) 3-2	대3-76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109	15	국지도로	390 (128)	대3-76	논현동21-2	일반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중로	2	110	15-18	국지도로	110	대3-76	중(소래) 3-2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소래1	18	국지도로	107	대3-76	대1-20	일반도로	인고 제2011-225호		
기정 중로	3	소래2	12-16	국지도로	497	대2-74	중1-302	일반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50	대3-76	소1-8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50	대3-76	소1-4	일반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소로	1	4	9.5~10	국지도로	232	소2-1	대2-74	일반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소로	1	8	10~12	국지도로	127	중2-109	대2-74	일반도로	남동구고시 제1997-23호	
기정	소로	1	소래3	10	국지도로	14	중1-302	논현동 111-252	일반도로	인고 제2011-225호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10	대3-76	109-8호 (소래초교)	일반도로	인고 제1994-208호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00	대3-76	소1-8	일반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140	중1-90	중(소래) 3-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124	중1-90	대1-20	일반도로	인고 제1989-1588호	
변경	소로	2	10	8~11.5 (11.5)	국지도로	124	중1-90	대1-20	일반도로	인고 제1989-1588호	
기정	소로	2	소래4	8	국지도로	112	소1-3	소1-4	일반도로	인고 제2011-225호	
기정	소로	2	소래5	8	국지도로	100	중2-58	소2-9	일반도로	인고 제2011-225호	
기정	소로	2	소래6	8	국지도로	79	소2-9	소(소래) 2-7	일반도로	인고 제2011-225호	
기정	소로	2	소래7	8	국지도로	204	소2-9	소(소래) 3-2	일반도로	인고 제2011-225호	
기정	소로	3	소래8	4	특수도로	31	중1-302	소(소래) 2-7	보행자 전용도로	인고 제2011-225호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104	논현동111-10	중1-302	일반 도로	남동구고시 제2017-75호	역사공원 중복결정

※ ()는 구역 내 사항임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10	소로2-10	○ 도로 폭원 확장 - 폭원 : 8m→8m~11.5m	○ 준5BL공동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원활한 차량의 소통을 위한 폭원 확장

(2) 주차장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남동구 논현동 111-36 일원	739	-	739	인고 제2011-225호	
기정	②	주차장	남동구 논현동 66-99 일원	4,444	-	4,444	인고 제2011-225호	
기정	③	주차장	남동구 논현동 66-96 일원	3,375	-	3,375	인고 제2011-225호	소공원①과 중복결정

주)주차장③은 소공원② 전체 4,610㎡ 중 3,375㎡ 중복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1) 광장 (변경없음)

○ 광장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	일반 광장	남동구 논현동 111-329 일원	864	인고 제2011-225호	

(2) 공원 (변경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	역사 공원	남동구 논현동 111-13 일원	4,264	인고 제2011-225호	소로 3-10호선 중복결정
기정	②	소래 소공원	소공원	남동구 논현동 66-96 일원	4,610	인고 제2012-324호	지하주차장③, 유수지 일부 중복결정

주1) 소공원②은 지하주차장③ 3,375㎡ 전체중복, 유수지 전체 1,632㎡ 중 680㎡ 중복

주2) 역사공원①은 소로3-10호선634㎡ 전체 중복

(3) 녹지 (변경없음)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남동구 논현동 810-3번지 일원	1,558	인고 제2011-225호	
기정	②	녹지	완충녹지	남동구 논현동810-2	1,872.9	인고 제2011-225호	
기정	③	녹지	완충녹지	남동구 논현동810-1	2,677.8	인고 제2011-225호	

(4) 공공공지 (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공공공지	남동구 논현동 111-275 일원	322	인고 제2011-225호	일반상업지역
기정	②	공공공지	남동구 논현동 111-269 일원	70	인고 제2011-225호	일반상업지역
기정	③	공공공지	남동구 논현동 111-269 일원	154	인고 제2011-225호	일반상업지역
기정	④	공공공지	남동구 논현동 111-87 일원	271	인고 제2011-225호	일반상업지역
기정	⑤	공공공지	남동구 논현동 111-60 일원	183	인고 제2011-225호	일반상업지역

다) 방재시설(변경없음)

(1) 유수지 (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유수지	저류 시설	남동구 논현동 66-98 일원	1,632	-	1,632	인고 제2012-324호	소공원②과 중복결정

주) 유수지는 소공원② 전체 4,610㎡ 중 680㎡ 중복

라)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하수도 (변경없음)

○ 하수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하수도	남동구 논현동 66-104 일원	492	-	492	인고 제2011-225호	오수중계 펌프시설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가) 주거용지(변경없음)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치	면적(㎡)	
계	32,753	-	-	32,753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 1BL	10,236	1	109-202대	160	■ 공동개발 지정
		2	109-200답	320	
		3	109-198대	456	
		4	109-158대	510	■ 공동개발 지정
			109-159답	20	
			소계	530	
		5	109-157대	623	※필지수 : 2개
		6	109-156대	570	
		7	109-165대	227	
		8	109-167대	225	■ 공동개발 지정
		9	109-164대	174	
			109-169대	140	
			소계	314	
		10	109-163대	182	■ 공동개발 지정
			109-170대	139	
			소계	321	
		11	109-99대	331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2	109-103답	331	
		13	109-100답	188	
			109-151답	142	■ 공동개발 지정
			소계	330	
		14	109-152답	189	
			109-220답	130	■ 공동개발 지정
			소계	319	
		15	109-153답	214	
			109-221답	129	■ 공동개발 지정
			소계	343	
		16	109-166대	683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7	109-97답	1,455	
		18	109-69잡	99	
		19	109-70대	198	■ 공동개발 지정
		20	109-71대	120	
		21	109-72대	205	
		22	109-73대	600	■ 공동개발 지정
			109-215대	398	
			111-26대	122	
			111-27대	78	※필지수 : 4개
			소계	1,198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치	면적(㎡)			
주 1BL (계속)	(10,236)	23	111-29대	108	■ 공동개발 지정 ※필지수 : 2개	■ 획지간 공 동 개 발 권장	
			111-455대	10			
			소계	118			
		24	111-28대	208	■ 공동개발 지정 ※필지수 : 4개		
			111-32전	23			
			111-453대	10			
			111-459전	1			
			소계	242			
		도로	111-14도	114	※비건축 부지		
			109-159답	2			
			109-160도	7			
			109-161도	7			
			109-162답	280			
			109-168도	62			
			111-467도	7			
			111-468도	10			
			111-477도	26			
		111-478도	3	※필지수 : 10개			
		소계	518				
주 2BL	5,031	1	109-19주	857	■ 공동개발 지정 ※필지수 : 4개		
		2	109-35대	457			
		3	109-94잡	742			
		4	109-232잡	131			
		5	109-37대	432			
		6	109-38대	146		■ 공동개발 지정 ※필지수 : 4개	
			109-40대	1,557			
			109-182답	5			
			109-244대	18			
		소계	1,726				
		7	109-177답	364			
		8	109-42대	159		■ 공동개발 지정 ※필지수 : 2개	
			109-181전	2			
소계	161						
9	109-101답	161					
주 3BL	2,007	1	109-49대	110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2	109-50대	120			
		3	109-48대	108			
		4	109-140대	135	■ 공동개발 지정 ※필지수 : 2개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109-246대	17			
			소계	152			
		5	109-51대	147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6	109-53대	99			
		7	109-52대	272			
		8	109-56대	46	■ 공동개발 지정 ※필지수 : 2개		
			110-1대	230			
			소계	276			
		9	109-54대	39	■ 공동개발 지정 ※필지수 : 2개		
			111-96대	182			
			소계	221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치	면적(㎡)		
주 3BL (계속)	(2,007)	10	109-57대	45	■ 공동개발 지정	
			109-58답	36		
			110-3대	165		
			110-5대	41		
			소계	287		
		11	109-55대	10	■ 공동개발 지정	
			111-97대	177		
111-98대	28					
		소계	215	※필지수 : 3개		
주 4BL	3,948	1	109-107답	25	■ 공동개발 지정	■ 획지간 공 동 개 발 권장
			109-235대	326		
			109-172답	48		
			소계	399		
		2	109-144대	417	■ 공동개발 지정	
			109-180대	20		
			소계	437		
		3	109-145대	433		
		4	109-146대	547		
		5	109-142답	31	■ 공동개발 지정	
			109-146대	41		
			109-147대	644		
			소계	716		
		6	109-58답	29	■ 공동개발 지정	
			109-59답	271		
			소계	300		
		7	110-2대	314		
		8	111-101대	112	■ 공동개발 지정	
			111-102대	196		
			111-103대	23		
			111-3도	5		
			111-5도	1		
			소계	337		
		9	111-98대	72	■ 공동개발 지정	
			111-99대	258		
			111-100대	135		
			소계	465		
주 5BL	4,714	1	109-118대	104	■ 공동개발 지정	
			109-135답	7		
			소계	111		※필지수 : 2개
		2	68-2대	126	■ 공동개발 지정	
			68-17대	110		
			68-18대	149		
			68-84전	1		
			109-36대	431		
			109-176대	739		
			소계	1,556		※필지수 : 6개
		3	68-81전	137	■ 공동개발 지정	
			68-82전	415		
			68-83전	670		
			소계	1,222		※필지수 : 3개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치	면적(㎡)	
주 5BL (계속)	(4,714)	4	66대	405	
		5	66-44대	331	
		6	68-23대	20	■ 공동개발 지정
			68-78대	167	
			68-79대	1	
			소계	188	
		7	68-74차	157	■ 공동개발 지정
			68-75중	497	
			소계	654	
		도로	68-19도	207	※비건축 부지
109-122도	40				
소계	247				
주 6BL	6,817	1	68-20중	2,380	■ 공동개발 지정
			109-39전	27	
			109-122도	24	
			109-125답	4	
			소계	2,435	
		2	68-20중	46	■ 공동개발 지정
			68-38전	91	
			소계	137	
		3	68-23대	60	■ 공동개발 지정
			68-80대	131	
			소계	191	
		4	66-39대	379	※필지수 : 2개
		5	68-24전	345	
		6	68-25전	198	
		7	68-39전	266	■ 공동개발 지정
		8	68-40전	317	
		9	68-26전	66	
			66-33전	250	
			68-37전	115	
			68-50도	4	
소계	435	※필지수 : 4개			
10	109-149대	751	※비건축 부지		
11	68-77대	1,214			
도로	68-19도	149			

나)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치	면적(㎡)	
계	25,998.9	-		25,998.9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 1BL	25,998.9	1	810대	25,998.9	

다) 준주거용지 (변경)

○ 기정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치	면적(㎡)	개발유형1 (획지별 단독개발)	개발유형2 (공동개발)	개발유형3 (가구별 공동개발)	
계	27,523	-			27,523	준주거지역		
준 1BL	6,286	1	111-264대	203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준1BL 1-7Lot ②준1BL 8-9Lot ③준1BL 10-11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준1BL 1-18Lot	
		2	111-251대	237				
		3	111-245대	200				
		4	111-246대	201				
		5	111-247대	200				
		6	111-248대	201	■ 공동개발 지정			
			111-249대	209				
		소계		410	※필자수: 2개			
		7	111-250대	210				
		8	111-8대	356				
		9	111-487대	171	■ 공동개발 지정			
			111-492대	76				
			소계			247		※필자수: 2개
		10	111-154대	293				
		11	111-259대	297				
		12	111-263대	456				
		13	111-261대	603				
		14	111-256대	580				
15	111-257대	478						
16	111-258대	454						
17	111-158대	273						
18	111-260대	588	※비건축부지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준1BL 12-18Lot			
준 2BL	8,939	1	111-209대	229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준2BL 2-3Lot ②준2BL 4-5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준2BL 1-25Lot
		2	111-215대	241				
		3	111-192대	277				
		4	111-254대	203				
		5	111-295대	202				
		6	111-20대	877		■ 공동개발 지정		
			66-18잠	161				
			소계					
		7	111-210대	206				
		8	111-220대	206				
		9	111-211대	206				
		10	111-221대	207				
		11	111-212대	206				
		12	111-222대	206				
		13	111-213대	252				
		14	111-216대	420				
		15	111-217대	427				
		16	111-225대	352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준2BL 7-25Lot			
		17	111-226대	352				
		18	111-227대	352				
		19	111-255대	458				
20	111-230대	601						
21	111-265대	428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치	면적(㎡)	개발유형1 (획지별 단독개발)	개발유형2 (용도별 공동개발)	개발유형3 (가구별 공동개발)
준 2BL (계속)	(8,939)	22	111-229대	485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2BL 7~25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2BL 1~25Lot
		23	111-228대	544			
		24	111-214도	405	※비건축부지		
		25	111-231도	436	※비건축부지		
준 3BL	2,920	1	111-152대	292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3BL 1~2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3BL 1~3Lot
		2	111-196대	1,407			
			112-1대	181	■ 공동개발 지정		
			112-2도	63			
		3	소계	1,651	※팔자수: 3개		
			111-56대	2			
			111-161대	519			
			111-173도	225	■ 공동개발 지정		
			111-174대	8			
			111-176대	223			
			소계	977	※팔자수: 5개		
준 4BL	3,498	1	111-300대	744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4BL 1~3Lot ② 준4BL 4~5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4BL 1~5Lot
		2	111-161대	24			
			111-173도	64			
			111-176대	1	■ 공동개발 지정		
			111-179대	383			
			111-235대	155			
		3	소계	627	※팔자수: 5개		
			111-173도	130			
			111-176대	4	■ 공동개발 지정		
			111-180대	343			
		4	111-235대	82			
			소계	559	※팔자수: 4개		
			111-56대	74			
			111-169대	183	■ 공동개발 지정		
		5	111-170대	658			
			111-173도	83			
			111-176대	73			
			소계	1,071	※팔자수: 5개		
			111-57대	157			
			111-166대	9	■ 공동개발 지정		
			111-171대	34			
			111-172대	105			
			111-174대	166			
			111-175대	26			
			소계	497	※팔자수: 6개		
준 5BL	5,629	1	111-183대	1,718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5BL 2~4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 준5BL 1~7Lot
		2	111-301창	1,316	■ 공동개발 지정		
			111-238대	2			
			소계	1,318	※팔자수: 2개		
		3	111-197대	13			
			111-239대	63	■ 공동개발 지정		
			111-241대	28			
			111-242대	6			
			111-243대	63			
			111-301창	107			
			111-344창	1,427			
			소계	1,707	※팔자수: 7개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치	면적(㎡)	개발유형1 (획지별 단독개발)	개발유형2 (용도별 공동개발)	개발유형3 (가구별 공동개발)	
준 5BL (계속)	(5,629)	4	111-232대	415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준5BL 2~4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준5BL 1~7Lot	
		5	111-244대	133				
		6	111-233대	110	※비건축부지			
		7	111-236도	228	※비건축부지			
준 6BL	251	1	111-182대	249	■ 공동개발 지정			
			111-330대	2				
			소계	251				※팔자수: 2개

○ 변경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치	면적(㎡)	개발유형1 (획지별 단독개발)	개발유형2 (용도별 공동개발)	개발유형3 (가구별 공동개발)	
계	27,324.7	-			27,324.7	준주거지역		
준 1BL	6,286	1	111-264대	203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준1BL 1~7Lot ②준1BL 8~9Lot ③준1BL 10~11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준1BL 1~18Lot	
		2	111-251대	237				
		3	111-245대	200				
		4	111-246대	201				
		5	111-247대	200				
		6	111-248대	201	■ 공동개발 지정			
			111-249대	209				
			소계	410	※팔자수: 2개			
			7	111-250대	210			
		8	111-8대	356				
		9	111-487대	171	■ 공동개발 지정			
			111-492대	76				
			소계	247	※팔자수: 2개			
			10	111-154대	293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준1BL 12~18Lot
		11	111-259대	297				
		12	111-263대	456				
		13	111-261대	603				
		14	111-256대	580				
		15	111-257대	478				
		16	111-258대	454				
		17	111-158대	273				
		18	111-260대	588	※비건축부지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치	면적(㎡)	개발유형1 (획지별 단독개발)	개발유형2 (용도별 공동개발)	개발유형3 (가구별 공동개발)	
준 2BL	8,939	1	111-209대	229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준2BL 2~3Lot ②준2BL 4~5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준2BL 1~25Lot	
		2	111-215대	241				
		3	111-192대	277				
		4	111-254대	203				
		5	111-295대	202				
		6	111-20대	877	■ 공동개발 자정			
			66-18갑	161				
			소계	1,038		※발자수: 2개		
		7	111-210대	206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준2BL 7~25Lot		
		8	111-220대	206				
		9	111-211대	206				
		10	111-221대	207				
		11	111-212대	206				
		12	111-222대	206				
		13	111-213대	252				
		14	111-216대	420				
		15	111-217대	427				
		16	111-225대	352				
		17	111-226대	352				
		18	111-227대	352				
		19	111-255대	458				
		20	111-230대	601				
		21	111-265대	428				
		22	111-229대	485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준2BL 7~25Lot		
		23	111-228대	544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준2BL 1~25Lot
24	111-214도	405	※비건축부지					
25	111-231도	436	※비건축부지					
준 3BL	2,920	1	111-152대	292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준3BL 1~2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준3BL 1~3Lot	
		2	111-196대	1,407	■ 공동개발 자정			
			112-1대	181				
			112-2도	63				
			소계	1,651				
		3	111-56대	2	■ 공동개발 자정			
			111-161대	519				
			111-173도	225				
			111-174대	8				
			111-176대	223				
소계	977	※발자수: 5개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치	면적(㎡)	개발유형1 (획지별 단독개발)	개발유형2 (용도별 공동개발)	개발유형3 (가구별 공동개발)
준 4BL	3,498	1	111-300대	744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준4BL 1~3Lot ②준4BL 4~5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준4BL 1~5Lot
		2	111-161대	24	■ 공동개발 자정		
			111-173도	64			
			111-176대	1			
			111-179대	383			
			111-235대	155			
			소계	627			
		3	111-173도	130	■ 공동개발 자정		
			111-176대	4			
			111-180대	343			
			111-235대	82			
		4	소계	559	※팔자수: 4개		
			111-56대	74	■ 공동개발 자정		
			111-169대	183			
			111-170대	658			
			111-173도	83			
			111-176대	73			
		소계	1,071	※팔자수: 5개			
		5	111-57대	157	■ 공동개발 자정		
			111-166대	9			
111-171대	34						
111-172대	105						
111-174대	166						
111-175대	26						
소계	497	※팔자수: 6개					
준 5BL	5,430.7	1	111-183대	1,718.0	■ 공동개발 자정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준5BL 2~3.6Lot	■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①준5BL 1~7Lot
		2	111-301창	1,162.2			
			111-238대	2.0			
		소계	1,164.2	※팔자수: 2개			
		3	111-197대	13.0	■ 공동개발 자정		
			111-239대	63.0			
			111-241대	28.0			
			111-242대	6.0			
			111-243대	63.0			
			111-301창	96.9			
			111-344창	1,416.5			
		소계	1,686.4	※팔자수: 7개			
		4	111-232대	415.0	※비건축부지		
		5	111-244대	109.1			
6	111-233대	110.0					
7	111-236도	228.0					
준 6BL	251	1	111-182대	249	■ 공동개발 자정		
		111-330대	2				
		소계	251	※팔자수: 2개			

라) 상업시설용지 (변경없음)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치	면적(㎡)		
계	53,077	-			일반상업지역	
상 1BL	1,524	1	111-9대	24	■ 공동개발 지정	■ 인접 확정간 공동개발 권장
			111-22대	11		
			111-23대	502		
			111-31대	26		
			111-137대	141		
			111-406전	40		
			111-435대	1		
			111-437대	2		
			111-439대	7		
			111-457전	5		
		소계	759	※팔자수: 10개		
		2	111-24대	337		
		3	111-36철	89	■ 공동개발 지정	
			111-54전	308		
			111-55대	31		
			소계	428		
상 2BL	9,141	1	66-1제	348	■ 공동개발 지정	■ 인접 확정간 공동개발 권장
			66-58제	5		
			111-38대	258		
			111-39대	22		
			111-40대	311		
			111-41대	278		
			111-42대	374		
			111-108도	5		
			111-111대	58		
			111-112대	53		
			111-113도	56		
			111-114대	188		
			111-115대	185		
			111-116대	112		
			111-117대	136		
			111-118대	136		
			111-119대	152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치	면적(㎡)		
상 2BL (계속)	(9,141)	1	111-120대	46	■ 공동개발 지정	■ 인접 확정간 공동개발 권장(계속)
			111-121대	274		
			111-122대	238		
			111-441대	15		
			111-443대	14		
			66-59도	10		
			소계	3,274		
		2	66-1제	278	■ 공동개발 지정	
			111-43대	104		
			111-44대	390		
			111-45대	75		
			111-123대	334		
			111-124대	516		
			111-125대	552		
			111-126대	300		
			111-127대	145		
			111-202대	40		
			111-203대	65		
			111-204대	57		
			111-205대	121		
			111-322대	95		
			소계	3,072		
		3	66-5대	2,794	■ 공동개발 지정	
			66-60도	1		
			소계	2,795		
상 3BL	18,385	1	66-41제	232	■ 공동개발 지정	■ 인접 확정간 공동개발 권장
			111-47대	18		
			111-48대	103		
			111-49대	165		
			111-50대	188		
			111-51대	40		
			111-52대	162		
			111-129대	44		
			111-130대	15		
			111-131대	165		
			111-132대	73		
			111-133대	175		
			111-135대	109		
			111-201대	290		
			111-319대	5		
			111-325대	6		
			111-326대	120		
			소계	1,910		
		2	66-41제	461	■ 공동개발 지정	
			111-7대	45		
			111-53대	327		
			111-136대	99		
			111-159대	61		
			111-345대	105		
			111-346대	47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치	면적(㎡)		
상 3BL (계속)	(18,385)	2 (계속)	111-347대	101	■ 공동개발 지정계속	■ 인접 확장 공동개발 권장(계속)
			111-348도	46		
			111-349대	189		
			111-350대	417		
			111-368대	150		
			소계	2,048		
		3	66-41제	335	■ 공동개발 지정	
			111-7대	164		
			111-160대	60		
			111-354대	104		
			111-355대	39		
			111-356대	294		
			111-357대	234		
			111-362대	226		
			111-363대	240		
			111-364대	60		
			111-365대	73		
			111-366대	61		
			111-367대	83		
			111-369도	130		
		소계	2,103	※팔자수: 14개		
		4	111-149대	61	■ 공동개발 지정	
			111-302대	5		
			111-358대	784		
			111-393대	62		
		소계	912	※팔자수: 4개		
		5	66-19도	15	■ 공동개발 지정	
			111-149대	15		
			111-303대	295		
			111-359대	319		
			111-393대	2		
		소계	646	※팔자수: 5개		
		6	66-41제	398	■ 공동개발 지정	
			111-360대	123		
			111-361대	276		
			111-475대	226		
			111-476대	85		
		소계	1,108	※팔자수: 5개	※확자수: 6개	
		7	66-24잡	9,658		
상 4BL	6,797	1	111-11대	3,945	-	■ 인접 확장 공동개발 권장
			소계	3,945		
			111-151대	1,113		
		111-155대	1,739			
		소계	2,852	※팔자수: 2개	※확자수: 2개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치	면적(㎡)			
상 5BL	5,833	1	111-143대	2,745	■ 공동개발 지정 -상도+상도 ※전체 공동개발 사안가능	■ 인접 확장 공동개발 권 장	
			111-152대	264			
			소계	3,009			
		2	111-147대	1,048	■ 공동개발 지정		
			112-2도	3			
			112-3대	515			
			소계	1,566			
		3	111-73대	7	■ 공동개발 지정		
			111-74대	17			
			111-144대	572			
			111-145대	580			
			111-269대	25			
			111-270대	57			
		소계	1,258	※팔자수: 6개	※확자수: 3개		
상 6BL	2,519	1	111-71대	127	■ 공동개발 지정	■ 인접 확장 공동개발 권 장	■ 가구간 공동개발 권 장
			111-72대	35			
			111-74대	25			
			111-75대	99			
			111-76대	278			
			111-77대	111			
			111-146대	257			
		소계	932	※팔자수: 7개			
		2	111-37대	80	■ 공동개발 지정		
			111-71대	218			
			111-72대	237			
			111-146대	273			
		소계	808	※팔자수: 4개			
		3	111-37대	473	■ 공동개발 지정		
			111-61대	97			
			111-62대	63			
			111-72대	26			
			111-146대	37			
			111-166대	83			
		소계	779	※팔자수: 6개	※확자수: 3개		

주1) 상5BL 6BL 가구간 공동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변경(경미한 변경 제외) 수반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반시설면적 감소시 당초 기반시설 면적에 상응하는 기반시설 또는 대지내공지 등을 대체 조성하여야 함

주1) 상5BL 6BL 가구간 공동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변경(경미한 변경 제외) 수반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반시설면적 감소시 당초 기반시설 면적에 상응하는 기반시설 또는 대지내공기 등을 대체 조성하여야 함

가 구(Block)		획 지(Lot)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구분	위치	면적(㎡)		
상 7BL	8,936	1	111-70	63	■ 공동개발 지정	■ 안접 학자간 공동개발 권 장
			111-79대	142		
			111-80대	281		
			111-81대	267		
			111-82대	215		
			111-83창	268		
			111-84대	274		
			111-85대	112		
			111-86대	225		
			111-89대	61		
			111-90대	73		
			111-91대	69		
			111-92대	79		
			111-93대	56		
			111-94대	112		
			111-148대	255		
			111-398대	225		
			111-423도	312		
			소계	3,089	※팔자수: 18개	
		2	111-58대	188	■ 공동개발 지정	
			111-59대	240		
			111-63대	31		
			111-64대	106		
			111-65대	69		
			111-66대	340		
			111-67대	370		
			111-68대	364		
			111-69대	317		
			111-70대	163		
			111-138대	33		
			111-139대	34		
			111-140대	90		
			111-141대	106		
			111-142대	315		
			111-167대	256		
			111-193대	2		
			111-194도	127		
			111-374대	60		
			111-431대	78		
			소계	3,289	※팔자수: 20개	
		3	111-162대	357	■ 공동개발 지정	
			111-163대	501		
			111-164대	456		
			111-167대	31		
			111-193대	789		
			111-253대	189		
			111-431대	235		
			소계	2,558	※팔자수: 7개	※화자수: 3개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 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1) 허용용도(A) (변경)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허용용도(A)
기정	A1	주 1~6BL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자재 소매점을 제외한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 노유자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기정	A2	공동 1BL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기정	A3	준 1~2BL	개발유형1 (획지별 단독개발) 준수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창고시설 중 창고
			준 1BL (1~11Lot) 준 2BL (1~6Lot)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개발유형2 (용도별 공동개발) 준수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 창고시설 중 창고
			준 1BL (12~18Lot) 준 2BL (7~25Lot)	○ 공동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주거복합건축물
			개발유형3 (가구별 공동개발) 준수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 공동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 창고시설 중 창고 ○ 주거복합건축물

○ 건축물 현황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건축물 허용용도 지정 (변경)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허용·용도(A)
기정	A4	준 3-5BL	개발유형1 (획지별 단독개발) 준수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종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창고시설 중 창고
			준 3BL (2-3Lot) 준 4BL 준 5BL (1-3Lot)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종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 창고시설 중 창고 ○ 숙박시설(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개발유형2 (용도별 공동개발) 준수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종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 창고시설 중 창고 ○ 숙박시설(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개발유형3 (가구별 공동개발) 준수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종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 창고시설 중 창고
변경	A4	준 3-5BL	개발유형1 (획지별 단독개발) 준수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종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창고시설 중 창고
			준 3BL (2-3Lot) 준 4BL 준 5BL (1-3Lot)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종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 창고시설 중 창고 ○ 숙박시설(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개발유형2 (용도별 공동개발) 준수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종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 창고시설 중 창고 ○ 숙박시설(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개발유형3 (가구별 공동개발) 준수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종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 창고시설 중 창고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허용·용도(A)
기정	A5	준 6BL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종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판매시설 중 상점
기정	A6	상 1BL, 상 4-6BL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종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판매시설 중 상점 ○ 업무시설 ○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기정	A7	상 2-3BL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수산물 가공업 제외), 장의사, 종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판매시설 중 상점 ○ 업무시설 ○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숙박시설(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에 한한다) ○ 주거복합건축물
기정	A8	상 7BL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종포판매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판매시설

주1)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의한 분류임
 주2) 학교보건법에 의한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건축불허용도 우선 적용
 주3)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심의를 통하여 허용하는 용도 및 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가능
 주4) 문화재보호구역(장도포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은 현상변경허가 기준에 따름
 주5)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은 90% 미만으로 한다.
 주6)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은 80% 미만으로 한다.
 주7) 수산물가공업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1호 내지 2호에 한한다.
 주8) 도시계획시설의 시설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인천시 관련조례를 따른다.
 단, 주차장 총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권장용도(B) (변경없음)

○ 권장용도 지정을 통하여 구역특성 반영 적극 유도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권장용도(B)
기정	B1	주 1BL	○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다)
기정	B2	주 2BL ~ 6BL	○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자재 소매점을 제외한다)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설소, 안마원,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폴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주)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의한 분류임

(3) 불허용도(C) (변경없음)

○ 도시형생활주택 및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권장용도(B)
기정	C1	전 체	○ 주택법 제2조제4호의 도시형생활주택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1) 건폐율 (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

구 분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비 고
건폐율(%)	60% 이하	50% 이하	60% 이하	80% 이하	

주1) 일반상업지역은 방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건폐율 80% 적용. 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70% 적용

주2) 주차장용지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80%이하로 적용

(2) 용적률 (변경)

○ 개발 규모와 연계한 용적률 계획 수립

위 치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기반시설 의무부담비율 (순부담)	비 고
주 1BL ~ 6BL		200%	230%	250%	-	
공동 1BL		180%	200%	250%	43.1%	
개발유형1 (확지별 단독개발) 순수 시 (※가구 및 확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준 1BL(1~11Lot) 준 2BL(1~6Lot) 준 3BL(1Lot) 준 5BL(4~5Lot)	200%	240%	-	-	
	준 1BL(12~18Lot) 준 2BL(7~25Lot)	170%	200%	-	-	
	준 3BL(2~3Lot) 준 4BL 준 5BL(1~3Lot)	300%	350%	400%	-	
개발유형2 (용도별 공동개발) 순수 시 (※가구 및 확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준 1BL(1~11Lot) 준 2BL(2~6Lot) 준 5BL(2~3,6Lot)	300%	350%	400%	5% 이상	
	준 3BL(1~2Lot) 준 4BL	300%	350%	400%	-	
	준 1BL(12~18Lot) 준 2BL(7~25Lot)	200%	240%	300%	10% 이상	
개발유형3 (가구별 공동개발) 순수 시 (※가구 및 확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준 1, 2, 5BL	300%	400%	500%	12% 이상	
	준 3, 4BL	300%	400%	500%	-	
준 6BL		200%	240%	-	-	
상 1BL		200%	230%	250%	-	
상 2 BL	1종일반주거→일반상업	200%	230%	250%	-	기존용적률은 면적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
	일반상업	700%	800%	1,000%	-	
상 3 ~ 6BL		700%	800%	1,000%	-	
상 7BL		350%	420%	500%	7.5%이상 (개설부담)	

주1) 준12BL을 순수 주거용 공동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에 의거 상한

용적률은 300%를 초과할 수 없음(적용 용적률 : 기준 200%, 허용 240%, 상한 300%)

주2) 주차장용지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허용용적률 800%이하로 적용

※ 주거복합건축물 건축시 적용용적률은 상한용적률을 적용하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 제4항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 기반시설의무부담은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3-5-3 규정 적용(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 일반상업지역 (상2BL, 상3BL 해당)

주택연면적 비율	용 적 륜(%)	비 고
~ 10% 미만	1,000%	
10% 이상 ~ 20% 미만	950%	
20% 이상 ~ 30% 미만	900%	
30% 이상 ~ 40% 미만	850%	
40% 이상 ~ 50% 미만	800%	
50% 이상 ~ 60% 미만	750%	
60% 이상 ~ 70% 미만	700%	
70% 이상 ~ 80% 미만	510%	

- 준주거지역 (준1BL, 준2BL 해당)

주택연면적 비율	용 적 륜(%)	비 고
~ 10% 미만	500%	
10% 이상 ~ 20% 미만	480%	
20% 이상 ~ 30% 미만	460%	
30% 이상 ~ 40% 미만	440%	
40% 이상 ~ 50% 미만	420%	
50% 이상 ~ 60% 미만	400%	
60% 이상 ~ 70% 미만	380%	
70% 이상 ~ 80% 미만	330%	
80% 이상 ~ 90% 미만	300%	

- 인센티브 계획

구분	완화항목	기준용적률 완화범위	비고
획지에 관한 사항	공동개발(규제)	기준용적률 × 0.05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 × 0.05	합벽건축시 공동개발(권장) 완화기준의 50%적용
친환경 건축물	옥상조경(권장)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0.3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규제)	기준용적률 × 0.05	
	공개공지(권장)	(설치면적 - 설치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5%) ÷ 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건축법 제43조 규정 이상 설치시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도 준용, 단 설치면적의 5% 공제)
	쌈지형공지(규제)	기준용적률 × 0.03	위치 준수시, 피로티 형태로 설치시 완화기준의 50% 적용
교통처리	공공보행통로(규제)	기준용적률 × 0.03	

주1) 전면공지와 공개공지 면적은 중복산정하지 않으며, 공개공지 설치시 대지 내 조정면적에 포함하여 산정 한다.

주2) 기준용적률 +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음

- 기부채납 시 용적률 산정 :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1.5×가중치×(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 ※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평균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 공동 1BL은 기반시설의무부담비율 준수 시에만 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므로 상기 산정식을 적용
하지 않음

다)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구 분		최저층수	최고층수	비 고
주 1BL ~ 6BL	공동주택(아파트)	5	18	
	공동주택(아파트) 외 기타용도	-	8	
공동 1BL		5	-	
개발유형1 (획지별 단독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준 1~2BL 준 3BL(1Lot) 준 5BL(4~5Lot)	-	4	
	준 3BL(2~3Lot) 준 4BL 준 5BL(1~3Lot)	-	10	
개발유형2 (용도별 공동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준 1BL(1~11Lot) 준 2BL(2~6Lot) 준 3BL(1~2Lot) 준 4BL 준 5BL(2~3,6Lot)	-	10	
	준 1BL(12~18Lot) 준 2BL(7~25Lot)	공동주택(아파트), 주거복합	5 14	
개발유형3 (가구별 공동개발) 준수 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참고)	준 1 ~ 2BL	공동주택(아파트), 주거복합, 업무시설	5	14
		공동주택(아파트), 주거복합, 업무시설 외 기타용도	-	10
	준 3 ~ 5BL	-	-	10
준 6BL		-	-	4
상 1BL		-	3	6
상 2 ~ 3BL	주거복합, 업무시설	5	-	
	주거복합, 업무시설 외 기타용도	-	10	
상 4 ~ 6BL	업무시설	5	-	
	업무시설 외 기타용도	-	10	
상 7BL		-	13m 이하 (100m 이하) 19m 이하 (200m 이하)	문화재 보호구역 (장도포대지) 경계

주1) 문화재보호구역(장도포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은 현상변경허가 기준에 따름

라) 건축물에 대한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건축선

구 분	적용지역	적용기준	비 고
건 축 한계선	대로 1-20호선 변	1m	- 전면공지로 조성 - 가로경관 개선 및 보행공간 확충
	대로 2-74호선 변	2 ~ 3m	
	대로 3-76호선 변	2m	
	중로 1-90호선	2m	
	중로 1-302호선 변	1 ~ 5m	
	중로 2-58, 2-110호선 변	2m	
	중로(소래) 3-2호선 변	2m	
	소로(소래) 2-1, 2-5, 2-6, 2-7호선 변	2m	
	소로 2-9, 2-10호선 변	2m	

주1) 건축한계선에 의해 구분되는 필지는 건축시 대지면적에 산입됨

주2) 건축법 제36조 및 제50조 규정에 건축선의 별도 지정이 필요할 경우 건축법상의 기준 적용

(2)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

구 분			내 용
저층부	상업용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투시형 벽면	○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투시형 셔터	○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 포함)
	출입구 높이		○ 건축물의 보행주출입구 1층 바닥 마감높이와 도로 마감 높이와의 차이는 10cm 이하
옥 상 부			○ 냉각탑 등 건축설비 노출 불허
공동주택 및 주거 복합용도 건축물			○ 탑상형 ○ 획일적 패턴 지양 및 형태 및 입면상 변화로 조형성 향상

○ 건축물의 외관

구 분	내 용
재료 및 색채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및 색채 사용
야간조명	○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획지의 건물외벽 및 조형물, 보도바닥 등에 조명을 투시하는 야간환경조명 설치 권장
담장 또는 울타리	○ 담장 또는 울타리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부득이하게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1.5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가) 대지 내 공지

구 분	내 용	비 고
전면공지	○ 보행공간 및 가로경관 개선 - 대로 1-20호선 변 : 1m - 대로 2-74호선 변 : 2 ~ 3m - 대로 3-76호선 변 : 2m - 중로 1-90호선 변 : 2m - 중로 1-302호선 변 : 1 ~ 5m - 중로 2-58, 2-110호선 변 : 2m - 중로(소래) 3-2호선 변 : 2m - 중로(소래) 2-1, 2-5, 2-6, 2-7호선 변 : 2m - 소로 2-9, 2-10호선 변 : 2m	건축한계선 부분
공개 공지	씬지형 공지 ○ 일반상업용지(상2-1, 상2-2, 상3-1, 상7) : 4개소 ○ 준주거용지(준4-3) : 1개소	위치지정
대지안조경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공동주택용지 : 폭 10 ~ 15m(완충녹지)	

주1) 건축한계선 등에 의해 확보된 공지는 접한 도로 및 보도와 높이차가 없어야 함

주2) 공지내에는 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일체의 통행방해물의 설치를 금함

주3) 대지내 공지 조성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시행

나) 교통처리계획

- 지구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간선도로변의 차량출입 불허구간 일부 조정

구 분	내 용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진출입으로 인한 차량흐름 저해요소 제거 ○ 이면도로를 통한 교통서비스 유도	대로 1-20호선 변 대로 2-74호선 변 대로 3-76호선 변 중로 1-90호선 변 중로 1-302호선 변
공공보행통로	○ 준주거용지(준4-3, 4) : 1개소	위치지정

주1) 간선가로변에서의 차량 진출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다) 옥외광고물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따름
- 해당구역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으로 향후, 고시 사항에 따라 특정광고물설치기준을 준수

라)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임

경미한 사항
① 공개공지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 ②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③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변경 및 신규 설치

주1)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해당 법령을 준용한다.

IV.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